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280-01

20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일러두기

본 매뉴얼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시행과정 등에서 검토 또는 이행되어야 할 사항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각종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기술하였다.

본 매뉴얼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계획수립기관 및 협의기관의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 것이며 본 지침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 매뉴얼에 수록된 내용은 2012년 1월 기준의 각종 법령이나 지침의 내용으로 수록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목 차

Chap. 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요	1
제 1장 사업개요	3
1-1 추진배경 및 목표	3
1-2 법적근거	3
1-3 추진방향	3
1-4 적용범위	5
1-5 지원내용	12
제 2장 모니터링	14
2-1 목적	14
2-2 추진방향	14
2-3 중점수행사항	14
2-4 기대효과	14
제 3장 컨설팅	15
3-1 목적	15
3-2 주요내용	15
3-3 기타	15
제 4장 평가	16
4-1 추진배경	16
4-2 평가목적	16
4-3 평가실시	16

Chap. II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19
제 1장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개요	21
1-1 사업목적	21
1-2 법적근거	21
1-3 사업추진 방향	21
1-4 사업대상	21
1-5 사업내용	22
1-6 추진체계	23
제 2장 읍면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25
제 3장 기본계획수립	27
3-1 기본계획 수립개요	27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27
3-3 기본계획 세부내용	28
제 4장 시행계획수립	31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31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33
4-3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33
제 5장 사업시행	34
5-1 사업시행절차	34
5-2 사업발주요령	34
5-3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38
5-4 사업의 준공	39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40
제 6장 유지관리	41
6-1 유지관리 목적	41
6-2 유지관리 방향	41
6-3 유지관리 범위	42
6-4 유지관리 체제	42
6-5 시설물 운영방법	42
[부록]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52
Chap.Ⅲ 권역단위 종합정비	67
제 1장 권역단위 종합정비 개요	69
1-1 사업목적	69
1-2 법적근거	69
1-3 사업추진방향	69
1-4 사업대상	70
1-5 사업내용	71
1-6 지원조건	71
1-7 지원금액	74
1-8 추진체계	75
제 2장 사업추진 관련조직과 운영	78
2-1 권역발전협의회	78
2-2 추진위원회	80
2-3 권역사무장 운영	82

제 3장 기본계획수립	88
3-1 기본계획 수립개요	88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88
3-3 기본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89
3-4 기본계획 세부내용	92
제 4장 시행계획수립	103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103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105
4-3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105
제 5장 사업시행	106
5-1 사업시행 개요	106
5-2 사업발주 요령	107
5-3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111
5-4 사업의 준공	112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113
제 6장 유지관리	115
6-1 유지관리 목적	115
6-2 유지관리 방향	115
6-3 유지관리 범위	116
6-4 유지관리 체제	116
6-5 시설물 운영방법	116
[부록]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126

Chap.IV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139
IV-1 신규마을조성(전원마을 등)	141
제 1장 신규마을조성 개요	145
1-1 사업목적	145
1-2 사업추진방향	145
1-3 사업시행자	145
1-4 사업추진유형	146
1-5 지원대상 및 지원금 사용용도	148
1-6 지원대상지역 및 요건	149
제 2장 마을정비조합 구성	157
2-1 마을정비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157
2-2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역할	157
2-3 마을정비조합 설립 방법	160
2-4 마을정비조합의 자격	161
2-5 마을정비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161
2-6 마을정비 사업계획서	161
제 3장 입주예정자 모집 및 분양	198
제 4장 사업제안	221
제 5장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227
5-1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227
5-2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시 확인사항	230
제 6장 시행계획수립	233

6-1 시행계획 수립개요	233
6-2 사업주체별 업무	237
6-3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238
제 7장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246
7-1 준공검사	246
7-2 공공시설 유지관리	247
IV-2 기존마을정비	249
제 1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257
제 2장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73
제 3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279
제 4장 주민대표회의	287
제 5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및 동의	289
제 6장 사업시행인가 등	292
제 7장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99
제 8장 철거 및 착공	308
제 9장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	311
제 10장 준공인가	315
제 11장 준공인가 후 조치 등	319
제 12장 비용의 부담 등	323
제 13장 감독 등	337

[부록]	340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341
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64
3.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	367
Chap. V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371
V-1 농촌생활환경정비	373
제 1장 사업개요	375
1-1 사업목적	375
1-2 근거법령	375
1-3 추진방향	376
제 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377
2-1 사업대상 지역	377
2-2 지원내용	377
2-3 지원조건	378
제 3장 사업추진 체계	379
3-1 사업시행자	379
3-2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예산편성	380
3-3 사업시행절차	381
3-4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	383
3-5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	388
3-6 사후관리	389
V-2 농업생산기반조성	391

제 1장 사업개요	393
1-1 사업목적	393
1-2 근거법령	393
1-3 추진방향	394
제 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395
2-1 사업대상	395
2-2 지원내용	395
2-3 지원조건	395
제 3장 사업추진 체계	396
3-1 예산신청	396
3-2 사업시행	396
3-3 사후관리	397
3-4 사업추진 체계	398
Chap.VI 마을공동소득 및 공동문화조성(시범사업)	399
제 1장 사업개요	401
1-1 사업목적	401
1-2 근거법령	401
1-3 추진방향	402
제 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403
2-1 사업대상	403
2-2 지원내용	403
2-3 지원조건	405

제 3장 사업추진체계	406
3-1 예산신청	406
3-2 사업시행	406
3-3 사후관리	407
3-4 사업추진 체계	408
[부록] 마을공동소득창출 및 문화조성 사업계획서(예시)	409
Chap.VII 지역역량강화 [S/W] 부문(예산계획 및 집행)	423
제 1장 지역역량강화(S/W)사업개요	427
1-1 사업배경	427
1-2 사업목적	427
1-3 사업범위	428
제 2장 가이드라인개요	429
2-1 산출근거	429
2-2 용어정리	429
2-3 비목별구분	429
2-4 분야별 인건비, 경비 구성 비율	430
2-5 컨설턴트의 등급구분	430
2-6 사업시행 수행조직의 자격요건	431
제 3장 분야별 가이드라인	432
3-1 교육	432
3-2 국내견학	438
3-3 국외견학	441

3-4 컨설팅	444
3-5 홍보·마케팅	450
3-6 정보화	453
3-7 마을경영	457
제 4장 지역역량강화(S/W)사업 정산요령	459
4-1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 프로세스	459
4-2 정산서 작성 필수사항	459
4-3 증빙첨부	463
[부록] 비용지급기준, 컨설팅결과보고서 양식	466
[부록]	469
1. 포괄보조사업의 개요	471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489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514
4.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555
5. 농어촌정비법	577

Chapter

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요

1. 사업개요
2. 모니터링
3. 컨설팅
4. 평 가

제1장

사업 개요

1-1. 추진배경 및 목표

- 일반농산어촌지역은 전체국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청년층의 도시로 이동 및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여 마을 공동화현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을 향상함과 더불어 기초생활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1-2.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34조(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등

* 관련 근거 : 붙임 참조

1-3. 추진방향

- 자연마을↔소생활권↔읍·면소재지↔인근도시 등 상호 보완적인 주민 정주 체계를 감안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종합적, 체계적 정비

- 마을 : 지역주민과 이주희망 도시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규마을조성, 기존마을 재개발, 이주희망 도시민 등이 추진하는 신규마을 등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동체 기반유지
- 소생활권역 : 지역특성을 감안한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마을을 권역화하여 전략적으로 개발
- 읍면소재지 : 인근도시와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 읍면소재지 역할강화를 위하여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읍면소재지에 적정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
- 도심지 : 주거 밀집지역의 낙후·불량주거지의 도로·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설치 및 경관개선 등 추진

※ 특히, 도농통합시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 간 서비스 연계성 확보에 유의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을 감안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추진
 - 도로포장, 마을 상하수도 보급, 교량, 주차장, 버스정류장, 소공원, 산책로, 마을하수 처리시설, 마을회관, 복지시설, 빈집철거·정비 등
- 지역의 발전 역량강화 및 시·군의 기획기능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교육·네트워킹 지원 강화
 -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개발 경험자, 지역개발 전문가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마케팅 등 강화
 - 귀농·귀촌 촉진 프로그램, 이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공동체 형성 등
- 마을단위 등 소규모 공동 소득 지원사업 추진
 - 마을 소득확충을 위한 시설, 브랜드 개발 등 강화
- 기존의 계속사업지구는 기존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관련 유사사업의 통합 추진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
 - 주거환경개선, 개발촉진지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지정을 받은 사업
 - 유사사업의 통합으로 사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 도시와 농어촌을 연계한 통합적인 개발과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
 -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의 기초서비스 기능분담 및 연계발전을 유도

-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시설활용도 제고 및 시설복합화 유도
- 시·군 전체의 『나누어먹기식』 사업을 지양, 거점·권역 집중개발 등을 통해 사업효과 제고

1-4. 적용범위

가. 유형별 사업종류

유형별 사업		기능별 사업
①	읍면단위종합정비사업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②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 역량강화
③	신규마을조성및재개발사업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④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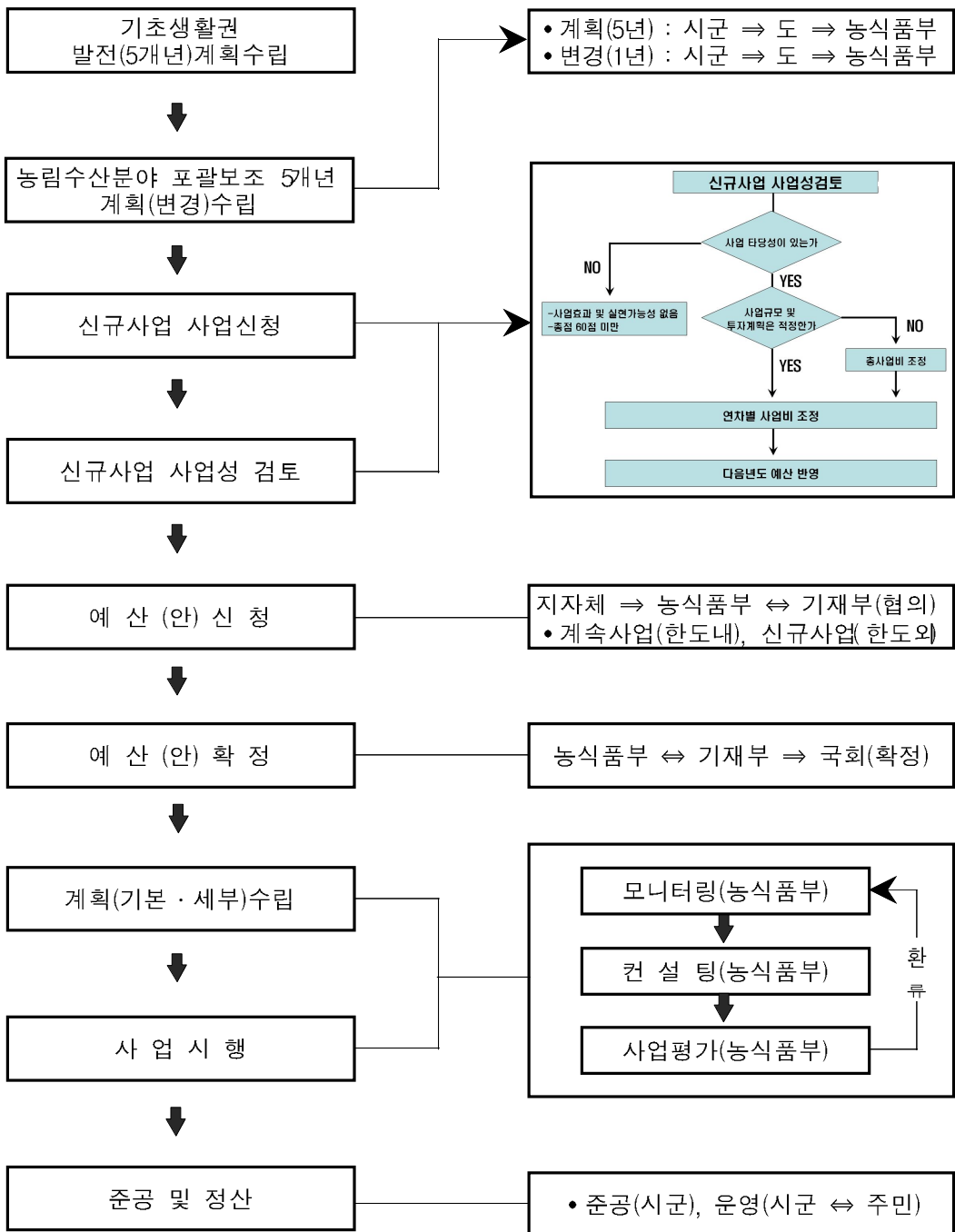
유형별사업 주요내용

구 분	세부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비 고
【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Ⅰ-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역역량강화 지원가능 *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은 경관개선으로 분류 * 소득사업은 지양 ○ 지원조건(4년간, 국고 70%, 지방비 30%) - 100억원 범위에서 사업성에 따라 차등지원 * 2013년부터는 면단위는 70억원	<통합된 사업> · 소도읍육성사업 · 거점읍소재지 정비사업
	【Ⅱ】 권역단위 종합정비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 중심 - 지역소득증대 지원가능 ○ 지원조건(5년간,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규모 : 권역규모에 따라 25억원 ~70억원 * 2013년부터는 25~50억원	<통합된 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산촌생태마을조성 ·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Ⅲ】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Ⅲ-1】 신규마을조성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마을규모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지원	<통합된 사업> · 전원마을조성사업
	【Ⅲ-2】 기존마을정비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원조건 (국고 70%, 지방비 30%) - 실비기준지원(한도액 초과시 지방비 부담)	<통합된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Ⅳ】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Ⅳ-1】 농촌생활환경 정비	○ 지원내용 - 종합정비(읍면소재지, 권역단위) 대상지역 이외지역에 개별단위로 지원하는 기반 시설, 농어촌경관개선, 문화복지, 환경보 전, 농어촌체험시설, 농어촌생활 용수개 발 등의 시설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농촌생활 환경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통합된 사업>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 농산농촌체험마을사업 · 어촌체험마을사업 · 살기좋은도시만들기사업 · 개발촉진지구사업 등
	【Ⅳ-2】 농업생산기반 조성	○ 지원내용 -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의 농업생산 지원시설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통합된 사업>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소규모용수개발사업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Ⅳ-3】 마을공동소득 창출 및 문화조성	○ 지원내용 - 마을공동소득창출, 마을공동문화조성 ○ 지원조건(2년,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규모 : 소득창출 5억원, 문화조성 2억원	<통합된 사업> · 없음 * 2013년부터 신규시범사업

나. 기능별 사업종류 및 내역

사업의 종류	사업별 주요내용
① 기초생활 기반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정보화시설 등 - 농산어촌의 농업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한 농어업기반(소규모용수개발, 경작로확포장, 지표수보강개발 등)시설 등 -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등 ※ 농어촌지역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동휴양 시설 및 서비스전달체계, 재해대비시설 등이 해당 ○ 지원제외 : 마을조성(신규, 재개발 등)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 주택건축비
② 경관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농촌다움을 체계적으로 유지·보존하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등 - 농어촌지역의 불량경관의 정비를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민속자료 등의 정비사업 - 지역사회의 중심거점인 읍·면소재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 가로경관 및 간판정비 사업 등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담장, 간판정비는 10가구 이상의 집단적인 정비사업에 한하며 시설비의 20%는 수혜자가 부담
③ 소득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체험시설, 폐교임대활용, 생태학습장, 문화체험관 등 - 지역의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공동 농특산물판매장, 공동 소규모가공시설, 공동 저온저장고시설, 공동 농산물선별장 등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반시설은 행정리(동)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10가구 이상 법인)에 한하여 지원, 사업비 총액의 20%는 수익자(주민) 부담 - 주민소득을 위한 소득기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주민)가 부담(농어업기반시설 부지는 제외)
④ 지역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 - 시군은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3%이내에서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를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연구비, 자문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다음연도 예산신청액의 10%범위 내에서 신청가능(기본계획수립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경비 포함 시 10%초과 가능) ○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송비 등)와 종합사업(하드웨어)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외의 S/W 단독사업은 지원제외

다. 일반농산어촌 사업시행체계



라. 지원제외 대상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기초생활기반구축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법령에 의해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
 - 균특법 시행령(36조 별표)에 의한 지원제외 대상 사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제36조 관련)>

1. 일반여권 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보조사업
2. 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 나. 장애아동 교육지원
3.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 가. 논농업 직접지불
 - 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 다.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
4.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 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 나.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 지원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지원
5. 수질·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 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 나.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 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6. 에너지정책의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 가. 지역에너지 개발
 - 나. 석탄 비축 및 진흥지구 개발지원
 - 다. 광산지역 공해 방지시설 및 장비 지원
7. 그 밖에 국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예산안편성 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2항 단서)의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발취)

사 업 명	사 업 명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87.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18. 지역정보화 지원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19. 자전거도로 정비	90. 노인시설 운영
20.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21. 공공도서관 운영	92. 아동시설 운영
22.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	105. 사회복지관 운영
23. 문화의 집 조성	113.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2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16. 노인복지회관 운영
27.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117. 재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28.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118. 결연기관 PC구입비
29. 조각공원 조성	119. 사회복지관 기능보관
31. 문화학교 운영	127.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2.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130. 산업단지 문화제 조사비
33. 지역별 특성화 사업	135.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34. 문화인물 기념사업	136. 불가사리 구제(驅除)
36. 문화의 거리 조성	139. 담수어 칩단양식장 시설
39. 예술창작공간 조성	140.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 등 지원
4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143. 재래어종 치어 방류
4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44.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48. 농촌 PC 보내기 사업	145. 수산물 위생안전
49.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149. 양식기반시설
50. 지방자치단체 종자 보급	150. 마을어장 개발
51.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154. 과학영농기술 현장기술 개발비 지원
52.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155. 원격영농상담시스템
59. 장애인복지관 운영	157. 친환경 화장실
65. 장애인체육관 운영	158. 개발기술 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81. 경로당 운영	161. 보호수(保護樹) 정비
82. 경로당 활성화 지원	162. 임산물 유통·가공

○ 사업취지 및 정책목표 등에 맞지 않은 사업

- ①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비(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육묘장, 축사 등)
 - * 다만 축사는 마을경관 또는 환경개선을 위해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화 시킨 공동 축사의 경우는 지원가능(축사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② 마트·슈퍼 등 판매시설의 설치·관리비
 - * 다만, 해당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서 임대하지 않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 판매시설 설치비는 허용
- ③ 숙박시설·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관리비
 - * 다만, 사업계획에 의한 체험·관광객의 숙박제공을 위한 복합시설의 설치비는 허용(체험·관광객이 아닌 외부인을 위한 영업용으로 이용시는 지원 불가)
- ④ 농기계·장비·선박·자동차 등 구입비
 - * 다만, 장비는 시설에 부착된 설비성격의 장비는 허용
- ⑤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자재(농약비료·종자·부직포·파이프·비닐 등) 구입비
- ⑥ 정미소·미곡종합처리장·산지유통센터·농림수산물 건조시설 설치·관리비
- ⑦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장비 구입비
- ⑧ 보조금으로 지원한 건축물의 관리기간 내 철거 및 리모델링비(신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도 지원 제외)
 - * 다만, 시·군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승인한 경우는 가능
- ⑨ **자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부지의 조성비(측량·분할·관련 세금 등) 및 구입비**
 - * 다만, 도로·주차장·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 용 토지구입비는 지원가능(부지의 과잉 확보 방지를 위해 토지구입비는 해당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회관 등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복합시설의 용지 구입비는 2013년까지만 지원(2014년부터는 지원 제외)
- ⑩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하는 사업비 이외의 비용 및 마을기금 조성비
- ⑪ 마을조성(신규, 재개발, 분산마을정비 등)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 주택건축비, 신규 마을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제 지표조사 등 포함)
- ⑫ 타 부처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예 : 마을기업 등)인 경우 동일 항목의 사업비(홍보비, 교육비, 컨설팅비, 홈페이지 구축비, 경상비, 인건비, 시설비 등) 전체

1-5.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지역

-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에 해당되는 120개 시·군에 대해 지원(일반농산어촌지역 120개 시·군 현황 : 별첨 참조)
- 시군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및 군(광역시외의 군은 제외) 지역

- 도시활력증진지역(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과 성장촉진지역(개축지구지원·도서종합개발)은 국토해양부로 사업신청
-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372개 개발대상도서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도서)은 행정안전부로 사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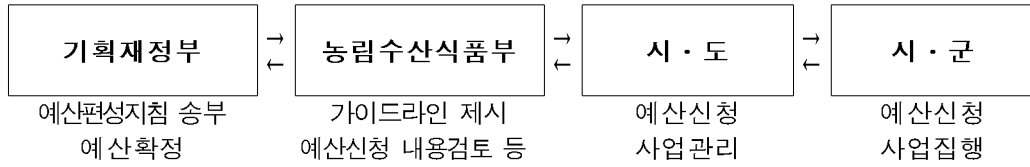
나. 시행주체 및 보조율

- 사업주체 : 시장, 군수
- 통합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통합보조율 적용
- '10년 신규대상 지구부터 적용
- 기존 계속사업(2년이상 장기계속사업)은 새로운 통합보조율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보조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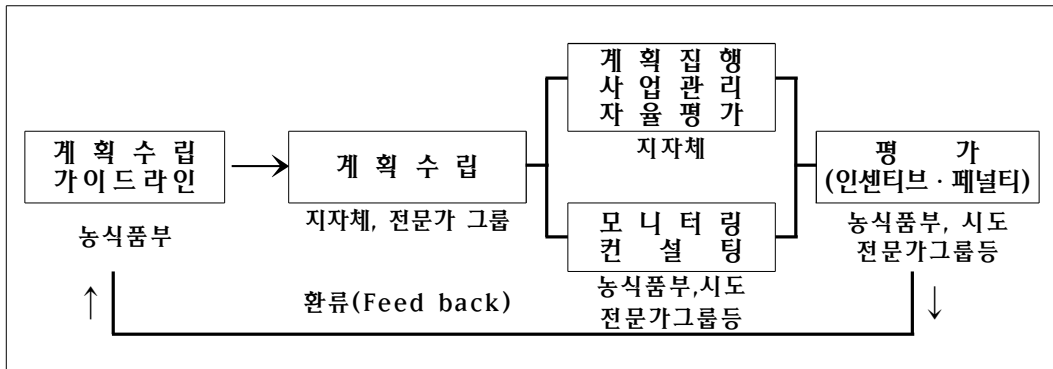
다. 예산신청 및 집행

- 시군구는 예산신청시 유형별·기능별·에 따라 예산을 신청
- 시군구는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 시군구는 예산신청시 지역발전 계획, 관련사업 중장기 계획, 계속지구 등 사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신청
- 시군구는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3%이내에서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를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연구비, 자문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예산신청 및 집행 흐름 >



< 사업 추진 체계도 >



제2장

모니터링

2-1. 목적

- 포괄보조금 제도에서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조기정착 유도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 성과목표, 사업진행 상황 등의 자료수집을 통해 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

2-2. 추진 방향

- 일반농산어촌지역 1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기모니터링 시행
- 정기모니터링 결과 사업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시행하여 현지 출장 점검 실시

2-3. 중점 수행사항

-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상황
 - 총괄 및 협조부서 지정 등 사업추진체계 · 작동 현황
-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 내용 확인
-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성과목표, 지표 달성 가능성
 -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성과, 비전 및 발전 방향 등
- 사업 추진 상황, 우수 부진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발굴
- 지역주민 갈등, 민원, 감사 지적 등 처리결과 확인

2-4. 기대효과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의 성과 목표, 지표 등 지자체의 자율적 관리 가능
- 우수 성공모델 발굴·홍보로 정보 공유

제3장

컨설팅

3-1. 목적

- 지자체의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시 농산어촌 지역발전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으로 알차고 충실한 계획수립 도모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중장기 비전설정 및 계획 수립,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등을 중점 지원
- 모니터링에서 사업추진 및 운영이 미흡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실시

3-2. 주요 내용

- 계획서의 체계 및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컨설팅
 - ※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
- 지자체내 타 사업 및 타 시·군과의 연계성
- 지자체의 중장기 비전 설정에 따른 계획수립,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세부 사업 및 실행계획 등 구체적 제시)
- 사업 추진 취지 및 추진방향에 맞는 계획수립
- 발전방향, 성과지표, 사업우선순위, 서식 준수 등 종합검토
- 사업추진상황, 운영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

3-3. 기타

-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들을 활용, 지자체의 계획수립 컨설팅 지원이 상시 가능하도록 운영체제 가동
 - 현재의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그룹을 확대·개편하여 운영
 - 지역별로 지역개발 전문가 지원반을 구성하여 상시 지원체제 마련
- 바람직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지구에 반영된 역량강화사업비(S/W)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실시

제4장

평 가

4-1. 추진배경

- '10년부터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어 종전의 균특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개편되고,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
-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
 - ※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의2
- 지역위는 매년 5월말까지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보고(시행령 제13조)

◆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평가 추진체계

- 시군/시도(실적보고서 제출) → 광역위 검토 → 부처 평가 → 지역발전위원회 최종확정 → 기획재정부(차년도 예산실링 증감)

4-2. 평가목적

- 광특회계 지역계정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 제시
- 지자체는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4-3. 평가 실시

- 평가등급은 사업군별 5단계 상대평가 : S(10%), A(15%), B(50%), C(15%), D(10%)
- 평가자료는 시군의 REDIS(www.redis.go.kr,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등록
- 평가결과 우수 시군은 인센티브 지급, 부진시군은 예산 삭감(지역위)
 - 농림수산식품부는 평가결과를 신규사업 대상 선정시 반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세부내용)

기능별 사업	세부 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기반 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 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펜스, 기타 안전시설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시설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등
	농업기반	기계화 경작로,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공동 가공시설, 공동 집하장, 공동 선별시설, 특산물 공동 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	폐교활용, 농산어촌체험시설, 야영장, 체험학습장 등
지역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안길 가꾸기,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생울타리조성, 마을조형물, 문화자원 복원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소규모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시군의 사업지원 경비 등

일반농산어촌(120개 시군) 지역현황

구 분	120개 시·군
경 기 (9)	평택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 (9)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 북 (11)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 남 (15)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 북 (1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21)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22)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 남 (18)	창원시(마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제 주 (2)	제주시, 서귀포시

Chapter

II

음면소재지 종합정비

1. 음면소재지 종합정비 개요
2. 음면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3. 기본계획수립
4. 시행계획수립
5. 사업시행
6. 유지관리

[부록] 음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제1장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개요

1-1.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읍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
- 읍면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2. 법적근거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9조
- 시행절차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3조, 제71조 준용

1-3. 사업추진 방향

- 지역특성을 살린 핵심테마를 발굴하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명소화를 추진
- 읍면소재지 발전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계적으로 지원
- 지자체의 능동적인 조정으로 분산 추진되는 각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추진
- 지자체가 지역주민, 지역리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추진

1-4. 사업대상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조에 의한 농산어촌지역의 읍·면 지역 중 읍면소재지의 중심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행위 등에 제약요인이 없거나 해제가 가능한 지역
- 현재 지역 거점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사업시행을 통해 지역거점공간으로 서비스기능 향상이 가능한 읍면소재지 지역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기 선정된 지역은 제외(소도읍 육성사업시행 및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지역 포함)

1-5.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기능별 사업을 참고하여 시행가능하나, 읍면소재지 기초서비스 기능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경관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시행
 - 기초생활기반 : 도시계획도로, 주거환경정비, 다목적복지회관, 운동휴양시설 등
 - 지역소득증대 :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래시장 시설개선 등
 - 지역경관개선 : 경관계획수립, 지붕·담장정비,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사업 등
 - 지역역량강화 : 교육훈련비, 컨설팅, S/W프로그램(시설물 운영관리 등), 기본계획비 등
- * 단,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총사업비의 10%범위 내에서 시행가능하며, 기본계획비, 세부설계비 등의 부대경비 포함시 10% 초과 가능

나. 지원조건

- 사업비의 지원은 지구당 4년간 100억원 범위에서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 '13년 신규 신청지구부터(읍소재지 : 100억원 이하, 면소재지 : 70억원 이하) 적용
 - 신규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에 역점
 - 경관개선 계획에 따른 사유 시설물은 시설비의 20%를 수혜자가 부담
 - * 단, 주요 신규 사업 사업성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하며, 지붕, 담장, 간판정비는 집단적인 정비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시설비의 20%는 수혜자가 부담

[표 II-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원조건

구분	지원 한도	사업 기간
~'09년 선정(~'10착수)	70억원 이내	3년간
'10년 선정('11착수)~'11년 선정('12착수)	100억원 이내	4년간
'12년 선정('13착수)~	읍:100억원 이내, 면:70억원 이내	읍소재지:4년간, 면소재지:4년간

[표 II-2]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원메뉴

기능별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기반 확충	도로·교통	도시계획도로, 공용주차장, 주거환경정비 등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레포츠시설, 근린공원조성, 체육공원조성 등
지역경관개선	소득기반	재래시장 시설개선, 향토(5일)시장정비 등
	도시경관	경관계획수립,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사업, 경관저해시설 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S/W)	교육·훈련	주민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지역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마을홍보	지역축제 활성화, 문화·복지 P/G, 시설물 운영관리 P/G 지원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1-6.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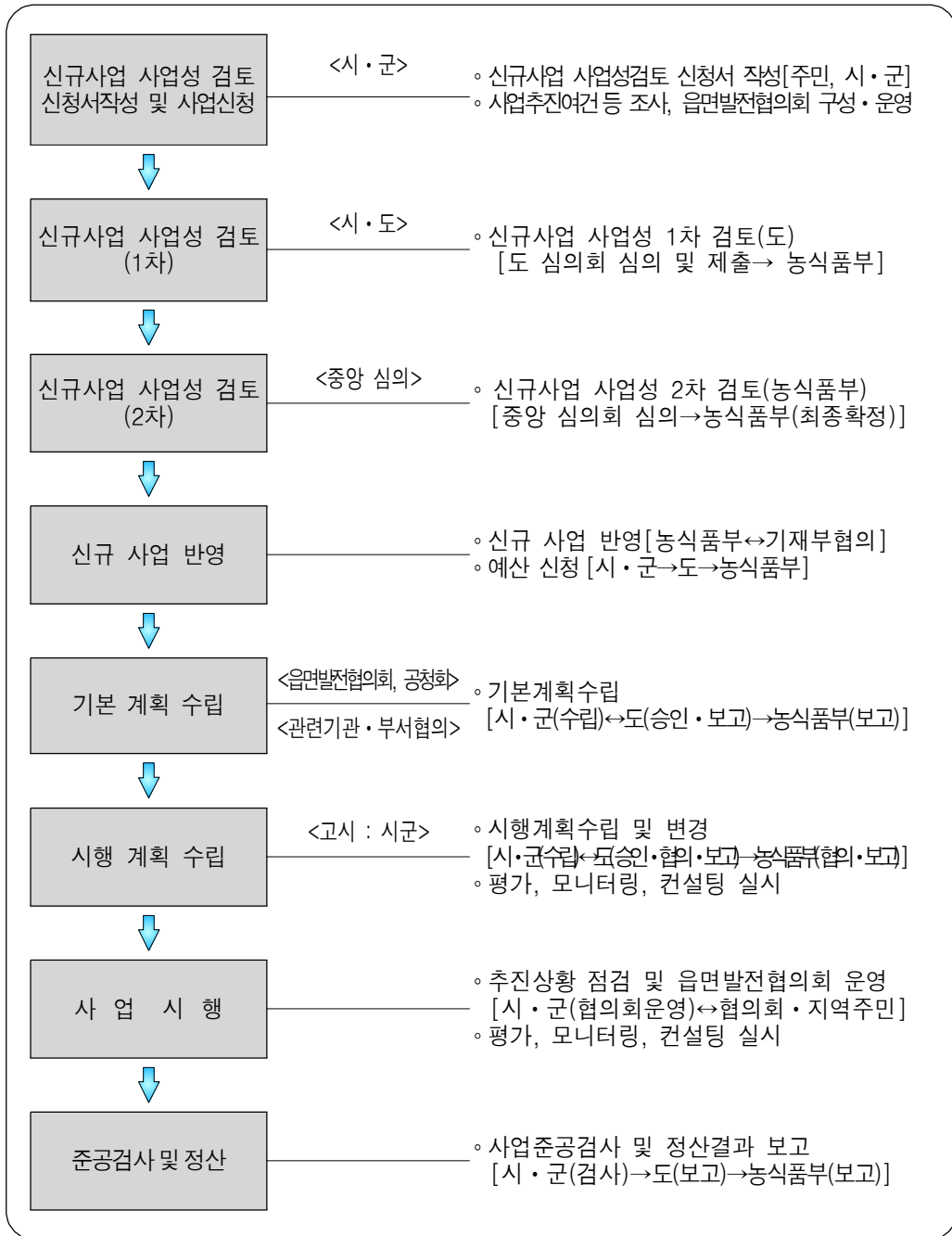
가. 시 행 자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읍면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
 -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위탁 시행 시에는 가능한 한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을 일괄 위탁하고, 이 경우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

나. 기관별 역할분담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방침 시달, 전년도 사업 부처평가(지역위 주관),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2차), 시행계획변경(기능별 총 사업비의 50%이상 또는 사업취소의 경우)에 대한 사전협의, 예산 지원,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 도지사 : 예산신청, 신규 사업타당성 검토(1차), 기본계획승인, 시행계획승인, 시행계획변경(기능별 총 사업비의 20%이상 ~50%미만의 경우)에 대한 사전협의
 - * 협의 실적(건수,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분기별로 통보(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 시·군의 사업시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비 확보, 지원
 - 시·군 공무원 및 주민대상 교육 및 워크숍 등 실시
 - 사업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및 건의
- 시장·군수 : 읍면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서 작성 및 사업검토신청, 예산신청,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신청(도), 시행계획수립 및 승인신청(도), 사업시행, 시행계획변경 승인·준공 및 정산,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
 - 사업시행 주체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본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읍면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기구로 적극 활용
- 한국농어촌공사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안)작성 등 기술지원(세부 설계, 공사감리, 사후관리 등), 지역발전컨설팅, 사업시행(계획수립) 기술지원, 마을주민 교육 지원 등
- 지역주민 : 해당 읍면발전협의회 참여, 신규사업신청서 작성 시 참여 및 협조, 시설물 운영·관리, 지자체의 시설물 운영·관리지원

다. 사업추진체계



[그림 II-1] 사업추진체계

제2장

읍면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가. 목 적

- 지역주민이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지역주민과 지역 내의 전문가, 지역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읍면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

나. 필요성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주민과 지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단위 지역발전협의체 운영이 필요
-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실천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지자체의 신규 사업신청서 작성(지역주민 지원·협조)을 지원하고 읍면소재지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및 전문가, 지역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읍면소재지의 발전목표(비전) 달성을 위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시행,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읍면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다. 구 성

- 시 기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익년 신규 사업대상지로 신청하기 이전
- 구성원 : 사업지역의 마을대표, 여성지도자,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축협, 해당 읍면소재지 상가변영회 대표, 지역사회단체 대표, 민간전문가, 시장·군수 등 2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 협의회 회장 : 민간전문가 및 (부)시장·(부)군수 공동 협의회장
 - 구성 및 운영책임기관 : 시·군

라. 주요기능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신규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읍면소재지의 중장기적, 거시적인 발전방안 등 자문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신규 사업신청서 작성 자문·지원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 단계별 다음의 내용을 협의·지원
 - 기본계획, 세부설계, 사업시행, 사업완료, 유지관리 등을 단계별 수시 협의 지원
 - 계획수립자 및 사업시행자는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 협의회 결과는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서에 반드시 수록
 - 주요 협의·지원 내용
 -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 지역발전 비전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안) 협의
 - 사업투자 우선순위 결정, 재원부담 방안 등 투자계획, 연계사업 추진방안 협의

마. 기타

- 시장·군수는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
- 대상지역별로 당해 지역 대학교수 등 지역개발전문가를 전담자문가로 위촉
 - 지역주민과 상시 접촉하면서 주민교육 및 지도자 육성
 -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자문 등 활동
- 시장·군수는 읍면발전협의회 활동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지원

※ 읍면발전협의회 구성사례
공동위원장 (군) : (부)군수
공동위원장(민간) : ○○대학교수(○○○)
위 원(공공분야) : 도의원, 군의원, 기획감사실장, 건설도시과장, 농업협동조합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위 원(민간분야) : 대학교수(경관분야), 여성농업인대표, ○○면 번영회장, ○○면
로터리클럽 회장

제3장

기본계획 수립

3-1. 기본계획 수립개요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기본계획서 2부 제출)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역량강화사업을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가. 기본계획서 포함내용

- 신규 사업신청서와 신규 사업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며, 기본계획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대상지구의 현황
 - 지역특성 및 지역현황 분석
 - 주민수요조사 및 지역잠재력(SWOT) 분석
 - 지역발전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 인적자원)활용계획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계획, 지역경관개선계획, 지역역량강화계획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운영관리 계획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나. 기본계획서 기술내용

- 지역현황 분석 : 지역일반현황, 인문사회현황, 생활환경현황, 경관현황분석, 자원분포현황, 관련계획검토, 주민의식조사, 개발수요분석, 읍면소재지 중심지 기능분석, 읍면소재지 이용도분석, 읍면소재지 거점시설 기능분석, SWOT분석 및 개발과제를 도출함
- 기본구상 : 지역의 중장기비전 도출, 개발목표 및 추진전략, 개발체계 및 공간구상(토지이용 구상),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 선정, 발전지표를 제시
- 부문별 기본계획 : 최종 선정된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에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기능별로 사업내용을 기술
-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투자계획, 운영관리계획, 모니터링 등 계획을 마련

3-3. 기본계획 세부내용

가. 지역현황

- 신규 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지역의 모든 현황을 수록하기 보다는 읍면소재지의 기초자료(인구, 지형, 지세, 농림어업, 토지이용, 용도지역, 지역경제, 기초생활 등)는 기본적으로 작성하고, 읍면소재지 장기발전 및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자세하게 기술
- 사전환경성검토는 시행계획 단계에서 시행하며, 환경현황 조사 후 작성

나. 기본구상

- 개발여건분석 : 지역자원, 잠재력분석, 제약조건, 개발수요 조사결과와 더불어 관련 상위계획 등의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발과제를 도출
- 개발과제가 도출되면 장기비전(개발목표)과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읍면소재지의 주요 개발체계(축) 및 공간별 개발구상을 설정
- 최종적으로 도출된 사업계획을 전략사업 선정원칙과 선정기준에 따라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으로 나누고, 읍면소재지의 중장기 주요 개발지표를 설정

다. 부문별 계획

- 보고서 기술 순서는 기능별로 구분 작성하여 기본구상과 서로 연계되도록 함
- 지자체, 타 부문 연계사업 내용도 수록하여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
- 시설계획은 각각의 위치, 사업배경 및 필요성, 조성계획, 운영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 기능별 사업비 투자계획 순으로 작성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는 가급적이면 소득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및 기초생활기반 시설위주로 계획
- 지역사회의 중심공간인 읍면소재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및 간판정비는 집단적인 정비 사업에 한하여 지원
 - 경관개선 계획에 따른 사유 시설물은 시설비의 20%를 수혜자가 부담
- 시설계획 시 공종별 시공재료 및 필요시설 등을 표기하고 개략 평면도를 제시하여 세부설계 시 설계방향을 파악하기 쉽도록 함
- 지자체별 조례 등의 제정으로 사업계획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강원도의 경우 경관형성계획 포함)과 단가적용 시 사업 공종별로 세부내역을 표기
- 용도지역, 국가하천, 국도 등 관련 법규에 적절한 사업시설계획이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계획부지에 시설계획 시 장애사항 등의 확인이 필요
 - ※ 예 : 계획부지에 도시가스관, 광통신망 등이 매설되어 있을 경우 시공 어려움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실거래가 위주로 반영하고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라.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사업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 단일시설은 가급적 당해에 끝낼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설계비 등의 대상액은 주민자부담과 지역역량강화사업 비용을 포함하여 산출

[표 11-3] 기본계획서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세 부 내 용
개발여건	계획 수립 개요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계획수립의 범위, 계획수립 추진경위, 계획수립의 수행체계 등
	지 역 현 황	지역일반현황, 인문사회현황, 지역인구분석, 생활환경현황, 경관현황분석, 환경현황분석, 토지이용현황, 산업경제현황, 지역조직현황, 지역자원현황 등
	개발 여건 분석	개발수요조사, 관련계획분석, 읍면소재지 중심지 기능분석, 읍면소재지 이용도분석, 읍면소재지 거점시설 기능분석, 제약요소 및 기회요소, SWOT 분석 등
기본구상	목 표 및 과 제	중장기 비전도출, 개발목표, 추진전략 등
	개발체계 및 공간구상	주요 개발체계(축) 설정,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	전략사업 선정, 연계사업 선정 등
	개발 지표 선정	목표인구지표, 상수도지표, 하수도지표, 도로포장율, 방문객 지표, 공원녹지비율, 주차공간지표 등
개발계획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시계획도로, 공용주차장, 문화복지회관, 레포츠시설, 근린공원조성, 체육공원조성 등
	지 역 경 관 개 선	재래시장 시설개선, 향토(5일) 시장정비,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사업, 경관계획수립, 테마가로조성 등
	지 역 역 량 강 화	교육훈련(지역주민, 지역리더, 선진지견학), 마을홍보(축제 활성화, 문화복지P/G, 시설물운영P/G), 부대비용(기본계획, 세부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 업 비 투자계획	투 자 계 획	사업비 재원별 내역, 기능별 투자계획, 연계사업 투자계획, 부대비용 산출내역, 사업별 편입용지, 계획시 행정사항 등
	집 행 계 획	사업투자 기본방향, 투선순위 결정방법, 사업투자 우선순위
	기 타 사 항	관리계획 및 운영계획, 모니터링 계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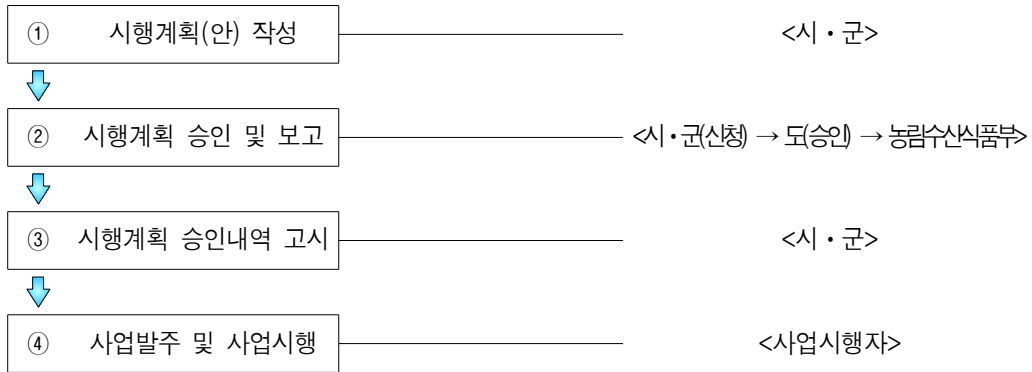
시행계획 수립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음.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수립자,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구상한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 시 의견수렴 내용을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또는 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읍면발전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침
 - 시행계획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공종별로 분리하여 계획수립이 가능.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시장·군수는 단위사업별 세부내역(4개 기능별)의 총액(국고기준)의 20%이상 계획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 농림부 사전협의 : 단위사업별 세부내역(4개 기능별)의 총액(국고기준)의 50%이상 계획변경이 있는 경우
 - 도 사전협의 : 단위사업별 세부내역(4개 기능별)의 총액(국고기준)의 20%이상~50%미만 계획변경이 있는 경우
 - 시·군은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 *단위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및재개발 기초생활인프라정비
*4개 기능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고시

※ 고시방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을 준용



[그림 11-2] 사업시행 추진절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3. 사업비 필요금액
4. 사업 예정 기간
5. 사업의 효과
6. 사업시행자
7.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시
 - 가.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경우: 관보에 게재
 -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경우: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공고

사업 시행지역의 시·도청,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4-2.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사업규모의 적정성, 경제성, 활용도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적절하게 수립
-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별 시행계획을 수립

4-3. 시행계획 수립(승인)시 작성서류

1. 사업시행계획서
2. 사업시행계획개요
3. 기능별사업내역
4. 사업비수지예산서
5. 사업시행자 의견서
6. 기능별 사업비(량) 증감사유서
7. 사업별 인허가 검토서
8. 계획수립자, 외부전문가, 읍면발전협의회회의견서
9. 시행계획관련 증빙서류(토지대장 등)

사업시행

5-1. 사업시행절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
-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설치 등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활용도, 사후관리, 편의성을 지역주민과 협의 후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름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용지매수보상을 추진할 수 있음

■ 국공유 재산 매입절차에 따른 의회 승인사항에 속하는 용지매수보상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용지매수 보상을 추진토록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징구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은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발주와 병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5-2. 사업발주 요령

가. 일반사항

- 사업시행자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의거 일괄 또는 부분 수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수탁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발주 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사업 등 H/W부문과 주민교육, 컨설팅, 마케팅, 정보화 등 지역역량강화부문(S/W)을 분리하여 발주
- 지역역량강화부문에 대하여는 지역역량강화사업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한국농어촌공사 발행)을 참고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전기, 통신공사를 제외한 H/W공사는 일괄 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시행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부분 발주할 수 있음
- 지역역량강화사업 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포함)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분은 예산집행(입찰) 잔액 및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

나. 사업발주 방법

1)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 발주할 경우



[그림 II-3] 사업발주 체계도(시장·군수)

- H/W사업의 발주시 입찰 및 계약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29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처리
- 사업시행자는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사업 등 시설중심의 H/W사업 발주시 [그림 II-3]과 같은 추진체제로 사업을 발주
- 입찰공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내용)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집단적인 간판정비 등)사업 등 주민부담이 수반되는 시설은 주민 자부담을 확보한 후 사업시행자가 발주함을 원칙으로 함

■ 주민부담이 수반되는 시설사업 추진방법(예시)

- 사업비를 시설비 성격으로 사업추진
 - ① 주민 자부담금 시·군 계좌로 입금
 - ②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정산

- 지역역량강화사업 발주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지식기반사업외의 협상 계약은 발주자 자체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서 일괄 위탁하여 사업 발주할 경우

○ 위탁시행자는 H/W사업을 발주시 아래와 같은 추진체계로 사업발주를 함



[그림 II-4] 사업발주 체계도(위탁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기준시행세칙(제13차 개정 2008.1.1)

제105조(계약의뢰)

① 계약의뢰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경우 불필요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1. 공사(용역)명 또는 물품명
2. 공사(용역)개요 또는 용도
3. 설계금액(지급자재대 별도 표시) 또는 예산액과 예산비목
4. 공사착공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용역기간 또는 납품희망일
5. 입찰참가자격, 면허요건 등 수행자격요건
6. 공동도급 여부에 대한 의견
7. 지명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8. 현장위치도 또는 납품 장소

9. 현장설명서

10.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을

11.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내역서 등의 자료

12. 공사 보험가입대상공사의 보험가입여부 및 그 사유

13. 기타 발주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11호의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내역서 등의 자료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가격평가사례)

□ 입찰가격평가 사례

○ 예정가격 100억원, A사 90억원, B사 70억원, C사 60억원, D사 50억원으로 투찰한 경우

⇒ A사 : 배점한도×최저입찰가÷당해입찰가 = $20 \times 50 \div 90 = 11.11$

⇒ B사 : 배점한도×최저입찰가÷추정가격의 80%+ [2×(추정가격의 80%-당해입찰가)
÷(추정가격의 80%-추정가격의 60%)] = $20 \times 50 \div 80 +$
 $[2 \times (80 - 70) \div (80 - 60)] = 13.50$

⇒ C사 : 배점한도×최저입찰가÷추정가격의 80%+ [2×(추정가격의 80%-당해입찰가)
÷(추정가격의 80%-추정가격의 60%)] = $20 \times 50 \div 80 +$
 $[2 \times (80 - 60) \div (80 - 60)] = 14.50$

⇒ D사 : C사와 동일 → 14.50

(당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60%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5-3. 사업시행중 시행계획 변경

○ 사업시행중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5-4. 사업의 준공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연차별공사 또는 계속공사계약에 의하여 추진된다.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도지사에게 준공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절차와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 65조 내지 제67조에 근거하여야 함
- 사업시행을 위탁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한다. 준공검사 요청시에는 공사감리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예비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
- 공통적으로 준공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도면은 아래와 같음
 1.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2. 사업비 내역서
 3. 시설물 배치 및 시설현황도
 4. 주요시설물 관리계획서
 5.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6. 시행전후 면적조서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등이다.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정산을 한다. 이후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사업이 완료(준공)되면 공공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는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등기하여 관리한다.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 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된 시

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며,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시공회사 또는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며,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함
- 인수인계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인수인계서
 2. 사업비 준공도서(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
 3.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4. 용지매수 및 보상관련 서류
 5. 등기이전서류
 6.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관련서류
 7. 시설물 등록에 관한 서류
- 공사 완료된 시설물은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공종별(연차별, 단계별) 부분 준공 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를 할 수 있음

유지관리

6-1. 유지관리 목적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건축물, 조정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6-2. 유지관리 방향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공사 또는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준공 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시설물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시장·군수는 읍면발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주민지도, 지역홍보, 시설물 이용·관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체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6-3. 유지관리 범위

- 유지관리의 범위는 각 시설물을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유지, 보수, 개량 등 일련의 활동사항으로 함
- 각 시설물의 기능유지,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위생환경에 관한 관리 등을 위한 수시, 일상 및 정기적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
- 각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설물 운영프로그램 등 시설운동을 위한 전문가 및 지원그룹의 컨설팅 등을 유지관리계획에 포함

6-4. 유지관리 체제

- 지자체와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운영위원회 및 시설별 관리책임자가 협의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역할분담 및 관리행위 등에 대해 조정한다. 이를 위해 유지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제를 구축
 - 유지관리협의회는 지자체 공무원,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운영위원회, 시설관리책임자, 이용자 등으로 결성하여 운영
- 유지관리협의회는 유지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유지관리 관련분쟁의 조정, 지자체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협의회 의결을 거쳐 각 시설별 유지관리 주체를 선정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기준을 정함
-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운영위원회를 구성

6-5. 시설물 운영방법

가. 기본방향

- 시설물 유지관리는 결함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결함의 예측, 점검, 평가 및 판정, 대책, 기록 등의 합리적 대처를 하여야 함
-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가 유지관리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

나. 일반사항

-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의 설치목적 및 기능, 운영(활용)방안, 구조, 규모 등의 제원을 정리·파악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 유지관리 내용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이용자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시설물 기능 유지 및 이용자 안전관리 등에 유의
- 유지관리자는 시설물 인수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적절히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
- 유지관리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유의하여 관리
-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주요제원, 점검계획과 결과, 대책수립과 조치사항 등을 세밀하게 기록, 관리
- 유지관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연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책정하여 구성항목별로 관리
- 마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정보·통신, 가로등시설 등 지하시설물은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지역내 타사업 계획 및 시공시 활용
- 유지관리자는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유지관리협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별첨 1]

사업시행계획 개요

대상지역의 범위

- 위 치 : ○○도 ○○군 ○○면 ○○리
- 권역규모 : 법정리, 행정리, ○○마을
- 면 적 : ○○ha(도시지역:○○ha, 관리지역:○○ha, 농림지역:○○ha, 자연환경보전지역:○○ha)
- 가구·인구 : ○○호(농가 : ○○, 비농가 : ○○), 인구 ○○명)

사업기간 : ○○○○년.○○월 ~ ○○○○년.○○월

총사업비 : ○○백만원(보조○○, 자부담○○)

구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				

[별첨 2]

기능별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증감 내역		사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계							
○○사업							
지역소득 증대사업 소계							
○○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소계							
○○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소계							
○○사업							

[별첨 3]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A)	시 행 계 획				비고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국 비						
지방비						

(지출)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A)	시행계획				비고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 공사비 - - -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별첨 4]

기능별 사업비(량) 증감사유서

구 분	총 괄 계			
	기본계획(A)	시행계획(B)	증감(B-A)	증감사유
합 계				

[별첨 5]

사업별 인허가 검토서

사 업 명	검 토 의 견

[별첨 6]

○○시(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주요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백만원

2. 추진경위

- 예정지 선정 :
-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기관 :)
- 세부설계 : (설 계 기 관 :)
- 시행계획수립
 -
 -

3. 주요변경내용

-
-

4. 변경사유

-
-

5.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변경내역

(면적 : m²)

기능별	단위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내역	증감사유
합 계		건	건	건	
◦ 기초생활기반확충 - - -					
◦ 지역소득증대사업 - - -					
◦ 지역경관정비사업 - - -					
◦ 지역역량강화사업 - - -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하여 작성

6. 사업비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비고
합 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				

(지출)

(단위: 천원)

구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비고
합계				
◦공사비 - - -				
◦자재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예비비				
◦기타				

7.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부록]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도 ○○시/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1. 계획서의 현황자료는 필요에 따라 사진과 도면을 첨부하여 설명하고 전체 분량은 30page 이내로 작성 권고

I. 사업대상지 개요

1. 공간적 범위

◦ 사업대상지 사업계획도(1/50,000 ~ 1/25,000 지형도 등에 A3로 작성)



※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시군지역에서 해당 읍면소재지의 위치와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 사업대상지 범위설정
 - 대상지역 범위 : 대상지에 포함되는 법정리명, 행정리명, 자연마을명 기입
 - 범위설정 배경
 - * 읍(면)소재지를 포함한 하나의 동일 생활권, 상업권 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읍(면)단위의 중심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 * 단, 지형적으로 마을간 연계가 어려우며, 생활권과 상업권 등이 전혀 틀려 객관적으로 동일한 대상지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을 임의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지양
(읍(면)소재지 : 읍(면)사무소가 위치한 마을(행정리)을 의미함)

2. 지역현황

가. 사업대상지 연혁

- 위치 : 도 시·군 면 리 외 개리
 - 법정리() , 행정리() , 자연마을()
 - * 사업대상 지역내의 법정리, 행정리 및 자연마을(수)와 리명을 기재
- ○○읍(면) : 법정리수(), 행정리수(), 자연마을수()
 - * 사업대상 지역이 속한 읍(면)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수를 기재
- 인접 읍·면 또는 시·군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
 - * 당해 사업대상지가 속한 읍·면, 시·군 및 인접한 타 읍·면, 시·군까지의 도로상 거리(km)와 승용차로 이동시 소요시간(분)을 서술
 -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문화시설과의 거리(km) 및 소요시간(분) 등
- 마을연혁, 역사, 지명유래, 행정구역변천사 등을 중심으로 작성
 - * 사업 대상지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 역사가 있으면 작성 또는 마을별 연혁, 역사, 지명유래 등을 작성
 - * 사업 대상지역의 각 마을의 연혁을 서술하면서 인접한 마을이나 읍면과의 관계 등을 설명

나. ○○읍(면) 생활환경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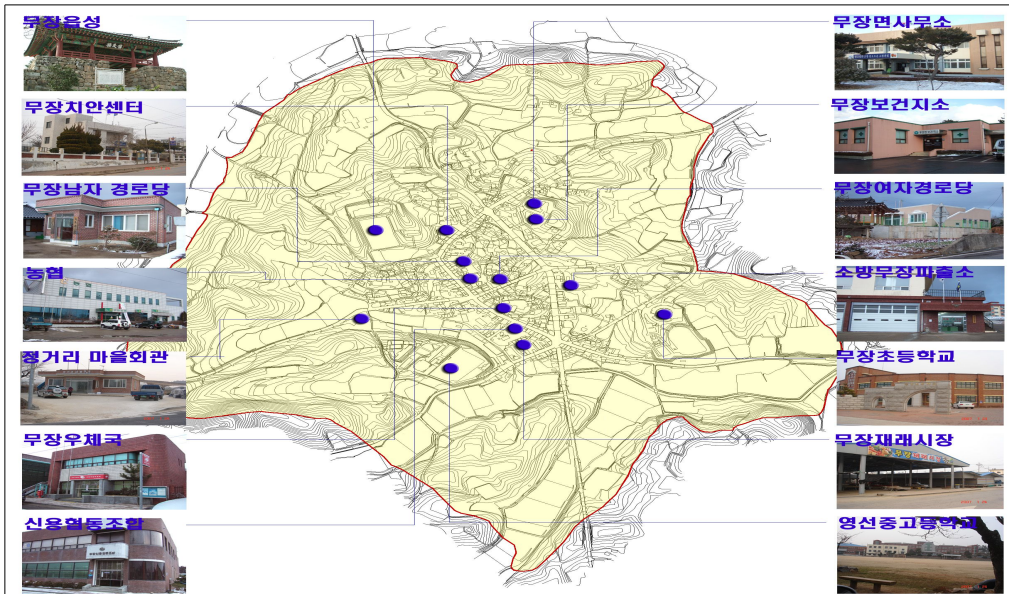
시설 현황	단위	총계획(A)	현재수준(B) (‘10년)	비율(% (B/A)	향후 계획
○법정도로(국도·지방도·농어촌도로)	km				
○비법정도로(연결도로, 마을내도로)	km				
○상수도보급율(간이상수도포함)	인				
○하수도보급율(하수처리율)	인				
○복지회관	동				
○마을회관	동				
○체육공원	개소				

※ 읍(면)통계자료, 시군발전계획, 기초생활권발전계획, 포괄보조5개년계획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대상지 현황도(1/25,000 ~ 1/5,000 지형도에 표기)

- * 지형도내에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의 명칭을 기입하여 표시
- * 읍(면)의 위치 및 읍(면)소재지 마을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정확히 표시하고, 주변마을의 구역을 실선 혹은 점선을 구분하여 작성
- * 면소재지내 행정기관, 교육기관, 편의시설 등의 면소재지 현황도를 별도 작성

○○읍(면)소재지 현황도(예시)



다. 사업대상지 현황

◦ 인구(농어가인구포함) 및 농경지현황

마을별	인구수 (명)			가구수 (호)				면적 (ha)				
	계	남	여	계	농가	어가	비농 어가	계	답	전 (과수원)	임야	기타
계	()	()	()									
○○리												
○○리												

※ ()는 농어가인구수

- * 권역내의 법정리별로 인구수(남,여, 농어가인구), 가구수(농어가,비농어가), 경작지 현황을 기재, 자연마을 또는 행정리 단위로 조사하여 법정리 단위로 집계
 - * 마을별로 조사된 기초자료는 권역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보존하여 마을 현황자료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자료는 사업계획 작성년도를 기준으로 기입
- 연령별 인구구조 현황
- 시군전체의 인구구조, 해당읍(면)의 인구구조, 사업대상지의 인구구조에 대해 서술

구분	○○시군		○○읍(면)		사업대상지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합계						
연령	20세 미만					
	20~40세					
	41~64세					
	65세 이상					

※ 2010년말 현재기준으로 작성(시군통계연보 및 읍면 행정자료 참고)

라. 생활편의시설 현황

◦ 문화·복지 및 체육시설

- 읍(면)소재지주민 및 인근주민들의 주된 복지문화시설에 대한 내용을 서술

마을명	시설명	면 적(평)	건축년도	이용대상	운영형태	소재지

◦ 교육시설

- 읍(면)소재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교육시설에 대한 서술

마을명	시설명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개교년도	소재지

◦ 보건·의료시설

- 읍(면)소재지 내에 분포하는 의료시설(보건소, 의원, 병원, 약국 등)에 대한 서술

마을명	시설명	면 적(평)	건축년도	이용상황	병상	비고

◦ 금융 및 상업시설

- 읍(면)소재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금융(협동조합, 우체국 등), 및 상업시설에 대한 서술

마을명	시설명	규 모(m ²)	건축년도	이용대상	소재지	비 고

※ 상업시설의 경우 재래시장 및 전통 5일장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

마. 지역산업 현황

◦ 상가촌 현황

마을명	상가명	판매품종	건축년도 및 층수	종사원수
○ ○ 리	식당			
	슈퍼마켓			
	수리점			
○ ○ 리	횃집			
○ ○ 리				

※ 읍(면)소재지 또는 인근마을의 상가건물군을 형성하는 상가의 현황을 중심으로 작성

- * (상가건물군 : 10개이상의 상가가 밀집하여 상업공간을 형성하는 도로 혹은 가로)

◦ 제조업 현황

마을명	제조업종	생산품	종업원수	면적 및 위치
○ ○ 리				
○ ○ 리				
○ ○ 리				

※ 읍면소재지내의 제조업 공장 및 생산의 현황을 작성

◦ 유통 및 가공시설

- 읍(면)소재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유통 및 가공시설에 대한 서술

마을명	시설명	면 적(평)	건축년도	이용대상	운영형태	소재지

바. 전통역사·문화 현황

◦ 지역문화재 현황

구 분	총 계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문화재 료
		계	국보	보물	사 적	천연 기념 물	중요 민속 자료	주요 무 형문화 재	계	유형 문화 재	기념 물	민속 자료	무형 문화 재	
○○군														
()면														
() 권역														

- * 권역이 속한 행정구역(郡, 面) 및 권역내에 소재한 국보, 보물, 사적, 중요 민속자료 등 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조사 기재
- * 이외에도 권역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양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작성

◦ 지역문화행사 현황

향토문화축제	시행 월	장 소	축제 주요내용	주최
○ ○ 축제	(기간: 일)			
○ ○ 행사	(기간: 일)			

- * 권역이 속한 행정구역(郡, 面) 및 권역에서 2000년 이후에 개최한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에 대해 시행 월(기간), 장소, 축제내용, 주최(주관) 및 방문(관람) 객 수 등 현황을 기재.
- * 지역 주민 또는 권역 주민들이 행사기간에 한 역할(지역 농특산물 판매, 숙박 제공, 자원봉사 등)에 대해서도 별도 기술

사. 지역공동체 활동 내역

◦ 지역공동체 활동 현황

마을명	공동체 조직명	구성원수	모임회수	등록일자	주요 활동 내역
○○리	번영회 영농회 청년회 부녀회 4-H클럽 · ·	○○명	○회/월		○마을의 주요 대소사 결정내역
○○리					

- * 마을별로 작목반, 영농조합 등 영농조직 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을 상세히 기술,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공동체 조직의 실질적인 활동 상황을 기술

◦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주요 활동 내용	비고 (구성일자)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위원 위원 ·			- ○○시장(군수) - ○○대학교수 - ○○읍(면) 번영회장 - ○○읍(면) ○○회장 ·	

* 읍(면)발전협의회 구성원의 직책과 주요 활동내용을 기입하고 구체적인 조직도는 덧붙임

◦ ○○읍(면)발전협의회 운영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아. 지자체의 지원조직 현황

과명	계(담당)명		주요업무내용	비고
	계(담당)	인원		

* 주요업무내용은 계(담당)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모두 기재

자. 지자체의 학습활동실적

소속/직책	성명	일시/기간	이수교육명	교육주관기관	비고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지역개발관련 교육실적 기재하며 구체적 증빙자료를 별첨

II.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시군 기초생활권발전계획(5개년) 및 농식품부소관 포괄보조사업계획(5개년)등과의 관련성을 간략하게 검토하여 기술

III. ○○읍(면)소재지 발전방향

1. 기본방향

- 발전목표 설정
 - * 읍(면)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비전’(지역주민들이 살고 싶은 정주공간조성과 지속가능한 읍(면)소재지의 미래 모습)과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 발전목표는 지역의 특화자원 및 향토산업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군 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2. 공간별 발전방향

- 읍(면)전체 및 읍(면)소재지의 발전방향
 - * 당해 읍(면)전체의 발전방향을 지역자원, 상하위계획, 인적역량, 주민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고 읍(면)소재지 지역에서의 해당역할을 명확히 표기
- 사업대상지의 공간별 발전방향
 - * 공간별 발전방향은 지역여건과 도시계획 등 기존 관련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읍면발전협의회 및 지역주민회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안을 선정해야 함

3.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소득증대

- 지역경관개선
- 지역역량강화
 - ※ 2010~2014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5개년)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p23. 붙임3>의 기능별사업(세부내용) 예시를 참고하여 사업내용(각 시설,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초생활기반확충
 -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
 - 농어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 등
 -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등
 - ※ 농어촌지역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동 휴양시설 및 서비스전달체계, 재해대비시설 등이 해당
- 지역소득증대
 -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등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체험시설, 폐교임대활용, 생태학습장, 문화체험관 등
 - 지역의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소규모 공동가공시설, 공동저온저장고시설, 공동농산물선별장 등
 - 농산어촌의 농어업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한 농어업기반(소규모용수개발, 경작로확포장, 지표수보강개발 등)시설 등
 - ※ 소득기반시설은 행정리(동)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10가구 이상 법인)에 한하여 지원, 사업비 총액의 20%는 수익자(주민) 부담
 - ※ 주민소득을 위한 소득기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주민)가 부담(농어업기반시설 부지는 제외)
- 지역경관개선
 -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농촌다움을 체계적으로 유지·보전하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등

- 농어촌의 불량경관 정비를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마을보호수, 향토자원 등의 정비사업 등
- 지역사회 중심거점인 읍·면소재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및 간판정비 사업 등
- ※ 지붕, 담장, 간판정비는 집단적인 정비사업에 한하며, 시설비의 20%는 수혜자가 부담

○ 지역역량강화

-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기능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
- ※ 시·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예산의 10%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4.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 시설물의 관리 및 활용계획(운영방안), 유지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유지관리조직, 지침 등)으로 기술
- *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 확보방안 등을 언급

IV.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신규사업의 총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구분 작성)

(단위:백만원)

연차별 기능별 세부사업	총 액				2012				2013				2014				2015				2016년이후							
	합 계	국 비	지 방 비	기 타	합 계	국 비	지 방 비	기 타	합 계	국 비	지 방 비	기 타	합 계	국 비	지 방 비	기 타	합 계	국 비	지 방 비	기 타	합 계	국 비	지 방 비	기 타				
합 계																												
1. 기초생활기반확충																												
① 도로·교통																												
② 복지시설																												
⋮																												
2. 지역소득증대																												
① 소득기반																												
② 농업기반																												
⋮																												
3. 지역경관개선																												
① 마을경관																												
② 도시경관																												
⋮																												
4. 지역역량강화																												
① 마을홍보																												
② 부대비용																												
⋮																												

※ 기능별 세부사업은 2010~2014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5개년)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p23. 붙임3>의 기능별사업(세부내용)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Chapter

III

권역단위종합정비

1. 권역단위종합정비 개요
2. 사업추진 관련 조직과 운영
3. 기본계획수립
4. 시행계획수립
5. 사업시행
6. 유지관리

[부록]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제1장

권역단위종합정비 개요

1-1. 사업목적

- 생활권·영농권, 수리권 등의 특징으로 인해 지역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진 소규모의 권역을 묶어서 해당 권역의 특성에 맞도록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 역량 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

1-2. 법적근거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
- 시행절차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3조, 제71조 준용

1-3. 사업추진방향

- 일반농산어촌지역 마을의 주거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설치,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주민 공동소득 증대,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수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 동일한 생활권·영농(어)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 지자체, 지역 내 관련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추진
 - 농산어촌다움을 유지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권역발전 계획 수립 후 추진

1-4. 사업대상

가. 사업대상지역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마을을 사업대상지역으로 함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조에 의한 농산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거나 해제가 가능한 지역
- 동일한 생활권·영농(어)권 등으로 지역주민 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지며, 인근 마을 간 연계로 소규모의 권역을 이룰 수 있는 지역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기 선정된 지역은 제외(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지역 포함)

나. 권역의 설정기준

- 마을간 역사·문화적 배경이 동일하고, 인근 주민 간 유대감이 강하여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권역 범위로 설정
 - 지형적으로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경계 등으로 인해 권역 구분이 가능한 지역
-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고,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자체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
 - 지역발전을 위해 『권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신규사업성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은 지역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환경·생태자원 보존이 잘되어 있어 농산어촌 고유의 어메니티 보존·유지가 가능한 지역
 - 친환경농업육성마을이거나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
 -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 있는 마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인근지역에 파급효과가 커 향후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되는 지역
- 인문 사회적으로 역사·문화적 특성이 같고, 주민 간 공동체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동질성과 유대감을 갖는 지역
 - 권역은 법정리 1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행정리 100가구 이상으로 구성하되 주민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지역을 인위적으로 권역화하는 것은 지양

1-5. 사업내용

○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기능별	항목별	세부사업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 상수도, 마을 하수도 등
	재해대비	세천정비, 사방시설, 옹벽설치, 안전휀스, 안전시설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정비 등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실, 마을(복지)회관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향토자원 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다목적광장, 산책로, 정자 등
소득증대	소득기반	공동 가공시설, 공동 판매장, 공동 저온창고 등
	체험관광	마을조형물, 생태학습장, 폐교활용, 농촌체험시설 등
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숲조성, 지붕정비, 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 생태하천정비, 오폐수처리시설,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 설치, 간판 집단정비, 시장정비 등
역량강화	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장비, 마을사무장·해설사·리더 양성, 선진지 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 마케팅, 주민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홈페이지 구축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 등

1-6. 지원조건

○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 이용시설로서 시설비, 부지구입비 전액 보조
- 부지구입비는 부지의 과잉 확보 방지를 위해 기능별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회관 등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복합시설의 용지구입비는 2013년까지만 지원(2014년부터는 지원 제외)

○ 소득증대사업(소득기반)

- 소득기반사업은 권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권역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소득기반시설은 행정리(동)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에 한하여 지원, 시설비 총액의 20%는 수익자 부담
- * 참여가구 전체가 공동 부담하여야 하며, 1인이 30%이상 부담 금지

- 소득기반사업비로는 생산보조적 지원(생산단지 조성, 생산용 묘목 구입, 생산 지원을 위한 장비 구입 등)은 할 수 없음
- 소득기반시설 중 공동 판매장은 권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권역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다른 권역의 특산물은 연계하여 판매가능), 외부인에게 위탁·임대하여 운영할 수 없음

○ 소득중대사업(체험관광)

- 체험관광사업은 권역의 자원이나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외부인을 유치함으로써 권역 주민이 공동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체험시설에는 체험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당·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식당은 반드시 체험관 내부에 설치하여야 함
- 체험객이 아닌 외부인을 대상으로 식당·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없음(외부에 식당·숙박을 위한 간판 등의 부착·설치도 금지)
- 주민소득을 위한 소득기반시설과 체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임차비 등은 수익자(주민)가 부담(농어업기반시설 부지는 제외)

[표 III-00] 소득사업 및 체험사업 시설 운영 허용조건

사업명	운영 방법			수익금 사용처	적정여부
	운영자	판매대상	취급 주재료		
소득사업	외 부 인	일반 소비자	외부 구입	마을기금	부적정
	외 부 인	일반 소비자	마을 특산물	마을기금	부적정
	마을공동	일반 소비자	외부 구입	마을기금	부적정
	마을공동	외부인	마을 특산물	마을기금	적 정
체험사업 식 당	외 부 인	일반 소비자	외부 구입	마을기금	부적정
	외 부 인	일반 소비자	마을 특산물	마을기금	부적정
	마을공동	일반 소비자	외부 구입	마을기금	부적정
	마을공동	일반 소비자	마을 특산물	마을기금	부적정
	마을공동	체험객	외부 구입	마을기금	가 능
체험사업 숙박시설	마을공동	체험객	마을 특산물	마을기금	적 정
	외 부 인	일반 소비자	-	마을기금	부적정
	마을공동	일반 소비자	-	마을기금	부적정
	마을공동	체험객	-	마을기금	적 정

○ 경관개선사업

- 경관개선사업은 권역의 정주여건 개선, 어메니티 증진 및 농촌다움의 유지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 경관개선계획에 따른 사유시설물(간판, 담장, 지붕)은 시설비의 20%를 수혜자가 부담
- 축사는 마을경관 또는 환경개선을 위해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화 시킨 공동축사의 경우만 지원가능
- * 축사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지원받은 농가의 경우는 기존의 축사는 철거하여야 함

○ 역량강화사업

- 권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사업성과의 제고 및 권역의 자생력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 역량강화사업비는 총사업비의 10% 한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함(기본계획수립비, 세부설계비, 감리비는 10% 한도에서 제외 가능)
- 해외 선진지 견학은 권역 내에서 사업기간 중 5명 이내만 가능하며, 해외연수 시에는 총 비용 중에서 3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표 III-00] 사업별 자부담 조건

기능별	자부담 비율(%)			사업주체		종류
	시설물	부지	경비	운영	대상	
소득사업	20	100	-	주 민	소비자	가공시설, 공동판매장, 저온창고 등
체험사업	0	100	-	주 민	소비자	폐교활용, 농촌체험시설 등
복지사업	0	0	-	주 민	주 민	다목적회관, 마을(복지)회관 등
경관사업	20	-	-	주 민	주 민	지붕, 담장, 간판 등 사유시설물
해외연수	-	-	30	주 민	주 민	사업기간 중 권역별 5명 한도

* 복지사업의 주 대상은 주민임(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복지사업이 아님)

1-7. 지원금액

○ 지원한도

- 권역당 3~5년간 70억원 범위에서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 '13년 신규 신청권역부터는 5년간 25억원~50억원 한도로 조정

○ 규모별 지원금액

[표 III-1]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규모별 지원금액

< 2012년 >

구분	1	2	3	4	5
사업비(억원)	70억원	55억원	45억원	35억원	25억원
행정리	6개 이상	5개	4개	3개	2개이상
가구 수	500가구 이상	400가구	300가구	200가구	100가구 이상

< 2013년 신규사업부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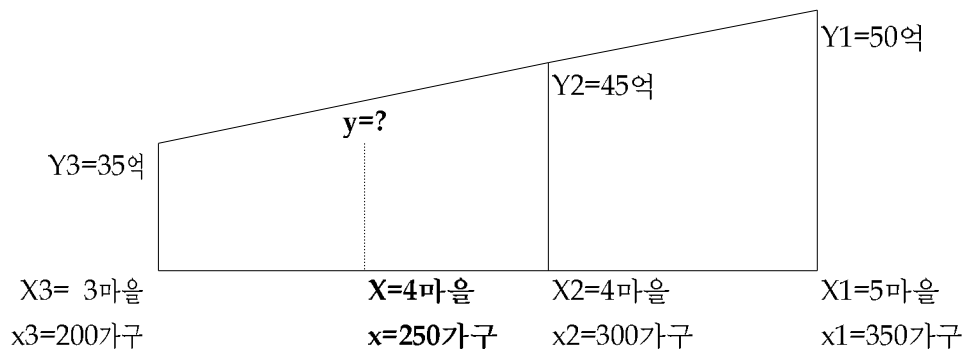
구분	1	2	3	4	5
사업비(억원)	50억원	45억원	35억원	25억원	25억원
행정리	5개 이상	4개	3개	2개	법정리 1개
가구 수	350가구 이상	300가구	200가구	100가구	50가구 이상

※ 아파트 거주가구는 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

○ 지원한도 산정방법

- 마을 수 또는 가구 수 규모에 따라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산출방법 예시(직선보간법) : 행정리 4개, 250가구일 경우



문) $Y1 = 50$ 억, $Y2 = 45$ 억, $Y3 = 35$ 억, $Y = ?$, $y = ?$
 $X1 = 5$ 마을, $X2 = 4$ 마을, $X3 = 3$ 마을, $X = 4$ 마을
 $x1 = 350$ 가구, $x2 = 300$ 가구, $x3 = 200$ 가구, $x = 250$ 가구

답) 마을수 : $Y = 45$ 억원 (※ 4개 마을)
 가구수 : $y = \frac{Y2 - \{(x2-x) \times (Y2 - Y3)\}}{(x2 - x3)}$
 $= 45$ 억 - $\{(300 \text{가구} - 250 \text{가구}) \times (45 \text{억원} - 35 \text{억원})\} / (300 \text{가구} - 200 \text{가구}) = 40$ 억원
 \therefore 지원한도 = $(Y+y)/2 = (45 \text{억원} + 40 \text{억원})/2 = 42.5$ 억원

1-8. 추진체계

가. 시 행 자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
 -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위탁 시행 시에는 가능한 한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을 일괄 위탁하고, 이 경우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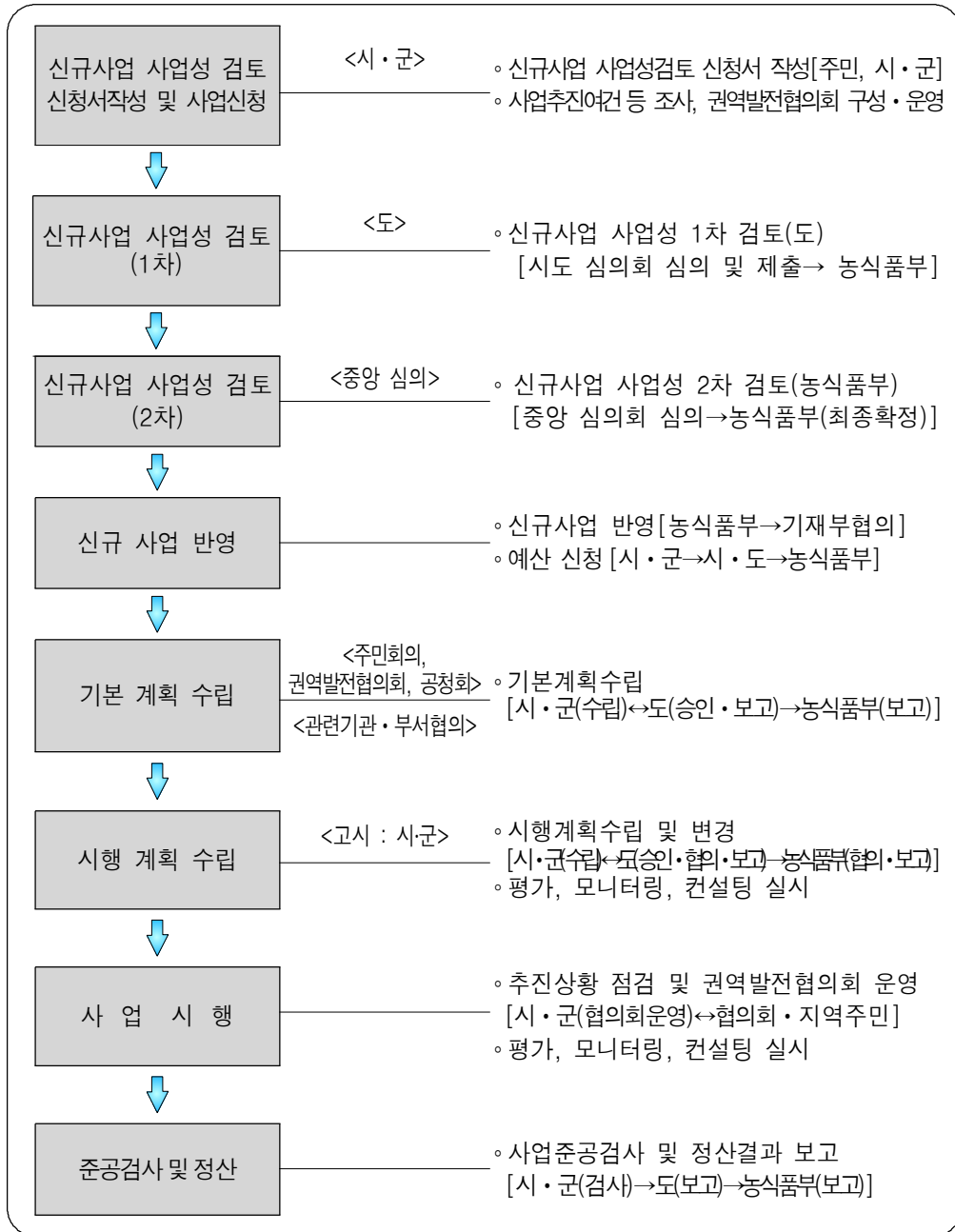
나. 기관별 역할분담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방침 시달, 전년도 사업 부처평가(지역위 주관),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2차), 시행계획변경(기능별 총 사업비의 50%이상 또는 사업취소의 경우)에 대한 사전협의, 예산 지원,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 도지사 : 예산신청, 신규 사업타당성 검토(1차), 기본계획승인, 시행계획승인, 시행계획변경(기능별 총 사업비의 20%이상 ~50%미만의 경우)에 대한 사전협의
 - * 협의 실적(건수,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분기별로 통보(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 시·군의 사업시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비 확보, 지원
 - 시·군 공무원 및 주민대상 교육 및 워크숍 등 실시
 - 사업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및 건의
- 시장·군수 : 권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서 작성 및 사

업검토신청, 예산신청,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신청(도), 시행계획수립 및 승인신청(도), 사업시행, 시행계획변경 승인·준공 및 정산, 유지관리 등

- 사업시행 주체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본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권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과 지원기구로 적극 활용
 - 사업대상권역 마을지도자 및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안)작성 등 기술지원(세부 설계, 공사감리, 사후관리 등), 지역발전컨설팅, 사업시행(계획수립) 기술지원, 마을주민 교육 지원 등
- 지역주민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시군 권역발전협의회 참여,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 참여, 명예 공사감독 참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권역사무장 운영

다. 사업추진체계



[그림 III-1]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 관련 조직과 운영

2-1. 권역발전협의회

가. 목적

-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권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주민과 지역 내 전문가로 「권역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

나. 필요성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권역주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권역단위 주민협의체 운영이 필요
 -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중장기 권역종합개발계획의 실천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과 지속적 권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 및 관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권역발전목표(장기비전) 달성을 위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권역발전협의회를 구성
 -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지역리더 육성 및 유관기관 지원 등

다. 구성

- 시 기 :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익년 신규 사업대상지로 신청하기 이전
- 구성원 : 권역 내 마을대표, 여성지도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농·림·수·축협, 민간 전문가, 시장·군수 등 20인 이내로 구성·운영
 - 협의회 회장 : 민간전문가 및 (부)시장·(부)군수 공동

- 구성 및 운영책임기관 : 시·군

라. 주요기능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을 지원
 -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안 자문
 - 권역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에 대한 자문·지원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행단계별 다음의 내용을 협의·지원
 - 기본계획, 세부설계, 사업시행, 사업완료, 유지관리 단계별 수시 협의 지원
 - ※ 계획수립자 및 사업시행자는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수록·검토반영
 - 주요 협의·지원 내용
 -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 권역발전 비전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기능별 기본계획(안) 협의
 - 투자우선순위 설정, 재원부담방안 등 투자계획 협의
 - 기관별 관련 사업계획 연계추진방안 협의
 - 지역특화작목재배, 산지유통 등 농림어업 기술지원
 - 주민자체 추진위원회 구성 등 시설물 이용·관리 지원 등

마. 기 타

- 시장·군수는 『권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
- 사업권역별로 대학교수 등 지역개발전문가를 전담전문가로 위촉
 - 주민과 상시 접촉하면서 주민교육 및 지도자 육성
 -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자문 등 활동
- 시장·군수는 『권역발전협의회』 활동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지원

※ 권역발전협의회 구성 예시
공동위원장 (군) : (부)군수
공동위원장(민간) : ○○대학교수(○○)
위 원(공공분야) : 도의원, 군의원, 기획감사실장, 건설도시과장, 농협협동조합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등
위 원(민간분야) : ○○대학 교수(○○), 여성농업인대표, 추진위원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추진위원 등

2-2. 추진위원회

가. 목적

- 사업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과 권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파트너십 구현을 위해 구성하며,
- 구성·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발전적인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필요성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파트너십)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주민 스스로 권역을 경영할 주민 자치조직 운영이 필요
 - 도시 또는 다른 특정목적의 사업추진과는 달리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강하며, 주민참여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등에 필요
-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속적 마을발전을 위한 권역의 잠재력과 자원 발굴 및 발전방향을 스스로 찾아내기 위해 필요
- 지역주민이 스스로 만든 조직을 통해 참여의식을 높이고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아닌 권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

다. 구성

-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단계 즉,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조직해야 함
- 구성원 : 참여 마을별로 주민회의를 통해 3~5인의 대표를 선정하되, 마을대표, 부녀회장, 청년회장은 가급적 참여
 - ※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인, 총무담당(사무 및 재정담당), 교육 홍보담당(위원 및 주민교육, 마을홍보 및 대외협력 등), 간사(회의록작성, 자료정리 등)를 선정한다.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 추진위원은 업무 및 역할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이 완료할 때까지 가급적 교체하지 않도록 함

라. 역 할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신청을 위한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에 참여
- 권역발전협의회에 참여
- 주민교육 등 자체적으로 역량강화에 노력
 -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 외부 전문가 초청강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농산어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와 상호 공감대 형성
- 사업대상지 선정 후 기본계획수립을 지원
 - 주민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 권역의 자원조사 및 잠재자원의 발굴
 - 권역 발전방안 제시 및 토론 등을 통한 계획에 참여
 - 전문가의 자문회의, 공청회 및 기타 계획수립 관련 각종 회의 참여
 - 의견이 일치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조율하며, 최종적으로는 단일안 제시
 -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 등은 주민과 합의를 이루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하며, 추진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남김
 - 계획수립부터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위원회가 역할을 담당
 - 계획수립 단계부터 향후 각종 시설물 및 사업의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결정하여 제시
- 사업추진 시 부지 및 자부담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확보 방안을 마련
 -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조요구와 설득을 통해 확보된 부지가 이후 사업추진 시 변경되지 않도록 함.
- 사업으로 시행된 공동시설, 소득시설, 체험시설, 각종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운영 유지관리를 한다. 필요시 운영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
 - ※ 운영관리 등에 대한 협약(협약서) 사례
 - ① 경관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 추진(운영)위원회+운영주체
 - ②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협약체결 : 시장·군수+추진(운영)위원회+운영주체
 - ③ 관광(체험) 및 소득시설에 대한 협약체결 : 시장·군수+추진(운영)위원회+법인
- 사무장의 선발, 업무의 위임 및 조정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

- 권역발전협의회에서 위촉한 전문가의 자문활동에 적극 협조

마. 운영

-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소집
- 위원회 의결사항 등 회의 규칙을 정하여 운영

2-3. 권역사무장 운영

가. 목적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의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역할지원을 통한 지역의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지역발전의 유도가 필요하다.
-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지역주민을 지원하고 권역 내 사업추진, 홍보, 기획, 유지관리 등 권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사무장제도를 운영한다.

나.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기본계획이 수립된 권역 중 사무장을 채용한 권역
- 지원규모 : 사무장 1인당 월 120만원 범위내(국고 70%, 지방비 30%)
 - 사무장 월 활동비는 권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 및 권역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소요비용은 권역별 형편에 따라 지자체 또는 권역 자체적으로 월 12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 8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함
 - 사무장 선발·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은 1명으로 함
 - ※ 사무장은 1년 단위로 계약 체결
- 지원기간 : 사업시행기간
 - 사업기간 이내에서 사무장 운영기간을 조정·시행하되, 사업시행기간이 경

과한 이후의 비용은 권역자체에서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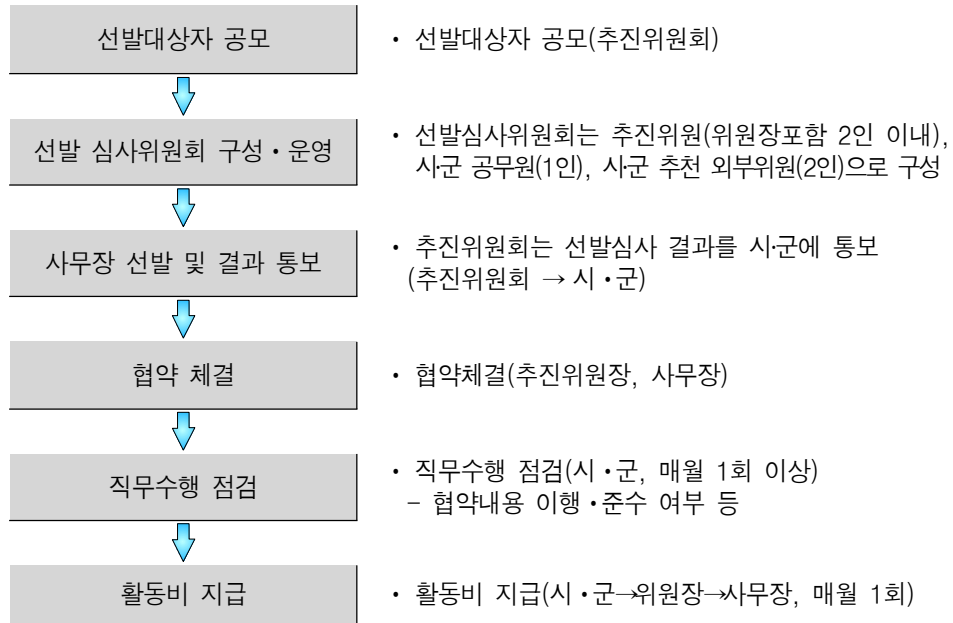
다. 주요임무

추진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

- 권역 추진위원회(또는 법인) 관련 업무 지원
 - 법인결성관련 등 권역 추진업무
 - 추진위원회 개최 및 운영 등 각종 회의관련 업무
 - 주민 공동소득사업 추진관련 업무 지원
 - 권역 고유 브랜드개발, 홍보, 마케팅,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등 주민들이 추진해야할 지역역량강화사업 관련 업무 지원
 -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권역 추진위원회가 권역발전협의회 및 사업위탁시행기관 등 관련전문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 권역 추진위원회의 분야별 조직화 및 운영 보조
 -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소그룹단위로 조직화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등
 - 지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
- ※ 사무장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사무장과 협의하여 정함

라. 사무장의 선발 및 해임

- 권역사무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선발절차에 의거하여 선발
- 추진위원회는 사무장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진위원회 재적위원의 2/3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무장을 해임할 수 있음
- 사무장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권역 추진위원회와 사무장간에 협약을 체결 (양자 간 협약서)하여 시행



[그림 III-2] 사무장 선발절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권역사무장 운영 협약(예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권역사무장을 운영함에 있어, ○○권역(대표 000)을 “갑”이라 하고, 권역사무장 ○○○를 “을”이라 하며, “갑”,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12개월)

2. 협약내용

제1조(권역사무장 업무수행) ①“갑”은 “을”에 대하여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을”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갑”과 “을”은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 등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을”은 협의된 복무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권역사무장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갑”은 “을”의 협약 이행여부, 사업수행계획의 추진실적,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을 점검, 확인한 후, “을”에게 월 ○○○만원의 활동비를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추진위원회의 해임결의가 있는 경우

나.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협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을”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을”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지침 및 협약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해석) 이 협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특약사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권역사무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침과 본 협약 제1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성명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권역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권역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① 사 무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② 위임받은 업무		
③ 직무수행계획		

작 성 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 작성요령

- ① 사무장 : 사무장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② 위임받은 업무 :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임받기로 한 업무내용을 기재
 - ③ 직무수행계획 : 직무수행 방법, 추진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기본계획 수립

3-1. 기본계획 수립개요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기본계획서 2부 제출)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역량강화사업을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3-2. 기본계획 포함내용

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 신규 사업신청서와 신규 사업성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며, 기본계획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대상지구의 현황
 -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지역개발 강약점 분석
 - 지역발전 목표(비전) 및 중장기 지표설정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 권역 역량강화계획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인적자원)활용계획
 - 기초생활시설계획, 소득원 확충계획, 권역특성화시설계획, 경관정비계획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 운영관리 계획
 - 연차별, 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나. 기본계획서 기술내용

1) 보고서 목차

- 계획수립의 개요
- 지역현황 분석
 - 일반현황, 인문사회현황, 환경 및 경관형성현황, 관광과 자원분포현황, 관련 상위계획검토, 주민의식 조사, 개발수요 분석, SWOT분석 및 개발과제 도출
- 기본구상 : 개발목표 및 전략,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발전지표를 제시
- 기능별 사업계획 : 4개의 기능(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별로 세부사업 내용을 기술
- 사업비 투자계획 : 투자계획, 운영관리계획 등을 제시
 - 운영관리계획에는 운영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모든 시설물의 경우 준공 이후 운영, 관리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계획수립이 완료되기 전에 주민협의를 의해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 결정하게 하고,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와 계획 확정 전 협의

3-3. 기본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포괄보조금 지원제외사업

-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 균특법 시행령(36조 별표)에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별표 2)사업
- 광특회계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 법령상 보조제외,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업, 사전 절차 미 이행 사업, 타 부처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분야의 방향에 부합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기타 전문가를 활용한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시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검토되는 사항 등

나. 계획수립 시 주의사항

- 시설물 부지와 관련하여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
- 농업진흥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는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
- 시설부지는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검토
- 시설물 설치예정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매각 또는 임대사용 등 동의서(확약서)가 반드시 첨부
- 소득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반드시 10가구 이상 참여자를 확정하여 법인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자세한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함
- 주민자부담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은 자부담(출자) 확약서(공중 등)를 첨부
- 자부담을 수반하는 소득기반시설(체험시설 제외)의 소유권 등기를 위해서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 또는 시설비로의 편성여부를 예산편성 이전에 결정하여 추진
 - ※ 소유권등기를 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민간보조로 편성하고 시장·군수로 등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비로 편성
- 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회의록 등이 첨부
- 시설규모가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가급적 마을에서 유지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규모로 계획한다. 또한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
- 악취발생시설의 경우 악취방지법 등에 대해 검토
-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등은 연간이용률을 높이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

- 산림을 전용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에 의한 협의 및 인허가
 - 사방사업법에 의한 협의 및 인허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하천구역 안에서의 행위
 - 하천관리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계획수립(제방 수목식재 등)
- 도로와 관련된 계획은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

3-4. 기본계획 세부내용

가. 지역현황

- 지역의 현황
 - 일반현황
 - 위치, 지형, 지세, 인구, 토지이용 등
 - 농업현황
 - 농경지 면적 현황
 - 작물별 재배면적
 - 친환경농업 현황
 - 작부체계
 - 경지규모별 농가 수
 - 농기계 보급현황 등
 - 산림현황
 - 소유별 산림현황
 - 임업현황
 - 산림이용 현황
 - 산림휴양시설 현황 등
 - 축산업현황
 - 가축사육 실태

- 사료작물 재배현황 등
- 수산업현황
 - 도서 및 해안선 현황
 -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현황
 - 어업현황(어선, 어업면허 등)
 - 어항현황 등
- 주민 소득
 - 주민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분
 - 소득현황 파악은 장래추정(지표설정)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기술
 - 임업, 광공업, 유통, 홈페이지 구축현황 등 권역특성에 따라 작성
 - 특히 투자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기술
- 생활환경시설 현황
 - 도로 및 주차장
 - 도 로 : 도로망, 사용재료, 문제점 등
 - 주차장 : 주차현황, 사용재료, 위치적정성 등
 - 기타 하천, 주택, 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 관광자원 현황
 - 관광자원 : 도, 군, 면, 권역 단위로 기술
 - 지역축제 현황
 - 권역자원 현황 : 역사·문화, 인적자원과 활용실적 등을 기재
 - 관광객 추이 분석 : 시군 통계연보를 활용 연도별, 월별 추이분석
- 환경현황
 - 권역의 위치와 주요 산, 하천, 저수지 등 권역 내·외 자연환경 현황
 - 환경보호 대상 시설 현황
 -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 멸종위기 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분포현황
 -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현황
 - 환경기초 시설현황
 - 동·식물 상

- 권역 내·외 주요하천의 수계 현황

나. 개발여건 분석

○ 관련 상위계획 검토

- 국토종합개발계획, 도 종합개발계획, 시군장기종합개발계획, 기초생활권발전계획 등 상위계획 중 지역이나 사업에 연관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작성하고, 발췌한 관련 상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계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연계성을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함

○ 개발수요조사

- 권역의 포괄보조사업 관련 문제점과 잠재력, 발전방향과 핵심과제 등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민수요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리
- 개발수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권역현황과 실제 주민개발수요결과에 대하여 비교 분석 후 종합결론을 도출

○ 잠재력분석

- 본 사업과 관련한 대상권역의 강점·약점·기회·위협(SWOT)요소를 분석하여 지역종합개발전략 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 분야별 현황자료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및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야별(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생활환경, 생산활동, 문화·전통·관광, 주민참여 의식)로 지역 내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리

○ SWOT 분석

- 잠재력분석에서 정리 된 내용을 요약, 도식화하여 분석

[표 III-1] SWOT분석표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 개발대상지로서의 내부적 강점기술	○ 개발대상지로서의 내부적 약점기술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외부적 기회요소 기술	○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외부적 위협요소 기술

- 사업에 대한 권역의 제약 및 기회요소를 분석하여 SO 전략(강점-기회전략), ST 전략(강점-위협전략), WO 전략(약점-기회전략), WT 전략(약점-위협전략) 등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다. 기본구상

○ 장기비전 및 추진전략 설정

- 지역자원, 잠재력, 제약조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상위계획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계획과제를 활용하여 장기비전(개발목표)과 추진전략을 설정한다.
- 설정된 추진전략에 따라 각 전략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여건에 따라 공간별 테마를 설정하고, 각 테마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 발전지표 설정

- 지표분석 연도 : 조사년도(기준년도) → 조사년도+5년 → 조사년도+10년
- 공통지표 : 주민만족도, 신규유입인구
 - 주민만족도는 사업이 시행되면 매년 사업평가에서 수혜가구수의 10%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니 근거 있게 제시
 - ※ 주민만족도(%) = {(매우만족 1점×답변자 수)+(만족 0.75점×답변자 수)+(보통 0.5점×답변자 수)+(다소불만 0.25점×답변자 수)} ÷ 총 답변자 수
 - 신규유입인구(%)은 매년 사업평가에서 사업시행 효과로 기대되는 유입인구를 확인하니 실현가능한 목표로 설정하되 산출근거를 반드시 제시
 - ※ 신규인구유입(%) : 1월1일~12월31일까지 권역 내에 유입된 인구수(전입세대) 및 사업시행의 효과로 발생될 수 있는 유입인구
- 추가지표 : 소득, 일자리 창출, 지역농림어업, 리더(지도자 육성), 방문객 등 권역실정에 맞는 지표를 설정

○ 공간계획

- 관련 상위계획, 지역자원,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권역의 개발 축을 설정하여 도식화하

- 며 설정의 근거와 개발방향을 기재
- 개발 축별 발전방향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전략을 기술
- 개발 축 및 마을별 세부적인 공간구상도 작성

라. 기능별 사업계획

○ 일반사항

- 사업계획은 4가지(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기능별로 구분하여 작성
- 지자체 연계사업 내용도 수록하여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 시설계획은 각각 위치, 사업배경 및 필요성, 조성계획, 운영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투자계획 순으로 작성한다.
- 시설계획 시 공종별 시공재료 및 필요시설 등을 표기하고 개략 평면도를 제시하여 세부설계 시 설계방향을 파악하기 쉽도록 한다.
- 용도지역, 국가하천, 국도 등 관련 법규에 적절한 사업시설계획이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계획부지에 시설계획 시 장애사항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원대상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
 - 농산어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정보화시설 등
 -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등
- ※ 농산어촌지역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동 휴양시설 및 서비스전달체계, 재해대비시설 등

○ 지역소득증대

- 지원대상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의 공동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등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체험시설, 폐교활용,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 생태학습장, 문화체험관 등(*)
- 지역의 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특산물판매장, 소규모가공시설, 저온저장고시설, 선별장 등(**)

- 지원조건

- 소득기반시설은 행정리(동)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에 한하여 지원
- 소득기반시설의 규모는 시장성·기술성·수익성 분석 및 지역 특산물 생산량·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정함
 - *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지원대상중 주민소득을 위한 체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주민)가 전액을 부담
 - **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지원대상중 주민소득을 위한 소득기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주민)가 전액을 부담하고 시설비의 20%도 수익자가 부담

○ 지역경관 개선

- 지원대상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농산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보전하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등
 - 농산어촌지역의 불량경관의 정비를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민속자료 등의 정비사업
- ※ 지붕, 담장정비, 간판정비는 집단적인 정비사업에 한하며, 시설비의 20%는 수혜자가 부담

○ 지역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기능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 교육, 브랜드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10%범위 내
 - ※ 기본계획수립비, 세부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경비 포함 시 10%초과 가능

- 지원제외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권역의 업무추진비·여비·수용비 등)

마. 사업비 투자계획

-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 단일시설은 가급적 한해에 끝낼 수 있도록 계획
- 설계비, 감리비 등의 부대경비의 산출시 대상액은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대상으로 함
- 재정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기능별 사업	사업비 투자액					
	합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합 계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기초생활기반확충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지역소득증대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지역경관개선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지역역량강화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단위:백만원)

구 분		총계획		'○○년		'○○년		'○○년		'○○년		'○○년	
		사업계획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단위	수량										
합 계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 계												
	연결도로												
	주차장												
	...												
지역소득 증대	소 계												
	공동판매장												
	생태학습장												
												
지역경관 개선	소 계												
	생울타리												
	경관수목식재												
												
지역역량 강화	소 계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 물량단위는 [표Ⅲ-2] 참조하여 작성, 연도별 사업물량의 단위는 총계획의 물량단위와 동일(물량이 한가지 단위로 표현되는 사업은 1개만 표현)

[표 III-2] 기능별사업의 세부내용 (예시)

기능별 사업	세부 사업	세부내용 및 물량단위		비고
		세부내용	단위	
기초생활기반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조(m)	
		마을안길	조(m)	
		버스승강장	개소	
		주차장	개소	
		소형교량	개소	
	상하수도	암반관정	공	
		마을상수도	m	
		마을하수도	m	
	재해대비	하천(세천)정비	조(m)	
		사방시설	개소	
		옹벽설치	조(m)	
		안전휀스	조(m)	
		안전시설	개소	
	마을정비	빈집정비	호	
		마을재개발	호	
		마을재정비	호	
		신규마을조성	호	
		전원주거단지	호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개소(m ²)	
		마을도서관	개소(m ²)	
		건강관리실	개소(m ²)	
		마을(복지)회관	개소(m ²)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개소(m ²)	
		향토자원정비	개	
		어린이놀이터	개소(m ²)	
	운동휴양	운동시설	개소	
		레포츠시설	개소	
		다목적광장	m ²	
		산책로	m	
		정자	개소	
원두막		개소		
심신단련장		개소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공동가공시설	개소(m ²)	
		공동집하장	개소(m ²)	
		공동선별시설	개소	

기능별 사업	세부 사업	세부내용 및 물량단위		비고
		세부내용	단위	
		공동판매장	개소(m ²)	
		공동육묘장	개소(m ²)	
		공동저온창고	개소(m ²)	
	체 험 관 광	야생화단지	m ²	
		마을조형물	개소	
		생태학습장	개소(m ²)	
		폐교활용	개소(m ²)	
		농촌체험시설	개소(m ²)	
	지 역 경 관 개 선	마 을 경 관	마을안길 정비	개소(m)
마을숲조성			개소(m ²)	
지붕정비			호	
담장정비			호(m)	
경관수목식재			주	
보호수정비			주	
생울타리조성			호(m)	
생 태 · 환 경		생태공원조성	개소(m ²)	
		생태하천정비	개소(m)	
		오폐수처리시설	개소	
		쓰레기처리시설	개소	
		대체에너지시설	개소	
도 시 경 관		테마가로정비	조(m)	
		안내간판설치	개소	
		집단적 간판정비	개소(개)	
	가로경관정비	개소(m)		
	시장정비	개소(m ²)		
지 역 역 량 강 화	교육 · 훈 련	주민 교육훈련	회	
		교육비품장비지원	식	
		마을사무장양성	인	
		마을해설사양성	인	
		마을리더양성	인	
		선진지견학	회	
	마 을 홍 보	홍보 · 마케팅	식	
		인구유치 PG	식	
		지역축제활성화	식	
		마을브랜드개발	식	

기능별 사업	세부 사업	세부내용 및 물량단위		비고
		세부내용	단위	
		홈페이지구축	식	
		정보화교육	회	
		공동이용전산장비	식	
		귀농프로그램	식	
	부 대 비 용	기본계획수립비	식	
		문화재지표조사	식	
		사전환경성검토	식	
		재해영향평가	식	
		세부설계비	식	

- 주) 1. 관정과 관로공사를 같이하는 공사계획등 2개 세부사업으로 1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비의 비중이 큰 쪽에 물량 및 사업비 표현
2. 물량단위가 2개로 제시되어 있는 항목은 2개의 물량을 모두 표기
3. 상기 단위표에 표현되지 않은 사업계획의 단위는 물량단위표를 참조하여 작성
4.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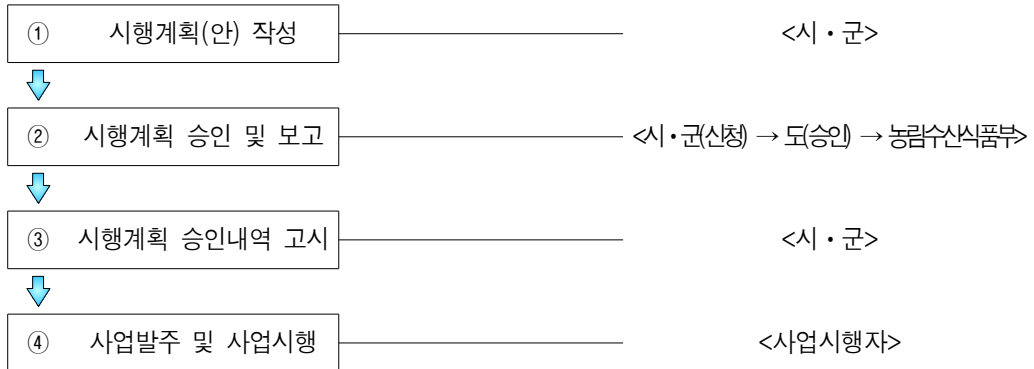
시행계획 수립

4-1. 시행계획 수립개요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수립자,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구상한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 시 의견수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또는 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권역발전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시행계획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공종별로 분리하여 계획수립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단위사업별 세부내역(4개 기능별)의 총액(국고기준)의 20%이상 계획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 농림부 사전협의 : 단위사업별 세부내역(4개 기능별)의 총액(국고기준)의 50%이상 계획변경이 있는 경우
 - 도 사전협의 : 단위사업별 세부내역(4개 기능별)의 총액(국고기준)의 20%이상~50%미만 계획변경이 있는 경우
 - 시·군은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농림수산물부에 제출
 - 농림수산물부는 시·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 *단위사업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및재개발,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4개기능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고시방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을 준용



[그림 III-3] 사업시행 추진절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3. 사업비 필요금액
4. 사업 예정 기간
5. 사업의 효과
6. 사업시행자
7.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시
 -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경우: 관보에 게재
 -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경우: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공고

사업 시행지역의 시·도청,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4-2. 시행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사업규모의 적정성, 경제성, 활용도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적절하게 수립
-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별 시행계획을 수립

4-3. 시행계획 수립(승인) 시 작성서류

시행계획 수립(승인) 시 아래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① 사업시행계획서
- ② 사업시행계획개요
- ③ 기능별사업내역
- ④ 사업비수지예산서
- ⑤ 사업시행자 의견서
- ⑥ 기능별 사업비(량) 증감사유서
- ⑦ 사업별 인허가 검토서
- ⑧ 계획수립자,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견서
- ⑨ 시행계획관련 증빙서류(토지대장 등)

사업시행

5-1. 사업시행 개요

가. 시행절차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3조, 제71조 준용

나. 사업발주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한다.

다. 기타사항

- 사업시행은 당해년도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설치 등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활용도, 사후관리, 편의성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용지매수보상을 추진할 수 있다.

■ 국공유 재산 매입절차에 따른 의회 승인사항에 속하는 용지매수보상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용지매수 보상을 추진토록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징구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발주와 병행 처리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2. 사업발주 요령

가. 일반사항

- 사업시행자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의거 일괄 또는 부분 수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수탁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발주 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사업 등 H/W부문과 주민교육, 컨설팅, 마케팅, 정보화 등 지역역량강화부문(S/W)을 분리하여 발주를 하여야 한다.
- 지역역량강화부문에 대하여는 지역역량강화사업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한국농어촌공사, 2010)을 참고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전기, 통신공사를 제외한 H/W공사는 일괄 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시행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부분 발주할 수 있다.
- 지역역량강화사업 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사업시행계획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포함)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분은 예산집행(입찰) 잔액 및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 발주 방법

1)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 발주할 경우



[그림 III-4] 사업발주 체계도(시장·군수)

- H/W사업의 발주시 입찰 및 계약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29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사업 등 시설 중심의 H/W사업 발주시 [그림5-1]와 같은 추진체계로 사업발주 한다.
- 입찰공고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입찰공고의 내용)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지역소득증대 등 주민부담(토지 또는 시설비 자부담)이 수반되는 시설은 10 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법인구성 및 주민 자부담금을 확보한 후 사업시행자가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민부담이 수반되는 시설사업 추진방법(예시)

- 사업비를 시설비 성격으로 사업추진
 - ① 주민 자부담금 시·군 계좌로 입금
 - ②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정산
 - ③ 준공 후 사업시행자로 소유권 등재
(단, 민간보조사업은 출연자로 등기 가능)

- 민간보조로 시행되는 소득사업의 경우 입찰분쟁, 자금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사업입찰 및 자금집행 등을 대행하여야 한다.
- 지역역량강화사업 발주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용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지식기반사업외의 협상 계약은 발주자가 자체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서 일괄 위탁하여 사업 발주할 경우

○ 위탁시행자는 H/W사업을 발주 시 아래와 같은 추진체계로 발주를 한다.



[그림 III-5] 사업발주 체계도(위탁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기준시행세칙(제13차 개정 2008.1.1)

제105조(계약의뢰)

① 계약의뢰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경우 불필요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1. 공사(용역)명 또는 물품명
2. 공사(용역)개요 또는 용도
3. 설계금액(지급자재대 별도 표시) 또는 예산액과 예산비목
4. 공사착공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용역기간 또는 납품희망일
5. 입찰참가자격, 면허요건 등 수행자격요건
6. 공동도급 여부에 대한 의견
7. 지명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8. 현장위치도 또는 납품 장소
9. 현장설명서

10.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을
 11.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내역서 등의 자료
 12. 공사 보험가입대상공사의 보험가입여부 및 그 사유
 13. 기타 발주에 필요한 사항
- ②제1항 제11호의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내역서 등의 자료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가격평가 예시)

□ 입찰가격평가 예시

- 예정가격 100억원, A사 90억원, B사 70억원, C사 60억원, D사 50억원으로 투찰한 경우
 - ⇒ A사 : $\text{배점한도} \times \text{최저입찰가} \div \text{당해입찰가} = 20 \times 50 \div 90 = 11.11$
 - ⇒ B사 : $\text{배점한도} \times \text{최저입찰가} \div \text{추정가격의 } 80\% + [2 \times (\text{추정가격의 } 80\% - \text{당해입찰가}) \div (\text{추정가격의 } 80\% - \text{추정가격의 } 60\%)] = 20 \times 50 \div 80 + 2 \times (80 - 70) \div (80 - 60) = 13.50$
 - ⇒ C사 : $\text{배점한도} \times \text{최저입찰가} \div \text{추정가격의 } 80\% + [2 \times (\text{추정가격의 } 80\% - \text{당해입찰가}) \div (\text{추정가격의 } 80\% - \text{추정가격의 } 60\%)] = 20 \times 50 \div 80 + [2 \times (80 - 60) \div (80 - 60)] = 14.50$
 - ⇒ D사 : C사와 동일 → 14.50
(당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60%로 계산)
-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5-3. 사업시행 중 시행계획 변경

- 사업시행중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5-4. 사업의 준공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연차별 또는 계속 공사계약에 의하여 추진된다. 연차별 공사는 계속공사는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절차와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65조 내지 제67조에 근거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을 위탁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한다. 준공검사 요청 시에는 공사감리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 공통적으로 준공검사 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도면은 아래와 같다.
 -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 사업비 내역서
 - 시설물 배치 및 시설현황도
 - 주요시설물 관리계획서
 -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 시행전후 면적조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등이다.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정산을 한다. 이후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사업이 완료(준공)되면 공공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는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주민자부담이 수반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자(법인)로 등기한다.

- 시장·군수가 출연자(법인)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부에 시설물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재산』임을 표기하는 등기를 하여야한다.(부가 등기)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된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며,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시공회사 또는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5-5. 시설물의 인계인수

- 주민부담이 수반되는 공동 지역소득증대시설 설치 시 사업시행자는 참여주민과 협의하여 소요액의 부담과 정산절차 및 사업완료 후 시설물 인계방법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참여주민은 사업시행자와 협의 확정된 기간(사업시행전)내에 주민부담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하며, 사업완료시에는 정산 확인 후 시설물을 인계하여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며,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한다.

※ 시설물 인수인계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시설물 인수인계서
- ② 사업비 준공도서(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
- ③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 ④ 용지매수 및 보상관련 서류

- ⑤ 등기이전서류
 - ⑥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관련서류
 - ⑦ 시설물 등록에 관한 서류 등
- 공사 완료된 시설물 지역주민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공종별(연차별, 단계별) 부분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지역소득증대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기간(10년)이 경과한 이 후에는 시설물 운영주체·운영방법·용도 등과 관련된 조건을 붙여서 소유권을 관련 권역에 양도·대여할 수 있다.

유지관리

6-1. 유지관리 목적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건축물, 조경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당초 설치된 목적으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6-2. 유지관리 방향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공회사 또는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 시장·군수는 준공 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시설물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관한 필요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권역발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주민지도, 지역홍보, 시설물 이용·관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시설물이 선량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6-3. 유지관리 범위

- 유지관리의 범위는 각 시설물을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유지, 보수, 개량 등 일련의 활동사항으로 한다.
- 각 시설물의 기능유지,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위생환경에 관한 관리 등을 위한 수시, 일상 및 정기적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 한다.
- 각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설물 운영프로그램 등 시설운동을 위한 전문가 및 지원그룹의 컨설팅 등을 유지관리계획에 포함한다.

6-4. 유지관리 체제

- 지자체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운영위원회 및 시설별 관리책임자가 협의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역할분담 및 관리행위 등에 대해 조정한다. 이를 위해 유지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 유지관리협의회는 지자체 공무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운영위원회, 시설관리 책임자, 이용자 등으로 결성하여 운영한다.
- 유지관리협의회는 유지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유지관리 관련분쟁의 조정, 지자체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협의회 의결을 거쳐 각 시설별 유지관리 주체를 선정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기준을 정한다.
-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6-5. 시설물 운영방법

가. 기본방향

- 시설물 유지관리는 결함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결함의 예측, 점검, 평가 및 판정, 대책, 기록 등의 합리적 대처를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가 유지관리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나. 일반사항

-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의 설치목적 및 기능, 운영(활용)방안, 구조, 규모 등의 제원을 정리·파악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내용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이용자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시설물 기능 유지 및 이용자 안전관리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자는 시설물 인수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적절히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유의하여 관리한다.
-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주요제원, 점검계획과 결과, 대책수립과 조치사항 등을 세밀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연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책정하여 구성항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마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정보·통신, 가로등시설 등 지하시설물은 지하시설물 도면을 작성하여 지역 내 타 사업계획 및 시공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지관리자는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유지관리협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별첨 1]

사업시행계획 개요

대상지역의 범위

- 위 치 : ○○도 ○○군 ○○면 ○○리
- 권역규모 : 법정리, 행정리, ○○마을
- 면 적 : ○○ha(관리지역:○○ha, 농림지역:○○ha, 자연환경보전지역:○○ha)
- 가구·인구 : ○○호(농가 : ○○, 비농가 : ○○), 인구 ○○명

사업기간 : ○○○○년.○○월 ~ ○○○○년.○○월

총사업비 : ○○백만원(보조○○, 민간부담○○)

구 분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별첨 2]

기능별 사업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증감 내역		사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기초생활기반확충 소 계							
○○사업							
지역소득증대 소 계							
○○사업							
지역경관개선 소 계							
○○사업							
지역역량강화 소 계							
○○사업							

[별첨 3]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				비고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지출)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				비고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 공사비						
-						
-						
-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별첨 4]

기능별 사업비(량) 증감사유서

구 분	총 괄 계			
합 계	기본계획(A)	시행계획(B)	증감(B-A)	증감사유

[별첨 5]

사업별 인허가 검토서

사 업 명	검 토 의 견

[별첨 6]

○○시(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주요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백만원

2. 추진경위

- 예정지 선정 :
-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기관 :)
- 세부설계 : (설 계 기 관 :)
- 시행계획수립
-
-

3. 주요변경내용

-
-
-
-

4. 변경사유

-
-
-
-

5.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변경내역

(면적 : m²)

기능별	단위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내역	비고
합 계		건	건	건	
○ 기초생활기반확충 - - -					
○ 지역소득증대 - - -					
○ 지역경관정비 - - -					
○ 지역역량강화 - - -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하여 작성

6.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 행 계 획				비고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				비고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 공사비						
-						
-						
-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7.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부록] 사업계획서 예시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시/도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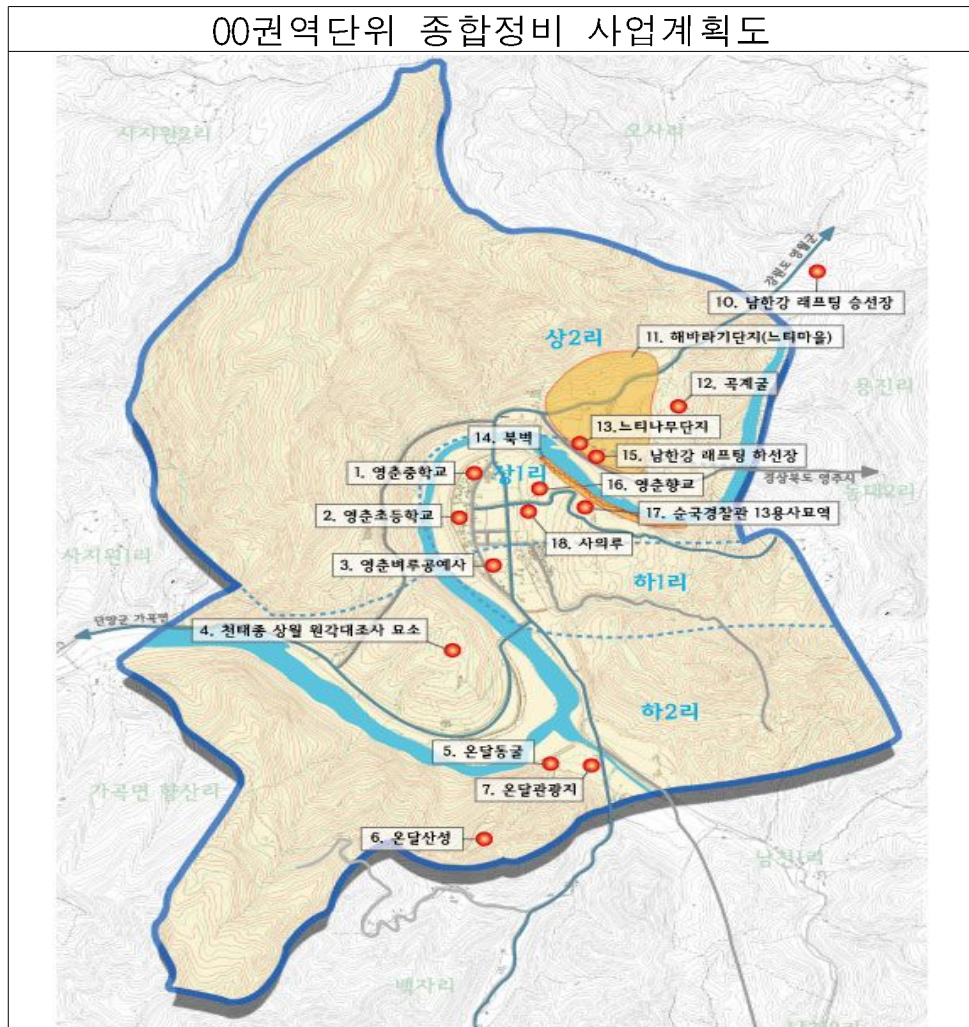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계획서(예시)

1. 계획서의 현황자료는 필요에 따라 사진과 도면을 첨부하여 설명하고
전체분량은 30page 이내로 작성 권고

I. 권역개요

1. 권역범위

- 대상권역 사업계획도(1/50,000 ~ 1/25,000 지형도에 표하며 A3로 작성)



※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시·군에서 권역 및 사업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 권역범위 설정
 - 권역범위 : 권역에 포함되는 법정리명, 행정리명, 자연마을명 기입
 - 범위설정 배경
 - * 오래전부터 같은 마을로 역사와 유래가 동일하거나, 동일한 들녘에서 영농을 하거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지형적으로 주변이 산이나 강으로 구분되어 일정한 범위로 구분되는 지역임을 기재 등
 - * 단, 지형적으로 마을간 연계가 어려우며, 영농권과 생활권 등이 전혀 틀려 객관적으로 동일한 권역이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을 임의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지양

2. 지역현황

가. 권역연혁

- 위 치 : 도 시·군 면 리 외 개리
 - 법정리() , 행정리() , 자연마을()
 - * 권역내의 법정리, 행정리 및 자연마을(수)와 리명을 기재
- ○ ○ 면 : 법정리 수(), 행정리 수(), 자연마을 수()
 - * 해당 권역이 속한 면의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수를 기재
- 인접 읍·면 또는 시·군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
 - * 당해 권역이 속한 읍·면, 시·군 및 인접한 타 읍·면, 시·군까지의 도로 상 거리(km)와 승용차로 이동시 소요시간(분)을 서술
 -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문화시설과의 거리(km) 및 소요시간(분) 등
- 마을연혁, 역사, 지명유래, 행정구역변천사 등을 중심으로 작성
 - * 권역 전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역사가 있으면 작성 또는 마을별 연혁, 역사, 지명유래 등을 작성
 - * 각 마을의 연혁을 서술하면서 인접한 마을이나 읍면과의 관계 등을 설명

나. 권역 내 마을현황

◦ 인구(농가인구포함) 및 농경지현황

마을별	인구수 (명)			가구수 (호)			면 적 (ha)					
	계	남	여	계	농가	어가	비농 어가	계	답	전 (과수원)	임야	기타
계	()	()	()									
○ ○ 리												
○ ○ 리												

※ ()는 농가인구수

- * 권역 내의 법정리별로 인구수(남,여, 농가인구), 가구 수(농가,비농가), 경작지 현황을 기재, 자연마을 또는 행정리 단위로 조사하여 법정리 단위로 집계
- * 마을별로 조사된 기초자료는 권역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보존하여 마을 현황자료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자료는 사업계획 작성 년도를 기준으로 기입

◦ 연령별 인구구조

<연령별 인구구조 현황>

구분		○○ 시군		○○ 권역	
		인구	비중	인구	비중
합계					
연령	14세 이하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 조사년도 기준으로 작성(시군통계연보 및 읍면 행정자료 참고)

다. 전통역사·문화 현황

◦ 지역문화재 현황

구 분	총계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주요무형문화재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군														
()면														
()권역														

- * 권역이 속한 행정구역(郡, 面) 및 권역 내에 소재한 국보, 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등 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조사 기재
- * 이외에도 권역 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양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작성

◦ 지역문화행사 현황

향토문화축제	시행 월	장 소	축제 주요내용	주최
○○ 축제	(기간: 일)			
○○ 행사	(기간: 일)			

- * 권역이 속한 행정구역(郡, 面) 및 권역에서 2000년 이후에 개최한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에 대해 시행 월(기간), 장소, 축제내용, 주최(주관) 및 방문(관람)객 수 등 현황을 기재.
- * 지역 주민 또는 권역 주민들이 행사기간에 한 역할(지역 농특산물 판매, 숙박 제공, 자원봉사 등)에 대해서도 별도 기술

라. 지역공동체 활동 내역

◦ 지역공동체 활동 현황

마을명	공동체 조직명	구성원수	모임회수	등록일자	주요 활동 내역
○○리	영농회 청년회 부녀회 4-H클럽 · ·	○○명	○회/월		○ 마을의 주요 대소사 결정내역
○○리					

* 마을별로 작목반, 영농조합 등 영농조직 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을 상세히 기술,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공동체 조직의 실질적인 활동 상황을 기술

◦ 권역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주요 담당업무	비고 (구성일자)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담당 ·			- ○○마을 이장 - ○○마을 부녀회장 - ○○마을 이장(주민제안서 작성)	

* 추진위원회 구성된 경우 직책별로 주요담당업무를 기입하고 구체적인 조직도는 덧붙임

* 주민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의 경우 담당업무에 주민제안서 작성 참여 여부를 기입

◦ 권역 추진위원회 운영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내용

◦ 권역 추진위원회의 공동사업 및 학습활동 실적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주 요 내 용

* 권역(마을단위) 공동사업 및 활동, 선진지 견학, 학습활동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는 별첨

마. 자원 분포 현황

◦ 마을별 자원현황

자원명(성명)	위 치	자 원 현 황	비 고
전통가옥			
물레방아			
우 물			

- * 마을별 자원현황은 인적자원(예술인, 문학가, 무형문화재 등) 포함 작성
- *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원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참고1, 지역자원목록(예시)>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 전통가옥, 물레방아 등의 유형자원과 역사·전통 등 무형자원, 마을 내에 거주하는 예술·문학가 등 인적자원 등을 파악하여 상기양식으로 자원의 기본현황을 작성하고, 추가로 사진, 그림 등과 함께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음

바. 지자체의 지원조직 현황

과명	계(담당)명		주요업무내용	비 고
	계(담당)	인원		

* 주요업무내용은 계(담당)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모두 기재

사. 지자체의 학습활동실적

소속/직책	성명	일시/기간	이수교육명	교육주관기관	비고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지역개발관련 교육실적 기재하며 구체적 증빙자료를 별첨

II.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의 연계성

- 시군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5개년) 및 농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 등과의 관련성을 간략하게 검토하여 기술

III. 권역 발전방향

1. 기본방향

- 발전목표 설정
 - * 권역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비전’(지역주민들이 꿈꾸고 만들어 가고 싶은 권역의 미래 모습)과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 발전목표는 지역의 특화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군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하며, 목표는 마을별 1개 정도가 적정할 것임

2. 마을별 발전방향

- 권역 내 마을(법정리) 단위별 발전방향
 - * 마을별 발전방향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주민 개개인의 역할 등을 바탕으로 주민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현가능한 안을 선정해야 함
 - * 권역 내에서 마을별로 실현가능하면서 마을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설정해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전체 권역 내 마을들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함

3.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대 기능별사업으로 사업내용(각 시설,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

- 농산어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 등
-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등
 - ※ 농산어촌지역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동휴양시설 및 서비스전달체계, 재해대비시설 등이 해당

◦ 지역소득증대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등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체험시설, 폐교활용,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 생태학습장, 문화체험관 등
- 지역의 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특산물판매장, 소규모가공시설, 저온저장고시설, 특산물선별장 등
 - ※ 소득기반시설은 행정리(동)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에 한하여 지원
 - ※ 소득기반시설의 규모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감안하여 산정.
 - ※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지원대상중 주민소득을 위한 체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주민)가 전액을 부담
 - ※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지원대상중 주민소득을 위한 소득기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주민)가 전액을 부담하고 시설비의 20%도 수익자가 부담

◦ 지역경관개선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농산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보전하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등
- 농산어촌의 불량경관 정비를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마을보호수, 향토자원 등의 정비사업 등
- 지역사회의 중심거점인 읍·면소재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및 간판정비 사업 등

◦ 지역역량강화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기능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
- ※ 시·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예산의 10%범위 내에서 계획 (기본계획수립비, 세부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경비 포함 시 10%초과 가능)
-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는 지원제외

4.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 시설물의 관리 및 활용계획(운영방안), 유지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유지관리 조직, 지침 등)으로 기술
- *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 확보방안 등을 언급

IV. 사업비 투자계획 (해당 신규사업의 총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구분)

1. 재정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기능별 사업	사업비 투자액					
	합 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합 계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기초생활기반확충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지역소득증대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지역경관개선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지역역량강화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2.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단위:백만원)

구 분		총계획		'○○년		'○○년		'○○년		'○○년		'○○년	
		사업계획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단위	물량										
합 계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 계												
	연결도로												
	주차장												
	...												
지역소득 증대	소 계												
	공동판매장												
	생태학습장												
												
지역경관 개선	소 계												
	생울타리												
	경관수목식재												
												
지역역량 강화	소 계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 물량단위는 편람을 참조하여 작성, 연도별 사업물량의 단위는 총계획의 물량단위와 동일(물량이 한가지 단위로 표현되는 사업은 1개만 표현)

Chapter

IV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IV-1. 신규마을조성(전월마을 등)

IV-2. 기존마을정비

IV-1. 신규마을조성(전월마을 등)

1. 개요
2. 마을정비조합 구성
3. 입주예정자 모집 및 분양
4. 사업제안
5.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6. 시행계획수립
7.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신규마을조성(전원마을 등)

본 매뉴얼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 가목에 규정된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며, 관련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함

제1장

신규마을조성 개요

1-1. 사업목적

농어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역특성을 살린 마을을 조성하여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제공
-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도모

1-2. 사업추진방향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조성
- 마을과 숲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문화가 깃든 품격 있는 농어촌마을조성
-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단치배치 및 농촌주택 건축 등 유도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
-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1-3. 사업시행자

- 신규마을(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시·군이 시행하되, 시·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56조 참조)
 - 한국농어촌공사
 -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마을정비조합
 -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시·군은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 시·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농어촌정비법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마을정비조합,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103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16조제1항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사업추진유형

부지확보 및 주택건축 시행주체에 따라 입주자 주도형, 공공기관주도형으로 구분

가. 입주자 주도형

- 동호회, 지방이전기업 등 입주예정자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제안한 주택건축 등 계획을 시장·군수가 마을조성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방식

-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는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시장·군수가 수립한 마을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 시장·군수는 마을정비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마을정비조합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 사업시행자 : 「1-3. 사업시행자」 참조

-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 분야는 시·군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마을정비조합이 시행하도록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건설 사업자(공동설립 법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56조 참조).

나. 공공기관 주도형

-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부지 확보 및 마을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 모집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사업을 일괄하여 시행
 - ※ 공공기관이 입주자를 2/3이상 확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와 건축업자가 주택건축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주택건축담보가 될 경우에는 개별 건축 허용 가능
-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 분야는 시·군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건설 사업자(공동설립 법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 ※ 농어촌정비법 제56조 , 「1-3. 사업시행자」 참조.

1-5. 지원대상 및 지원금 사용용도

가. 지원규모 및 시기

- 「나. 지원자금 사용용도」에 소요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마을의 규모(주택신축 기준)에 따라 차등 보조(국고 70% 및 지방비 30%)

구분	20~29호	30~49호	50~74호	75~99호	100호이상
계속지구 (총보조액)	10억원 이내	15억원 이내	20억원 이내	25억원 이내	30억원 이내
'12신규*	12억원 이내	18억원 이내	24억원 이내	30억원 이내	36억원 이내

※ '12신규지구 : '12년 신규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보조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부담하거나 입주자가 부담
- 입주자 주도형의 부지매입비는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주도형의 부지매입비는 지방비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자체자금 등으로 부담
- '10년 이후의 신규지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고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된 후 국비보조금 지원 개시
 - * 사업성 검토는 사전 환경성 검토 이전 입주예정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가능하나(자세한 내용은 후술), 입주예정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마을정비계획 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마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승인 등 사업시행을 위한 승인절차가 이행된 후 가능함에 유의
- 주택신축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가능

나. 지원자금 사용용도

- 마을조성 세부설계 등 계획수립 비용
 - '10년 신규지구부터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소요비용은 국고 지원대상 제외

- 마을기본시설 사업비
 - 진입도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단지내 포함),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사면·공원·녹지포함), 인근 기존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등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1-6. 지원대상지역 및 요건

가. 지원대상지역

-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면지역(성장촉진지역은 읍포함)

[표 IV-1] 전국 시도별 성장촉진지역 현황

시·도	성장촉진지역
강 원 (7)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 북 (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 남 (5)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전 북 (10)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17)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16)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 남 (10)	합천군,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 계	70개 시·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8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

나. 사업후보지 선정 요건

- 사업부지가 사전에 확보된 지역
 - 최소 20,000제곱미터 이상
 - 사업예정 부지 100%
 - 농림지역 50%이내이고, 타법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 부지확보 기준 : 토지소유권 취득, 토지매매계약체결(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과 계약금을 명시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토지 신탁 등 사업부지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경우

- 다만, 마을정비조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된 마을정비조합원의 자격(사업예정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진 세대주)을 갖추어야 함

- 입주자가 사전에 확보된 지역
 - 최소 20세대 이상
 - 입주계획 세대수의 80% 이상
 - 도시민 50% 이상
- ※ 도시민 : 사업신청일, 입주희망자 조사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함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 마을정비조합이 구성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공공기관과 입주예정자간 협약이 체결된 지역
- 기존 마을의 호응도, 진입도로 신설에 따른 비용 부담(지방비 및 입주자 부담 등)이 가능한 지역
-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수질 등 환경오염을 추가로 유발하지 않는 지역, 경사도 및 배수체계 등 지형여건상 홍수시 재해유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
- 동일 시·군에 문화마을조성사업 및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가 있는 경우의 주택건축비율이 계획가구수의 60% 미만인 경우 신규 신청을 지양하고 동 사업지구로의 유입을 유도
 - 다만, 부진사업지구의 대책수립으로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고,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신규지구 추진을 검토하되, 사업성 검토 시 부진지구 대책과 전망, 신규지구 선정의 불가피성을 제시)

다. 사업비 지원 시기

-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승인)된 이후부터 국고지원 가능
- ※ 사업대상지 요건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 지원중단, 사업 취소 등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지구 선정후 마을정비구역 지정 또는 용지매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의 이·불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규정된 「선(先)시행 - 후(後)지원 방식」을 활용한 예산의 편성, 자금지원 및 정산 등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조대상 사업비와 상환완료시까지의 이자액을 합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3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가능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략)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중략) 보조할 경우, (중략)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5조** ; (중략)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조 대상 사업 비용
2. 상환 완료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이자. (이하 생략)

라. 기반시설 착공시기

-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부지조성 후 나대지로 방치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을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 다만, '10년 이전에 선정된 사업지구의 경우 분양촉진 및 입주 예정자의 기호에 맞는 건축 기회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용지의 2/3범위 내에서 조성용지만 따로 분양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것을 권고하여야 함
- 다만, '08.7.1이후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된 지구는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착공(의무 적용)

- 시장·군수는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입주예정자가 입주계획지구수의 2/3이상 확보(분양계약 체결)된 이후에 마을조성공사 착공을 원칙으로 하되, '09.7.1이후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된 지구는 입주예정자가 입주계획지구수의 2/3이상 확보(분양계약 체결)된 이후에 마을조성공사 착공(의무 적용)

마. 사업취소 및 해제, 제재 등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의 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및 공정계획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켜야 할 사항, 제재조치 등을 고지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정비조합 설립의 인가, 마을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취소 조치(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호 참조)
- 사정이 바뀌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취소 조치(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2호 참조)
-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사업시행계획 승인시 조건 부여 내지 지원대상자에게 사전 고지),
 -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한 후 사업대상지 선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 ※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당해지구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지구를 변경한 경우의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최초 사업 대상 지구를 선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마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지정 해제된 것으로 봄(농어촌정비법 제117조 참조)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으며(09.7.1 사업시행계획 승인지구부터 적용), 사업비 지원중단,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조성용지를 공급받거나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기반시설 예산지원 지연 등 정당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되어 보조목적(사업목적)이 상실된 경우 기 지원된 국비 등의 환수방안을 강구하되, 조성용지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등 공공의 농업·농촌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국비 등의 환수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시 벌칙 등은 농어촌정비법 제70조, 제130조 등에 따름(09.12.10부터 적용)

농어촌정비법 제70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조성용지의 공급 당시 가액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조성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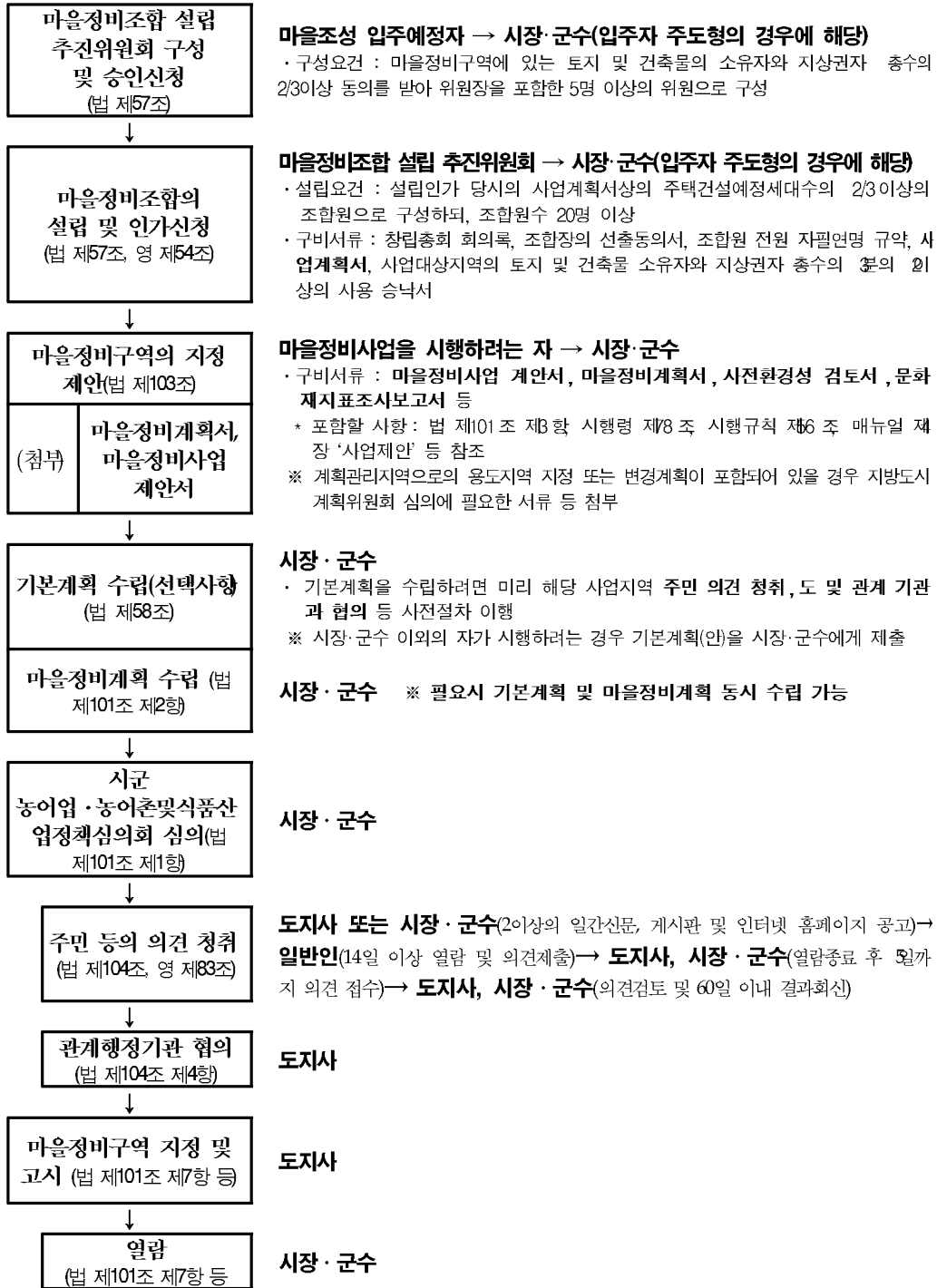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이혼으로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6.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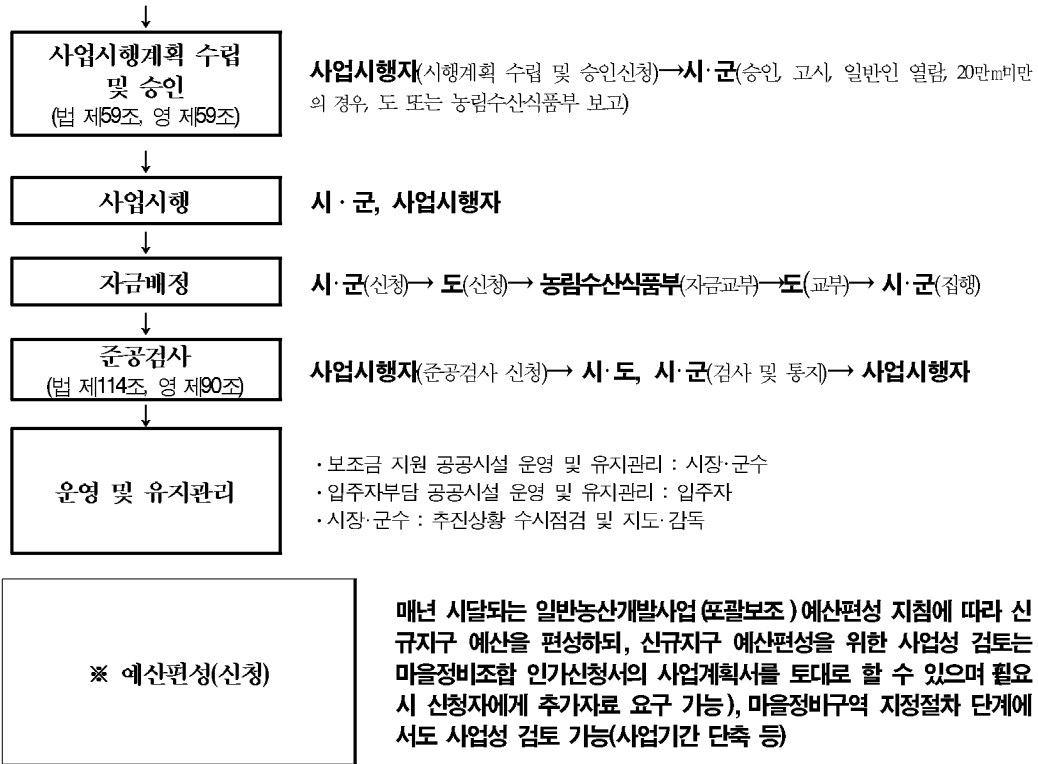
제130조(벌칙) ② 제70조를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 IV-2] 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별 비교표

구 분		입주자 주도형사업	공공기관 주도형사업
대상사업규모		20호 이상	
사업 제한	제안자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조 건	- 면적 2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부지 100%확보, 농림지역이 50%이내 - 타법에 의한 개발제한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입주자 확 보	20가구 이상, 입주예정자의 80% 이상 확보, 도시민 50% 이상 확보	공공기관과 입주예정자간 협약 등 체결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마을정비조합, 농어촌정비법 제56조 1항 3호에 의거 설립한 법인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전 수립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 시·군과 입주자 간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등을 명확히 구분 - 시행계획 승인신청 이전까지 입주자 100% 모집 완료 * 다만, 계획된 전체 주택을 일괄하여 동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모집계획 대비 80% 이상 모집되면 사업 시행계획 수립 가능하며, 이때 미모집 입주자는 조합정관 등에 따라 잔여가구 추가모집 가능	-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 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 임대 등을 일괄하여 시행계획 수립
주택건축		- 시·군은 입주자가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토록 업무 전반에 걸쳐 지도감독	-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주택건축

[그림 IV-1] 마을조성사업 추진절차





제2장

마을정비조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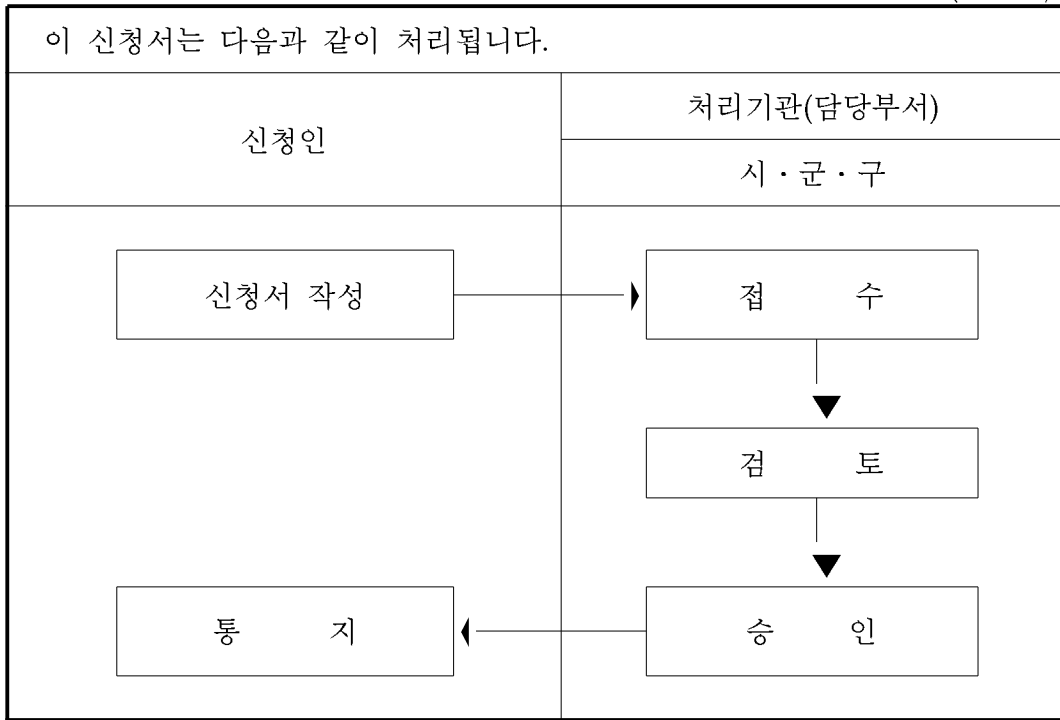
2-1.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 마을정비구역에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법 제57조 제1항).
-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57조 제2항)
- 시장·군수는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법 제57조 제4항)

2-2.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역할

-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시행령 제54조 제4항)
 - 가.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준비
 - 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 다.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서 받기
 - 라.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 마.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초안 작성
 - 바.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뒤 쪽)



2-3.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57조, 시행령 제54조)
 1. 설립인가의 경우
 - 가. 창립총회 회의록
 - 나. 마을정비조합장의 선출동의서
 - 다. 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 라. 사업계획서
 - 마.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승낙서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함(시행령 제54조 제3항).
- 마을정비조합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시행령 제54조 제2항)
 - 가. 마을정비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 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다.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라. 임원의 수, 업무 범위(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및 선임·변경·해임의 방법
 - 마. 조합원의 비용 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회계
 - 바.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사.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 아.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및 방법
 - 자. 조합비의 사용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 차.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변경 절차
 - 카. 그 밖에 마을정비조합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4. 마을정비조합의 자격

-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함(시행령 제55조).
- ※ 세대주 : 주택공급에관한규칙(국토해양부령 제292호; 2010.10.8) 제2조 제8호에 의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자는 세대주로 봄

2-5. 마을정비조합원의 추가 또는 총원

-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총원할 수 없음. 다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총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시행령 제56조).

가. 조합원의 사망

나.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 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

2-6. 마을정비 사업계획서

-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신청시의 사업계획서는 후술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마을정비계획서 및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작성요령 등을 참조하여 주요사업계획을 작성

<별첨 >-----

신규마을(전원마을) 조성사업 계획서(예시)

(○○도 ○○시·군 ○○지구 : ○○주도형)
20 . 0. 0

- 제안자(대표)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또는 신규마을 조성사업)
- 사업예정지 : 시·도 시·군 면 리
- 사업예정 면적 : m² (토지확보 실적 : m², %)
 - 가구당 평균 m²
- 입주계획 세대수 : 세대(입주 모집실적 : 세대, ○○.○%)
 - 입주예정자 협약체결 실적 또는 마을정비조합원 수 : 세대(%)
 - 도시민 유치 : 세대 - 도시민 비율 : %(도시민 입주예정자 가구/입주 계획가구)
- ※ 도시민 : 사업신청일, 입주희망자 조사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함
- 사업추진방식 : 입주자 주도형, 공공기관 주도형
- 추정사업비 : 백만원
- 사업예정기간 :
- 사업시행예정자 :

2. 사업예정지 일반현황

-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면 적(m ²)								
구성비(%)								

- 용도구역별 현황

구 분	계	도시지역 (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소계	계획 관리	생산·보 전관리	계	농업진 흥지역	
면 적(m ²)								
구성비(%)								

3. 사업시행여건

토지이용현황 등 관련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

- 용도구역별 현황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 농업진흥지역 해당여부(도면과 대장을 확인)

- 농업진흥지역 안 : m²

- 농업진흥지역 밖 : m²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보전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한지법),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자연공원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 물 한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용제덜책지역(토양환경보전법), 해양용호구역,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한지에 관한 법률), 특정도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개발입지여건

○ 마을의 현황 및 특징 :

○ 입지여건 :

○ 접근성 :

○ 마을조성지역 진출입로 확보 여부(토지매입)

사업 토지확보 상황

번호	성명	현주소 (도,시군,읍면동)	연령	성별	직업	동반 예정 가족수	지번	면적	소유 권확 보	매매 계약 체결	토지 신탁 등	공공 유지
계												

□ 입주예정자의 직업별, 연령별 특성

연령별 직업별	계	40세 미만	40~49	50~59	60~69	70세 이상
합계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공기업포함)						
의사						
변호사 등 법조계						
교수						
교사						
예술가						
농업						
기타						

※ 퇴직하였더라도 주로 종사한 직업 기재

4. 개발계획개요

□ 사업시행예정자(사업주체)

- 마을기반시설 :
- 주택건축 :

□ 사업시행방법 :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m ²)	비율	비 고
계			
○ 주택용지			필지(평균 : m ² /필지)
○ 공공용지			
-			
○ 하수처리시설			
○			

- 사업내용(* 유형별 사업내용, 사업량은 시행주체별로 구분 표기)
 - 토지매입, 단지조성(택지, 농지, 시설별 세분), 도로·진입로 계획, 상수도, 하수처리, 주택건축, 분양·임대계획 등

5. 주택건축계획

- 주택건축 허가 및 건축공사 시기 등
- 주택건축 방법(일괄, 개별 등)

6. 농어촌 경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 * 주변 환경 및 생태계 보전 유지에 관한 사항
- * 비산먼지, 소음, 차량통행, 폐기물 처리방안 등 공사중 대책
- * 마을하수 등 입주후의 환경보전계획 등

8. 재해예방대책

- * 집중 호우시 마을내 홍수 유입가능성 및 배제량 검토, 배수처리계획 등

9. 사업비 조달계획

- 총사업비(기반시설, 주택건축 등 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10. 마을공동체 형성 및 교류

- 전원마을 입주민의 일거리 창출계획, 전원마을 입주민과 기존마을 주민간의 교류계획,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11.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 명세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2. 주민효용도

구 분	의 견	비 고
면장의견		
주민의견		
토지소유자 의견		
전문기관의견		
기타의견		

13. 사업시행 후 마을의 발전전망(파급기대효과 등)

위치평면도 (1:25,000)

※ 1.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2. 도면은 면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크기로 작성

예정지 전경사진(5"x7")

<근거리>

<원거리>

※ 기타 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자료 첨부

[그림 IV-2] 마을정비조합 설립 및 해산절차

추진절차	관련근거	비 고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마을정비조합 설립 예정자)	법57조2항	* 정비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2/3이상 동의 *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설립 예정자 → 시장·군수)	법57조2항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시장·군수 → 설립 예정자)	법57조2항	
		
마을정비조합 인가신청 (설립 추진위원회 → 시장·군수)	법57조1항	*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3이상 의 조합원으로 구성, 20명 이상
		
마을정비조합 인가 (시장·군수 → 설립 추진위원회)	법57조1항	
		
마을정비조합 해산 (마을정비조합 → 시장·군수)	법57조1항	* 조합원 총수의 2/3이상의 동의서

[표 IV-4]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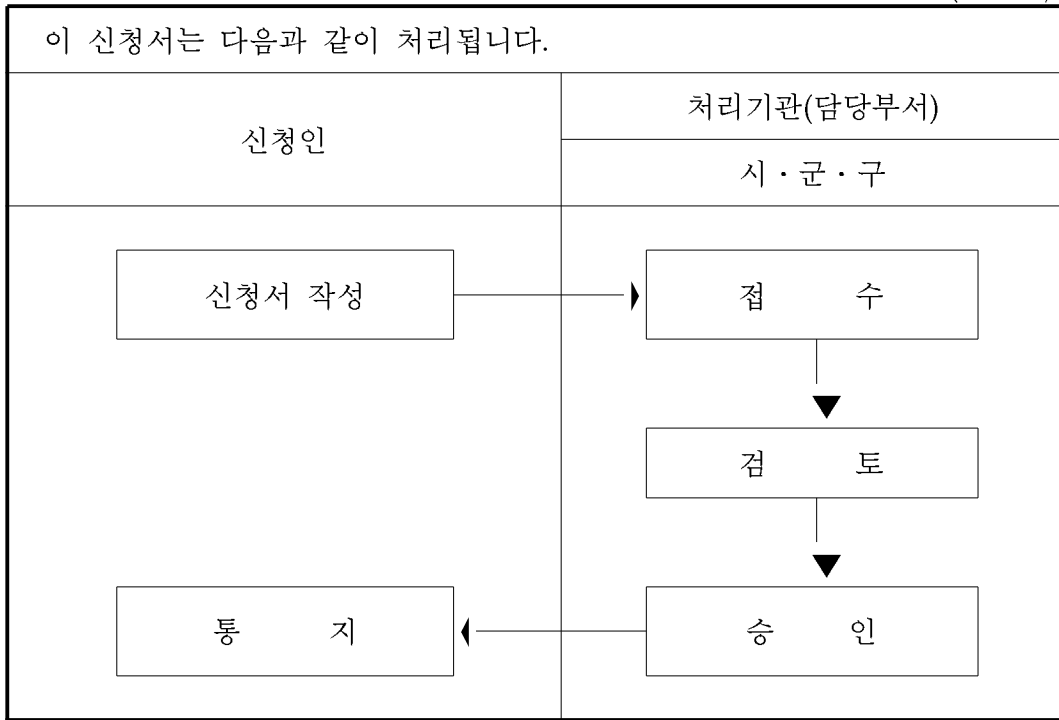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앞 쪽)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농어촌마을 건설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가목) <input type="checkbox"/>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나목)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추진위원회 설립 내역	설립 목적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 명칭		구역 면적	(㎡)	
		위치				
동의 사항	토지등 소유자 수	(토지소유자 : (건축물소유자 : (지상권자 :	명) 명)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토지등소유 자 수)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명부 및 동의서 2.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뒷쪽)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설립인가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 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	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없음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 지	←	인 가		

[붙임]

마을정비조합 규약(예시)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마을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마을조성사업의 명칭은 ○○마을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조(목적)** 조합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대지 위에 조합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을 갖춘 전원마을을 조성하며, 공동체 생활로 협동심을 기르고 소규모 영농생활을 통하여 농촌을 이해하며 친환경적인 삶의 체험으로 건강을 얻고 보람과 행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마을정비구역)** 조합의 마을정비구역은 ○○시·도 ○○시·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로서 토지의 총 면적은 ○○,○○○㎡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법령 및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제외되는 토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을정비구역과 토지의 총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사무소)**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 ○○읍·면 ○○리 ○○번지에 둔다.
②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 제5조(시행방법)** ①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검토, 설계자·시공사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법 제56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조합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 공고 방법) ①조합은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 ·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 · 공고방법은 이 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게시할 수 있다.

【주】 조합이 조합원의 권리 · 의무 변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성실히 고지토록 하여 조합원이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고 사업추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권한남용이나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여건에 따라 조합사무소의 게시기간, 열람기간, 등기우편 발송횟수, 통지갈음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달리 정할 수 있음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 ·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규약의 변경) ①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시행계획 신청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1의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주】 조합설립당시 사업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여건변동 등으로 참여를 원할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전까지는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을 가급적 보호하도록 한 것임.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부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규약

②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③1세대로 구성된 세대원이 각각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2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④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

⑤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다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

⑥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 · 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주】 조합원의 부재, 유고 등으로 조합원의 권한을 대리로 행사하는 경우에 자격 등에 대한 분쟁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임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주】 전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양도되는 경우가 많으나 제때에 신고가 되지 않아 조합원과 조합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한 것임.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조합원이 소유권 등 권리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주】 조합원이 권리나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경우 또는 관계법령 및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조합원의 자격이 조합내부의 별도 절차(총회, 이사회 의결 등)나 행정절차(변경신고, 인가등)를 받을 때까지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임

③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 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주】 소수의 조합원이 의무 등을 불이행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조합이 이를 남용할 소지도 있으므로 청문 등 소명 기회를 부여토록 한 것이다.

④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주】 조합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탈퇴를 인정하되 개인사정에 따라 빈번하게 탈퇴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으므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한 것이며, 총회에서 의결할 것인지 이사회에서 의결할 것인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수, 단지 규모, 탈퇴가 조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제 3 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관련법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 조합과 시공자간의 계약은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사업추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고 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

도 총회의 의결로 하는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므로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등은 이사회 의결 등으로 할 수 있을 것임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재산 일까지 조합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④제2항의 계약내용에는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선정된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②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①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자”는 각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②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처분 등을 통지받거나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 당해 업무계약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인
3. 감사 ○인

【주】 조합장 1인과 3인 이상 5인 이하(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와 1인 이상 3인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중에서 이사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 소집요구권을 감사, 이사회, 조합원에게 부여하여 부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기할 수 있도록 함.

⑤감사는 제4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전에 관해 (상근)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
3.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⑦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주】 상근임원의 종류 및 상근임원의 업무범위·권한·의무, 유급 직원의 수 및 직함, 업무내용 등을 별도의 인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이나, 조합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인사규정이 없이 규약에 직접 정할 수도 있을 것
임

⑧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이 통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군수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조합장(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는 발의자 공동명의로 한다)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조합장이 해

임 대상인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주】 임원이 직무대만, 부정 등으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업무공백이나 부작용이 없도록 그 절차를 정한 것임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주】 유급직원에 대한 보수는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보수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고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나, 조합의 규모에 따라 규약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직접 규정할 수도 있음

제 5 장 기 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 ·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범위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주】 조합의 내부 사정에 따라 정기총회 일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총회소집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3월 범위내로 한 것임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

【주】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이사 또는 감사에게 총회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이때, 총회소집요구 정족수는 조합원수, 조합의 규모 등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을 것임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 · 안건 · 일시 · 장소 ·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⑧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규약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율 및 상환방법
3.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철거업자 · 시공자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 선임 및 해임(임기중 쫓겨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청산금의 징수 · 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3.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주】 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된 규약 조문, 계약관계 및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총회에서 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밖의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사항 등 주요 사항을 조합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음.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규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 제○조, 제○조제○항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 3.....

【주】 조합원의 재산권·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조합원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발취하여 개의요건 및 의결정족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요한 규약의 개폐,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음

③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전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사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규약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 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5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상정안건의 심의 · 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7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조합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향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명부와 그 피선거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제 정

제29조(조합의 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예산 ·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 · 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 · 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사업시행계획 승인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승인일부터 20일 이내
3. 준공검사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검사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 군수에게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1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

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 · 면적 · 이용상황 ·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금융기관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주】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등 정비사업비의 납부 및 이의 연체에 대한 조합의 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어 조합원이 이를 숙지토록 하고, 일부 미납자로 인한 다수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2조(사업시행계획의 동의)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경미한 변경의 경우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3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주】 이주비에 있어 차입대상에 따라 조정 가능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 등에 입주시까지 시공자(또는 금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주】 소수 조합원의 의무불이행으로 사업지연 등 다수 조합원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이 있음을 미리 모든 조합원이 숙지토록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임

제34조(지장물 철거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 · 전기시설 · 급수시설 ·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제35조(보상의 예외 등) 사업시행구역안의 철거되는 일체의 지장물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제36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 달성을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 ·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 · 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매도청구 등) ①조합은 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 결의는 조합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시 매도청구의 소에 관한 조합측 당사자는 조합장에게 있다.

제38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

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정평가액은 조합이 정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소유의 토지 또는 주택 등으로 보며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한다.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39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2 또는 1)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내용
2. 사업의 종류 ·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 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시 ·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주】 분양신청·계약 및 이와 관련한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을 철저히 고지·공고하도록 하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청산토록 명시하고 있는 바, 조합은 선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지방법을 강구 할 수 있음

제40조(분양신청 등) ①제39조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 한다. 그 금액은 조합이 정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수립 후 ○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 관리처분계획수립 후 조합은 분양계약체결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일정기간을 정할 수 있음.

제41조(보류지)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분양하는 주택 및 토지, 부대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건축물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3.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평형별로 확정한다.
4. 조합원에 대한 신축건축물의 평형별 배정에 있어 조합원 소유 종전건축물의 가격·면적·유형·규모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5.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의 분양대상면적과 사업시행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평형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부과 및 지급은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사업시행구역 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 하여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7.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하며, 그 잔여주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8.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9. 부대·복리시설(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 나. 종전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일 것
 - 라.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10. 종전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1. 분양예정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2.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규정 등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43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시 권리의무에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은 자는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제출서류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정확히 숙지토록 하기 위하여 동 내용을 추가로 규정한 것임

제44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2. 주택 및 토지지분면적 등 분양대상 물건의 명세
3.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제출 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공람·공고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합당한 의견일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임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의 대지추첨방식은 총회에서 정하며,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을 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3.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관리처분계획수립일
5. 분양대상자별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②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이전고시일”이라 한다)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 장 완료조치

제46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조합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입주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중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매입자가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이전고시 등) ①조합은 공사의 완료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토지 및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49조(등기절차 등) 조합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50조(청산금 등) ①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

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다만, 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7.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51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최종일로부터 1월 이내 시장·군수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한다.

③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52조(조합의 해산) ①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하며, 해산을 의결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③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53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54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55조(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 ·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 ·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56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공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자료의 특성상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1. 규약
2. 설계자 ·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3. 총회의사록
4. 추진위원회,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관리처분계획서
7. 당해 사업의 시행에 관한 행정기관의 문서
8. 회계감사결과

②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에는 속기록 ·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7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규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58조(마을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규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9조(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총회에서 해석한다.

【주】 이 규약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석에 관한 권한을 미리 규

정한 것으로, 이사회,총회의 해석에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관할 행정기관의 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임

제60조(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61조(민법의 준용 등) ①조합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민법,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 · 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규약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규약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약은 ○○시·군의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마을정비조합 가입동의서

1. 토지 및 주택 구분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2. 소유토지 및 주택 구분소유권 현황

소유권 위치			
등기상 건축물지분	m ²	등기상 토지지분	m ²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토지면적 (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	규 모	기 타
m ²	m ²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 거 비	신 축 비	기타사업비용	합 계

다. 나목의 비용의 분담사항

- (1) 조합규약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계획수립후 분할징수· 지급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 (2)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규약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
- (3) 시공자에 지급할 공사금액 및 사업 관련 제반비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를 한 조합원분담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함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1) 조합규약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며,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 결정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대지위치결정은 조합규약 제__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 등에 의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에 따름

- (2)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하여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합규약 제__조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 (3)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함
- (4)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함
- (5) 토지 및 건축물은 사업완료 후 입주조합원에게 개별등기함

4. 조합장 선정동의

본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규약에 따라 선출된 자를 조합장으로 하는데 동의함

5. 조합규약 승인 동의

조합규약에 동의하고 그 조합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준수하며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규약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를 것에 동의함

*** 조합규약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함.**

6. 사업계획 동의

○○마을정비조합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안)(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계획서(안)와 같이 마을조성사업을 하기로 동의함

7. 동의내용

위와 같이 본인은 ○○마을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안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마을정비조합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3호의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는 사업시행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 사업비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내용이 변경되거나 이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추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변경키로 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서 제출없이 본 동의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첨부 : 조합원 인감증명서 1통.

(사용용도: 조합설립, 조합규약, 사업계획동의용)

년 월 일

위 동의자 :

(인) 인감날인

○○마을정비조합 귀중

<별지 2>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소유권 위치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m ²	등기상 토지지분(면적)	m ²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고 ○○마을정비조합과 관련한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자(선임수락자)

성 명 : (인) 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위임자(동의자)

① 성 명 : (인)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② 성 명 : (인)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③ 성 명 : (인)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첨부 : 대표자 및 위임자 인감증서 각1부

○○마을정비조합 귀중

제3장

입주예정자 모집 및 분양

가. 입주예정자 모집

- 모집 시기 : 사업신청 전
 - 다만, 사업신청전에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지구는 기반시설 시행중 또는 완료후 모집 가능
- 모집 최소가구수(사업 신청전) : 20호, 총계획가구수의 80%, 도시민 50%(모두 충족하여야 함)
- 모집 방법 : 사업시행 유형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실시
 - 공공기관 주도형은 웰촌포털사이트, 귀농귀촌센터, 향우회 소식지, 홈페이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블로그, 언론광고 등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한 모집

나. 분양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함).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분양방법 : 사업시행자는 조성용지와 주택 등을 일괄하여 분양하여야 하 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에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성용지만 따로 분양할 수 있다.**
 - 다만, '10년 이전에 선정된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성용지의 1/3범위 내에서 조성용지만 따로 분양(개별 건축)할 수 있다(단, 공공기관이 입주자를 2/3이상 확보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와 건축업자가 주택건축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주택건축담보가 될 경우에는 개별 건축 허용 가능 : 조성용지와 주택등을 일괄 분양한 것으로 봄)
- **분양시기 : 사업시행자가 농어촌 주택 등을 공급할 경우에는 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마을정비계획에서 분양 또는 임대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분양공고 : 사업시행자가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신청 접수 개시 7일 이전에 공고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사업시행지역 안의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분양신청 및 접수 :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 접수 마감일 까지 분양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분양가격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분양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분양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당첨자 선정

농어촌 주택 등의 당첨자 선정은 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하되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합이 있는 필지는 추첨에 의하며, 선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차순위 해당자에게 분양한다. 사업시행자가 당첨자를 추첨할 때에는 분양신청자 3인 이상과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 당첨자 발표

사업시행자는 당첨자 선정 즉시 개별 통보하고, 명단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시행지역 안의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당첨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분양신청자 중 당첨되지 아니한 자의 분양신청금은 당첨자 선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 계약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

- 계약체결

사업시행자 또는 위탁사업자는 표준분양계약서를 참조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할 수 있다.

○ 분양대금 납부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대금은 분양신청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는 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주택 및 기타시설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축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중도금, 잔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융자금 대출에 대한 청구 및 수령권한을 입주예정자로부터 위임받아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분양대금의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분양계약의 해제

사업시행자는 입주 및 분양예정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을 해제할 수 있다.

○ 납부지연 이자

입주예정자 및 분양자가 약정기일내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위약금 및 분양대금의 반환

분양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마. 농어촌 주택 등의 전매 제한

○ 전매 제한

마을조성사업의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 다만,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농어촌정비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조성용지를 공급받을 사람이 이혼으로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6.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환매 특약

마을조성사업의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용지의 공급 당시 가액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조성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

[붙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
제 정 2009. 8. 31.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126호
개 정 2009.12. 10.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17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2. “조성용지”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공급되는 용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3. “건축물”이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한 조성용지에 건축법 제2조에 의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4. “농어촌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호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그 밖의 시설물”이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제2장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제3조(분양계획 수립) 사업시행자는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이하 “농어촌 주택 등”이라 한다)의 분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양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
3. 분양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
5. 분양신청 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분양방법 및 분양시기) ① 사업시행자는 주택등을 분양할 경우 함께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에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성용지만 따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사업시행자가 농어촌 주택 등을 공급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서 분양 또는 임대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5조(건설원가 산정) 농어촌 주택 등의 건설원가는 원가산정시점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집행액과 집행예정액 및 부대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구성요소와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 < 삭제 >

제7조(분양가격의 결정)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제5조에 따른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제8조(분양가격의 차등적용) (삭제)

제9조(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할 때에는 주택은 1세대 1주택(필지), 주택 이외의 시설물은 분양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1세대 1개 시설을 원칙으로 분양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한 농어촌 주택 등을 별표2에 따라 분양하고,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조성용지로 분양할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분양대상자가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분양 받고자 할 경우, 주택을 우선순위로 분양받은 자는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실한다. 또한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분양받은 자는 주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실한다. 다만, 당해 사업시행 전 사업지구 내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시행계획고시일 이전 1년 이상 영위 하던 자는 주택과 기타시설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갖는다.

제10조(분양공고) 사업시행자가 놓어촌 주택 등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 신청 접수 개시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사업시행지역 안의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 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
2. 분양 대상자의 자격
3. 분양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
5. 분양신청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분양신청 구비서류
8.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9. 계약체결 불이행시 조치사항
10.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11. 분양신청금 환불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분양신청 및 접수) ① 놓어촌 주택 등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분양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분양가격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분양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금 납부필증
 2. 주민등록등본(분양모집공고일전 1개월 내에 발행한 것)
 3. 인감증명서 1통(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무주택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5. 기타 우선순위 입증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분양신청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수납하게 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분양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접수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첨자의 선정) ① 농어촌 주택 등의 당첨자 선정은 제9조의 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합이 있는 필지는 추첨에 의하며, 선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차순위 해당자에게 분양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당첨자를 추첨할 때에는 분양신청자 3인 이상과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3조(당첨자 발표) ① 사업시행자는 당첨자 선정 즉시 개별 통보하고, 명단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시행지역 안의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당첨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분양신청자 중 당첨되지 아니한 자의 분양신청금은 당첨자 선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분양관리

제14조(계약체결) ① 사업시행자 또는 위탁사업자는 별표4의 표준분양계약서를 참조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 접수증
2. 계약금 납부필증
3.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 계약용으로 계약체결일전 1개월내에 발행한 것)

③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분양대금의 납부) ①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대금은 분양신청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10으로 하고, 계약체결시 납부 하여야 한다. 단, 기납부한 분양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60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잔금은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최종준공에 의한 정산금액으로 하며,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잔금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는 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③ 주택 및 기타시설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축에 지원되는 용자금 은 중도금, 잔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용자금 대출에 대한 청구 및 수령권한을 입주예정자로부터 위임받아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분양대금의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조건 등) ①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가격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주택 등의 용도(종류), 모형, 평형, 위치에 관한 사항
3. 분양대금의 연체에 관한 사항
4. 해약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5. 제세공과금, 등기비용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분양계약서는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의 해제사유를 명기 한다.

제17조(농어촌 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등의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조성용지 준공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착공 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약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등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건축시 농어촌주택 표 준설계도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주택건설 용자금)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용지를 분양받아 건축을 하는 자에게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한 용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농어촌 주택 등의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 사업시행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주택 및 그밖의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사용승낙은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승낙을 할 수 있다.

제20조(분양계약의 해제)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 및 분양예정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받은 경우
 2. 공공시설용지, 기타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된 농어촌 주택 등을 시행자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분양받은 조성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분양하는 경우
 4. 계약체결후 중도금 납부기한일 이후 2개월 이상, 잔금을 입주 지정일 또는 납부기한일 이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양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
 6.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7. 잔금 납부전에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한 경우
 8. 입주예정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재산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승계토록 할 수 있다.
 9.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정으로 다른 시(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0. 실직,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 및 시설물이 있는 시(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13.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이전에 전매 행위를 한 경우(명의변경,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와 영업상의 사정등 대통령제65조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함)
 14. 기타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6호 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분양받은 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해약을 요구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납부지연 이자) 입주예정자 및 분양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 기일내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인정 하는 경우

제22조(위약금 및 분양대금의 반환)

- ①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분양신청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 ②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3호 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위약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20조제1항제8호 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분양대금의 전액(원금과 연체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예치이자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제23조(농어촌 주택 등의 전매제한) ① 농어촌정비법 제70조제1항에 의거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 다만,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조성용지를 공급받을 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

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6.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4조(환매특약)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용지의 공급 당시 가액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조성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25조(미분양 농어촌 주택 등의 재분양) 사업시행자는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미분양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할 때에는 최초의 분양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신문공고는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다음 각호의 비용은 입주예정자 및 분양받은 자가 부담한다.

-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주택 등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 3. 건축물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 등

제27조(미분양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촉진) ① 사업시행자는 최초 분양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촉진을 위하여 당초의 분양조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중도금 납부기한 변경 또는 중도금의 일부 및 전부를 잔금에 합산 납부
 2. 중도금·잔금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분할납부
 3. 당해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주에게
사원주택 등의 마련을 위하여 용지분양
 4. 당초 지정된 용지의 용도변경
- ② 제1항의 분양조건 조정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상 미분양이 발생한 때에는
주택등의 건축시공업체에게 희망필지수를 분양가격을 조정하여 분양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8조(기타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실정상 불가피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
하는 조항을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고, 그 사유를 첨부
하여 사업시행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주택관련법규에 따른다.

제29조(분양가격 결정특례) 사업시행자는 분양가격 결정시 분양예정가격이
인근지역의 토지(대지)가격에 비하여 높아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
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양가격을 조정
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 하여
분양가격 조정
2. 사업시행전에 도로 및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된 토지를 무상양여하여 분
양가격 조정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
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
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순위 및 분양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사업시
행계획을 고시하고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중전 훈령의 폐지) 중전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제1024호)은 이 훈령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순위 및 분양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고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농어촌 주택 등의 건설원가 산정기준표(제5조관련)

구 성 요 소		내 용	비 고
용 지 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실집행금액 또는 집행예정금액
공 사 비	토 목	단지내 대지조성, 조경공사비(상·하수도 도로 등 포함)	이 하 같 음
	건 축	건축공사비	
	전 기	옥내외 전기, 전기·통신시설공사비	
	기 계	옥내외 급수, 위생, 소방시설공사비	
	공동이용 시설 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및 부대시설공사비 등	
부 대 비	기본계획 수립비	단지조성공사 기본계획수립비	
	세 부 설 계 비	단지조성공사 세부설계비 건축공사 세부설계비	
	공 사 감 리 비	단지조성공사 공사감리비 건축공사감리비	
	사 업 관 리 비	공사, 용지매수 및 보상, 주택분양 등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잡 지 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제경비 (제세공과금, 건설자금이자, 판매비, 건설 간접비, 일반관리비, 직접인건비, 예비비 기타 그 밖의 비용)	

[별표 2]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제9조관련)

구 분	분양대상자 및 우선순위	비 고
1. 단독·공동주택의 분양 및 단독주택 용지 분양	○ 제1순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 수의계약분양
	○ 제2순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된 소유 토지 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단, 대지의 경우 90제곱미터이상, 대지이외의 경우 300제곱미터이상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 제3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이 시행된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거주 세대주, 다만 사업시행자는 농촌거주 희망 도시민 세대주에게 계획가구수의 일정비율을 우선분양 할 수 있음	
	○ 제4순위 :분양공고일 현재 당해사업이 시행된 읍·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 제5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 제6순위 :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 도시민이란 분양공고일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를 말한다.

구 분	분양대상자 및 우선순위	비 고	
2.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	○ 제1순위 : 당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지구내에서 해당시설물을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던 자 또는 법인·단체 및 이주대책 대상자(단, 세입자는 제외한다)	- 수의계약분양	
	○ 제2순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된 소유 토지 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단, 대지의 경우 90제곱미터이상, 대지이외의 경우 300제곱미터이상 양도한 경우에만한다)		
	○ 제3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당해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단 경합이 있을 경우 무주택세대주 우선 분양 가능		- 감정가격이상으로 경쟁입찰 가격(경쟁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 제4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단 경합이 있을 경우 무주택세대주 우선 분양 가능		
	○ 제5순위 :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3. 공공업무시설 용지 등	○ 제1순위 : 당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지구내에서 해당시설물을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던 자 또는 법인·단체	- 수의계약분양	
	○ 제2순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4. 일반업무시설 용지 등	○ 제1순위 : 당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지구내에서 해당시설물을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던 자 또는 법인·단체	- 수의계약분양	
	○ 제2순위 : 농·수·축협등 농어민관련 단체와 기타용지를 필요로 하는 자 또는 공공단체·법인		
5.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용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별표 3]

공동주택건설용지 분양대상자와 분양우선순위(제9조관련)

구 분	분양대상자 및 우선순위	용지가격
공동주택 건설용지	○ 제1순위 : 당해 시·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주로서 소속근로자의 국민주택 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용지를 신청하는 자	
	○ 제2순위 :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등을 결성하여 용지를 신청하는 자	
	○ 제3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 건축업 등록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별표 4]

농어촌 주택 등의 표준분양계약서(안) (제14조관련)

- 주택 등의 표시 : 도 시·군 면 리 - 번지(번필지)
- 분양대상

공 용 면 적 (필요시)	대 지 면 적	주 택 면 적 (필요시)	비 고
㎡	㎡	㎡	
₩ 원	₩ 원	₩ 원	계 : ₩ 원

위 표시의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분양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① “갑”은 위 표시 주택 등을 분양대금 _____원정(₩)으로 “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그 대금을 아래 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주택 등의 분양대금 및 계약금

(금액단위 : 원)

면적(㎡)	분 양 대 금		계약금(10%) (입주신청금포함)	잔금 (90%)
	㎡당	계		
필지:				
주택:				

- 주택 등의 잔금 납부시기

(금액단위 : 원)

구분	납 정 부 일	납부금액	할부원금 잔 액
계약금(A)			
중도금 (B)	1차		
	2차		
	·		
	계		
잔금(C)			
계(A+B+C)			

② “을”은 제1항에 정한 대금을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을”은 그 체납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분양계약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연체료면제가 불가피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분양용지가 멸실, 훼손 또는 유실되어 “을”과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계약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갑”이 판단될 경우

③ 이 계약서에 표시된 주택 등의 면적이 지적확정결과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계약시의 단가에 의하여 준공시 증감한다.

제2조(조성용지의 사용)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을”이 지정한 용도의 주택 등 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계획을 감안, 공사 준공전이라도 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제3조(조성용지의 분양조건 및 농어촌 주택 등 건축기준) ① 농어촌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을”은 조성용지 준공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착공 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1년 이내까지 주택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현상공모하여 선정한 농어촌주택모델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단독주택 표준설계도서 또는 법적 자격을 갖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갑”은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등 행정기술사항을 적극 지원하며, 공공 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한 현장관리, 기타 양질의 시공관리를 위해 적극 참여한다.

④ “을”은 주택 등의 건축을 계획할 경우 마을전체 경관계획 및 농촌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하고 계획 수립시 제시된 경관계획 가이드 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분양용도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① “갑”은 농어촌주택 등을 준공하고 “을”이 제1조의 분양 대금 전액 납부 후에 농어촌 주택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소유권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① 주택 등의 사용승낙 이후의 제세공과금과 소유권이전 및 환매특약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 이후의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을”에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갑”은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받은 경우
2. 공공시설용지, 기타 “을”에게 분양된 농어촌 주택 등을 “갑”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을”이 분양받은 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분양하는 경우
4. 계약체결 후 중도금 납부일 이후 2개월이상, 잔금을 입주지정일 또는 납부일 이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양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6.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7. 잔금납부전에 “을”을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한 경우
8. “을”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재산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을”의 권리를 승계토록 할 수 있음
9. “을”이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정으로 다른 시·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0. 실직,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지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1. “을”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이 있는 시·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13. 주택등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전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분양필지를 환매 할 수 있음

14. 기타 “을”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갑”이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을”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해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3호 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납부하거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금이 “갑”에게 귀속되며, 제1항의 제8호 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납부된 분양대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이 주택 등을 훼손하였거나 또는 불성실한 관리로 조성용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을”이 직접 원상복구하거나 “을”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계약해제 시 제3항의 위약금 및 제4항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을”로부터 납부받은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 반환한다.

제7조(하자보수) ① “갑”은 주택 등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준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 참고 : ○○마을조성사업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은 ○○시·군이, 그 이외의 시설은 ○○마을정비조합에서 보수책임을 진다.

② “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③ 준공당시 시공상태에서 입주자가 임의변경, 시공한 부분에서의 하자보수 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8조(통보의 의무) ① “을”은 이 계약체결 후 주소변경이 있는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양자의 “을”에 대한 계약해제 통고 등 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효력발생사항의 통지에 대하여는 이 계약서상의 주소(“을”이 제1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발송 후 7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달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기타 사항) 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한 후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갑”(분양자) :

○ “을”(피분양자)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본 표준분양계약서(안)는 표준서식이므로 분양 시설물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것

가. 사업제안서(신청서)

- 입주예정자는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전원마을(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그림 IV-1. 마을조성사업 추진 절차) 시·군 담당자와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시장·군수는 동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마을조성의 취지와 사업지구 선정기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규지구의 사업성검토 대상지로 신청함.
-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마을정비조합이 인가되면, 마을정비조합은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와 마을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마을정비계획서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필요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마을정비조합이 제출한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와 마을정비계획(안)을 감안한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함
- ※ 마을정지구역 지정절차 등 : (그림 IV-1. 마을조성사업 추진절차)
- 사업제안서에는 예정지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6조 등 참조)
 - 마을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
 - 마을정비사업 대상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용도구역 지정 상황, 입주예정자 모집 상황
 - 마을정비사업 계획서(안)
 -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관한 서류

[표 IV-6]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예시

마을정비사업(전원마을조성)제안서 (예시)								
사 업 명	○○마을조성사업				추진 방식	입주자주도 () 공공기관주도 ()		
사업 후보 지역 개요	위 치	○○도 ○○시·군 ○○읍·면 ○○리						
	면 적	㎡ (토지 확보 ㎡, %)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용도지역 현황(㎡)	용도별	계 (100%)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 보전지역(%)	-
토지소유 현황(㎡)	면 적	입주예정 자	국유지	시·군유지	기타			
사업 개요	계획 가구수	○○○가구(입주 예정자 확보: 가구, %, 도시민: 가구, %)						
	소요 사업비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사업 시행자	기반시설 : 주택건축 :	사업예정 기간					
	주요 사업내용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커뮤니티센터 등) :						
	주택 건축계획	- 공공기관, 마을정비조합에서 동시에 일괄 건축 : 가구 - 개인별 주택 건축 : 가구						
	기타 특이사항	- 마을정비조합설립 여부 :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 여부 : - 문화마을, 전원마을 추진 등 :						
마을조성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제안자(대표) : (인) ○ ○ 시 장(군수) 귀 하								
< 별첨 > 1. 마을정비조합 설립 인가서 2. 마을정비(전원마을조성) 계획서(안) 3. 마을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 4. 마을정비사업 대상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마을정비사업 계획서(안) 6. 사전환경성 검토서 7. 문화재지표조사 등								

나. 마을정비 계획서

- 마을정비조합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는 마을정비 제안서 중 마을정비 사업계획서(안)에는 사업의 개요,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 부문별 개발계획, 사업계획, 마을의 운영·관리계획 및 공동체 형성계획, 건축계획, 관련 행정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시장·군수가 마을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위해 수립하는 마을정비계획에 포함하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제101조).
-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
-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지역특화발전예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
- 마을회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 마을공동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지역, 농업진흥지역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 제약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해소가 가능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기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마을하수처리시설 계획은 소규모하수도통합지침(환경부)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을조성사업 업무 담당부서로 하여금 하수도 업무 전담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할 경우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군수 또는 입주예정자가 부담한다.

[표 IV-7] 마을정비계획서 작성(예시)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추진배경	
	비전	마을이 추구하는 개념 및 비전 등
	사업위치	
	사업면적	m ² (토지 확보 : m ² , 확보율 %)
	입주계획 세대 수	세대 (도시거주 세대, 농어촌지역 타 시군거주 세대, 동일 시군거주 세대)
	총사업비	백만원(기반시설 , 주택건축 , 기타)
	사업기간	
	사업시행 예정자	* 시장, 군수, 농어촌공사, 마을정비조합, 지방공기업 등
개발여건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기존 문화마을, 신규마을 주택건축 및 사업추진현황
	토지확보현황	-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 공공용지의 경우는 동의서 첨부) - 토지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입주예정자 현황	입주자확보(예정자)현황, 계획, 입주희망자 조사내용 및 결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관련법규 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전원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기본구상	기본목표 및 개발방향	농촌주민, 은퇴자, 출향민 등의 농촌정주 유도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주거공간 확보
	계획지표 설정	계획대상지의 인구, 상수도 급수량, 오수량 등 전반적인 개발지표 및 수요파악
	동선체계 구상	부지 및 지형여건에 맞는 동선체계 구상
	토지이용계획	주택용지, 공공용지(세부내역별) 등을 구분, 면적과 비율 제시(표) 마을의 장기발전방향, 지역특성 및 전통문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용도별 배치계획 및 배치도 제시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부문별 계획	택 지	기본방향, 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도 로	기본방향 및 설계기준 적용,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상 수 도	기본방향 제시, 필요수량 산출,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 계획
	하 수 도	기본방향 제시,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주택계획	주택배치 기본방향,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주택건축 방법, 주택의 형태·규모·높이 등 제시, 태양열, 태양광, 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는 입주자가 제출한 주택계획 등을 참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경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경관) 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별·요소별 색채계획(주택포함),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단지배치 등 (환경보전) 소음·먼지 등 공사중 대책, 오폐수 처리 등 입주후 처리시설 및 관리대책
사업비	생활지원서비스 및 마을공동체 형성	입주자를 위한 소득, 지역융화 프로그램 계획, 생활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사업비의 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입주자 부담
	사업의 예정기간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운영 관리 계획	전원생활프로그램	교육·의료·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경관계획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마을조성사업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공동체 형성 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일거리 창출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 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 시 제재 조치방안 등
	기 타	마을정비조합설립 인가서, 서 협의 내용,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물권·권리명세서 등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5-1.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

가. 마을정비구역 개요

- 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나.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

-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면 마을정비계획을 수립(입주자 주도형의 경우 마을정비조합이 제출한 마을정비계획안을 토대로 수립)하여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참조).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2.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
 5.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7.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10.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필요시)
 11.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필요시)

12.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필요시)
 13.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필요시)
 14. 지역특화발전제에 관한 사항(필요시)
 15.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6.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17.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
 19. 마을회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 마을공동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20.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이전에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 조사 등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입주자 주도형의 경우 마을정비조합은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첨부).
 - 시장·군수는 마을조성사업관련 시행지침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며, 시장·군수는 보완·검토 후 도지사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함.
 -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 의견서(관련부서 의견 첨부)
 - 정비구역 위치평면도(1/25,000 지형도) 및 국토이용계획도(1/5,000 지형도)<각 4부>
 - 토지이용계획
 - 매수 또는 수용하여야 할 토지조서
 - 마을정비계획(환경성검토서 및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첨부 : 필요시)
 - 사업비 확보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5-2.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시 확인사항

가. 사전환경성검토(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이나 개발사업(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개발사업을 말함)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할 때,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수립 및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마을조성사업의 근거가 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역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준하여 시행 한다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표 IV-9]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비교

구 분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상규모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계획	면적20ha 이상 구역조성사업
협의요청시기	시·도지사가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전 지방환경청장에게 협의	농식품부 장관이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전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요청
총 기간	3개월 이상	1년 이상
사업비(추정)	약 4,000만원	1억 원 이상
협의기간	30일 이내(10일 연장)	45일 이내(15일 연장)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3ha 이상이면 납부 대상	모두 납부 대상
주요 평가항목	-대기환경 분야 : 대기질 -수환경 분야 : 수질 -토지환경 분야 : 토지이용,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 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생활환경 분야 : 친환경적 자연순환, 소음, 진동, 위락, 경관, 일조장해 등	

나. 문화재지표조사(마을정비계획 수립 시)

문화재지표조사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유무형의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개발사업의 입안 시에 반드시 실시하여 추후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사업 손실을 막고,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화재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 3만㎡ 이상인 건설공사나 또는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해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지구내 매장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문화재보호법 제62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해 문화재지표조사를 할 수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지표조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고시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에서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지표조사기관 중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관을 선정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한다.
- 지표조사 완료 후 지표조사 담당 기관은 조사의견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한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게 된다.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시행계획 수립 시)

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해야 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

-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한다.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발관련 행정계획·개발사업이 협의 대상인지, 협의 시기가 적정한지 등의 기본여건을 검토한다. 또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성 검토항목을 참조하여 자연재해 담당부서와 필요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지방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토 결과를 협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 기한은 부득이한 경우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6-1. 시행계획 수립개요

가.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마을정비조합 등)는 마을정비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부터 주택건축까지 일괄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음. 다만,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함
(다만, 사업대상지가 20만㎡ 넘을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 전원마을(신규마을) 조성 사업시행계획서는 앞에서 서술한 마을정비계획서에 세부설계도서 및 유지관리·처분계획서 등을 첨부하되, 농어촌정비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1. 사업의 명칭
 2. 사업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 기간
 7. 사업시행자
 8. 사업 효과
 9. 세부 설계도서
 10.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 12-1. 농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 12-2. 그 밖에 시장·군수가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시행계획에는 마을의 운영 및 관리, 공동체 형성 등 아래 표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된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며, 사업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편입될 때는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완료시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표 IV-10] 전원마을(신규마을)조성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예시)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위치	
	주요사업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사업효과	
개발 여건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 교통, 상하수도, 기존 문화마을, 신규마을 주택건축 및 사업추진현황
	토지확보현황	-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 공공용지의 경우는 동의서 첨부) - 토지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입주예정자 현황	입주자확보(예정자)현황, 계획, 입주희망자 조사내용 및 결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관련법규 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전 원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부문별 계획	택 지	기본방향, 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설계도 첨부)
	도 로	기본방향 및 설계기준 적용,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설계도 첨부)
	상 수 도	기본방향 제시, 필요수량 산출,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설계도 첨부)
	하 수 도	기본방향 제시,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설계도 첨부)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설계도 첨부)
	주택계획	주택건축주체, 주택건축방법, 주택건축일정, 주택배치도, 주택유형별 건축 세부 설계도, 주택 동수, 동별 개요 *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경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경관) 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별·요소별 색채계획(주택포함),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단지배치 등(설계도 첨부) (환경보전) 소음·먼지 등 공사중 대책, 오폐수 처리 등 입주후 처리시설 및 관리대책	
사업비	사업비 명세서	총사업비, 공종별 사업비(부분별 소요사업비를 기재하되, 기반시설과 주택건축 구분)
	재원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등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공종별(부분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
공정계획		부분별 공정계획
분양 계획	분양시설물 내역	분양 범위, 분양가격
	분 양 방 법	분양공고, 분양대상자 자격, 분양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신청절차 등
운영 관리 계획	전원생활프로그램	교육·의료·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경관계획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공동체 형성 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일거리 창출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 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법령·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 시 제재 조치방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도로, 공용 시설 등 기부채납관련 처리방법 등.
기타		마을정비조합설립,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 내용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물권·권리명세서 등

※ 세부설계도서 : 부분별 계획을 일괄하여 작성 가능

6-2. 사업주체별 업무

가. 입주예정자가 할 일

입주예정자는 부지정리 및 주택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한다.

- 주택건축계획은 주택배치도, 주택건축 방법, 주택 건축비, 주택건축 일정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한다.
- 주택계획 등에 관한 세부설계도서(주택 연면적 100㎡ 이하로서 신고에 의해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택평면도 및 배치도)를 포함한다.

나 사업시행자가 할 일

사업시행자는 마을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단지조성, 부지정리 및 주택 건축 등의 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자가 추진하거나 부담해야 할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 추진일정 및 공정계획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와 사업시행자간, 사업시행자와 마을정비조합간 사업추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농어촌정비법 제115조)
- 시행계획 승인신청 이전까지 입주자를 100% 모집하여야 하며, 다만 계획된 전체 주택을 일괄하여 동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모집계획 대비 80% 이상 모집되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가능하며, 이때 미모집 입주자는 조합규약 등에 따라 잔여가구의 추가모집이 가능하다.

6-3. 시행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가. 기반조성

(1) 단지조성

- 주변의 지형·지세, 자연환경, 기존마을의 도로 및 시설물 등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로망 및 택지분할·배치 계획을 수립하며 녹지공간 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마을 전체의 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창출되도록 계획한다.
- 기존마을과의 교류·화합을 유도하면서 장기적인 마을발전에 부합하도록 계획하며 주변지역 자연환경 보전과 경관축·녹지축·생태축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 상호접근성을 감안하여 택지와 단지 내 도로 사이의 단차를 최소화하며 택지 기울기는 원지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단지 내 도로계획은 기존마을의 동선체계, 우·오수배제, 시설물 설치, 택지 효율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수립한다.
- 커뮤니티센터, 공원, 쉼터 등의 공동이용시설은 마을 입주민들과 기존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공간으로서 연계·활용·유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를 드러내며, 양호한 경관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마을의 경관형성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한다.

(2) 정지 및 토공

- 정지 및 토공 계획은 주변의 지형·지세, 자연환경, 기존마을, 토지이용, 도로 및 시설물 등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로망 및 택지분할·배치 계획을 수립하며, 단지 내 기존지형의 지반고 및 경사도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원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 활용도·주거환경·경관형성 등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성토량 및 그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 정지계획 시에는 도로와 택지와의 상호접근성을 고려하여 단차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로에서 택지로의 진·출입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주거용지는 가급적 원지형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주위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는 지구 바깥의 기존배수로를 통하여 배수하는 계획을 병행하여 토공계획을 수립한다.
- 택지와 택지 사이에서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연사면으로 계획하며, 택지 기울기는 시공 후의 배수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 이내로 계획한다.
- 녹지·사면은 주위 도로나 택지 계획고를 감안하여 정지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전체의 경관형성에 활용한다.
- 정지토공은 원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절·성토량 및 순성토량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3) 도로계획

-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며 주택배치·주변경관·환경보전 및 지역발전과 지역주민·관련기관·경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기설 도로망과 연계하여 상호 교통흐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단지 내 도로는 토지이용계획과 택지·공동이용시설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로망 계획을 수립한다.
- 단지 내 가로망은 현재 지형여건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발생교통량이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하며, 주변의 기존마을 및 농경지 임야 등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도로 폭은 상·하수도 및 조경시설물 등의 배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넓게 계획하여야 하나, 입주민들의 편리성·쾌적성·안전성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 상·하수도계획

- 마을조성사업지구의 상수도계획은 가능한 광역 및 지방상수도로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상수도 시설계획은 「상수도 설계기준(환경부)」에 따른다.
- 상수도계획 수립 시 입주 가구 수에 대한 필요수량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센터, 공원·쉼터 등 공동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공공용수량 및 소화용수량 등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 마을 하수도계획은 마을하수도사업 통합지침에 부합되도록 수립해야 한다.
- 처리가능한 마을수계와 지역의 지형조건, 마을구조, 배수체계 등을 고려하여 하수배제계획을 수립한다.
- 하수의 배제방식은 우수와 오수를 하나의 관으로 처리하는 합류식과 각각의 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처리하는 분류식이 있는데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영향을 고려한다면 분류식 방법이 적합하다.
- 관로는 유역의 집수면적, 기존배수체계, 지하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유로의 방향과 매설위치를 선정하며 구조는 지형·지질, 방류수역의 상황, 주변 환경조건, 시공성, 건설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전기·통신계획

- 마을사업지구에 전력 및 통신을 공급하는 방법은 전주를 설치하여 지상으로 공급하는 방법과 전주 없이 지중화선로를 통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 마을의 경관과 조망권을 고려하여 지중화선로로 공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사업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주택건축

(1) 주택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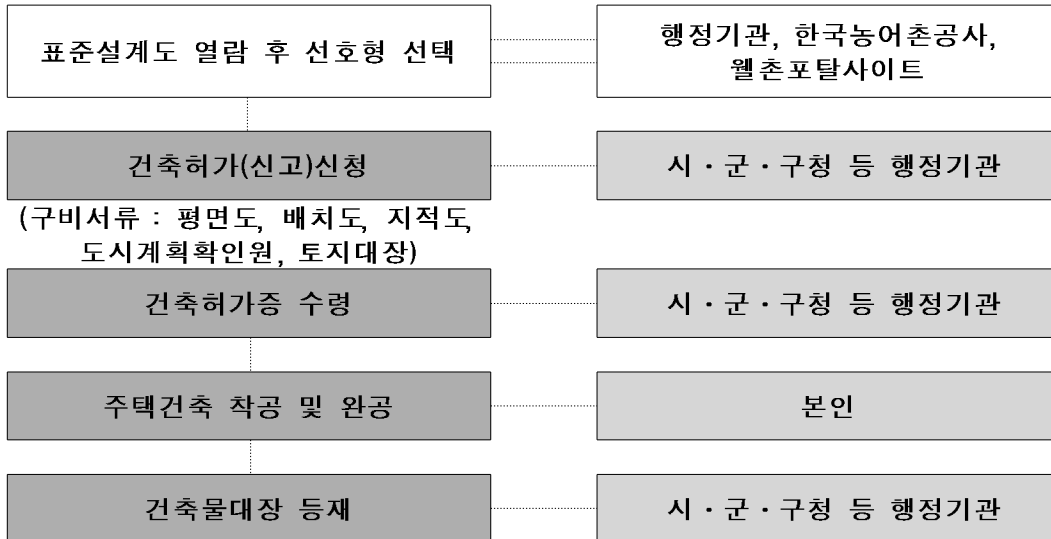
- 농촌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건평이 대부분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100㎡의 집을 지을 경우 실생활공간은 아파트의 130㎡에서 148㎡ 규모와 비슷하다. 농촌주택의 규모를 결정할 때 가족 수와 이용용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주택건축은 마을 전체 경관 및 농촌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주도형은 물론 입주자주도형 사업의 경우에도 추진위원회는 주택건축사업이 마을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군에서는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조성용지 준공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 할 수 있도록 계약하여 주택건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건축 과정에서 먼지, 소음 등의 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단지 내 개별 주택의 건축 공사가 일정기간 내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밖에 주택건축계획을 세울 때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축이 인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단지배치 및 주택건축은 가능한 한 원지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획일적인 격자형 단지조성계획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다.
 - 주변의 자연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과 숲 및 경관이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 쾌적한 전원공간 조성을 위해 건폐율은 30% 이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단독주택의 세대별 주택용지는 호당 330㎡ 이상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다.
 - 주택은 농촌지역 경관보전 등을 위해 3층 이하(높이 10m 이하)의 주택으로 건축한다.
- 전원주택은 설계, 시공, 유지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거주자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하여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때 좋은 설계도면은 건축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건축비를 줄이며, 정확한 시공으로 하자 없는 건축물을 만드는 바탕이 된다. 또한 유지 보수 및 관리에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 정부에서는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해 두고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있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면은 웰촌포탈사이트(www.welchon.com)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행정기관인 시청, 군청, 읍·면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기존에 개발한 주택 유형(45종) 및 2009 농어촌 표준설계도(12종 24유형)를 상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농어촌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된 농어촌주택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설계도 작성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100㎡ 기준 : 설계비 360만원 절감)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인력 및 자재절감과 시공성을 높여 공사비를 8~10%까지 절감할 수 있기도 하다. 자재 규격화 및 부품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표준화를 기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에도 좋다.

[그림 IV-3]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방법



※ 건축 중에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실내 마감재료, 외부 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 마감재료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신고 없이 설계 변경이 가능하며, 건축법상대수선에 해당하는(바닥면적 50㎡ 이내 건축법시행령 제12조의 3항) 경우에는 건축 중이라도 신고로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

[표 IV-11] 경관주택건립을 위한 권장사항

구분	권장사항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형태를 권장 · 높이 3층 이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간별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필지내 주택을 배치 · 해당 건축선을 유지하여 인접주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적절한 시야 및 일조를 확보하여 주거군 내의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 · 주택내 각 실의 배치는 가족 구성, 방위, 공간별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도시주택과 구별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형 배치 고려 · 단지내 주택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계통의 색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벽체 및 지붕에 권장색을 지정 · 계획단지가 지역농촌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특색을 가질수 있도록 주택에 권장 마감 지붕, 벽)재료를 지정
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단열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 외벽색은 명도 4~5이상, 채도 6이하로 자연 환경색채와 조화 · 외벽재료는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리는 자연재 목재, 자연석, 돌, 흙 등 휘 지역에서 구입하기 용이한 재료(적벽돌 등)를 색채계획의 범위내에서 사용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형태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경사(박공, 모임) 지붕형태를 적극 권장하며, 그 외 곡면 지붕형태 등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가능하나 평지붕 슬라브)형태는 되도록 사용 억제 · 물매는 연간 강수량등의 자연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색채는 배경인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며, 원색에 가까운 고채도의 색채사용은 금함 : 권장 명도(V)는 2~5.5, 채도(C)는 1~4로 함
개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광의 능동적인 유입과 외부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한 충분한 면적 확보 · 개구부 형태 구성시 장방형의 일정한 단위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고 차분한 주거환경 연출 · 창호재의 경우 금속재질 사용시 원색의 색채사용을 금하고 저채도의 색채사용을 권장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과성의 재료를 권장하며, 높이 1.2m이하로 설치하여 거주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친밀감을 부여하고 또한 open space로 이웃과의 사회적인 교류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형성 ·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오픈하거나 식재에 의한 생물타리를 권장, 인공재료 사용시 금속재질보다는 목재 등의 재료 사용 권장) 주택외관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색채를 사용
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당은 잔디, 마사토, 자연석 등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며, 아스팔트, 시멘트 포장 등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함

(2) 주택건축 허가 및 융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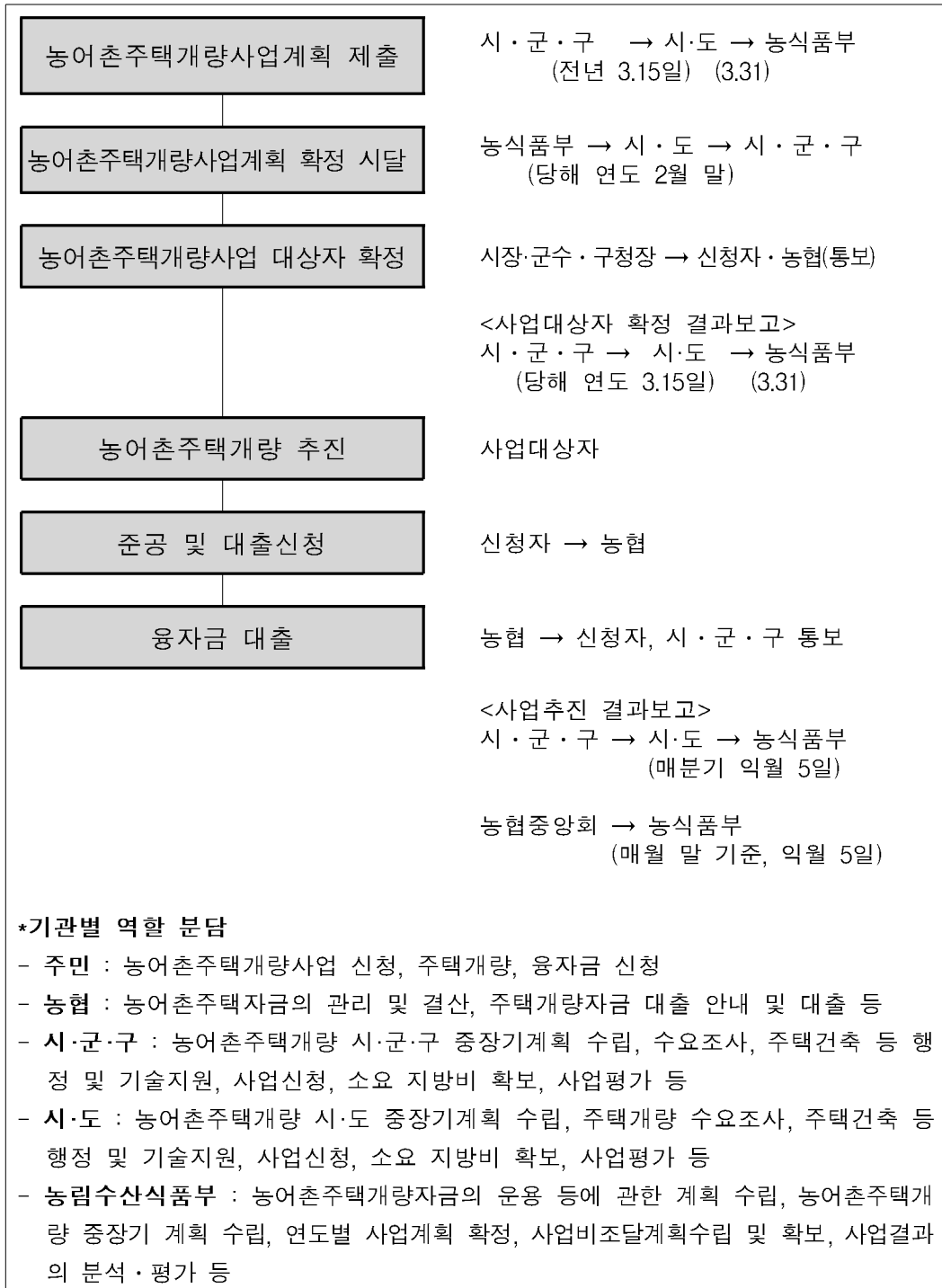
□ 건축 허가

- 입주예정자가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 100㎡를 기준으로 신고에 의한 주택건축과 허가에 의한 주택건축으로 추진한다(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 100㎡ 이하 :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주택건축(건축법 제14조)
 - 100㎡ 초과 :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주택건축(건축법 제11조)
- 건축주(입주예정자)는 시장·군수에게 주택건축 착공신고(건축법 제21조) 후 건축공사를 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개념, 건축법 제22조)을 받아 입주할 수 있다.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

- 융자 한도 : 세대당 5천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주택 신축 및 개량을 하고자 하는 자
- 융자 조건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연리 3%)

[그림 IV-4]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사업추진절차 및 기관별 역할 분담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

7-1 준공검사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가. 준공검사

-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 사업비 명세서
 -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 농어촌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 등의 명세서

나. 준공검사 위탁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7-2 공공시설 유지관리

가. 공공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준공 후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인계하고,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인수해야 한다. 만약 유지관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보조금을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와 시·군이 협의하여 입주예정자가 관리할 수 있다.

나.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입주예정자가 투자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예정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성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한 후 시·군에 기부채납하여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시행자는 공공하수도시설 설치가 준공되면 2개월 이내에 하수도시설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한다. 시장·군수가 공공하수도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시행 했을 경우에는 준공 후 2개월 이후부터 인수·인계시까지의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게 된다. 시장·군수는 마을조성 업무 담당부서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준공처리한 경우에는 하수도업무 전담부서가 시설관리토록 해야 한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규모 하수도사업 통합지침의 규정을 준수한다.

IV-2. 기존마을정비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3.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4. 주민대표회의
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및 동의
6. 사업시행인가 등
7.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8. 철거 및 착공
9.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
10. 준공인가
11. 준공인가 후 조치 등
12. 비용의 분담 등
13. 감독 등

[부록]

1.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수립지침('09.08.13)
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09.08.13)
3.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09.10.21)

기존마을정비

본 매뉴얼의 기존마을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시한 내용임

목 차

제1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257
I. 사업의 개요	257
II.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절차	259
III. 현지개량방식의 사업시행	261
IV. 공동주택건설방식의 사업시행	262
V. 혼용방식의 사업시행	270
VI. 정비사업의 비교	271
제2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73
I. 개요	273
II. 목적 및 의의	274
III.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의 기본원칙과 절차	276
IV.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277
V.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행위제한	278
제3장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79
I. 개요	279
II.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절차	281
III. 정비계획의 내용	284
IV.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285
V. 정비구역 안의 행위제한	286
제4장 주민대표회의	287
I. 주민대표회의 구성	287
II. 주민대표회의의 업무	288
III. 주민대표회의 운영	288

제5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및 동의	289
I. 사업시행자	289
II. 동의 기준	290
III. 동의자수 산정방법	290
IV. 동의 방법 등	291
V. 동의 철회	291
제6장 사업시행인가 등	292
I. 사업시행인가 일반사항	292
II.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295
III.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297
제7장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99
I. 개요	299
II. 주거세입자 대책	302
III. 상가세입자 대책	305
IV. 그 밖의 세입자대책	306
제8장 철거 및 착공	308
I. 철거	308
II. 착공	309
제9장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	311
I.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311
II. 주택의 공급	312
III.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314

제10장 준공인가	315
I. 준공인가의 의의 및 의미	315
II. 준공인가의 절차와 서류	315
III.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316
IV.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317
V. 인가증의 교부 및 통보	317
VI.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318

제11장 준공인가 후 조치 등	319
I. 입주	319
II. 이전고시 및 등기	320

제12장 비용의 부담 등	323
I. 비용의 부담 및 조달	323
II.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 등의 비용부담	324
III. 사업비용 등의 보조 또는 용자 등	326
IV.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328
V.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330
VI.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332
VII.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335

제13장 감독 등	337
I. 자료의 제출 등	337
II. 감독	338
III. 도시분쟁조정위원회	339

부 록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2009. 8. 13)
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 (2009. 8. 13)
3.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2009.10.21)

제1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I.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개념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단계로 2001년 3월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 노후·불량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정법」에 따라 한시사업 체계에서 상시사업 체계로 전환되었음. 현재 제2단계(2005년~2012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를 지원받아 시행 중임

[표 IV-11] 국고지원 절차

절 차	관련주체	주요업무
국고지원 요청	시장·군수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시·군별 소요자금 취합 및 배분	도지사	지자체별 사업별 추진 현황관리
시·도별 국고 배정	국토부	사업별 추진현황 관리

2. 도입배경

1980년대의 민간 주도 합동재개발사업이 시장 논리에 의해 수익성이 있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은 크나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면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문제 해결과 관련한 갈등 고조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입되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곤란한 노후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공시설의 정비와 저소득층의 소득원 개발

등을 포함하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사회 복지적 측면을 강화하였다.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공공이 사업을 시행토록 함에 따라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토록 하는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합동재개발 사업시 주민 갈등의 큰 원인이 되었던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업시행시 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주거권을 인정하였다. 이렇듯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의 시장 중심의 재개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적 성격을 분명히 하며 도입된 것이다.

3. 사업 연혁

1989. 4. 1.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

1999.12.31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며 저소득주민의 자조적인 주거환경 개선노력을 지원

1999. 12. 28. - 「임시조치법」 개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9년말로 종료되는 동 사업의 시행기간을 5년간 연장함

2000. 12. 11 :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불량주택정비 활성화사업 결정('01년부터 3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조 6천억원 투자)

2001. 7. 9 : 주거환경개선 3개년 사업계획 통보(건설교통부)

국고지원 대상 지구(496개)에 대한 연차별('01~'03) 사업계획

2002. 12. 30. - 「도정법」 제정으로 정비사업 통합 및 「임시조치법」 폐지

2002.12.30일 「도정법」 제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비사업에 통합하고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을 폐지

2004. 3. 16 : 국고지원 2단계('05~'10) 사업계획 확정(건교부)

국비·지방비 2조원을 투입하여 전국 388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국비 50% : 1조, 지방비 50% : 1조)

II.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절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환지방식으로 각각 시행하거나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시행함

1. 현지개량방식의 사업시행 절차

단계 및 절차	관련주체 및 처리업무	
기본계획수립	특별시·광역시·대도시의 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광역계획)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개별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 (시장·군수 → 시도지사) * 대도시 시장은 직접 구역지정 -구역 지정 시 행위제한 효력 발생	
↓		
정비사업 동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및 세입자 과반수 동의 : 정비계획, 동의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지정 *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 시는 사업시행자지정 및 인가 생략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등을 거쳐 설계를 확정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가 시행자일 경우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 <p><주민></p> <p>주택개량 (건축허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시장·군수 LH등·공공></p> <p>지장물 조사</p> </div> </div>	-주민 : 스스로 주택개량 시행 -공공 : 건축물 보상, 감정평가, 이주, 철거, 정비기반시설 공사 착공	
↓		
보상, 이주, 철거		
↓		
정비기반시설 착공		
↓		
사용승인	정비기반시설 준공	-기반시설공사 및 주택개량 완료

* LH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민 :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2. 공동주택건설방식의 사업시행 절차

단계 및 절차	관련주체 및 처리업무
기본계획수립 ↓	특별시·광역시·대도시의 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광역계획)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개별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 (시장·군수 → 시·도지사) * 대도시 시장은 직접 구역지정 -구역 지정 시 행위제한 효력 발생
정비사업 동의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세입자 과반수 동의 : 정비계획, 동의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지정 *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 시는 사업시행자지정 및 인가 생략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건축심의 등을 거쳐 설계를 확정 (인가권자 : 시장·군수)
택지매수 ↓	-토지지장물조사, 감정평가, 협의매수, 재결, 공탁
보상, 이주, 철거 ↓	-주거이전비, 이주보상 등 시행 -철거 -공사착공
착공 ↓	
주택공급 ↓	-토지등소유자 우선 공급, 세입자 임대주택 공급 (주택공급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준공 ↓	-준공인가 (준공검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시장·군수 통보)
입주, 등기	-주택입주 및 이전등기

III. 현지개량방식의 사업시행

1. 개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부족한 공공시설을 시장·군수가 설치하고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소유주택을 건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방식으로 주택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 시행함

[그림 IV-5] 현지개량 시행 사례



2. 사업시행주체별 사업 내용

- 지자체 : 공공시설의 설치
 - 지구 내 필요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정비를 위해서 몇몇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
- 주민 : 주택의 개량 등
 - 주로 단독주택을 개량하거나 일부 필지를 합하여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건축함

3. 지원사항

-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게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국비지원
- 건축규제 등의 완화적용
- 주택개량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

IV. 공동주택건설방식의 사업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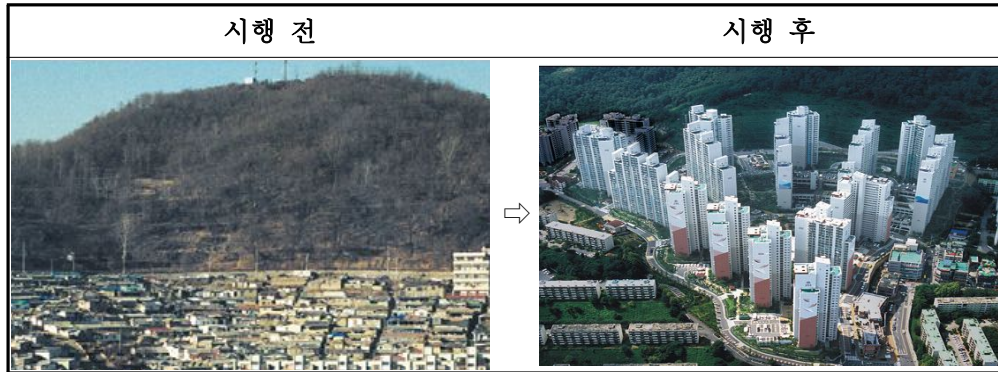
1. 개요

정비구역 내의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철거한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구역주민에게 우선 분양하는 사업방식으로 주택밀집도가 높거나 저지대 침수 또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등 현지개량방식이 곤란한 지역에서 시행함

[표 IV-12] 현재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설방식 비교

구 분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공공시설 정비	-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개량	- 주민	-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적용대상 지구	- 주택밀집도가 낮음 - 집단재해우려 적음 - 주민 자력개발 가능	- 주택밀집도가 높음 - 집단재해 우려 높음 - 주민 자력개발 불가능
장 점	-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반발 적음 - 공동체문화 유지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가능 - 주택개량 효과가 높음
단 점	- 주택개량효과 적음 - 사업추진 장기화	- 전면수용방식에 대한 주민반발 - 공동체문화 단절

[그림 IV-6] 공동주택건설 방식의 시행사례



2. 사업 특성

가. 토지 등 수용권 부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역 내 모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토지 등의 수용권을 부여

나. 주민동의 완화

사업시행여부 결정 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세입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하도록 주민동의 조건을 완화하고 있음

※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자결정 시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3. 지원제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또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 IV-13] 지원제도 개관

사업시행자 지원제도	원주민 재정착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수용 방식 · 구역 내 모든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전면적 수용권 부여 - 주민동의 완화 · 소유자 2/3이상 동의(사업시행여부 결정 시) - 정비기반시설비 재정지원 · 기초조사비,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및 임시사용시설 건설비 정부재정지원 - 국공유지 무상양여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사업시행자에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편입 국공유지 무상양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 · 주민 : 3%, 일반인 : 6% - 인근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혜택 부여 · 인근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의 30% - 인근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혜택 부여 · 인근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의 10% - 세제지원 ·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농특세 등에 관한 감면혜택 ※ 공공시행자(LH)의 재정착 지원 사례 · 소액보상자 융자 지원, 분양가 차등화 등

가. 사업시행자 지원제도

1) 정비기반시설비에 대한 지원제도

「도정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제1단계 및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를 지원(법 제63조)

가) 지원대상

○ 정비기반시설 소요 비용(법 제2조제4호, 영 제3조)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가스공급시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법 제2조제4호, 영 제3조)
-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관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노유자시설(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등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 기초조사비 및 임시수용시설 건설 소요 비용(법 제63조, 영 제60조)

나) 보조, 용자 및 알선

-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 가능(법 제63조 제1항)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함(법 제63조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용자 또는 용자 알선 가능(법 제63조제3항)

[표 IV-14] 정비기반시설 보조 또는 용자 지원기준(법 제63조, 영 제60조)

지원자	지원사업	지원형식	지원항목	지원범위
-국가 -시·도	-시장·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보조 용자 또는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임시수용시설 건설비	각80% 이내
-시장·군수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임시수용시설 건설비	전부 또는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보조 용자 또는 용자알선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임시수용시설 건설비	각50% 이내 각80% 이내

2) 국공유지 무상양여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며, 양여된 국·공유지의 처분금액으로 구역 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비용 충당(법 제68조제1항,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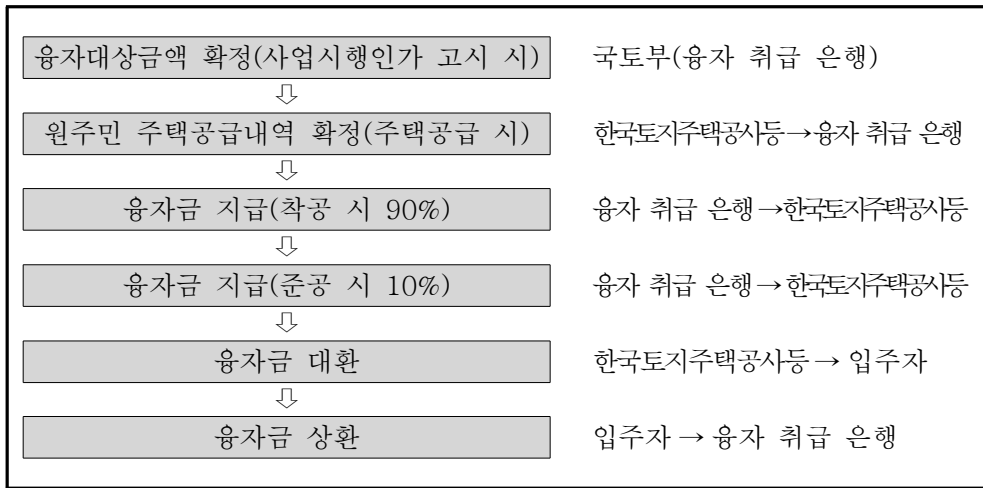
나. 원주민 재정착 지원제도

1) 국민주택기금 저리 용자(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가) 업무처리 절차 등

원주민이 당해 구역주택에 입주한 후 매월 납부하게 되는 용자금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구역 내 건설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용자 이율을 원주민에 한하여 일반인보다 낮은 연 3% 수준의 저리 용자

※ 업무처리 절차



※ 용자조건(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기준)

구 분		일반인(대환이율)	원주민
공공분양	60㎡ 이하	연 5.0%(5.2)	연 3%
	60㎡초과 75㎡이하	연 6.0%(5.2)	연 3%
공공임대	60㎡초과 85㎡이하	연 4.5%(5.2)	연 3%

↳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따라 변동됨

나) 용자 대상자

○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당해 시장군수가 수립 고시한 정비계획 및 주택공급승인서상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게 되는 자

○ 세입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당해 시장·군수가 수립 고시한 정비계획 및 주택공급승
인서에 따라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세입자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권리·의무 포괄 승계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보상 계약체결 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분양권 전매 등에 의한 승계자는 해당되지 않음

○ 상속자

주택공급 이후 상속으로 인하여 권리를 얻은 자

2) 공사기간 중 인근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혜택 부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인근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의 30%범
위 내에서 공사기간 동안 임시사용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

3) 인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민이 본인의 주거실태,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당해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인근의 국민임대주택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물
량의 10% 범위에서 일반인보다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

4) 세제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농특세 등에 관하여는 다
음과 같이 감면혜택을 부여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89조)

- 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등을 지원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급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28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5조)

☞ 공급목적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각 사업(지방세법 제225조)

○ 대체취득으로 인한 지방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09조)

-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 등을 매수, 수용, 철거당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계약일 이후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 등의 보상가액 범위 내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지방세법 제109조)

다만, 사치성 재산 대체 취득시(대체취득 부동산 등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선박 등의 경우), 부채지주의 대체 취득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

[표 IV-15] 대체취득 시 비과세되는 세금

구 분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거 주 자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부채부동산 소유자	과세	과세	과세

○ 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 감면조례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며, 고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및 영 제6항제6호)

○ 양도소득세 감면 등

① 1세대 1주택과 부속 토지(소득세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단,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②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제한특별법 제69조제133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농지가 소재하는 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100%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감면(감면한도 1억원)

※ 공공시행자의 재정착 지원 사례

- 소액 보상자 용자 지원

전용18평 이하 분양주택에 대하여 구역주민의 보상가격이 실입주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저리로 용자

- 분양가격 차등적용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의 집단거주 특성을 고려하여 원주민에게 일반분양자 보다 저렴한 공급가격으로 분양

-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

저소득층 주민의 재정착자금 조달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반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비하여 지구주민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

V. 혼용방식의 사업시행

1. 개요

지구특성이나 주민선호도를 감안하여 한 가지 방식으로 사업이 어려울 때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음

2. 단순혼용 방식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설방식을 혼용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역별 여건에 따라 당해 구역 내 불량주택밀집지역과 비교적 양호한 주택이 집단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지역별로 순차적 균형개발이 필요하거나,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구역이 분리되어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

3. 거점확산형 정비방식

공공이 순환용주택이 포함된 거점을 우선 개발하고 지자체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주민 자력개발을 지원·촉진하여 계획적,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나아가는 방식

가. 공공 : 거점개발

지자체가 정비구역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주택공사 등은 순환용 주택이 포함된 거점을 우선 개발

나. 주민 : 주민스스로 점진적 주택개량

공공이 개발한 거점을 활용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개량하고 이때 공공은 사업 조정자(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여 주택개량을 지원·촉진

VI. 정비사업의 비교

구분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저소득자 집단거주	단독주택 밀집	공동주택	상업·공업지역 등
시행 자	-현지개량 : 사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공공 : 정비·건설 정비 * 주민 : 주택 개량 -수용방식 : 지자체장한국토지주택공사등	-조합(단독) - 한국토지주택공사등(단독):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요구시 등	-좌동 -좌동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단독) -좌동
		-조합+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공동)	-조합+ 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공동)	-조합+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건설업자(공동)
시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사업시행인가→분양→공사→준공 및 이전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시공사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공사→준공 및 이전	-좌동 *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안전진단 절차 추가	-조합 방식은 재개발과 동일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추진위, 조합설립 없이 사업시행인가 *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주택 규모	-국토부 고시 · 85㎡이하 : 90% 이상 · 임대주택 : 20% 이상	-국토부 고시 · 85㎡이하 : 80% 이상 · 임대주택 : 17% ※ 수도권 이외지역: 임대주택 50% 내 완화	-국토부 고시 · 85㎡이하 : 60% 이상 · 법정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완화용적률의 30~50%를 소형주택(60㎡이하)으로 건설	-제한 없음
공급 대상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조합원(건물 및 부속 토지) -잔여분 : 일반분양	-토지등소유자
세입 자 대책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없음	-주거이전비, 휴업보상금 지급
공공	-국가지자체 보조	-국공유지 처분 혜택	-없음	-국공유지 처분 혜택

구분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원	-국공유지 무상양여			
주민 동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조합 시행 방식 · 추진위원회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 조합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자 동의	-조합 시행 방식 · 추진위원회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 조합인가 :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3/4 및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 시행 방식 : 재개발과 동일 -토지등소유자 방식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등 시행 방식 · 주민대표회의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 시행자 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 좌동	- 좌동
용지 확보	-전면 수용에 의한 매수 (공동주택)	- 주민이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한 후 환지 또는 관리처분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받음	- 좌동	- 좌동
미동 의자 토지	-수용 (시행인가 이후)	-수용 (시행인가 이후)	-매도청구 (조합설립 이후)	-수용 (시행인가 이후)

* 위 표는 개략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법령조문 참조 필요

제2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 개요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이하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제1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함(법 제3조제2항)
- 기본계획 개요

도입배경	- 정비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및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도시관리
성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규정한 지침 성격의 도시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또는 정합성 유지, 정비계획의 상위계획
대상지역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
수립기간	-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다양한 주변여건의 변화반영)
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 인구50만 미만의 시는 도지사의 승인 필요(법 제3조제4항)
내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인구·건축물 등 현황, 토지이용계획,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안) 입안 ⇨ 주민공람(14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회신)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 승인) ⇨ 계획 수립 및 고시(지자체 공보) ⇨ 국토부장관 보고

II. 목적 및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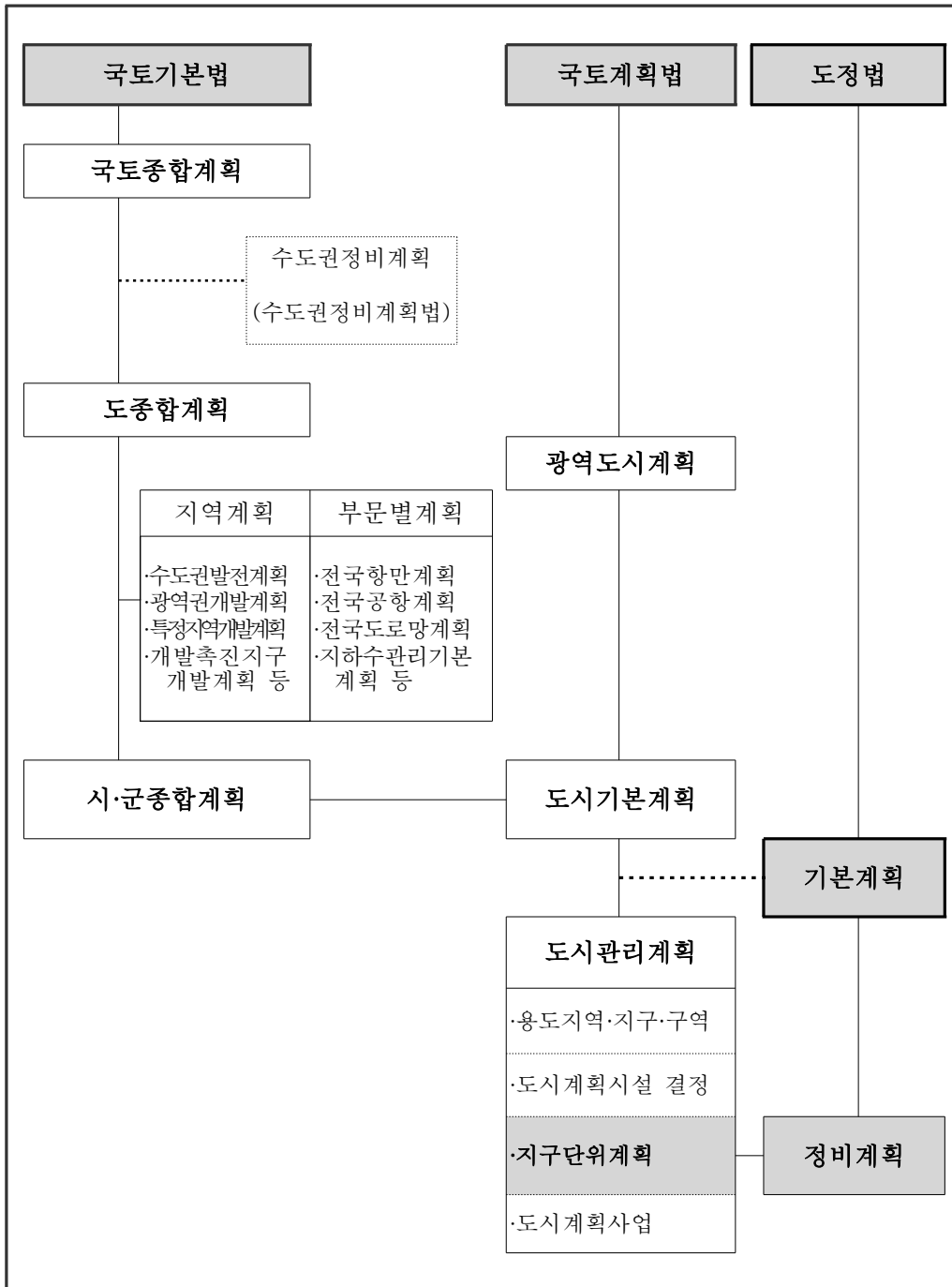
1. 목적

-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함)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는 데 있음
- 도시의 경제·사회·문화활동, 물리적 환경의 현황, 장래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비사업 수요 예측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비사업의 합리성·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음

2. 의의

-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며,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함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그러므로,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성격을 갖으며,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기본계획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정비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

○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법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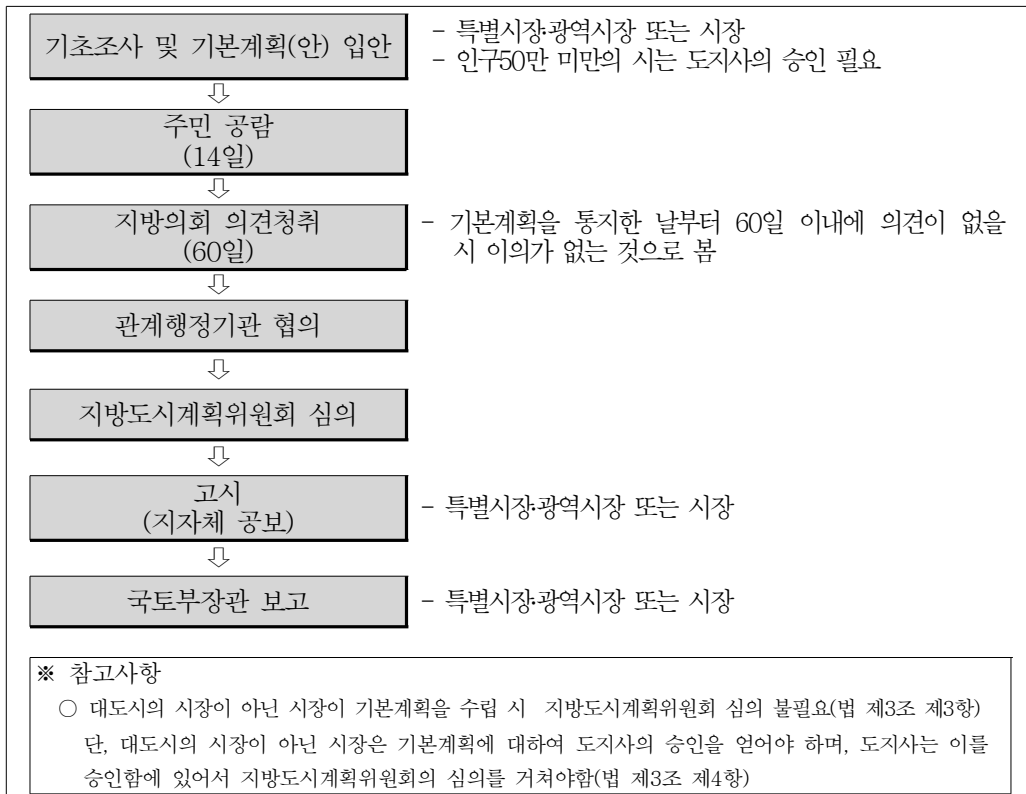


Ⅲ.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의 기본원칙과 절차

1. 기본원칙

- 기본계획의 기준년도는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인구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기준년도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하며,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의 도시발전 방향 및 관리방향에 연계되어 합리성을 갖추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문의 기타 개별법의 기본계획 등과의 합리적인 연계성을 갖추어야 함

2. 수립절차



IV.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1. 기본계획의 내용

-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함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조)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 계획
 -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 도시정비의 목표
 -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생략 가능(법 제3조제3항 단서, 영 제9조제3항)
 - 정비기반시설(영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당해 구역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 건폐율(건축법 제55조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건축법 제56조에 의한 용적률)의 각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V.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행위제한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법 제5조제7항)

제3장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I. 개요

1. 정의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함(법 제2조제1호)

2.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관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립·승인된 정비계획상의 정비사업구역

3. 정비계획의 개념

의 의	-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당해 구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 또는 절차
성 격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하위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같음(정합성)
지정요건	- 무허가 건축물 및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주민의 소득수준 등,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시·도 조례에 위임(시행령 별표1)
수립권자 및 지정권자	- 계획수립권자 :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 구역지정권자 :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정)
내 용	- 정비사업의 명칭, 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안) 입안(시장·군수) ⇨ 주민설명회(서면통보 후) 및 주민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회신) ⇨ 정비구역(정비계획) 신청(시장·군수 → 시·도지사)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 구역지정(정비계획)·고시(지자체 공보) ⇨ 국토부장관 보고

4.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비교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틀이지만,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은 개발을 전제로 하는 틀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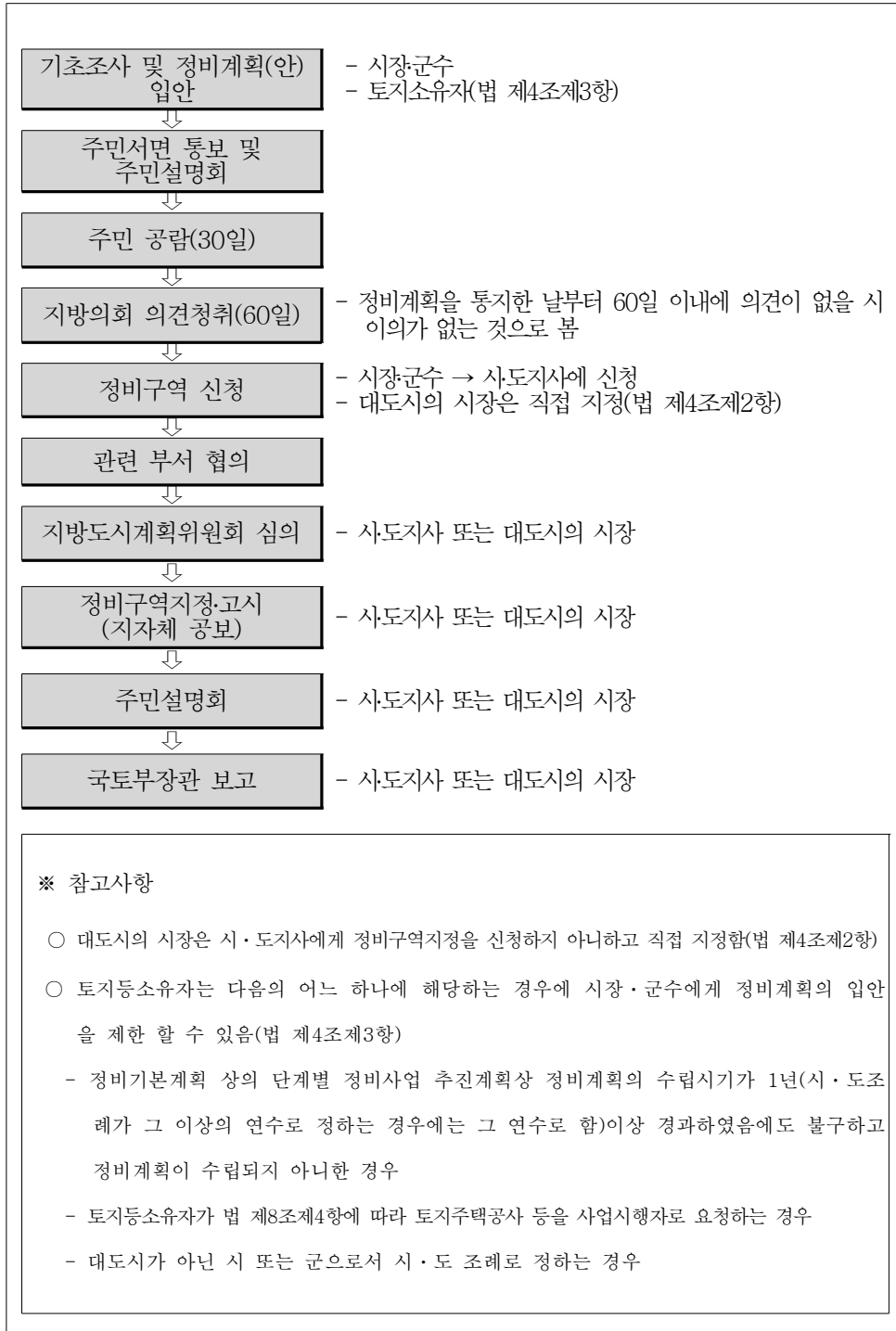
구분	정비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근거	「도정법」	「국토계획법」
정의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구역”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함 (동법 제2조) ○ 과거 도시재개발사업에서의 “재개발구역”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정비계획”이 동시에 수반되어 구역 내 지표와 규제가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사업 지역 ○ 재개발사업 지역 ○ 재건축사업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사업 지역 -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지역 ○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 ○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 우려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가능 (동법 제51조제1항·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등 - 단,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우 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 시 의무적으로 지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영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지구 세분 또는 변경 사항 - 같은 법 영이 정하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구분	정비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행방법, 사업시행자(주환사업), 기존 건축물 정비·개량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구역 분할 또는 결합 계획, 건축선, 홍수 등 취약요인 검토결과, 주택수급계획, 기타 사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기타 같은 영에서 정하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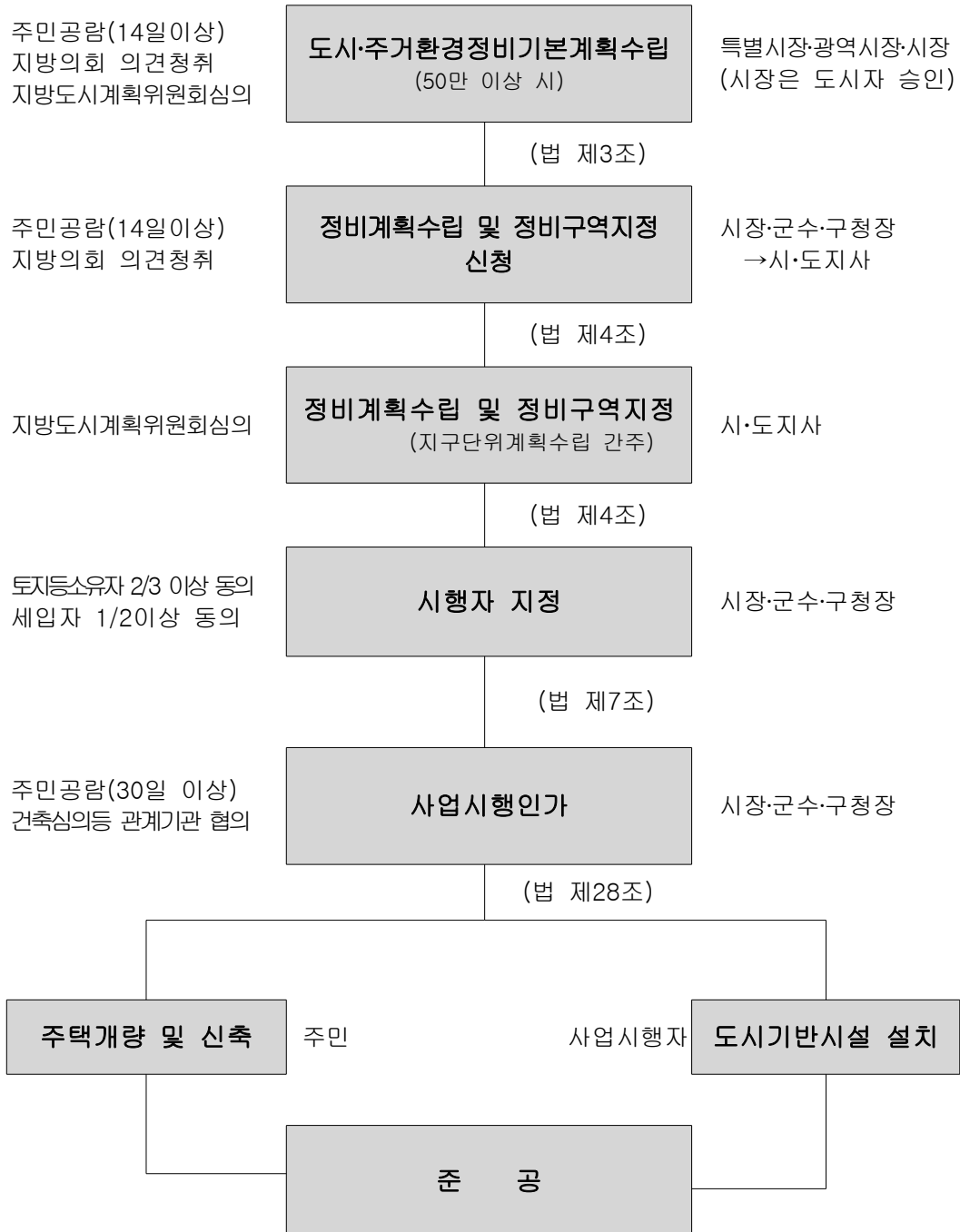
II.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

- 시장·군수는 정비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또한 같음.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4조제1항)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현지개량방식)



III. 정비계획의 내용

1. 정비계획의 내용

-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함
-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법 제4조제1항, 영 제13조)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정비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정비계획수립 후 아래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2조, 법 제4조제4항)
 - 정비구역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의 1의 용도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당해 건축물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의 변경인 경우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 그 밖에 상기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IV.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수의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건축대지로서 효율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V. 정비구역 안의 행위제한

-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는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5조제1항)
- 다음의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음(법 제5조제1항, 영 제13조의4제3항)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 제외)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법 제5조제7항)

제4장 주민대표회의

1. 주민대표회의 구성

1. 대상 정비사업 및 구성 시기

가. 공공시행 방식의 경우 구성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즉, 정비 사업을 공공시행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 대표기구를 구성 함(법 제26조제1항 전문 및 제2항)

나. 구성 시기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에 구성 (법 제26조제1항 후문)

2. 구성승인 및 신청서류

가. 조직 구성 기준(법 제26조제2항, 영 제37조 제1항)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각 1명
- 2) 감사 : 1명 이상 3명 이하
- 3) 총인원수 : 5명 이상 25명 이하

나. 주민동의 및 시장·군수의 승인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26조제3항)

다. 승인신청 및 첨부서류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규칙 제8조)

- 1)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 3)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 4)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II. 주민대표회의의 업무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 이하 같음)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법 제26조 제4항, 영 제37조제3항)

- 가.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 나.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 포함)
- 다.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 포함)
- 라.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마.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 바. 위 “가 내지 라”, “마”의 변경에 관한 사항

III.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영 제37조제4항)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이를 정함(법 제26조제5항, 영 제37조제5항)

제5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및 동의

1. 사업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위 ‘달동네’ 등 도시영세민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토지구획공사등의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함

가. 직접 시행 : 시장·군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 2/3 이상(현지개량방식의 경우 과반수)의 동의와 세입자(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당해 정비예정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세대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 가능(법 제7조제1항 본문)

나. 지정 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시행 하는 외에 위의 “가”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세대수의 동의(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입자 동의 생략 가능)를 얻어 한국토지주택공사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법 제7조제1항, 영 제13조의6)

다. 긴급시의 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 가능(법 제7조제2항)

II. 동의 기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IV-16] 정비사업의 추진단계별 동의 기준

구분	동의내용 및 비율	관련조항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시	사·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법 제4조제3항, 영 제13조의2
사업시행자지정(사업시행여부에 대한 동의)	토지등소유자 2/3 이상(현지개량방식의 경우 과반수) +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일정한 경우 세입자동의 생략 가능)	법 제7조
주민대표회의 구성(공공시행 방식)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

III. 동의자수 산정방법

사업시행자 지정(법 제7조 및 제8조), 주민대표회의 구성(법 제26조) 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법 제17조, 영 제28조제1항)

-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

IV. 동의 방법 등

1. 동의의 방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를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 포함)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를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다만, 인감증명서를 기 제출한 경우로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 영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인감증명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한 것은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데 따른 주민불편 및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동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동의서 위조, 매수·매도시 처벌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서면동의서를 매도 또는 매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법 제84조의2, 제84조의3제6호)

V. 동의 철회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영 제28조제4항)

제6장 사업시행인가 등

Ⅰ. 사업시행인가 일반사항

1. 사업시행인가의 의의 및 성격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토지이용계획, 주택이나 복리시설의 규모·배치와 배분기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시장·군수가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행정처분)를 말함(법 제28조제1항)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킴(법 제32조)

2. 사업시행인가 절차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인가신청(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공람 및 의견청취(시장·군수) ⇨ 교육시설 협의, 의제되는 인·허가사항 등에 대한 관계기관협의(시장·군수) ⇨ 14일 이상 공람 및 의견청취 ⇨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 ⇨ 고시(지자체 공보, 시장·군수)

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법 제28조제1항, 제30조)

- 가)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
- 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다)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 마)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계획)

- 바)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사)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아)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함)
- 자)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사항(영 제41조제2항)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
 -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의해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등(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함)
 -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 빗물처리계획
 -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
 -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나. 인가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함.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

로 같음(법 제28조제1항,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

- 1) 정관등
- 2) 총회의결서 사본(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이거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명부)
- 3) 사업시행계획서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 5)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

다. 공람 및 의견청취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자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생략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42조)

또한 시장·군수는 공고내용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라. 행정기관 협의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를 하려는 경우(변경인가를 포함)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자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함(법 제28조제3항)

마. 시행인가 및 고시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법 제28조제4항, 규칙 제9조제3항)

3.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함.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고로 갈음하도록 함(법 제28조제1항, 영 제38조, 규칙 제9조제2항)

- 1) 정비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 2)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규모 확대(위치 변경은 제외)
- 3) 대지면적을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용면적을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인가받은 면적의 10%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
- 6)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 9) 조합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
-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11) 조합변경의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12)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II.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1. 건축법 등의 적용 특례

1)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에 한함)을 하는 때에는 「주택법」 제68조(국민주택 채권매입)를 적용하지 않음(법 제42조제1항)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법 제42조제2항, 규칙 제10조제1항)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규칙 제10조제2항)

3) 대지와 도로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법 제42조제3항)

-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2.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1) 주거지역의 세분 지정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국토계획법」(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43조제1항, 영 제46조)

-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 시장·군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 일부분은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 범위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는 열악한 구역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용도지역 의제규정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기존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도시개발법의 환지구정 준용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이 경우 동법 제41조제2항에 의한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이를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로 봄(법 제43조제2항)

III.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1. 사업시행계획의 확정

도정법상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도정법에 따라 수립하고, 인가를 통해 확정되며, 고시됨으로써 그 내용대로 대외적인 효력을 갖게 됨

2.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가. 내용 및 입법 취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 정비사업관련 개별법상의 각종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인·허가등)가 있는 것으로 의제(법 제32조제1항)

이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따로 받는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도정법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외에 다른 법률상 요구되는 인·허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등을 하여야 함

나. 관련서류의 제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인가신청시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아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긴급시행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음(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

다. 관계기관 협의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법 제32조제4항).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정비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아니함(법 제32조 제5항,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

라. 수수료, 사용료 면제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의해 당해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법 제32조제6항)

3. 사업인정 의제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법 제40조제2항)

4.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평가시점 기준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계약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음.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봄(법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

또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함(법 제66조제6항)

제7장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I. 개 요

1. 의의 및 제도 도입배경

가. 의의

일반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사업주체)가 개인소유의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함

수용은 재산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고 사용은 그 재산권의 사용권만 취득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수용 또는 사용은 공공필요를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가능함(헌법 제23조제3항 참조)

나. 제도 도입배경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3조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법 제38조 및 제40조)

「토지보상법」 제3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은 공익사업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 도정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2. 토지보상법의 준용 및 특례

가. 수용 또는 사용절차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

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함.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음(법 제40조제1항)

여기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사업시행인가의 사업인정, 재결신청기간, 현물보상(법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 손실보상 등(영 제44조의2)’을 말함

나. 사업인정 및 고시의 특례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함)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함(법 제40조제2항)

이는 도정법상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토지수용 등을 위한 사업인정 및 고시’로 의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인가고시에 따른 법적 효과의 하나로 토지등의 수용권을 부여한 것임

다. 재결신청기간 특례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제23조 및 제28조제1항)상 사업인정의 실효 및 재결의 신청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함(법 제40조제3항).

- ☞ 「토지보상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시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면 됨. 따라서 사업인정의 효력과 그에 따른 수용권의 행사기간은 사업시행인가시 정해진 사업시행기간내로 연장됨

라. 금전보상의 예외(현물보상)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에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보상을 할 수 있음(법 제40조제4항)

- ☞ 제42조 (재결의 실효) ①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마. 이주대책대상자

공람공고일(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영 제44조의2제1항)

바. 주거이전비 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함(규칙 제9조의2)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음(영 제44조의2제2항)

사. 이주대책 특례규정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43조제3항)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일반국민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강제 취득)과 달리 주민의 동의 하에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사업완료시 양호한 기반시설이 갖춰진 원거주지로 재입주)이고, 원주민 분양가격은 건설원가에서 지구내 무상양여 국·공유지가액(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충당) 만큼 차감하여 산정(생활기반시설 비용 차감 효과 발생)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II. 주거세입자 대책

1. 공공의 세입자 대책

가. 계획수립시 세입자의견 등 반영

- 1) 기본계획수립권자(시·도지사, 대도시시장)는 기본계획수립 시 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을 포함하고(법 제3조제1항제11호), 기본계획공람 시 제출된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여부 검토(영 제9조제2항)
- 2)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수립 시 임대주택의 규모와 규모별 건설비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정비계획 공람 시 정비계획의 내용을 서면통지 및 공람 시 제출된 세입자의 의견 반영여부 검토(법 제4조의2제2항, 영 제11조제2항)

나. 사업시행시 세입자의 의견반영

- 1)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 등에는 생략 가능(법 제7조제1항)
- 2)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시행규정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해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법 제26조제4항)
 - 주민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
 -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다. 용적률 완화 적용

「도정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상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100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법 제40조의2)

2. 사업시행자의 세입자 대책

가. 이주대책 수립 등

- 1) 다음 사항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법 제30조제3호 내지 제5호)
 -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2)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가 정비구역 내외에 확보한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순환정비)하는 등 세입자(정비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함)의 이주대책 수립(법 제35조제1항)

나.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1)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 시행.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정비사업 완료 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철거) 가능(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
 - ※ 이주대책 수립규정과의 관계
 -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이주대책과 별개의 규정
- 2) 이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함(법 제36조제2항)
- 3) 지자체 외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에 따른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보상 원칙)하며, 협의 불성립 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법 제37조)

다. 손실보상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에 관하여는 도정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토지보상법 규정을 준용. 다만,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1) 주거이전비 지급

가)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지급(규칙 제9조의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규칙 제9조의2)

※ 정비계획수립 → **(주민공람)** → 정비구역지정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토지보상법상 세입자 주거이전비(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현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지구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2) 이사비 지급

가) 정비구역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이사에 소요되는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등 실비용(약 35 ~ 100만원) 지급

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적용) 기준에 따라 지급(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4)

라. 임대주택 공급

1) 기준일(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희망자에게 우선 공급(영 제54조제2항, 별표3)

※ 임대주택 특별공급(주택공급규칙 제19조제1항 제4호 및 제4의2호)

2) 공급대상은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사업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원칙 이므로(법 제50조제4항, 영 제54조제2항) 주거이전비 지급대상과 다름

III. 상가세입자 대책

1. 사업시행계획에 반영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영 제41조제2항제16호)

2. 영업 손실 보상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에 관하여는 도정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토지보상법을 준용. 다만, 영업 손실보상 시 휴업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영업 손실은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구분

가. 영업 손실 보상대상 영업[다음 1)과 2) 요건 모두 충족]

-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 2)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할 것(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호)
 - 이에 위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이익 대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

나. 폐업보상

- 1) 폐업보상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의 경우 소득)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 무허가 건축물 임차인 영업자의 경우 영업이익 평가액은 1천만원 초과 불가
- 2)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해 영업소 소재 시·군·구 또는 인근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다. 휴업보상

1) 정비구역내 상가세입자에는 4개월분의 휴업보상금(영업이익에 고정비, 영업시설 등 이전비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부대비용 합산 평가) 지급(규칙 제9조의2제1항)

※ 토지보상법에서는 3개월분 지급(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2) 보상금 산정에 있어 무허가 건축물 임차인 영업자의 경우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및 이전부대비용의 평가액은 1천만원 초과 불가

3. 상가의 분양 또는 임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주택공급방안 승인신청 시 부대복리시설 공급방안을 포함(소유자에게 특별공급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일반인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내용 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밖의 기준은 주택공급규칙과 공사의 주택분양규정 등을 참조

IV. 그 밖의 세입자 대책

1. 의견제시 기회 보장

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해 공람 기간 내 의견제시 가능(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

나.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행규정 작성 시 세입자는 철거, 이주, 보상, 임대주택 공급 등에 관해 의견 제시 가능(법 제26조제4항)

다. 세입자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이해관계자로서 의견 제시 가능(법 제31조제2항)

2.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법 제77조의2)

3. 거래계약 또는 중개시 설명·고지 등 의무화

- 가. 정비구역에 입주예정인 세입자 보호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시 상대방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하도록 함(법 제79조제3항)
-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 건축물 철거 및 퇴거예정시기
 - 정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법 제5조)
 -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법 제50조의2)
- 나.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위의 “가”의 각 사항을 확인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법 제79조제4항)

4. 사업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정비사업관련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미 공개 시 형사처벌(법 제81조제1항, 법 제86조제6호)

제8장 철거 및 착공

1. 철 거

1. 적용범위

도정법상 철거대상 건축물은 사업시행인가로 확정됨. 도정법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와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영 제41조제2항제7호 및 제15호)

한편, 사업시행인가로 의제되는 주택법상 인·허가등에는 '사업계획승인'만 포함되고(법 제32조제1항제1호) 건축법상 인·허가등에는 '건축허가'와 '축조신고', '건축협의'만 포함되므로(법 제32조제1항제2호) 주택법상 철거행위허가와 건축법상 철거신고는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따라서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경우에는 철거와 관련하여 건축법이 적용(건축법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되고, 주택법에 따라 건축된 경우에는 주택법이 적용(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됨

신고 또는 철거대상 건축물을 신고 또는 허가없이 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됨(건축법 제113조제1항제3호, 주택법 제98조제6호)

2. 건축물의 철거 절차

가. 건축법상 건축물 철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건축법 제30조제1항)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서 및 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나. 주택법상 건축물 철거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공동주택철거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3호)

-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II. 착 공

1. 경계복원측량

경계복원측량은 공사를 착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가설울타리 및 공사의 참고로 이용하기 위하여 실시

2. 건축법상 착공

가.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건축법 제21조제1항)

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짐(건축법 제14조제3항).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건축법 제11조제7항)

-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택법상 착공

가. 착공신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주택법 제16조제8항, 제101조제2항)

나. 착공시기 연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함.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주택법 제16조제7항)

다. 착공신고필증 등 교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연기확인서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제9장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

I.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1. 관련 근거

국토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고 시장·군수는 국토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함(법 제4조의2, 영 제13조의3)

가.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나.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2.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구 분		분양주택	임대주택
법상기준 (고시범위)	건설비율 및 규모	국민주택 : 전체 세대수의 90% 이하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 (전용 40㎡ 이하 : 50% 이하)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1호 (‘09.8.13)]	건설비율 및 규모	전체 세대수의 80 % 이하 - 국민주택 : 90% 이상 - 국민주택 초과 : 10% 이하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8% 이상을 전용 40㎡ 이하로 건설)
	완화적용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의 경우 50% 범위에서 위 (위 기준을 완화적용
	미적용		1만㎡ 이하의 소규모 사업구역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II. 주택의 공급

1. 정비구역 안에서 건설된 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또는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정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음(법 제50조제2항 및 제4항)

2. 분양주택의 공급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영 별표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음(영 제54조제1항)

(가) 주택의 공급 기준

- (1) 주택의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 (2) 주택의 공급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면적 이하의 과소토지등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① 기준일(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날)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 ② 「국토계획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나) 주택의 공급 순위

- (1) 1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함)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 (3)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4) 4순위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3. 임대주택의 공급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음(법 제50조제4항, 영 제54조제2항, 별표3)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

- (1)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 2순위 : 별표 2 제4호 가목 및 동호나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 3순위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나)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1) 입주대상자의 세대구성원의 수
- (2)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
- (3) 소득수준
- (4)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을 고려

(다) 공급절차 등

- (1) 입주자모집공고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 및 조건 등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름
- (2)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름. 다만, 시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III. 부대 · 복리시설의 공급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관계규정, 지침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공급기준 등에 따라 공급

제10장 준공인가

I. 준공인가의 의의 및 의무

1. 인가의 의의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인가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대법원 판례 1992. 4.10. 91누5358 판결 참조)이며, 준공인가가 고시되어야 후속하는 이전고시의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2. 인가 의무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52조제1항).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법 제86조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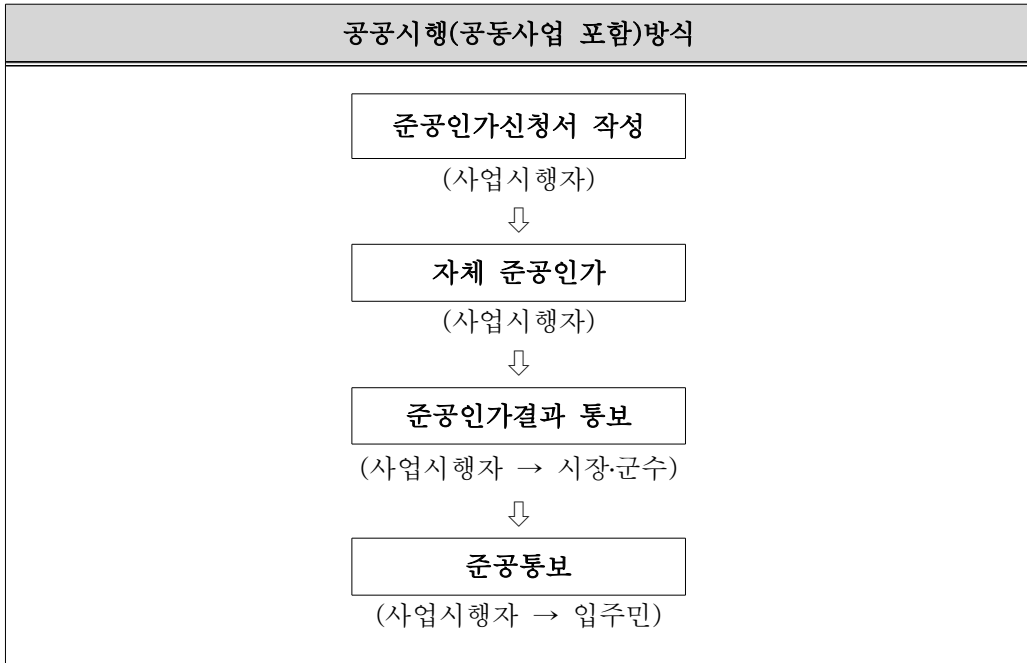
II. 준공인가의 절차와 서류

준공인가의 세부절차는 법 제52조, 영 제55조 및 제56조, 규칙 제1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규칙 제15조제1항)

시장·군수는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인가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밖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음(법 제52조제2항)

[그림 IV-7] 준공검사 절차도



III.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 할 수 있음(법 제52조제5항, 영 제56조제1항)

- 가.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 나.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 다.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IV.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시장·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법 제52조제3항 및 제4항)

시장·군수는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영 제55조제4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나.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라. 준공인가의 내역

V. 인가증의 교부 및 통보

1. 인가증의 교부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공사완료시 고시한 위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영 제55조제2항)

준공검사는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확인행위)으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준공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함

2. 분양대상자에게 통보

사업시행자는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때 또는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함(영 제55조제3항)

Ⅵ.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도정법」은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통하여 정비사업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인·허가 의제 시 관련기관의 장과의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 시장·군수가 법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법 제53조제1항)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법 제53조제2항)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법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법 제53조제3항).

제11장 준공인가 후 조치 등

I. 입 주

1. 입주절차

입주예정일 통보(통상 30일 전) ⇨ 입주 통지(준공인가필증 교부 받은 후) ⇨ 잔금정산 ⇨ 입주 ⇨ 의무관리 개시(주택관리업자 선정)

2.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작은 규모의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민의 의견수렴과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용이한 반면, 수백~수천세대로 이루어진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관리자가 필요함

주택법에서는 전문관리자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에 소요되는 입주자 등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단지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표 IV-17]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두어야 함

II. 이전고시 및 등기

1. 이전고시 등

가. 이전고시의 의의

이전고시는 공사의 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임

나. 이전고시 절차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시장·군수) ⇨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사업시행자) ⇨ 분양내용통지 및 소유권이전(사업시행자) ⇨ 이전고시(사업시행자) ⇨ 보고(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1)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수 있음(법 제54조제1항)

2) 소유권이전 고시 및 보고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54조제2항)

다. 이전고시의 효과

1) 소유권 취득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고시가 있을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법 제54조제2항 후단)

2)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봄(법 제55조제1항)

3) 도시개발법상 환지로 의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확정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봄(법 제55조제2항)

- ☞ 환지 : 사업시행 후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조합원 등에게 신규 부여하는 토지
- ☞ 체비지(보류지) :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총당하거나(체비지) 규약·정관·시행 규정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보류한 토지(보류지)

4) 권리변동 제한(다른 등기의 제한)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이전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함(법 제56조제3항)

2. 등기절차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하고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함.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함(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가. 등기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제1항)

- 1)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 2)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 3)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나. 등기신청 방법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고,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며,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함. 다만,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음

등기신청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제12장 비용의 부담 등

I. 비용의 부담 및 조달

1. 정비사업비의 부담

가. 원칙 : 사업시행자 부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법 제60조제1항)

나. 시장·군수의 비용 부담

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의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법 제60조제2항, 영 제58조). 이는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 1) 도로
- 2) 상·하수도
- 3) 공원
- 4) 공용주차장
- 5) 공동구
- 6) 녹지
- 7) 하천
- 8) 공공공지
- 9) 광장
- 10) 임시수용시설

2. 비용의 조달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금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음.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함(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 부과금의 산출 : 정비사업 총비용 - 정비사업 총수입

사업시행자(시장·군수는 제외)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한 자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징수위탁 할 수 있으며,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징수 금액의 4/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함(법 제61조제4항 및 제5항)

II.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 등의 비용 부담

1.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설치비용의 1/3 또는 50%까지 부담시킬 수 있음(법 제62조제1항, 영 제59조제1항)

이 경우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금액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영 제59조제2항)

2. 공동구 설치의무자의 비용 부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법 제62조제2항)

가. 소요비용 내역

공동구 설치로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다만, 법 제63조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함(규칙 제16조제1항)

- 1) 설치공사의 비용
- 2) 내부공사의 비용
- 3)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 5)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 6) 법 제63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요비용 부담 비율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가스·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 예정면적비율에 의함(규칙 제16조제2항)

다. 부담금 납부 통지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 설치 비용 내역과 부담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함(규칙 제16조제3항)

라. 부담금 납부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1/3 이상을 납부하고, 그 잔액은 공사완료고시일전까지 납부(규칙 제16조제4항)

마. 공동구 관리 및 비용부담

공동구는 시장·군수가 이를 관리함. 시장·군수는 공동구 관리비용(유지·수선비를 말하며, 조명·배수·통풍·방수·개축·재축 그 밖의 시설비 및 인건비를 포함)의 일부를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부담비율은 점용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정하고 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규칙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

III. 사업비용 등의 보조 또는 용자 등

「도정법」은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정비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자와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 또는 용자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IV-18] 사업비용 등의 보조 또는 용자 등 지원내용 요약

지원자	대상사업자	지원항목	지원형식	지원범위
국가, 시·도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임시수용시설 설치비	보조 또는 용자	각 80% 이내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등 (주 환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임시수용시설 설치비	보조	전부 또는 일부
국가·지자체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임시수용시설 설치비 ·조합운영비	보조	각 50% 이내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임시수용시설 설치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시·도 조례로 정한 사항	용자 또는 용자알선	각 80% 이내
	사업시행자 (순환용 주택 건설)	·순환용주택 건설비 · " 공가관리비	보조 또는 용자	일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받는자	·해당 공급비용	"	전부 또는 일부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등 (순환용주택 제공시)	·순환용주택 건설비 · " 공가관리비	"	"
	시·도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등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비용	"	"

1.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보조·용자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각 80%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음(제63조제1항,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

2. 시장·군수의 보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함(법 제63조제2항)

3.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용자

국가 또는 지자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50%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80% 범위에서 용자 또는 용자알선 할 수 있음(법 제63조제3항, 영 제60조제3항 및 제4항)

가. 보조대상 사업비(각 50% 이내)

- 1) 기초 조사비
-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 3) 조합 운영경비

나. 용자 또는 용자알선 대상 사업비(각 80% 이내)

- 1) 기초 조사비
-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 3) 세입자 보상비
- 4) 주민 이주비
- 5) 지자체가 용자 또는 용자알선하는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4. 순환정비사업의 우선지원

가. 건설비 및 관리비용 지원

국가 또는 지자체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순환정비 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는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공가관리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법 제63조제4항)

나. 순환용주택 제공비용 지원

국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조합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 관리비 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법 제63조제5항제1호)

5.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비용 지원

국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 보조 또는 융자 가능(법 제63조제5항제2호)

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비용 지원

국가 또는 지자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가능(법 제63조제6항)

IV.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1. 사업시행자의 설치의무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법 제64조제1항).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되므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 위치 및 형태 등이 결정됨

2.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법 제64조제3항)

3. 우선매수청구권

가. 우선매수청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분양의 규정(법 제50조제5항)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음(법 제64조제2항 전단)

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우선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법 제64조제2항 후단)

다. 우선매수의 방법(공고→ 매수청구→ 협의 또는 심의 → 매각)

1) 공고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영 제61조제1항)

- 가) 법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
- 나)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 및 매각예정가격
- 다)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 라)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2) 매수청구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함. 이 경우 그 기간내에 매수청구가 없는 때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영 제61조제2항)

3) 협의 또는 심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자와 매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영 제61조제3항)

4) 매각

사업시행자는 매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하여야 함(영 제61조제4항)

V.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 무상귀속 및 양도

무상귀속은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 등 행정청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말하고 무상양도는 소유권이 행정청이 아닌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말함. 둘다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에 해당하나 최종적인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다름(관리청, 사업시행자)

무상귀속과 무상양도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7조)이므로 행정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의사 없이 법률에서 규정한 시기에 그 소유권이 귀속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함.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함

무상귀속(양도)의 입법취지는 사업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전해 주기 위한 것(신규기반시설 설치귀속에 따른 손실보상적 성격)으로, 도정법 제65조는 강행규정임

[표 IV-19]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관리(법 제65조)

시행자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귀속(양도)주체 및 유형	귀속(양도)시기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	· 새로 설치한 시설 · 기존시설 대체 시설	행정청(관리청)에 무상귀속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한 날
	· 종전의 공공시설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법 제65조제1항)

2. 귀속협의 및 통지

시장·군수는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법 제65조제3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함(법 제65조제4항 전단)

3. 귀속시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봄(법 제65조제4항 후단)

4. 등기절차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함)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함(법 제65조제5항)

Ⅵ.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1. 국·공유지의 처분

가. 국·공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

1) 재산의 소유관청에 따른 분류

구분	국유재산	공유재산
의의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	지자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자체 소유로 된 재산
소유관청	중앙정부 (기재부, 산림청, 국방부 등)	지자체 (서울시, 경기도 등)
적용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 용도에 따른 분류(국유재산법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용도	세분	내용
행정재산	공용재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	정부기업 또는 지자체가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그 밖의 필요에 따라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공유)재산

나. 국·공유재산의 매각

1) 매각 및 양도제한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음(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

2) 관리청과 매각협의

시장·군수는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 의견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봄(법 제66조제1항)

3) 국공유지의 평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가격평가(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함)를 하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후 매각시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법 제66조제6항)

다. 용도폐지 간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봄(법 제66조제5항)

2. 국·공유지의 임대 등

가. 국·공유지 임대

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함)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불구하고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음(법 제67조제1항)

이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여 세입자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여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국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법 제67조제7항)

나. 공동주택 등의 축조

시장·군수는 임대하는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제47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동주택 그 밖의 영구건축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임대한 국·공유지 관리청에 기부 또는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반환하거나 국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매입하여야 함(법 제67조제2항)

3.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1) 양여대상(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됨.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68조제1항)

이는 열악한 구역여건을 감안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주민부담을 경감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군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무상양여대상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자체와 협의(법 제68조제4항)

2) 소유권이전절차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사본을 그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함(영 제62조제1항).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자체의 장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함
(영 제62조제2항)

나. 처분제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음(법 제68조제2항)

다.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도 조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규정으로 정하며,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법 제68조제3항 및 제5항)

Ⅶ.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정비기금의 설치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정비기금)을 설치(법 제82조제1항)

2. 정비기금의 재원

정비기금은 다음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법 제82조제2항, 영 제71조)

- 가. 도시계획세중 10% 이상의 금액(다만,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10%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 비율)
- 나. 제62조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중 지자체의 귀속분의 일부
- 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라. 법 제66조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중

국유지의 경우 20%, 공유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금액(다만, 국유지의 경우 관리청과 협의)

마. 재건축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바.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재원

3. 정비기금의 사용제한

정비기금은 다음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불가(법 제82조제3항)

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1) 기본계획의 수립
- 2)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 3)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 4) 그 밖에 이 법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나.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다.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4. 정비기금의 관리운용 등

정비기금의 관리·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자체의 귀속분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법 제82조제4항)

제13장 감독 등

1. 자료의 제출 등

1. 정비사업추진실적 보고

시장·군수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토부장관에게 다음의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법 제75조제1항, 규칙 제20조)

- 가. 정비구역지정 실적
- 나. 사업시행자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실적
- 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 실적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독한 필요한 때에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에게 업무관련 내용을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법 제75조제2항)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기한

업무관련 내용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규칙 제21조제1항, 법 제88조제2항제2호)

II. 감독

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위반행위 및 조치내용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에 위반된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적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법 제77조제1항)

나. 감독체계

- 1)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2) 시·도지사 →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3) 시장·군수 →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2.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국토부장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할 지자체장과 조합 등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총회의 의사록, 정비사업관련 계약서류,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관련 서류 등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반의 조사를 거부·회피 또는 방해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법 제77조제3항, 영 제68조, 법 제88조제1항)

III. 도시분쟁조정위원회

1. 설치 및 구성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법 제77조의2제1항)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함(법 제77조의2제2항)

- 1) 해당 시·군·구에서 정비사업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 4)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

2. 기능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하되, 주택법(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토지보상법(토지수용위원회), 그 밖의 관계법률(건축법상 건축위원회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음(법 제77조의2제3항)

3. 조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에 조정을 마쳐야 함(법 제77조의3제2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법 제77조의3제3항)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법 제77조의3제4항)

부 록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2009. 8. 13)
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2009.8.13)
3.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2009.10.21)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09. 8. 1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06호(개정 2009. 8. 13.)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기본계획의 의의

1-2-1.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2-2.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법에 따른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절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1-2-3. 기본계획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활동, 물리적 환경의 현황, 장래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비사업 수요 예측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비사업의 합리성·효율성을 도모한다.

제3절 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1-3-1.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과 부문별 계획중 도시·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며, 기본계획의 내용은 도시정비계획 등 하위계획 및 관련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3-2.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특별시·광역시·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로 수립한다.

1-3-3. 기본계획은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한다.

제4절 법적 근거 및 수립범위

1-4-1. 법 제3조제8항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⑧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5절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1-5-1. 계획의 기준년도는 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인구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기준년도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10년으로 한다.

1-5-2. 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제2장 계획수립 일반원칙

제1절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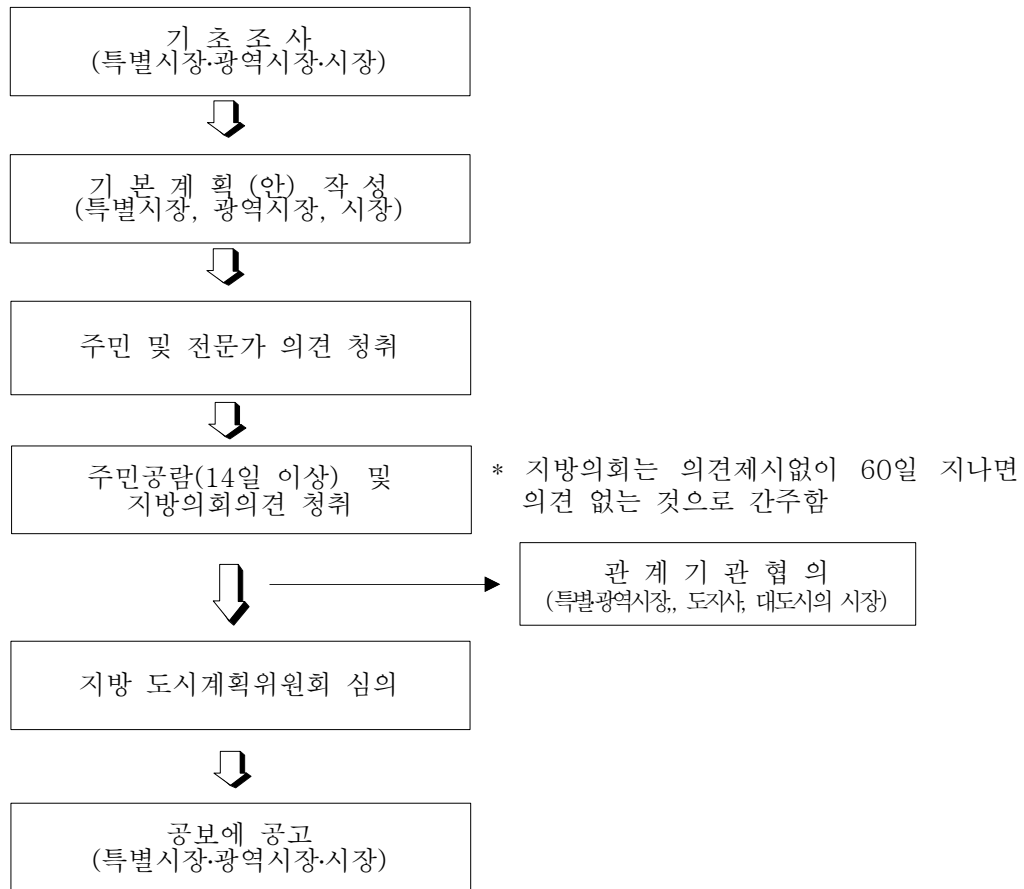
2-1-1.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2-1-2. 기본계획은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한다.

2-1-3. 정비의 기본방향, 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부문별 계획 등 기본계획의 전 과정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수립한다.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작성기준

2-2-1. 기본계획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2-2-2. 기본계획은 별표 1의 “기본계획 작성기준” 및 별표 2의 “기본계획도면 작성예시(안)”에 따라 작성한다.

제3절 도시·주거환경정비의 목표 및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2-3-1. 기본계획에는 당해 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의 목표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이 명시되어야 한다.
- 2-3-2. 도시·주거환경정비의 목표는 당해 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지향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2-3-3.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부문별 계획수립의 지침의 성격을 지닌다.
- 2-3-4. 도시·주거환경정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 작성시 제3장의 기초조사 내용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 (1) 시행된 정비사업의 현황 및 성과 분석
- 나) (2) 소요재정 및 재원확보 방안
- 다) (3)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 활성화 노력 지원 방안
- 라) (4) 국내외 유사한 도시의 정비사업 경향

제4절 광역적 계획의 수립

- 2-4-1. 기본계획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후의 세대규모와 인구유입 등을 총량적으로 고려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한다.
- 2-4-2. 기본계획 수립시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접하는 2 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역간 연관성과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2-4-3. 2-4-2.의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향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단위의 정비예정구역이 분할 시행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분할 이전의 총량적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분할 구역별로 적정히 분담·배치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제3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1절 기본원칙

- 3-1-1. 기초조사는 도시·주거환경정비의 측면에서 시가 갖고 있는 문제의 파악 및 기본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3-1-2.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나 외국의 사례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조사내용

- 3-2-1. 기초조사는 조사내용의 충실도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와 측량(항공측량 포함)도 실시할 수 있다.

3-2-2. 기초조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유형별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정비사업의 분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3-2-3.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4-3-1의 항목을 참고하여 조사하되,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한다. 다만,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조사내용 중에 당해 시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 (2) 산사태·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현황 및 가능성
- (3) 문화재, 역사적 유물 또는 전통건물, 기타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 (4) 지역별·산업별·연령별 인구의 구성, 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 추이
- (5) 지역총생산액, 지역별 산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추이
- (6) 각 지역의 유형별·규모별 주택의 구성 및 변화추이, 노후·불량 건축물(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도, 주택밀도, 주택접도율, 주택의 가격과 소유 및 이용 형태 등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포함) 현황
※ 주택접도율 = 4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수/구역내 건축물 수
- (7) 용도지역·지목별 면적 및 분포, 토지의 소유형태 및 지가, 토지의 형상·고도·경사도·수계 등 지형상태, 과소필지 등 토지이용현황
- (8) 교통량과 도로·상수도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지역별의 편재 등 현황
- (9)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간시설 등의 지역별 편재 등 현황
- (10) 주민의 소득수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 현황
- (11) 재개발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현황

제3절 방법 및 관리

3-3-1.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의 자료나 통계자료, 각종문헌 등 기존자료 활용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이 경우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식적이고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한다.

3-3-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3-3. 기초조사결과는 과거부터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책자 또는 CD 등의 형태로 보관·관리하며, 일반인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시의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제4장 부문별 수립기준

제1절 기본원칙

- 4-1-1. 기초조사에 의한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연도에 유념하여 작성한다
- 4-1-2. 부문별 계획은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성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환류속에서 유기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2절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요건

- 4-2-1. 기초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유형별로 작성한다.
- 4-2-2. 정비예정구역의 설정은 대상지역의 물리적 환경·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상습적인 침수·산사태 등 재해의 위험
 - (2) 이주민 정착촌, 개발제한구역, 국공유지·무허가 건축물 과다 등 지역의 특수성
 - (3) 선행된 정비사업의 재정비 필요성
 - (4) 개발전략상 도시환경 개선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5) 기 시행된 정비구역 주변의 환경의 건전성
 - (6) 주차장·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수준 및 지역주민의 정비사업 희망수준
- 4-2-3. 정비예정구역의 지정기준은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기준에 따른다.
- 4-2-4.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 받은 단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획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하나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경우 별개의 단지로 보아 각각 사업대상 구역으로 구분

- (2) 별개의 단지로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하나의 단지처럼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구역 구분
 - (3) 법 제41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 4-2-5.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으로 분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개선효과, 정비기반시설 현황 등을 분석하여 현지개량과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4-2-6. 정비예정구역의 지정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1) 구역지정대상은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부분으로 한정하되, 건축물의 연령·구조설비에 의한 불량의 정도와 이들 건축물의 과밀정도·상하수도·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이용상태 및 대지의 규모·안전 등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위생상태 및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2) 정비예정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나대지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형여건, 건물의 배치, 토지이용계획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 (3) 구역의 범위는 지형·행정구역·사업규모, 주민의견과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동시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한다.
 -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구역을 정하거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한다.
 - (5)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경계부근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개설된 도로는 가급적 구역에서 제외하고 개설되지 아니한 계획도로인 경우에는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 (6) 구역의 형태는 정비사업 시행시 가급적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 (7) 구역의 경계선은 원칙적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정한다.
 - (8) 토지의 지적경계선등을 경계선으로 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계선이 건축물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 (9) 대상구역을 구획할 때에는 당해 구역의 생활권 등을 함께 고려한다.
 - (10)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확정하며, 토지의 고도이용으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 4-2-7. 기초조사 분석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특성과 지역여건을 등을 감안하여 분류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분류를 검토한다.
- (1) 상습침수지역 등 전면매수 방식으로 시급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 (2) 대상구역내 국공유지 비율이 많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 (3) 정비기반시설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 (4) 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아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
 - (5) 주민의 정비사업 시행 욕구가 낮거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장기간 방치된 지역으로 시급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 4-2-8.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구역으로 분류할 수 없다.

제3절 정비에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표시

- 4-3-1. 기본계획에는 정비에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표시한다.
- 4-3-2. 정비에정구역의 표시에는 도시계획이 포함된 축척 1:5,000이상의 도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시의 규모 및 예정구역의 면적에 따라서 축척을 조정할 수 있다.
- 4-3-3. 정비에정구역을 표시할 때 사업유형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분 표시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과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 4-3-4. 부지 3만㎡를 초과하는 정비에정구역은 개략적인 범위를 표시하는 것 외에 건폐율·용적률 등 개발규모와 개발 시기를 정하며, 부지 3만㎡ 이하의 정비구역은 범위를 설정하기 보다는 좌표로서 그 위치를 표시하고 개발규모 등을 표기한다.

제4절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 4-4-1. 기본계획 수립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도심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 (1) 도심환경의 질적 향상과 문화적 다양성 보전
 - (2)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3) 복잡다양한 도시수요의 충족
 - (4) 주변 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 (5) 보행자 우선 동선처리
- 4-4-2. 인구 및 주거기능 감소로 야기되는 도심 공동화 지역에 대하여 도심부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공동화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4-4-3. 4-4-2.의 공동화 방지 대책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조사와 방향 제시가 포함
되어야 한다.

(1) 도심 및 인접주거지의 주거실태와 거주자 특성 파악

- 가. 도심부의 인구감소 현황
- 나. 주거지의 쇠퇴경향
- 다. 타 용도로의 전환사례
- 라.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마. 거주이유와 거주 만족도
- 바. 계속거주 의향

(2) 도심주거의 유지와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 가. 수립되어 있는 공동화방지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나.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관리방안
- 다. 도심주거확보 및 유지를 위한 도시 계획적 조치

4-4-4. 도심공동화 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개발유도를 위하여 별도의 구역(주거
복합 의무화구역, 주거복합 권장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상위계획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용적률, 층수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5절 주거지 관리 계획

4-5-1. 주거지 관리라 함은 주거지 활성화와 불량화 방지를 위한 당해 지역 주민, 단
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물리적 및 비물리적 활동을 말하며, 주거지 관리계획은
이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 물리적인 주거지 관리활동은 해당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활동으로 마을 공원이꾸기, 골목 꽃길 만들기, 담장없
애기, 쌈지공원 만들기 등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 비물리적인 주거지 관리활동은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원의 개발, 직업 교육, 취업정보센터,
공동탁아서비스, 청소년프로그램, 자원방법활동 등을 말한다.

4-5-2. 주거지 활성화 및 불량화 방지를 위하여 도시의 특성에 맞는 주거지 관리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주거지관리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여 5년 마
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 검토시 반영한다.

제6절 공공과 민간의 역할

- 4-6-1. 공공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며, 민간에는 주민·조합·시공업체·정비사업 전문관리자 또는 시민단체 등이 해당되고, 지방공사·주택공사 등 공기업은 양 부문에 다 해당한다.
- 4-6-2. 공공은 계획수립 등 행정업무, 조합임원 및 조합원 교육,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주민 및 도시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관계법령·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고 민간은 설계, 시공, 자금지원과 정비사업밖에서의 자발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4-6-3. 기본계획에는 필요한 경우 정비예정구역별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정비예정구역 지정시 법 제8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거나 대단위 구역인 경우,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시급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구역 등에는 공공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4-6-4.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별로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의 공공의 참여범위를 함께 설정할 수 있다.
- 4-6-5. 기본계획에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제7절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4-7-1. 기본계획 수립시 계획기간에 발생할 재정수요와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다.
- 4-7-2. 재정수요는 과거에 시행된 정비사업에 투입된 재정과 계획중인 정비사업을 근거로 사업유형 및 정비예정구역별로 추정한다.
- 4-7-3. 재원조달계획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배정 가능한 예산과 적립 가능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중심으로 추정하며, 제3섹타 방식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재원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4-7-4. 배정 가능한 예산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과년도에 배정된 국비·교부세·지방비의 변화추이를 감안하여 추정한다.
- 4-7-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의 원천이 되는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정비구역 내의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근거로 추정한다.

제8절 단계별 추진계획

- 4-8-1. 단계별 추진계획은 우선순위 선정원칙과 단계별 시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4-8-2. 우선순위 선정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 (2) 도시기능의 개선효과
 - (3) 주거생활 질의 개선효과
 - (4)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 (5) 정비예정구역내 거주자중 가옥 또는 토지소유자의 비중
 - (6) 재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
- 4-8-3. 단계별 시행계획은 각 단계의 총량의 범위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하다.
- 4-8-4. 단계별 시행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고,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사업시기와 사업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9절 사업지구내 거주민의 주거안정 대책

- 4-9-1.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수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지구내 거주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4-9-2. 사업지구내 거주민이라 함은 가옥주와 세입자 및 그 동거 가족을 말한다.
- 4-9-3. 주거안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행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사업지구내 거주민의 주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한다.
- 4-9-4. 거주민의 주거에 미친 영향의 조사와 분석은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정비사업시행후 거주지의 변화실태 및 그 이유
 - (2) 정비사업시행후 주거비의 변화실태
 - (3) 정비사업시행후 인근 지역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변화실태 및 변화요인
- 4-9-5.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를 고려한다.
- 4-9-6.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의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 4-9-7.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에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가 곤란한 경우 인근의 임대주택 활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4-9-8.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고려한다.
- 4-9-9.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은 세입자 및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

- 4-9-10.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4-9-11. 특별시장·광역시·시장·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대 조성을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10절 정비예정구역의 관리

- 4-10-1.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이후 정비사업이 착수되기 전까지 정비예정구역의 불량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4-10-2. 정비예정구역 지정이후 정비사업이 착수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정비예정구역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제11절 토지이용계획

- 4-11-1. 도시별·지역별 특성 및 입지적인 잠재력 그리고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계획이어야 한다.
- 4-11-2. 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건설방식의 경우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감안하여 그 구역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 4-11-3.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이 2이상의 용도지역(예: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유형 결정은 현 토지이용 현황 및 향후 도시발전 방향, 각 용도지역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개발 밀도계획은 “용도지역용적제”등을 적용하여 계획할 수 있다.
 - ※ “용도지역용적제”라 함은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대상구역의 전체면적이 3,300㎡으로서, 이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면적이 2,640㎡이고, 일반상업지역 면적이 660㎡일 경우의 개발가능밀도는 320%까지 적용이 가능토록 계획할 수 있음
 - 예)
$$\frac{(\text{상업지역 } 660 \text{㎡} \times \text{조례 허용용적률 } 800\%) + (\text{2종 주거지역 } 2,640 \text{㎡} \times \text{조례 허용용적률 } 200\%)}{\text{사업구역 전체면적}(3,300 \text{㎡})}$$
- 4-11-4. 준공업지역내에 노후·불량주택 등이 밀집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등에 대하

여는 용도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과 향후 도시 발전방향 및 도시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정비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시 노후불량주택 인근의 공장부지 등을 포함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

- 4-11-5. 정비예정구역내에 문화재나 주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업시행후 보존될 수 있도록 보존지구로의 지정을 계획하여야 하며, 여타 경관의 보호나 미관의 유지,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고도지구 또는 경관지구 등의 용도지구 지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제12절 정비기반시설계획 및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4-12-1. 정비기반시설계획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4-12-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상의 기반시설계획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등을 반영하여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규모결정 기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 4-12-3. 정비기반시설계획은 기존의 기반시설 규모를 토대로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수요추정에 의한 공간적 범위와 향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개별법령에 적합하게 수립한다.
- 4-12-4.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기반시설 등 공공용지는 도시전체에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유형 및 밀도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환경 조성 유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4-12-5.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밀도가 현재보다 현저히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도로 및 공원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확대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
- 4-12-6. 4-12-5.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등을 계획한 경우로서 공공용지에 대한 부담이 필요한 경우는 수용인구, 건축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각 정비예정구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의 개발로 현저한 이익이 발생하는 정비예정구역이 있을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그 구역에 지울 수 있다.
- 4-12-7. 정비기반시설 계획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및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경로당, 공동구관장, 세탁장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계획한다.

- 4-12-8. 폭 30미터 이상의 주간선도로에 접하는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진출입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지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개략적인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3절 교통계획

- 4-13-1.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 체계를 구상하고 현재의 토지이용현황과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의 교통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 4-13-2.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간선 교통체계와 연계된 가로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4-13-3.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도시내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도시내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정비예정구역개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4-13-4. 정비예정구역이 집중되거나 대규모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향후의 개발밀도 등을 감안한 교통영향 등을 파악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교통계획등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정비예정구역과 접하고 있는 도로폭원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진입도로 폭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법상 진입도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14절 환경계획

- 4-14-1. 본 지침상의 환경계획이라 함은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4-14-2. 녹지체계 계획은 도시 전체의 광역권과 대상사업구역별 여가공간계획 등 생활권의 녹지체계가 상호연계 되도록 계획 한다.
- 4-14-3. 공원·녹지축은 주변에 입지한 기존 도시계획공원 및 녹지공간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4-14-4. 도시전체에 대한 도시관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자원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처리계획 등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 4-14-5.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인근 근린생활권내에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공원 및 녹지 등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향후 정비계획수립시 적정규모의 공원·녹지·조경 등 환경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절 사회복지 및 주민문화 시설 등의 설치 계획

- 4-15-1.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정비기본시설”과 제5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을 제외한 주요 공공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이하 공공편익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말한다.
- 4-15-2. 공공편익시설이란 기본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시설로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교육시설·공공청사·도서관·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 4-15-3. 공공편익시설 등의 설치계획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사회·문화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등의 범위에 준하여 수립한다.
- 4-15-4.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계획은 개발 이후 총 거주세대 뿐 아니라 유입인구 등을 고려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과 접근성, 주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적정배분 및 입지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 4-15-5. 기본계획 수립시 공공편익시설 등의 종류와 범주를 「영유아 보육법」, 「노인 복지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예시하되, 개발 이후 총 거주세대 및 유입인구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예시하고, 기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시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검토하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공편익시설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4-15-6. 사회복지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및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된다. 좁은 의미로는 보호가 필요한 자의 육체적·정신적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주택 안에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보호를 하는 구호시설·갱생시설·의료보호시설 등의 시설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 보면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중위생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IV-20]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근거 법	시설종류
「사회 복지 사업법」	종합사회복지관·부랑인·노숙인시설·결핵·한센시설
「노인 복지법」	노인복지시설
「아동 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정신 보건법」	정신보건시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복합노인복지시설
「한 부모 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 보육법」	보육시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 4-15-7. 계획인구와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탁아소, 유아원, 양로원, 모자보건 및 보건시설, 심신장애자 수용시설, 노인복지시설, 직업훈련원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4-15-8.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 및 노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4-15-9.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중 종합복지관, 청소년회관, 장애인복지센터 등은 이용이 편리한 중심지역이나 근린공원 부근에 설치하고 수용시설인 양로원, 고아원, 미아시설 등은 주거지와 분리되어 있으면서 환경과 외부와의 접근성이 좋은 근린공원에 설치한다.
- 4-15-10.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요구되는 지역 등 타 지역과 비교하여 가구주(맞벌이가구 및 편부·편모가구 등)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육아 및 노인보호를 위한 공적 지원이 더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탁아소·유아원·노인주간보호소 등의 설치계획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 있다.
- 4-15-11.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또는 시·군의 문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구계획에 따라 시민회관·생활과학관·극장·체육관·운동장 등에 관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4-15-12. 도서관은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배치하되, 규모가 큰 도서관 또는 본관은 도심부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그 위치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장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규모가 작

은 도서관 또는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구(近隣住區) 또는 지역단위로 배치한다.

제16절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4-16-1. 건폐율·용적률 등 개발밀도는 정비사업별 또는 정비예정구역별로 상한선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개의 정비예정구역을 묶어서 정할 수 있다.
- 4-16-2. 개발밀도 설정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1) 도시의 역사·문화 보전 및 활용
 - (2) 경관 및 자연환경 보호
 - (3) 주요도로의 교통소통 및 지구내 도시기반시설 정비실태
 - (4)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 (5) 지구 주변의 건축 및 도시계획사업
- 4-16-3.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적용기준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하되 정비구역별, 가로구역별 성격과 특성에 따라 건폐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건폐율의 최소한도 또는 최대한도를 규정할 수 있다.
- 4-16-4.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적용기준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내에서 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되 다양한 공익요소(주거복합, 문화시설 도입, 가로환경 활성화, 역사보전 등)의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다.
- 4-16-5. 개발밀도는 공익요소(주거복합, 문화시설 도입, 가로환경 활성화, 역사보전 등)의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용적률은 기준용적률과 함께 공개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용적률을 허용하는 때와 대지의 일부를 도로·공원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때에 추가로 용적률을 부여하는 허용용적률을 제시할 수 있다.
- 4-16-6.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의 대상·구역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하여 정비계획수립시 사업자의 혼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4-16-7. 건축물 높이계획은 사업유형 및 구역특성에 따라 별도의 높이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고높이 및 층수 등을 구역별로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구역별 경관시물레이션 등 추가적인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최고높이 및 층수를 정할 수 있다.

제17절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계획

- 4-17-1. 정비예정구역 및 인근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적 건축물에 대하여 보존 및 정비사업과 관련한 활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 및 인근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적 건축물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4-17-2. 예정지구 및 인근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적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가능하면 당해 도시의 주요 문화재와 주변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적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제5장 계획수립의 절차

제1절 기본계획의 입안

- 5-1-1. 기본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으로 한다.
- 5-1-2. 기본계획의 입안은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부서 및 기획·예산·집행부서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5-1-3. 기본계획의 입안은 시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시민단체, 주택단지 등의 게시판 및 반상회 등에 홍보하여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한다.
- 5-1-4. 기본계획은 기본방향 등 총론 및 각 정비사업 유형별로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

- 5-2-1. 작성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5-2-2. 관할 시장이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해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 (1) 공청회 개최목적
 -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 (3) 수립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의 개요
 - (4) 기타 필요한 사항
- 5-2-3. 공람과 병행하여 신문공고 이전에 해당 동의 반상회보 및 시에서 발행하는 회보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인 등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한다.

- 5-2-4. 필요시 방송매체 (TV, 라디오) 및 신문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5-2-5.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식을 조사한다.
- 5-2-6. 공람·공청회 등에 제안된 의견은 조치결과, 미조치사유 등 의견청취 결과요지를 승인신청시 첨부한다.

제3절 기본계획의 승인

- 5-3-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입안된 기본계획(안)을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거친다.
- 5-3-2.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한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 5-3-3. 시장이 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승인신청서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다.
 - (1) 기본계획승인 신청서 (공문)
 - (2) 기본계획도면 20부
 - (3) 기본계획책자 각 20부
 - (4) 기초조사 자료 및 계획수립을 위한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각 20부
 - (5) 주민의견청취 서류 1부
 - (6) 지방의회의견서 1부
- 5-3-4.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내 의견제시)한다.
- 5-3-5.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시장이 신청한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다.
- 5-3-6.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기본계획의 요지 및 열람장소를 포함하여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5-3-7.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5-3-6의 고시문과 기본계획 책자 및 기초자료 조사집 각 2부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 6-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6-1-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 6-1-3. 이 지침 시행당시 결정된 재개발기본계획은 이 지침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 6-1-4. 이 개정 지침은 최초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본계획 작성기준

가. 개념

장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하여 향후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표시하는 도면으로 '기본계획총괄도'와 지구별 '정비예정구역 표시도'로 구분 작성한다.

나. 도면축척

- (1) 기본계획총괄도는 도시별로 적정한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 1매에 자치구 또는 도시전체의 정비예정구역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2) 지구별 정비예정구역 표시도는 예정구역의 면적 및 도시의 규모 등에 따라, 축척 1/3,000 또는 1/5,000중에서 선별하여 사용하되, 도시 계획이 포함된 도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소규모지역(3만㎡ 이하)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결정조서에 의해 표기한다.

구역명	위치	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업예정시기	비 고

라. 경계표시 방법

- (1) 정비예정구역의 경계표시는 붉은색의 일점쇄선(- · -)으로 표시한다.
- (2) 구역의 경계는 인근 도로 등으로 물리적 구획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략적으로 표시한다.
- (3) 정비예정구역의 수용세대수를 감안, 주택법상의 진입도로 폭원이 미달될 경우 진입도로 확보방안을 구역경계에 포함하여 표시한다.
- (4) 협소한 도시계획도로를 사이에 두고 정비예정구역이 각각 별도 지정되는 경우는 부족한 간선도로 확보방안을 포함하여 표시한다.

마. 토지이용계획

- (1)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예정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주택재건축예정구역·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사업유형유보구역 등으로 표시한다.
- (2) 각 지구별 정비예정구역 표시도에는 구역의 면적·용적률·건폐율·최고높이를 사업유형과 함께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구역개략면적	용적률	건폐율
최고(최저)높이	기타	기타

바. 특기사항

- (1) 각 정비예정구역별 특성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계획 및 공동이용시설계획, 환경계획문 화재등 주요시설물 보존계획 등이 필요한 구역의 경우에는 표현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기본계획도에 표현할 수 있으며, 방법은 원형 또는 구형내에 상징적 기호나 문자를 삽입하여 개략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2) 도면에 표시된 정비예정구역의 경계는 포괄적이고 개념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개별토지의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향후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추가포함 또는 제외될 수 있음을 언급하여 기본계획이 확일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사. 사업유형별 정비예정구역 도면 표시기준 (Scale 1/3,000, 1/5,000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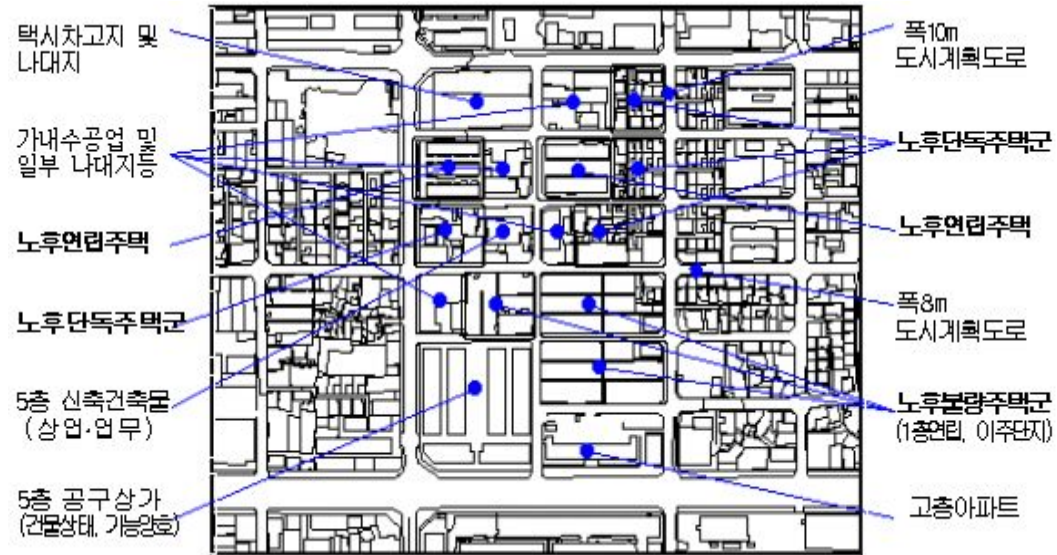
구 분	예 시 도	채 색	표 시 방 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 정 구 역		·바탕 : 연한노랑(5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주택재개발사업 예 정 구 역		·바탕 : 진한노랑(4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주택재건축사업 예 정 구 역		·바탕 : 연한주황(3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도시환경정비사업 예 정 구 역		·바탕 : 진한주황(30)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사 업 유 형 유 보 구 역		·바탕 : 연한노랑(5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원간격 : 5mm ·원직경 : 3mm

주 : ()는 Auto CAD 256 color 기준

<별표 2>

기본계획도면 작성 예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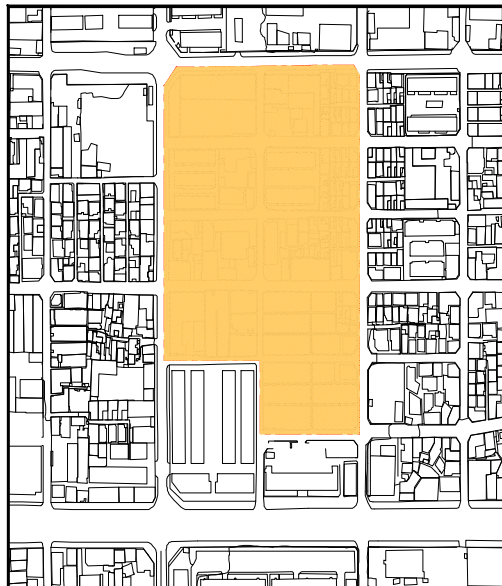
□ 현황(1/5,000)



※ 진한경계선 부분이 노후 불량주택으로서 재개발필요 지역임.

□ 기본계획도면 작성예시도(1/5,000)

주택재개발예정구역		
36,363㎡	250%이하	50%이하
25층이하	-	-



2.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09. 8. 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28호(제정 2005. 5. 1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3호(개정 2006. 7. 2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52호(개정 2008. 5. 1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44호(개정 2009. 2.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93호(개정 2009. 6. 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1호(개정 2009. 8. 13.)

1. 목적 및 적용방법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 시행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택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며, 그 면적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용면적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측하여 산정한다.

나. “시·도”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말한다.

다. “시·도지사”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2-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2-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2-3. (2-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4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건설 세대수의 8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2-4.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 지사는 필요한 경우 (2-3)의 기준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5. (2-2) 내지 (2-4)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연계하여

전체 구역에 대한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사업구역 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업구역은 임대주택건설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주택재개발사업

3-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3-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 부터 (4)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 (2)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 (3)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 (4) 「항공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고도제한에 따라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3-3. (3-2)의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차감하여 조정한 임대주택 세대수 이상을 인근 정비구역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3-4 수도권외의 경우 시·도지사가 (3-1)과 (3-2)의 기준을 강화하여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의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가 (3-1)과 (3-2)의 기준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의한다.

4. 주택재건축사업

4-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4-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1)의 기준을 적용하되, (4-1)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른다.
- 4-3.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 주택면적(재건축하기 전의 주택면적을 말한다)의 10% 이내에서 확대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는 때에는 (4-1) 또는 (4-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4. (4-1) 내지 (4-3)의 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행정사항

- 5-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551호, 2009.8.13>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

확 정 일 : 2009년 10월 21일

시 행 일 : 2009년 10월 21일

1.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0월 1일자로 설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무상양여 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그 관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관리청이 불분명한 국유지 또는 무주부동산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관리청 첨기등기의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양여된 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함(안 제4조)
- 다. 양여된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양여된 토지의 가액은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며, 그 처분수익을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정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의 가격 등의 일부를 차감함(안 제6조)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무상으로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여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청이 불분명한 국유지 또는 무주부동산의 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공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해당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국유지에 대하여 관리청지정을 받아 관리청 첨기등기의 절차를, 무주부동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으로의 취득 및 관리청 첨기등기의 절차를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 한다) 전까지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양여된 토지의 가격산정) ①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양여된 토지의 가격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제5조(양여된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 양여된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정비와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양여된 토지의 처분수익의 운용) ①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양여된 토지

의 가액은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원가에 포함된 양여된 토지의 처분수익은 공사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정비
2. 「주택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따로 분양하지 않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3.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공사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5. 공사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용도

③ 양여된 토지의 처분수익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의 가격 등의 일부를 차감하며, 주택의 가격 등의 차감 후 처분잔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설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여된 토지의 처분수익의 사용방법이 동일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사업시행기관의 사용방법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주거환경개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Chapter

V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V-1. 농촌생활환경정비

V-II. 농업생산기반조성

V-1. 농촌생활환경정비

1. 사업개요
2. 사업시행 주요내용
3. 사업추진체계

제1장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

1-2. 근거법령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3조, 제71조, 제114조 준용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 제52조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원칙
- 제53조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 제55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 제56조 생활환경정비사업¹⁾ 시행자
- 제57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제6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 제6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 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 제71조 기술지원 등

1-3. 추진방향

- 농어촌 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경관, 복지, 환경개선 등 농어업인의 생활 기반을 구축
 - 지역별 기초인프라 구축실태를 토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중 추진
 - 단순 민원 해소 차원의 선심성 또는 소액 분산투자 지양
- ※ 시군별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사업을 시행

-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 바. 빈집의 정비
 -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 차.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2-1. 사업대상 지역

- 일반농산어촌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120개 시군의 읍·면·동 지역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사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지역
- 대형 암반관정에 의한 생활용수 개발사업(단위사업)은 20세대 이상의 마을 중 우물 및 하천수,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로써 이용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마을

2-2 지원내용

- 마을기반정비 : 마을내·마을간 도로, 상·하수도 시설, 교량, 주차장 등 설치 비용
- 농촌경관개선 : 세천 정비, 수변 공원화, 소공원, 담장 정비(식생담 조성 등), 빈집의 철거·정비, 체육공원 조성 등 비용
- 문화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설치비용 등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설치비용
- 생활용수 개발사업
 - 지하수 조사·개발(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 오염방지 그라우팅 포함, 영향조사, 착정, 우물자재 설치, 우물소독, 수질검사 등)
 - 암반관정 준공 전 확인검사
 - 수원공시설(수중모타펌프, 양수장옥, 전기시설 등)

- 이용시설(송·배수관, 수조,물탱크, 정수시설, 계량기, 소화전 등)
- 1지구당 평균 220백만원을 표준으로 지원하되, 시·도지사가 관정심도 및 수혜안구 등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은 수혜자가 부담(수도법 제38조 준용)
-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소득확충 사업 등 타부문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본 사업에서는 제외
- ※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비, 공사감리비 등 부대경비는 집행가능하나, 지역 역량강화(S/W)사업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2-3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제3장

사업추진체계

3-1 사업시행자

-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가 시행하되, 시장·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56조 참조)
 - 한국농어촌공사
 -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 주택소유자(빈집의 정비 및 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에 한함)

농어촌정비법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103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16조제1항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2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예산편성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수립된 생활환경정비계획 또는 포괄보조 5개년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 포괄보조 예산을 편성
 - 면별 기초인프라 현황 또는 생활용수 일제조사결과, 중장기 계획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지구를 선정
 - 일회성 민원 또는 분배식의 소액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하되, 보상이 필요한 경우 보상협의 등이 완료된 지역을 선정
 - * (부적절 사례1) 예산액에 비해 다수의 사업 지구를 선정하거나 동일 로선의 도로를 수차례 나누어 분산투자
 - * (부적절 사례2) 보상협의도 되지않은 일부 사업장에 과다한 예산을 배분 해 놓고 보상 지연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함
- 사업기간은 당해 년도 편성예산을 토대로 당해년도 착수 및 준공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량 등 지역여건상 필요시 2년 이상의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
- 시장·군수는 대형암반 관정 개발을 통한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사업의 적성성을 검토
 - '08년 농어촌 생활용수 일제조사결과에 포함된 마을(농촌지역개발과-1031호 : '08.6.2)로서 1지구당 수혜가구가 20세대 이상인 지역
 - 수혜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농가부담으로 내부배관시설을 설치하고,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하며, 전기료 등 관리비용을 부담하여 시설물 활용이 가능한 지역

- 다음의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
 - 일반 상수도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지(상수도 부서와 사전 협의)
 - 댐수몰 예정지 또는 공해로 마을을 이전해야 하는 지역
 - 우물, 샘 등 자연수 등을 이용하고 있는 마을 중 이용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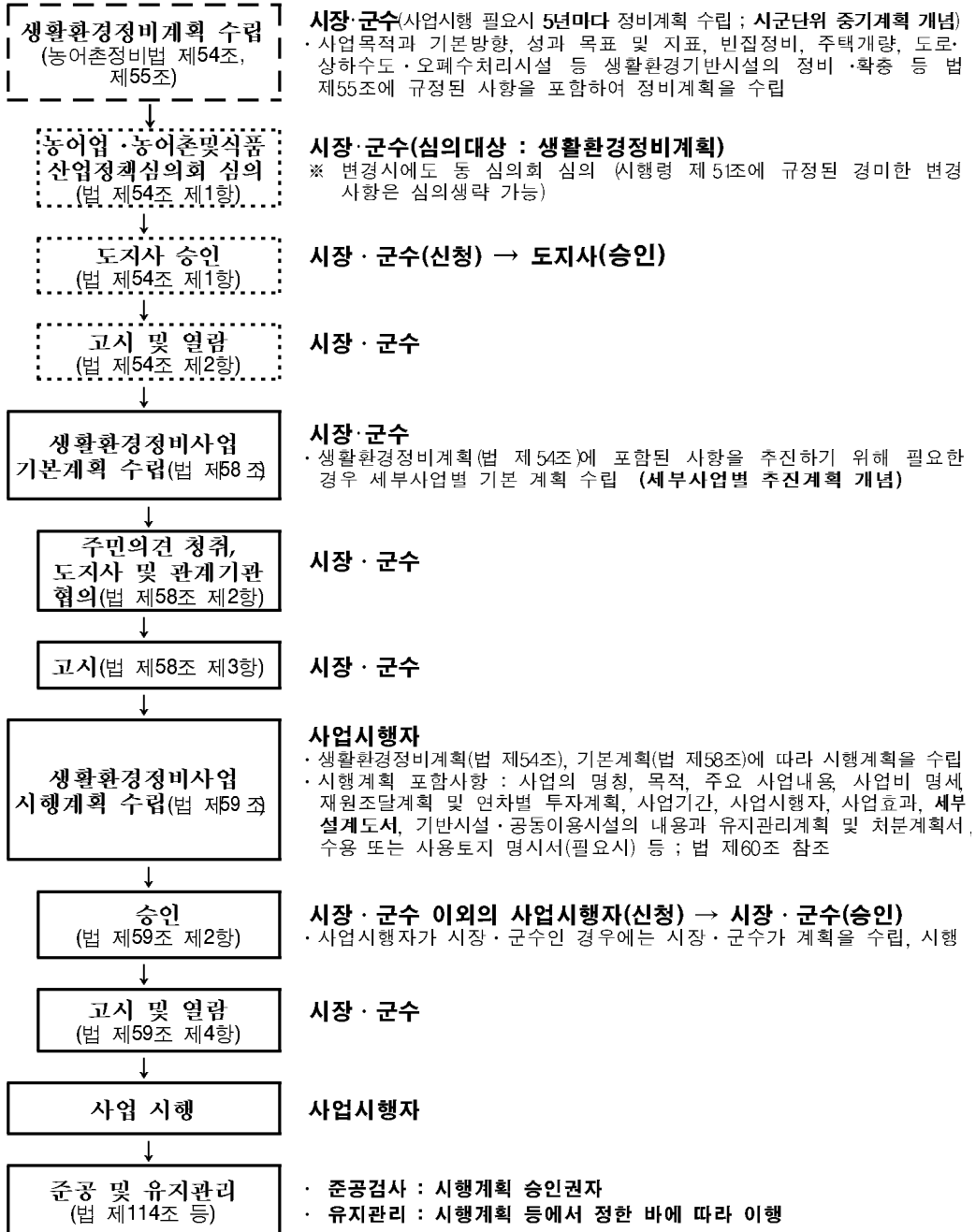
3-3 사업시행 절차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반적인 추진절차]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 마을조성 제외



(1)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농어촌정비법 제54조 및 제55조, 시행령 제50조 · 제51조 · 제53조)

- 시장·군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다음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시·군 농어업·농어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성과 목표 및 지표
 3. 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
 7.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8. 교육·문화·복지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개발
 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등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생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상기 시·군 농어업·농어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 및 도지사의 승인, 고시, 열람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군 농어업·농어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 및 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음

< 경미한 변경의 범위 >

- 생활환경정비 계획과 관련된 다른 농어촌정비사업계획 변경되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농어촌정비법 제58조, 시행규칙 제42조)

- 시장·군수는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지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경미한 변경의 범위 >

-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변경
- 시장·군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함

(3)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60조 및 제61조,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43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 사업의 명칭
 2. 사업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 기간
 7. 사업시행자
 8. 사업 효과
 9. 세부 설계도서
 10.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 12-1. 농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 12-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생활환경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군수 이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 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 가목 및 나목) 중 사업대상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 신규마을 조성
 - 농어촌마을 재개발 사업
- 시장·군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비
 4. 주요 사업내용
 5. 사업시행자
 6. 사업시행기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과 고시, 열람 등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함.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음

< 경미한 변경의 범위 >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시 승인권자가 부여한 조건의 이행에 따른 변경
-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경

-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변경
- 시장·군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규모 및 시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음

3-4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

- 지역별 기초인프라 구축실태 등을 감안한 증장기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사업장별 예산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집중 투자가 되도록 함
- 사업 시행 및 관리시에는 관련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관계기관 등과 사전 협의
 - 급수시설 :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 처리지침(2011.4. 환경부 등) 등
 - 도 로 :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등
 - 하수도정비 : 마을하수도 업무편람(환경부)
 - 수밀성 하수도관, 청소가 용이한 맨홀 설치 등
 - 소하천 정비 : 소하천실무지침서
 - 빈집정비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빈집정비사업)
 - 군사보호구역 등 군부대시설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할부대와 사전 협의
- 자연환경 및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공법 시행

- 기존 시설의 재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마을회관 등 주민활용 시설은 주민 등의 이용이 원활한 구조로 설계
 - * 마을회관 예 : 기존 마을회관의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노인 등)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문턱을 낮게 하며, 이용시설을 1층에 배치
- 시장·군수는 공사시행 과정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후의 현장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함
- 설계·감리 등 사업비 요율
 - 세부설계 및 공사감독, 사업관리를 위탁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별표5)를 준용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60조(별표5)의 사업관리비 요율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경비(출장여비, 소모품비등)를 실비로 계상할 수 있음
-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시장·군수 또는 수탁시행자가 담당
 -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용지의 확보는 매수·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편의 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시설용지를 부담할 수 있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3-5 대형암반관정에 의한 생활용수 개발시 고려사항

- 20호 이상 농어촌지역 마을 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또는 마을(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로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마을을 선정

- 다음의 마을을 우선 선정대상지구로 검토
 - 상수도부서와 협의하여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 중 수질이나, 수량이 부족하여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역
 - 수혜가구 및 급수인구가 많은 마을
 - 제한급수 지역 등 상습적으로 식수가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되어 시급한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마을
 -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고 개발 후 시설을 활용,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마을
 - 기존의 생활용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 등
- 지하수 개발 허가 또는 신고, 시설 설치기준, 수질검사, 불용공(폐공) 처리 등은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 지침(2011.4. 환경부 등) 등 참조

3-3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지원목적 와 사용방지를 위한 수시 확인·점검 등
 - 관련법령 및 농림수산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동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
- 자부담이 수반되지 않은 시설은 시장·군수 앞으로 등기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처분제한 기준 적용제외 가능(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29조 1항 9호)
-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

V-2. 농업생산기반조성

1. 사업개요
2. 사업시행주요내용
3. 사업추진체계

제1장

사업개요

1-1 목적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여건 개선
-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화를 통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
- 지표수 보강개발 :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조성

1-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내지 제10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 라.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제7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1-3 추진방향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농로,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유통 시설간의 농로 등을 확포장
 -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농로 우선 추진
-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뭄상습지역을 우선 개발
 - 사업효과 조기거양을 위하여 준공위주로 집중 투자
 - 공사 중 부분급수가 가능하도록 시행
 - 경지정리 등 타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사업효과 제고
- 지표수 보강개발
 - 내한능력이 부족한 수원공 보강개발로 가뭄지역의 해소
 - 수원공 위주의 집중개발 및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성 제고
 - 발용수 확보가 필요한 지역도 포함하여 개발

제2장

사업시행 주요내용

2-1 사업대상

- 일반농산어촌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120개 시군 지역

2-2 사업내용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경지정리지구 내의 경작로 폭이 좁아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
 - 대형기계화 영농에 맞추어 포장폭을 결정하고, 농기계가 교행할 수 있는 공간(대피소)을 확보하여야 함
 - * 세부설계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농도편) 등을 적용하고,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구조령,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안부) 등을 적용
-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 수혜면적이 50ha미만의 가뭄지역으로서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을 설치하여 농촌용수확보
 - 용·배수로를 설치하여 용수공급 체계 구축
- 지표수 보강
 - 수원공 시설이 열악하거나 내한능력이 부족하여 상습적으로 가뭄을 겪는 지역에 대한 추가소요 농촌용수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주곡생산기반 확충
 -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수원공 시설규모 확장

2-3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광특회계의 계속소요에 반영하여 지원)
 - 시·군은 광특회계 계속소요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사업추진체계

3-1 예산신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군(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청한 사업량 및 사업비 검토
- 해당 도는 시·군(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청한 사업량 및 사업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자체 관리구역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을 포함하여 사업량 및 사업비를 신청

3-2 사업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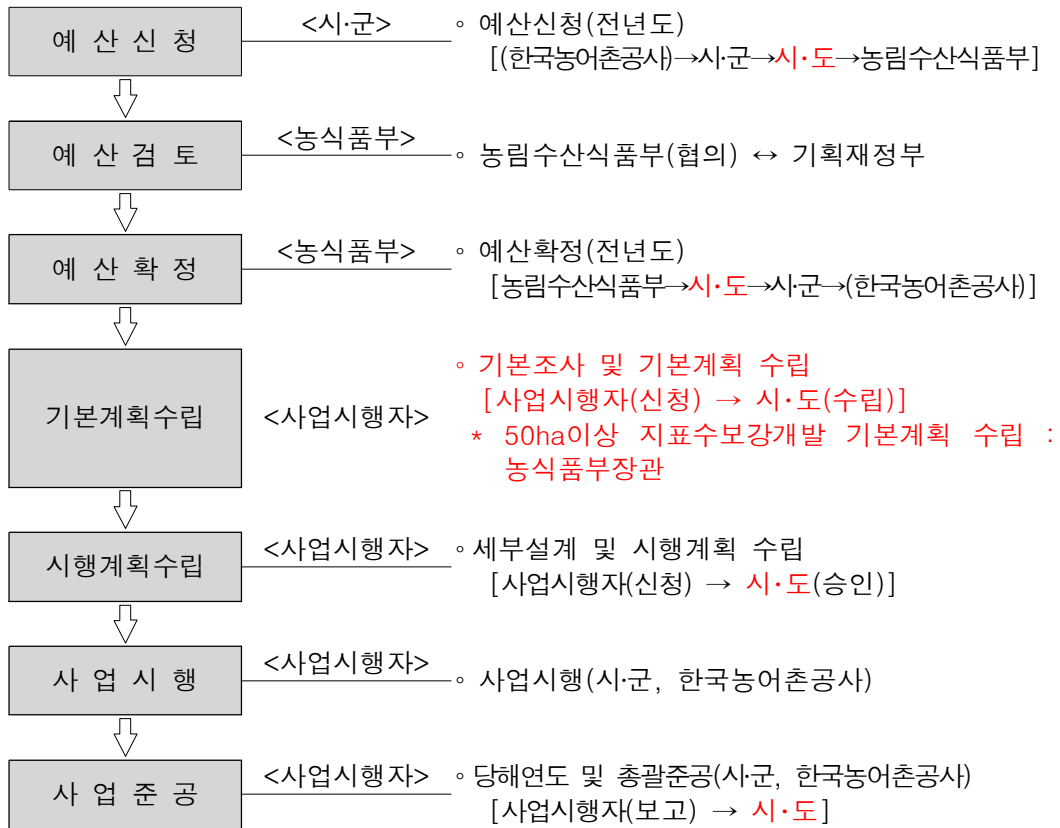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는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 수립을 요청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 다만,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경우 50ha 이상 지구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기본계획 수립을 요청하여야 함
- 사업시행
 - 사업시행은 당해 연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 도서에 맞게 실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에는 관련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자연환경 및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공법 적극 도입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시행 과정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사업계획변경
 - 사업시행자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시행과정에서 이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의 위탁
 - 농어촌정비법 **제109조,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설계·감리 등 사업비 요율
 - 실시설계 및 공사감독, 사업관리를 위탁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 60조 (별표5)를 준용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60조(별표 5)의 사업관리비 요율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경비(출장여비, 소모품비등)를 실비로 계상할 수 있음
-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수탁 시행자가 협의하여 담당할 수 있음
 -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용지의 확보는 매수·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편익 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시설용지를 부담할 수 있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법률』의 규정에 따름

3-3 사후관리

-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는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 시설물 관리대장 및 시설물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3-4 사업추진체계



Chapter

VI

마을공동소득 및 공동문화조성 (시범사업)

1. 사업개요
2. 사업시행 주요내용
3. 사업추진체계

[부록] 마을공동 소득창출 및 문화조성 사업계획서(예시)

제1장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활동(제조·가공 등)을 통해 주민 소득향상을 도모
-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사용빈도가 낮은 각종 시설물 또는 마을회관 등의 공간 활용 및 마을전통문화 발굴 계승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마을주민들의 활력을 창출

1-2. 근거법령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3조, 제71조 준용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5.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향토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능한 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도읍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원칙	제53조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55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6조 생활환경정비사업 ¹⁾ 시행자	제57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6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제6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한지	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71조 기술지원 등	

1-3. 추진방향

- 농어촌 지역의 색깔 있는 마을 형성을 위해 마을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델 개발, 체험위주의 마을사업에서 탈피하여 공동소득창출 및 공동문화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업시행 주요내용

2-1. 사업대상

- 일반농산어촌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120개 시군 지역 중 시군당 1개 마을

2-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마을공동소득창출과 마을공동문화조성 2개 사업 중 시군당 1개 소 이내에서 지원

* 마을개발(진입로, 마을회관 건립, 마을상수도, 쉼터 등 개별 인프라정비는 제외)과 관련된 국고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제한

【마을공동소득창출】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 지적재산권 출원, 마케팅, 마을 공동소득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
-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비(총 사업비의 3% 미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공동문화조성】

- 공동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기존시설 개보수(리모델링 포함), 소규모 시설 설치 또는 기존 시설의 복원
- 새로운 문화의 발굴 및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마을 공동문화 조성과 관련된 공연, 축제, 외부 문화인 초청
- 마을 공동문화 조성을 위한 장비, 설비 구입
-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총 사업비의 3% 미만)
- 마을간 문화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제외】

(공통사항)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원제외 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
-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와 유사한 사업 포함), 체험마을개발사업 등을 지원받은 마을

(마을공동소득창출)

- 토지 조성 및 구입비

(마을공동문화조성)

-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주도하는 축제·행사·교육·홍보사업

【기타유의사항】

(공통사항)

- 사업추진단(10명 내외) 및 자문단(3명 내외)을 구성·운영
- 사업비 집행방법 등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준하여 처리

(마을공동소득창출)

- 참여 가구수 30가구 이상, 전체 가구수 50%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이익이 참여가구에 분배되어야 함(1인·소수가 이익을 독식하지 못함)
- 보조금의 지원이 종료되어도 자생·자립할 수 있는 사업

【사업예시】

(마을공동소득창출)

- 마을의 특정인의 기술(00전빵, 00두부 제조)을 마을 공동의 사업으로 확산함으로써 주민 소득을 증대
- 제주도 00마을은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천연염색 기술을 배워,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소규모 소득을 창출(농업기술센터 협조)
- 동호인을 대상으로 생활도자기 만들기 프로그램(교육 및 실습)을 운영하고 생산품을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통해 판매
- 도시민들에게 텃밭판매(텃밭재료, 재배관리방법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교육·상담 등을 통해 도시민의 재배상 애로해소)

(마을공동문화조성)

- 조선중기에 설립된 00서원을 활용하여 마을 독서동호회를 결성·운영함으로써 마을의 독서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
- 마을의 전통 풍물놀이, 밴드 모임을 결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배우고 이를 활용(자체 공연, 외부 공연 등)하는 사업
- 각종 동호인 모임(사진, 게이트볼, 등산, 낚시 등) 활성화 사업
- 마을 언론학교 운영,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자치언론을 확산시킴으로써 주민의 자부심으로 높이고 출향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

2-3 지원조건

○ 지원조건

- 마을공동소득창출 : 국비 70%, 지방비 30%(주민부담 20%는 별도)
* 주민부담은 전체 가구의 50% 이상 참여(1인이 부담금의 25%이상 부담금지)
- 마을공동문화조성 : 국비 70%, 지방비 30%
* 전체 가구의 50%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문화조성(주민 공동활동을 주 내용으로 함)을 위한 마을공동 자체규약을 미리 갖추어야 함

○ 지원한도

- 마을공동소득창출 : 마을당 5억원 이내(30가구 이상 행정리, 전체가구의 50% 이상 참여)
- 마을공동문화조성 : 마을당 2억원 이내(전체가구의 50% 이상 참여)

○ 사업기간 : 2년간

사업추진체계

3-1 예산신청

- 시장·군수는 시범사업 대상지 등을 선정하고, 매년 5월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한도외)에 반영하여 도를 통해 예산신청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량 및 사업비 검토

3-2 사업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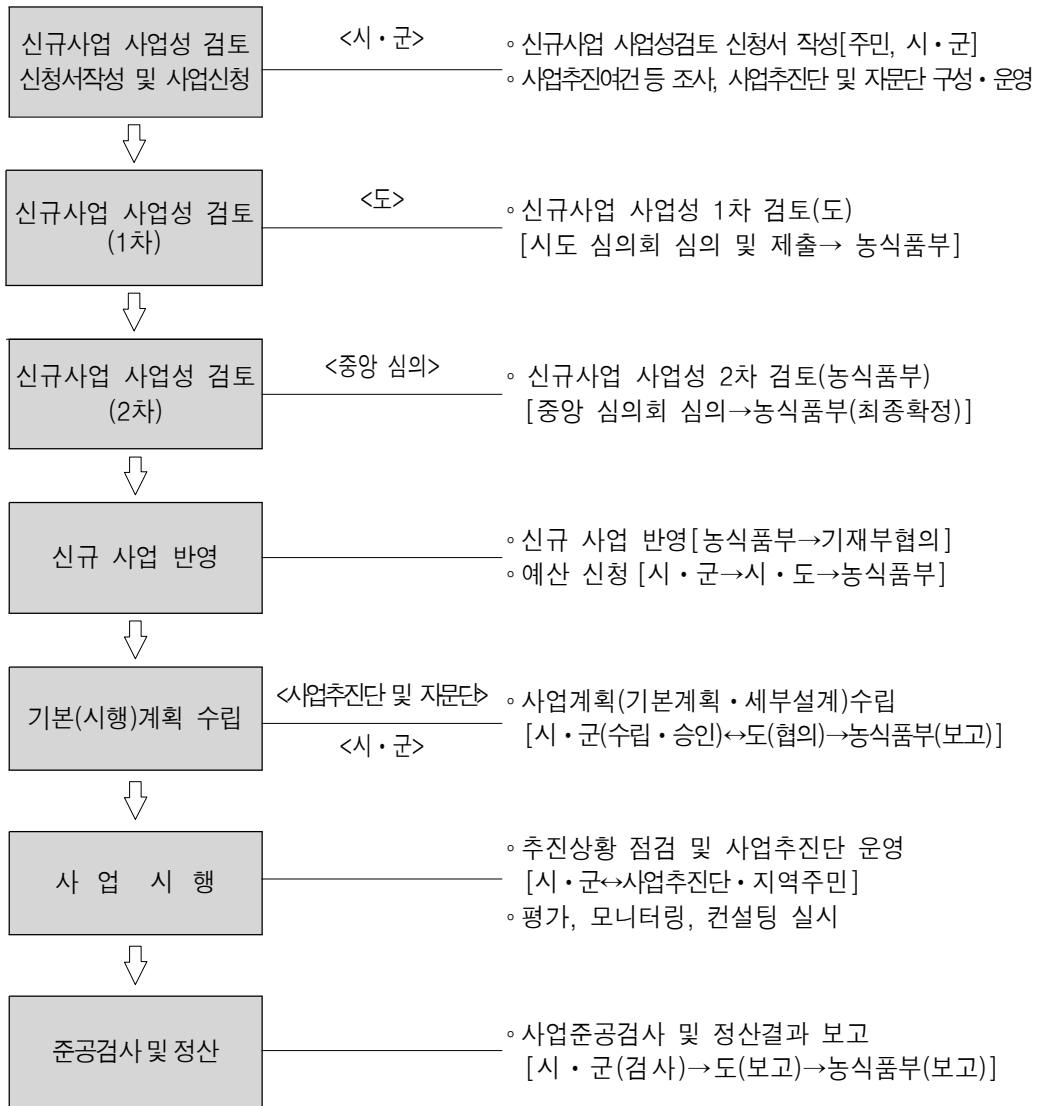
- 기본(시행)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후, 기본(시행)을 승인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확정·승인된 예산규모에 맞도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확정·승인(위탁의 경우)을 거쳐 기본(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본(시행)계획서를 해당 도와 농림수산식품부(2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 사업시행은 기본(시행)계획이 확정·승인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맞게 시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에는 관련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시 획일적인 사업추진 지양,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환경 및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공법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전과정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사업계획변경
 -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사업을 시행과정에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 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 지역주민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자문을 거친 후 변경하여야 한다.
 - * 경미한 변경이란 기존 사업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기존계획에 포함된 단위사업의 세부내용 등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를 말함
- 사업의 위탁
 - 농어촌정비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설계·감리 등 사업비 요율
 - 실시설계 및 공사감독, 사업관리를 위탁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 60조 (별표5)를 준용
 -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60조(별표 5)의 사업관리비 요율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경비(출장여비, 소모품비등)를 실비로 계상할 수 있음
-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시장·군수 또는 수탁시행자가 담당
 -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용지의 확보는 매수·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편익 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시설용지를 부담할 수 있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법률」의 규정에 따름

3-3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 시설물관리대장 및 시설물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자부담이 수반되지 않은 시설은 시장·군수 앞으로 등기함을 원칙으로 함

3-4 사업추진체계



[부록] 마을공동 소득창출 사업계획서(예시)

○○마을공동 소득창출 사업계획서

○○○시/도 ○○시/군

○○마을 공동소득 사업계획서

1. 계획서의 현황자료는 필요에 따라 사진과 도면을 첨부하여 설명하고 전체분량은 15page 이내로 작성 권고

I. 사업개요

1. 지역연혁

- 위치 : 도 시·군 면 리 외 개리
 - 행정리(), 자연마을()
 - * 행정리 및 자연마을(수)와 마을명을 기재
- 읍·면사무소와 시·군청 소재지 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 ()읍면 사무소 : km, 분 소요
 - ()시청, 군청 : km, 분 소요
 - * 당해 권역이 속한 읍·면, 시·군 및 인접한 타 읍·면, 시·군까지의 도로상 거리(km)와 승용차로 이동시 소요시간(분)을 서술
- 마을연혁, 역사, 지명유래, 행정구역변천사 등을 중심으로 작성
 - * 마을에 어떤 의미가 있는 역사가 있으면 작성 또는 마을별 연혁, 역사, 지명유래 등을 작성
 - * 각 자연마을의 연혁을 서술하면서 인접한 마을이나 읍면과의 관계 등을 설명

2. 마을(행정리)현황

- 인구(농가인구포함) 및 농경지현황

자연 마을명	인구수 (명)			가구수 (호)			면 적 (ha)					
	계	남	여	계	농 가	어 가	비농어가	계	답	전 수원 (과수원)	임야	기타
계	()	()	()									
○ ○												
○ ○												

※ ()는 농가인구수

- * 자연마을별로 인구수(남,여, 농가인구), 가구수(농가,비농가), 경작지 현황을 기재
- * 마을별로 조사된 기초자료는 마을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보존하여 마을 현황자료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자료는 사업계획 작성년도를 기준으로 기입

◦ 연령별 인구구조

<연령별 인구구조 현황>

구분		○○ 면		○○ 마을	
		인구	비중	인구	비중
합계					
연령	14세 이하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 '10년말 현재기준으로 작성(시군통계연보 및 읍면 행정자료 참고)

3. 전통역사·문화 현황

◦ 지역문화재 현황

구분	총계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중요민 속자료	주요무 형문화 재	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무형 문화재
○○군														
()면														
() 마을														

* 마을이 속한 행정구역(郡, 面) 및 권역내에 소재한 국보, 보물, 사적, 중요 민속자료 등 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조사 기재

* 이외에도 마을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양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작성

◦ 마을문화행사 현황

향토문화축제	시행 월	장 소	축제 주요내용	주최
○○ 축제	(기간: 일)			
○○ 행사	(기간: 일)			

* 마을에서 2000년 이후에 개최한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에 대해 시행 월(기간), 장소, 축제내용, 주최(주관) 및 방문(관람)객 수 등 현황을 기재.

* 마을주민들이 행사기간에 한 역할(지역 농특산물 판매, 숙박 제공, 자원봉사 등)에 대해서도 별도 기술

4. 지역공동체 활동 내역

◦ 지역공동체 활동 현황

자연 마을명	공동체 조직명	구성원수	모임회수	등록일자	주요 활동 내역
○○	영농회 청년회 부녀회 4-H클럽 · ·	○○명	○회/월		○마을의 주요 대소사 결정내역
○○					

* 마을별로 작목반, 영농조합 등 영농조직 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을 상세히 기술,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공동체 조직의 실질적인 활동 상황을 기술

◦ 마을추진단 구성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주요 담당업무	비고 (구성일자)
추진단장 부단장 총무담당 ·			- ○○마을 이장 - ○○마을 부녀회장 - ○○마을 이장(주민제안서 작성)	

* 추진단 구성된 경우 직책별로 주요담당업무를 기입하고 구체적인 조직도는 덧붙임

* 주민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의 경우 담당업무에 주민제안서 작성 참여여부를 기입

◦ 마을추진단 운영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 마을추진단 공동사업 및 학습활동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 마을단위 공동사업 및 활동, 선진지견학 등 학습활동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별첨

5. 마을 자원분포 현황

◦ 자연마을별 자원현황

자원명(성명)	위치	자원현황	비고
전통가옥			
물레방아			
우물			

- * 마을별 자원현황은 인적자원(예술인, 문학가, 무형문화재 등) 포함 작성
- *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원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참고1, 지역자원목록(예시)>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 전통가옥, 물레방아 등의 유형자원과 역사·전통 등 무형자원, 마을내에 거주하는 예술·문학가 등 인적자원 등을 파악하여 상기양식으로 자원의 기본현황을 작성하고, 추가로 사진, 그림 등과 함께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음

바. 지자체의 지원조직 현황

과명	계(담당)명		주요업무내용	비 고
	계(담당)	인원		

* 주요업무내용은 계(담당)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모두 기재

II. 마을 발전방향 및 사업내용

1. 기본방향

- 발전목표 설정
 - * 권역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비전’(지역주민들이 꿈꾸고 만들어 가고 싶은 권역의 미래 모습)과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 발전목표는 지역의 부존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군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2. 마을 발전방향

- 마을(행정리) 발전방향
 - * 발전방향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주민 개개인의 역할 등을 바탕으로 주민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현가능한 안을 선정해야 함

3.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 *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계산식(단가×개소수(또는 연면적 등))을 추가
- 소득기반시설 확충(H/W)
 -
- 지역역량강화(S/W)
 - ※ 사업내용(각 시설,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사업 참여자(예정자) 현황

- * 참여자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프로그램별 참여자를 모두 작성하여야 함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참여자 성명			추가 참여예정자 성명		
		성명	마을명	직책(현직업)			

- * 마을명에는 자연마을명을 작성

5.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 시설물의 관리 및 활용계획(운영방안), 유지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유지관리 조직, 지침 등)으로 기술
- *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IV. 사업비 투자계획 (해당 신규사업의 총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구분)

1. 재정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기능별 사업	사업비 투자액					
	합 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합 계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소득기반시설확충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지역역량강화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2.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단위:백만원)

구 분		총계획			'00년		'00년		'00년		'00년	
		사업계획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단위	물량									
합 계												
소득기반 시설확충	소 계											
	(시설명)											
	(시설명)											
	...											
지역역량 강화	소 계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 물량단위는 편람을 참조하여 작성, 연도별 사업물량의 단위는 총계획의 물량단위와 동일(물량이 한가지 단위로 표현되는 사업은 1개만 표현)

[부록] 마을공동 문화조성 사업계획서(예시)

○○마을공동 문화조성 사업계획서

○○○시/도 ○○시/군

○○마을 공동문화 조성 사업계획서

2. 계획서의 현황자료는 필요에 따라 사진과 도면을 첨부하여 설명하고 전체분량은 15page 이내로 작성 권고

I. 사업개요

1. 지역연혁

- 위치 : 도 시·군 면 리 외 개리
 - 행정리(), 자연마을()
 - * 행정리 및 자연마을(수)와 마을명을 기재
- 읍·면사무소와 시·군청 소재지 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 ()읍면 사무소 : km, 분 소요
 - ()시청, 군청 : km, 분 소요
 - * 당해 권역이 속한 읍·면, 시·군 및 인접한 타 읍·면, 시·군까지의 도로상 거리(km)와 승용차로 이동시 소요시간(분)을 서술
- 마을연혁, 역사, 지명유래, 행정구역변천사 등을 중심으로 작성
 - * 마을에 어떤 의미가 있는 역사가 있으면 작성 또는 마을별 연혁, 역사, 지명유래 등을 작성
 - * 각 자연마을의 연혁을 서술하면서 인접한 마을이나 읍면과의 관계 등을 설명

2. 마을(행정리)현황

- 인구(농가인구포함) 및 농경지현황

자연 마을명	인구수 (명)			가구수 (호)			면 적 (ha)					
	계	남	여	계	농 가	어 가	비농어가	계	답	전 수원 (과수원)	임야	기타
계	()	()	()									
○ ○												
○ ○												

※ ()는 농가인구수

- * 자연마을별로 인구수(남,여, 농가인구), 가구수(농가,비농가), 경작지 현황을 기재
- * 마을별로 조사된 기초자료는 마을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보존하여 마을 현황자료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자료는 사업계획 작성년도를 기준으로 기입

◦ 연령별 인구구조

<연령별 인구구조 현황>

구분		○○ 면		○○ 마을	
		인구	비중	인구	비중
합계					
연령	14세 이하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 '10년말 현재기준으로 작성(시군통계연보 및 읍면 행정자료 참고)

3. 전통역사·문화 현황

◦ 지역문화재 현황

구분	총계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중요민 속자료	주요무 형문화 재	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무형 문화재
○○군														
()면														
() 마을														

* 마을이 속한 행정구역(郡, 面) 및 권역내에 소재한 국보, 보물, 사적, 중요 민속자료 등 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조사 기재

* 이외에도 마을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양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작성

◦ 마을문화행사 현황

향토문화축제	시행 월	장 소	축제 주요내용	주최
○○ 축제	(기간: 일)			
○○ 행사	(기간: 일)			

* 마을에서 2000년 이후에 개최한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에 대해 시행 월(기간), 장소, 축제내용, 주최(주관) 및 방문(관람)객 수 등 현황을 기재.

* 마을주민들이 행사기간에 한 역할(지역 농특산물 판매, 숙박 제공, 자원봉사 등)에 대해서도 별도 기술

4. 지역공동체 활동 내역

◦ 지역공동체 활동 현황

자연 마을명	공동체 조직명	구성원수	모임회수	등록일자	주요 활동 내역
○○	영농회 청년회 부녀회 4-H클럽 · ·	○○명	○회/월		○마을의 주요 대소사 결정내역
○○					

* 마을별로 작목반, 영농조합 등 영농조직 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을 상세히 기술,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공동체 조직의 실질적인 활동 상황을 기술

◦ 마을추진단 구성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주요 담당업무	비고 (구성일자)
추진단장 부단장 총무담당 ·			- ○○마을 이장 - ○○마을 부녀회장 - ○○마을 이장(주민제안서 작성)	

* 추진단 구성된 경우 직책별로 주요담당업무를 기입하고 구체적인 조직도는 덧붙임
* 주민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의 경우 담당업무에 주민제안서 작성 참여여부를 기입

◦ 마을추진단 운영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 마을추진단 공동사업 및 학습활동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 마을단위 공동사업 및 활동, 선진지견학 등 학습활동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별첨

5. 마을 자원분포 현황

◦ 자연마을별 자원현황

자원명(성명)	위치	자원현황	비고
전통가옥			
물레방아			
우물			

* 마을별 자원현황은 인적자원(예술인, 문학회, 무형문화재 등) 포함 작성

- *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원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참고1, 지역자원목록(예시)>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 전통가옥, 물레방아 등의 유형자원과 역사·전통 등 무형자원, 마을내에 거주하는 예술·문학가 등 인적자원 등을 파악하여 상기양식으로 자원의 기본현황을 작성하고, 추가로 사진, 그림 등과 함께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음

바. 지자체의 지원조직 현황

과명	계(담당)명		주요업무내용	비 고
	계(담당)	인원		

* 주요업무내용은 계(담당)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모두 기재

II. 마을 발전방향 및 사업내용

1. 기본방향

- 발전목표 설정
 - * 권역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비전’(지역주민들이 꿈꾸고 만들어 가고 싶은 권역의 미래 모습)과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 발전목표는 지역의 부존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군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2. 마을 발전방향

- 마을(행정리) 발전방향
 - * 발전방향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주민 개개인의 역할 등을 바탕으로 주민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현가능한 안을 선정해야 함

3.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 *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계산식(단가×개소수(또는 연면적 등))을 추가
- 기초생활기반확충(H/W)
 -
- 지역역량강화(S/W)
 - ※ 사업내용(각 시설,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사업 참여자(예정자) 현황

- * 참여자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프로그램별 참여자를 모두 작성하여야 함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참여자 성명			추가 참여예정자 성명		
		성명	마을명	직책(현직업)			

- * 마을명에는 자연마을명을 작성

5.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 시설물의 관리 및 활용계획(운영방안), 유지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유지관리 조직, 지침 등)으로 기술
- *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IV. 사업비 투자계획 (해당 신규사업의 총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구분)

1. 재정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기능별 사업	사업비 투자액					
	합 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합 계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기초생활기반확충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지역역량강화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2.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단위:백만원)

구 분		총계획			'00년		'00년		'00년		'00년	
		사업계획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단위	물량									
합 계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 계											
	(시설명)											
	(시설명)											
	...											
지역역량 강화	소 계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 물량단위는 편람을 참조하여 작성, 연도별 사업물량의 단위는 총계획의 물량단위와 동일(물량이 한가지 단위로 표현되는 사업은 1개만 표현)

Chapter

VII

지역역량강화 [S/W] 부문 (예산계획 및 집행)

1. 지역역량강화(S/W)사업개요
 2. 가이드라인 개요
 3. 분야별 가이드라인
 4. 지역역량강화(S/W)사업 정산요령
- [부록] 비용지급기준, 컨설팅결과보고서양식

적 용 요 령

- 본 안내서는 지역역량강화(S/W)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민간 컨설팅 업체 등 사업관계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되었음.
 - 본 안내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권역의 표본조사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별도의 근거(지시)가 없는 한 타 사업에 적용할 수 없음
 - 본 안내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S/W)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음.

- 본 안내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시된 것으로서 본 내용을 기본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본 안내서로 시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업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위탁)시행자 및 지역주민과 협의 후 시행할 수 있음
 - **사업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괄시행이 아닌 전문업체를 별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시행 가능함**

- 지역역량강화(S/W)사업은 주로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여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획대로 시행되기 어려우므로 사업(위탁)시행자의 계획변경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함.
 - 계획변경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사업(위탁)시행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농번기 등 농어촌의 현실에 따라 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이 짧은 기간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업(위탁)시행자는 사업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계획의 연장, 이월 등 계획변경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지역역량강화(S/W)사업 개요

1-1. 사업배경

- WTO, FTA의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개방 압력의 증대 및 고령화, 인구부족, 소득문제 등 농업·농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시설투자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고 시설의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은 주민 제안에 의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역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함.
- 사업 권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권역의 리더양성에서부터 주민의 참여 의식 제고와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권역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함.

1-2. 사업목적

- 지속적인 인재양성을 통한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사회 관리 운영(경영)의 효율성 제고
 - 시설개발(H/W)과 연계한 시설관리 및 마을 경영 능력 배양
- 지역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가치증대를 통한 지역활성화 및 소득증대 기반 조성
 - 홍보, 마케팅 등 컨설팅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소득증대

1-3. 사업범위

구분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내 용
교육 부 문	리더교육	- 단계별 지도자 교육, 지역 경영자 교육
	주민교육	- 동기화, 인식변화 교육, 주민워크숍 등
	권역특성화 교육	- 도농교류(마을해설사 양성, 농촌관광 운영, 민박서비스, 지역특 산음식 개발 등) - 농업인 양성교육(농산물 품질관리, 유통관리, 친환경농업 관 련 농산물가공·이용·유통체계 교육) - 경영인 양성교육(권역사무장, 농업경영, 재무, 지역마케팅)
	국내견학	- 당일, 1박2일 과정으로 국내 선진 농촌마을 견학
	국외견학	- 일본, 유럽 등 권역개발 관련 선진지 견학
컨 설 팅 부 문	일반 컨설팅	- 권역활성화계획(마케팅전략, 소득원개발, 유통체계 개선, 기 타 컨설팅), 사업운영 진단(소득사업 경제성 분석, 권역개발 운영, 정보화 운영), 장단기 발전방안, 지역현안 사항 등 - 체험프로그램(자연, 농촌체험, 자원연계프로그램), 권역 맞춤형 프로그램(지역특성화, 품질관리, 브랜드관리, 브랜드마케 팅 등), 사회문화복지 프로그램(취미, 여가, 체육, 의료, 기타 복지 관련) - 사업착수 후 시간경과에 따른 투자효율성 검토, 주민 서비스 ·권역운영·사업시행 프로그램 진행 등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홍보 마케팅	- 리플렛 제작 및 DM발송, 축제기획, 경미지원(기념품 제작) - 인쇄매체(팸플릿, 소식지 등)광고, 교통광고, 인터넷광고, 이메일 광고, 웹진제작 및 발송, 이벤트광고, 쿠폰북 발행(민박, 펜 션, 농산품 등), 전문잡지광고, 관측행사광고, 안내관광고, 스크 린광고, 신문광고, 방송사(공중파, 케이블) 광고, 권역상품개발 마을권역 동영상제작, - 브랜드 플랫폼, 심볼&로고, 네이밍, 슬로건, 포장디자인, 상 표등록, 브랜드 관리 및 활용교육 등
	정보화 구축	- 홈페이지 제작, 소평몰 구축, 인터넷 홍보 및 운영에 따른 교 육, 홈페이지 운영비용(웹호스팅, 도메인 : 영문/한글), 유지 보수 - 권역 공동이용 정보화기기 및 전산용품 지원(PC, 프린터, 빔 프로젝트 등), 인터넷 사용료 지원
마을경영지원	- 마을개발협의회, 추진위원회, 사무장, 마을운영 지원 등	

가이드라인 개요

2-1. 산출근거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60-7, 행안부 회계예규 제228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 인건비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60-7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 부록1
-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 : 부록1

2-2. 용어정리

- “책임연구원(특급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역량강화사업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역량강화사업 전문분야별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3. 비목별구분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인건비는 당해 역량강화사업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료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비는 당해 역량강화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성 경비와 사업에 직접 집행하는 직접경비로 구분한다.
- 인건비성 경비는 여비, 전산 사무용품비, 교통 통신비로 구분하며, 교통통신비는 전화요금, 우편료, 팩스요금, 시내교통비로 세분한다.

- * 여비는 업무 종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 전산사무용품비는 업무 종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산용품 및 사무용품비를 말하며, 20,000원/1인/1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 * 교통통신비는 당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유·무선 전화요금, 우편료, 팩스요금, 시내교통비로 구분하며, 전화요금은 30,000원/1인/1월, 우편료는 20,000원/1인/1월, 팩스요금은 10,000원/1인/1월, 시내교통비는 1회당 2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직접경비는 강사료, 인쇄비, 숙박비, 지급임차료, 회의비, 홍보물 제작비, 행사물품 임차료 등 분야별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항목별로 구분한다.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 합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윤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부가세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로 한다.

2-4. 분야별 인건비, 경비 구성 비율

구 분	인건비	경 비	기 타	비 고
교 육	30%이내	50%내외	20%내외	
국내견학	20%이내	60%내외	20%내외	
국외견학	10%이내	70%내외	20%내외	
컨설팅	65%이내	15%내외	20%내외	
홍보·마케팅	30%이내	50%내외	20%내외	
정보화	55%이내	25%내외	20%내외	

- ※ 1. 기타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 2. 정보화기기구입의 인건비의 구성비율은 사업비의 5%이하를 적용한다.
- 3. 브랜드 개발은 컨설팅 분야에 포함시킨다.
- 4. 특별한 경우 상기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2-5. 컨설턴트의 등급구분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는 학위(학력) 취득 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관련 컨설팅의 경력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 사업시행자의 자체적인 제도에 의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기술자로 구분해야 할 경우 특급기술자는 책임연구원, 고급기술자는 연구원, 중급기술자는 연구보조원, 초급기술자는 보조연구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간주한다.

※ 등급 구분표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학사	고 졸	비 고
책임연구원 (특급기술자)	3년초과	5년초과	7년초과	9년초과	11년초과	
연구원 (고급기술자)	1년이상 3년이하	3년이상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9년이하	9년초과 11년이하	
연구보조원 (중급기술자)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4년이하	2년초과 7년미만	4년초과 9년이하	
보조연구원 (초급기술자)		1년미만	1년미만	2년이하	4년이하	

2-6. 사업시행 수행조직의 자격요건

- 총괄책임자 : 책임연구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PM(Project manager, 현장책임자) : 연구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현장책임자는 1인당 2개 권역을 초과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

제3장

분야별 가이드라인

3-1 교육

1) 세부 비목별(직접비) 구성내역

비 목		내 역	비 고
강사료	강의료	강의 및 사례발표 등에 대한 보수	
	강사여비	교육장소 출장을 위한 교통비	
	원고료	교육교재의 교육자료 등의 원고 기고	
	인쇄비	교육자료의 유인비용	
	재료비	실습형 교육시 필요한 재료비	
	회의비	숙박교육시 토론 등을 위한 다과 및 간식비용	
지급 임차료	강의실사용료	교육을 위한 강의실 사용료	
	버스임차료	1박2일 등 권역 외 교육 시 차량임차료	
숙식비	숙박비	권역외 집합 교육 시 교육생 숙박비	
	식비	교육생 식비	
	간식비	교육생 간식비	
기타 잡비	현수막	현수막 제작	
	사무용품비	교육생을 위한 펜 등 문구류 비용	
	보험료	장거리 권역외 교육시 여행자보험료	
	예비비	인원수 증가,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발생에 대비한 비용	

2) 교육운영

- 주민 대상의 집합교육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워크숍, 현장실습형 교육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강사는 특별·일반·사내강사 및 지역리더 등으로 구분한다.
- 사내강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교육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해설>

1. 특별강사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예술인 등 사회저명인사
2. 일반강사 : 교육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3. 사내강사 : 해당권역의 역량강화사업 시행 컨설팅 업체소속의 강사로서 전공분야 및 관련분야 경력자
4. 지역리더 : 지역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사무장 등 지역리더
5. 강사는 학위 전공분야 및 관련분야의 사회경력을 가진 자로 섭외한다.
6. 주민대상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효과가 현저하게 저하될 것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설정한다.

3) 강사료

- 강사료는 강사등급 구분에 의하여 강사료지급기준을 적용한다.
- 동일주제로 2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강사료는 기준강사료의 50%를 지급한다.

<해설>

1. 강사료 지급기준

구분	등 급	대 상	강사료(원/ 시간)
특별강사		1. 유명연예인, 문화예술인, 작가, 방송인 등 인기도 및 지명도를 고려한 강사	사회통념에 의한 기준적용
일반 강사	A급	1. 공무원 차관급 이상 2. 대학 정교수급 이상 3. A,B급 대상자중 강의비중 및 사회 지명도를 고려한 특급강사	220,000
	B급	1. 공무원 국장급(3급) 2. 대학교 부교수급(중앙공무원 연수원, 국방대학원 등 정부부처 및 국립연구기관) 3. 대기업 임원급 및 공공기업 부서장급 이상 4.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5.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7년 이상 6.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10년 이상 7. 기타 이와 동급의 강사	180,000
	C급	1. A급, B급 이외의 강사 - 추진위원장, 사무장 등 지역리더 포함	150,000
	전산교육	1. 전산교육 강사	70,000
사내강사		1. 대표이사 및 책임연구원급 이상	80,000
		2. 책임연구원급 이하	50,000
		3. 보조강사	30,000
현지강사		1.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교육 주제와 관련 있는 담당부서의 담당자	소속기관의 규정에 의함
PG 운영 강사		1. 현장 실습, 워크숍 진행,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70,000

※ 특별교육 등의 특별강사료는 시중사례에 의하되 지자체 및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와 주민의 협의에 따라 별도 방침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강의주제가 다를 경우에는 강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해도 전액을 지급한다.
3. 강의시간에 따른 강의료
 - (1) 강의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 강의시간이 40분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료의 1/2을 지급
 - 4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지급
 - (2) 강의시간이 1시간 이상일 경우
 - 초과시간이 20분미만일 경우 미지급
 - 20분이상 40분 미만일 경우 1/2을 추가지급
 - 40분이상일 경우 1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추가지급 한다.
4. 지역리더가 타 권역에서 강의할 경우는 강의료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나, 당해권역에서 강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5. 당해권역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가 당해권역에서 강의할 경우에는 강의료를 지급할수 없다.

4) 강사 여비

○ 강사 여비는 강사교통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해설>

1. 강사교통비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기 (서울인천)	32,000								
강원	40,000	32,000							-
충북	50,000	70,000	32,000						
충남 (대전)	50,000	70,000	40,000	32,000					-
전북	70,000	90,000	50,000	40,000	32,000				-
전남 (광주)	90,000	120,000	80,000	50,000	40,000	32,000			-
경북 (대구)	90,000	70,000	70,000	50,000	50,000	70,000	32,000		-
경남 (부산,울산)	120,000	120,000	80,000	70,000	50,000	70,000	50,000	32,000	-
제주	-	-	-	-	-	-	-	-	32,000

※ 시도외의 경우에도 이동거리가 80km미만일때는 도내기준을 적용한다.

※ 도서지역의 경우 항공료, 선박료 등은 실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한다.

- ※ 도내의 경우에도 왕복 200km를 초과할때는 40,000원을 지급한다.
 - ※ 교육주관기관의 차량을 지원받을 경우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제주도와 타 도간의 교통비는 육지교통비(제주)+항공 또는 선박실비+육지교통비(이용 공항이 있는 곳에서 (타)도간 교통비)로 지급
(예시) 강사가 서귀포에서 경북 영덕으로 강의를 하러 갈 경우(대구공항 이용)
 - 제주 도내 교통비 : 32,000원, - 제주 ~ 대구간 항공료 : 실비
 - 경북 도내 교통비 : 32,000원
 - ☼ 지급금액 = 64,000원+항공료 실비
2. 강사가 불가피하게 숙박을 해야 할 경우 숙박비와 해당 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3. 강사를 선정할 때는 지역주민 및 사업(위탁)시행자와 협의를 거친다.
 4. 강사는 가능한 한 근거리의 강사를 섭외한다. 특히,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안이 없을 경우에 적용한다.
 5. 추진위원장, 사무장, 주민 등의 위탁교육 시 여비는 강사여비지급기준을 적용한다.
 6. 사내강사는 강사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5) 원고료

- 원고료는 강의를 하지 않고 강의교재 집필, 기고 등으로 원고를 작성할 경우에만 지급한다.
- 강의료와 원고료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1. 원고료 산출기준 : A4 1면당 12,000원
 - 작성형식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또는 300단어 수준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4매를 A4 1면으로 산정
2. 단, 원고료는 60,000원/1 주제 이하를 적용한다.

6) 인쇄비

- 교육 자료의 양이 50Page 이하일 경우 시중 복사단가를 적용하고, 50Page를 초과하는 경우 조달청 경인쇄 단가를 적용한다.

<해설>

1. 교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흑백으로 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재료비

○ 실습형 교육에 필요한 재료는 조달청 공급품목일 경우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고, 그 외 품목은 시중단가를 적용한다.

<해설>

1. 재료비란 천연염색, 공방체험, 장승·숫대 만들기, 향토음식 전수교육 등 교육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8) 회의비

○ 회의비를 집행할 경우 반드시 토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저녁시간 등 일과시간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1. 회의비는 다과비와 간단한 야식비 등으로 구성되며 20,000원/1인 이하를 적용한다.

2. 1박2일 이상의 교육일수에 상관없이 교육건당 회의비는 1회만 적용한다.

3. 회의(토론)내용은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교육장 사용료

○ 강의실 등 교육장의 사용료는 1일 200,000원, 반일(4시간이하) 100,000원 이하를 적용 한다.

<해설>

1. 시설운영기관의 명확한 대여료기준이 있을 경우 운영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10) 차량 임차료, 현수막

○ 시중단가를 적용한다.

<해설>

1. 시중단가 적용시 반드시 2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11) 숙박비

○ 20,000원/1인/1일 이하를 적용한다.

<해설>

1. 교육장소의 숙박시설 이용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12) 식비

- 조식, 중식 : 7,000원/1인/1식 이하를 적용한다.
- 석식 : 10,000원/1인/1식 이하를 적용한다.

<해설>

1. 교육장소의 식비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13) 간식비

- 교육 시행시 2,000원/1인/1회 이하를 적용한다.

<해설>

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을 시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14) 사무용품비

- 2,000원/1인/1회 이하를 적용한다.

<해설>

1. 교육에 소요되는 사무용품을 구입할 경우에 적용한다.

15) 보험료

- 보험사의 견적 보험료를 적용한다.

<해설>

1. 여행자보험 가입 보장 가이드라인(최소보장내역)

보장내역		보장금액	비 고
상 해	사 망	5,000만원 이상	
	후유장애	5,000만원 이상	
	의료비(입원)	1,000만원 이상	
	질병사망	500만원 이상	
	배상책임	700만원 이상	

2. 보험료는 2개사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16) 예비비

- 예비비는 직접경비의 10%이내로 한다.

<해설>

1. 예비비는 반드시 사업(위탁)시행자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3-2 국내견학

1) 세부 비목별(직접비) 구성내역

비 목		내 역	비 고
강사료	강의료	초청교육 강사의 강의료 및 사례발표 등에 대한 지급비용	
	강사여비	초청교육 병행 시 견학지까지의 교통비	
	인쇄비	견학 소책자 유인비용	
	체험비	견학지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교통비(항공료, 선박료)	도서지역에서 육지로의 이동수단에 대한 비용	
	회의비	토론등을 위한 회의비용	
지급 임차료	강의실사용료	초청교육을 위한 강의실 사용료	
	버스임차료	견학지 이동 차량임차료	
숙식비	숙박비	숙박견학시 견학생 숙박비	
	식비	견학생 식비	
	간식비	견학생 간식비	
기타 잡비	현수막	현수막 제작	
	사무용품비	견학 문구류 등의 비용	
	문화체험비	견학지 인근 문화관광지 체험비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예비비	인원수 증가,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에 대비한 비용	

<해설>

1. 체험비를 강의료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숙박비를 식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비목에 따라 분리하여 지급하고 정산한다. 다만 위의 비목에 없는 경우에는 사업(위탁)시행자와 협의하여 기타항목으로 집행한다.

2) 견학운영

- 지역의 특성과 목표에 부합되는 견학지 선정
-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진지견학 소책자 제작
 - 견학 목표, 견학지 소개, 시사점 등
- 사업의 특성상 사업관계자의 네트워크가 사업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므로 사업시행자인 담당공무원 등의 참여를 지향한다.

<해설>

1. 견학대상지는 권역의 발전방향, 사업목적 등이 유사한 지역으로 선정해야 함. 특히, 항공을 이용하는 견학 계획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2. 반드시 뚜렷한 학습 목적을 가지고 사전학습 및 견학 후 토론과정을 거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사업시행자인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위탁시행자, 기타 사업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별한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수의 참여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3) 세부비목별 집행 가이드

○ 강사료, 강사여비, 인쇄비, 차량임차료, 강의실사용료, 현수막, 사무용품비, 보험료, 예비비 등은 교육부문 세부비목별 집행 가이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체험비

○ 체험비는 10,000원/1인/1일 이하를 적용한다.

<해설>

1. 견학지의 특성에 따라 특별한 체험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위탁)시행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2. 상기 비용은 통상적으로 2종류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비용 기준

5) 교통비

○ 항공료, 선박료, 일반 교통비 등은 실비를 적용한다.

<해설>

1. 차량임차료 이외에 소요되는 교통비에 적용한다.

6) 회의비

○ 회의비는 20,000원/1인 이하를 적용한다.

<해설>

1. 회의비를 집행할 경우 반드시 회의(토론)계획을 포함하고, 일과시간 이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토론결과를 정리하여 보관한다.
2. 회의비는 다과비와 간단한 야식비 등으로 구성된다.
3. 견학일수에 상관없이 견학 1회당 회의비는 1회만 적용한다.

7) 숙박비

○ 20,000원/1인/1일 이하를 적용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비를 적용할 수 있다.

<해설>

1. 견학대상지의 마을내에서 숙박하는 경우와 일반 숙박시설, 콘도미니엄, 리조트 등의 경우에 적용한다.
2. 호텔 서비스 체험 등 특별한 교육을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위탁)시행자와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8) 식비

○ 조식, 중식 : 7,000원/1인/1식 이하를 적용한다.
○ 석식은 10,000원/1인/1식 이하를 적용한다.

<해설>

1. 지역의 향토음식체험 등 특별한 경우 여건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20,000원/1인 이하를 적용하며, 특별한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명확한 사유가 명시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향토음식 등 특식은 견학일수에 상관없이 견학 1회당 한 번만 허용한다.

9) 간식비

○ 간식비는 5,000원/1인/1일 이하를 적용한다.

3-3 국외견학

1) 세부 비목별(직접비) 구성내역

구분	비 목		내 역	비 고	
국내 비용	강사료	강의료	견학과 관련하여 사전교육 또는 워크숍 개최시 강의료		
		강사여비	교육장(워크숍 장소) 까지의 교통비		
	인쇄비		견학 소책자 유인비용		
	차량임차료(공항이동)		권역↔공항까지의 이동 차량임차료		
	식 대		권역↔공항 이동 식대		
	간식비		권역↔공항 이동 간식비		
국외 비용	항공료		항공료, 유류할증료, TAX, 발권수수료 포함		
	현지안내비		현지 가이드 비용		
	기관방문비		방문비 및 통역비		
	현지교통비		견학지 이동 차량임차료		
	회의비		토론 등을 위한 회의비용		
	숙식비	숙박비	견학생 현지 숙박비		
		식 비	견학생 현지 식비		
		간식비	견학생 현지 간식비		
	기타 잡비	현수막		현수막 제작	
		사무용품비		견학 문구류 등의 비용	
		문화체험비		견학지 인근 문화관광지 입장료 등	
		기관선물비		기관방문 선물준비금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예비비		인원수 증가,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에 대비한 비용			

<해설>

1. 집행 항목이 위의 비목에 없는 경우에는 사업(위탁)시행자와 협의하여 기타항목으로 집행한다.

2) 견학운영

- 선진지 견학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견학 시행 전에 견학대상지에 관한 사전 교육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 견학 후에는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권역주민 및 사업관계자가 참여하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 해외 견학비용의 일부를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획시기와 시행시기의 차이로 인해 환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환율을 적용한다.
- 사업의 특성상 사업관계자의 네트워킹이 사업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므로 사업(위탁)시행자인 담당공무원 등의 참여를 권장함.

<해설>

1. 인원과 자부담은 해외견학 참여자와 불참자와의 위화감 해소 및 견학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담한다.
2. 자부담율
 - 권역별 5명이내 제한(도를 중심으로 견학계획수립 시행 가능)
 - 자부담 비율 : 30%
3. 사업담당 공무원(지자체 부담)뿐만 아니라, 위탁시행자, 기타 사업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별한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의 범위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따른다.
4. 결과보고서는 Daum Cafe 『희망을가꾸는 농촌마을이야기』의 ‘국외견학 보고서’ 게시란에 반드시 게재하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3) 숙박시설 이용

- 지역 정서와 손님맞이 기법 등을 체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농가민박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호텔의 경우 4성급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

1. 민박이 견학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위탁)시행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세부비목별(직접비) 가이드라인

- 국내비용은 교육부문 세부비목별 집행 가이드와 동일하게 적용.
- 국외비용 중 항공료, 현지 안내비, 기관 방문비, 현지교통비, 숙식비, 문화체험비, 보험료 등은 견적에 의한다.

<해설>

1. 기관방문비는 기관방문시 안내, 교육 등을 진행할 때 필요한 교육비, 안내비, 통역비 등에 적용한다.(기관방문을 위한 어레인지(주선, 섭외)비는 제외.)
2. 문화체험비는 견학대상지 외의 견학 코스 인근에 있는 문화관광지의 탐방에 필요한 입장료 등에 적용하며 반드시 사업(위탁)시행자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5) 회의비

○ 회의비는 1회 \$30 이하를 적용한다.

<해설>

1. 회의비를 집행할 경우 반드시 토론계획을 포함하고 일과시간 이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토론결과를 정리하여 보관한다.
2. 회의비는 다과비와 간단한 야식비 등으로 구성된다.
3. 견학기간별 적용횟수

견학 일수	5일 이하	5일 초과	비 고
적용 횟수	1회	2회	

6) 기관방문 선물비

○ 기관방문 선물비는 기관별 30,000원 이하를 적용한다.

<해설>

1. 기관방문 선물비는 기관방문비와는 별도로 간단한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4 컨설팅

1) 세부비목별(직접비) 구성내역

비 목	내 역	비 고
인쇄비	최초, 중간, 최종보고서 및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 유인 비용	
회의비	최초, 중간, 최종회의 등 회의운영시 다과비	
자문비	외부자문가 참여시 자문료 및 여비	

2) 컨설팅 운영

- 컨설팅 업무의 범위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자원 및 여건분석 → 실행계획 및 전략수립 → feedback(교육 및 기술전수)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업무로 한다.
- 전문적인 분석 및 실행계획 등을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컨설팅 사업비는 컨설팅 부문별 1,500~2,000만원 수준으로 한다.

<해설>

1. 컨설팅의 성격에 따라 컨설팅 업무 해당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여 관련분야에 맞게 계획수립 및 사업을 시행한다.
2. 컨설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업
 - 단순한 사업모니터링, 정기진단 컨설팅, 사무장 및 추진위원장의 사무업무지원
 - 마을경영 및 운영관리, 민박경영, 시설조성 자문, 자문교수 운영지원 등은 일반적인 자문 또는 교육 성격임
 - 도농교류 이벤트, 소식지 발행, 도시민 유치홍보, 자매결연, 축제지원 등은 홍보·마케팅분야의 업무성격임
 - 경영교육, 권역활성화 교육, 전문가초청교육 등은 교육분야에 해당하는 성격
3. 특별한 컨설팅사업의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위탁)시행자와 협의 후 집행할 수 있다.

<사례>

1. 장뇌삼영농지원으로 사업내용이 장뇌삼종자 종근채취 및 종근식재 교육 등으로 23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이는 소득사업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2. 소포장재 개발로 49백여만원이 집행된 것은 개발비용 외의 많은 양의 포장재 제작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제작비는 시제품의 샘플 제작비용만 포함해야 한다.

○ 권역(마을) 사업추진에 관한 상시적인 자문 등 단순한 성격이나 수준의 컨설팅 사업비는 100만원/년 이하를 초과하지 않는다.

<해설>

1. 반드시 자문위원, 일자, 자문내용 등이 기록된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단순한 사업모니터링, 정기진단 컨설팅, 사무장 및 추진위원장의 사무업무 지원, 마을경영 및 운영관리, 민박경영, 시설조성 자문, 자문교수 운영지원 등 일반적인 자문에 적용한다.

○ 향토음식개발, 신상품개발, 체험프로그램개발 등 새로운 기술습득을 요하는 컨설팅의 경우 지역리더 및 관련 주민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1. 기술이전과 관련한 교육비용은 컨설팅 비용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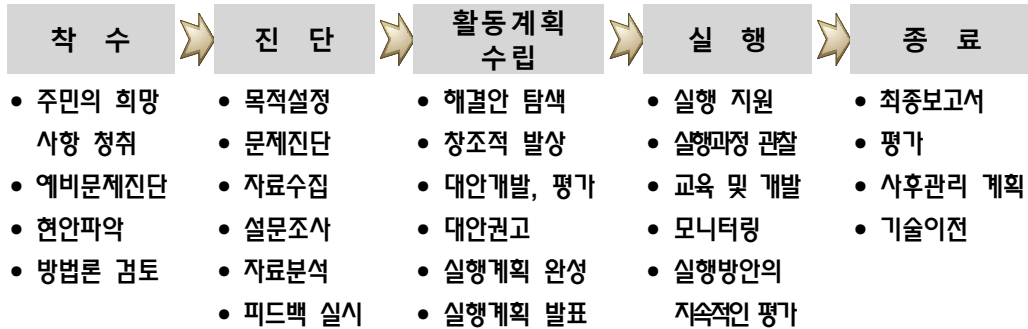
3) 컨설팅 성과품

○ 프로세스 단계별 보고서(중간보고서)
○ 컨설팅 최종 보고서
- 현황과약, 여건분석, 추진전략 구상, 세부 시행계획 및 컨설팅 진행과정이 뚜렷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해설>

1. 전문분야의 컨설팅 사업은 보고서(p100 이상 분량)를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p100 이상 분량, 컨설팅 결과보고서 목차 참조)

2. 컨설팅 프로세스



4) 회의비

- 인쇄비는 시중인쇄 단가 적용한다.
- 다과비는 2,000원/1인/1회 이하를 적용한다.
- 자문료는 자문위원의 사회적 명성과 인지도를 고려하여 지급한다. 단, 20만원/1인/1회를 적용한다.
- 자문위원 여비는 강사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 식비는 20,000원/1인/1회 이하를 적용한다.

<해설>

1. 컨설팅업체가 컨설팅 분야에 대해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경우 집행하는 회의비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인쇄비, 다과비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최초, 중간, 최종)보고회의를 할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5) 브랜드 개발

- 권역(마을) 브랜드개발 사업비는 2,000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 BI, CI, 로고, 심볼, 캐릭터, 네이밍, 슬로건, 패키지(포장재)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브랜드개발 출시 이벤트, 패키지 시범제작 등 브랜드개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용은 브랜드개발 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분류한다.
 - 기본으로 상표권 1류에 대한 상표출원·등록비용을 포함한다.
- 주민들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지속적인 브랜드 활용을 위하여 품질 관리 등 주민 교육을 반드시 포함한다.

<해설>

1. 브랜드 개발에는 브랜드 활용을 위한 디자인 개발을 포함한다.

- 현수막, 간판(메인, 가로, 세로, 현판, 스탠딩, 옥외유도 등), 배너, 메모지, 각종서식류 등

- BI(Brand Identity) : 제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해 대외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를 꾀하는 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작업
- CI(Corporate Identity) :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을 가리키며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라고도 한다.
- 상품이나 상업 단체, 즉 회사 등의 조직에 적용되는 시각 디자인
- 심볼 : 사물을 전달하는 매개적 작용을 하는 것
- 캐릭터 : 특정 상표를 나타내고 긍정적 느낌을 갖도록 만든 가공의 인물이나 동물 등 시각적 상징물

★ TIP ★

- 상표권 **류** : 상표출원을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
 - 상품류 : 제1류 ~ 제34류
 - 서비스업 : 제35류 ~ 제45류
- 예) 상표명 : 나이키, 상품류 : 운동화
- 상표명 : 하나은행 , 서비스업 : 은행업

- 브랜드 개발이 완료된 후 필요에 의해 추가 개발을 할 경우 과업내용에 따라 당초 개발비의 20%~40%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브랜드 개발을 중단할 경우 브랜드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진행율에 의해 비용을 계상한다.

<해설>

1. 브랜드개발 프로세스



단계별	추진내용	비고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Charter작성 - 프로젝트 정의 - 계획, 일정 정의 	
진단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분석 - 기초 상황 분석(2차 자료분석) • 내/외부 진단 - 내부 현황분석, 경쟁 브랜드 진단 • 브랜드 진단 - 지역 이미지 분석, 관련자원 이미지 분석 	
이슈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도출 - 진단 결과에 따른 이슈 도출 및 분석, 이슈 정리 • 기획 - 브랜드 개발계획 수립 	
브랜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컨셉 개발 - Brand Identity 개발 •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 - 브랜드 네임 상표검색 - 브랜드 디자인 개발 - 브랜드 자산 개발 - 브랜드 정책 수립 	
평가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평가 - 브랜드 컨셉 및 디자인 평가 • 수정 및 확정 - 브랜드 수정 및 매뉴얼 책자 개발 	

- 브랜드 개발의 완료는 상표등록이 확정되는 때를 원칙으로 한다.
- 반드시 주민·시행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상표등록이 확정되어야 한다.
 - 1류를 초과하여 상표출원·등록을 할 경우에는 초과 1류당 상표권 추가 출원·등록비용을 참고해서 적용한다.

<해설>

1. 상표권 추가 출원·등록비용 (단위 : 원, 2010년기준)

구 분	금 액	관납료 (특허청비용)	변리사 수수료(VAT포함)	10년간 권리관리 비용
계	622,560	271,560	275,000	77,000
출원 신청	165,000	56,000	11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서 작성 및 제출비용, 문서 송달비 • 자료조사/ 정보관리 기타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비용은 1개 상표 1개류 기준 • 상품류 1개 초과시 마다 관납료 56,000원, 수수료 110,000원 가산 			
등록	457,560	215,560	165,000	7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비용은 1개 상표 1개류 기준 			

3-5 홍보·마케팅

1) 인쇄 홍보물

- 시중단가 적용
 - 2개사 이상의 비교견적서 첨부
- 기획은 역량강화 시행업체 담당자(총괄업무수행자와 디자인 담당자)가 수행하므로 기획료를 포함할 수 없다.
 - 인쇄비에 기획료가 포함될 경우 해당 사업의 인건비는 정산 불가

<해설>

1. 인건비와 기획료의 중복지급 정산 금지
2. 인쇄가격 예시

구 분	용 지	규 격	제 본	수 량	기준금액
리후렛	스노지, 아트지 (180g)	16절	3단 접지	4,000	50만원
	소노지, 아트지 (150g)	2절	6단 접지	4,000	100만원

※ 상기금액은 단순 인쇄가격 예시로서 용지의 종류와 무게, 규격에 따라 같은 부수라 할 지라도 기준금액은 다를수 있다.

2) 축제지원

- 축제지원은 권역주민이 사업기간 동안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주민의 화합과 단결에 더 큰 목적을 두어야 한다.
- 홍보 이벤트(행사)를 포함한다.
- 축제지원비는 1,000만원/1회/1년 이하를 적용한다.
- 축제 기획이 의도, 목표, 현황 및 여건 분석, 실행계획, 기대효과 등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축제 등 행사에 지원 가능한 비품의 범위는 따로 정한다.

<해설>

1. 축제 지원은 권역(마을)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한한다.
2. 타 축제에 참여하는 비용은 홍보·마케팅 등의 비용으로 집행한다.

3. 지원가능한 비품의 범위

- 축제포스터, 리플렛, 초청장 등 축제관련 유인물
- 자바라텐트, 몽골텐트 등 부스 설치를 위한 물품
- 애드벌룬, 에어아치, 현수막 등 축제홍보물
- 음향장비, 방송장비 등 무대장치 임차
- 행사진행 보조원 노무비
- 기타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소품 등

4.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

- 식사비용
- 판매를 위한 농·특산물의 구입

3) 마을권역 동영상제작

○ 홍보동영상 제작비는 1,000만원 이하를 적용하며, 특별한 경우 초과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1. 마을 권역 자연유산 발굴 영상물제작, 동영상을 활용한 광고비용은 홍보 비용으로 별도로 구분한다.

4) 홍보물 제작

○ 권역 홍보물은 권역의 특성에 맞게 제작하며 4,000원/개 이하를 적용한다.

5) 포장재 시범제작

○ 브랜드의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포장재 시범제작은 농·특산품 1종류당 1,000부, 3종류 이하로 사업비는 600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 시제품에 한하며, 본제품은 자부담으로 제작한다.

<해설>

1. 주민 스스로 품질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사업을 위해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6) 도농교류 이벤트

○ 팸투어, 네츄럴스쿨, 도시민초청행사 등을 포함한다.
○ 상기 항목을 중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는 1,500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 사업운영 준비가 된 이후 실시해야 한다.

<해설>

1. 사업기간 동안 주민들의 방문객 맞이 요령 습득 및 서비스 향상에 목적을 둔다.
2. 행사 진행에 직접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숙박비, 체험비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다만 재료가 소요되는 체험등에 대한 재료비는 지원할 수 있다.

7) 성과품

- 브랜드개발, 축제지원 등 결과 보고서
 - 현황과약, 여건분석, 추진전략 구상, 세부 시행계획, 진행과정이 뚜렷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 축제시행에 따른 평가결과 잘한 점, 반성할 점, 시사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1. 홍보·마케팅 시행 결과보고서(p100 이상 분량)를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컨설팅 결과보고서 목차 참조)

8) 기 타

- 홍보·마케팅 분야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여 세부 항목을 규정하지 않되, 사업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 조달청 공급 품목의 경우 조달청 공급단가를 적용한다.

<해설>

1. 국가종합전자포털 '나라장터'(www.g2b.kr) 에서의 가격정보를 참고한다.
2.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지원 할 수 없는 사항
 - 대중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 센터 등 건물 내·외부 인테리어 물품 및 기자재 구입(커튼, 씨트, 악기, 간판 등)
 - 각종 행사 진행 등을 통해 지원하는 권역운영자금 성격의 지원 등

3-6 정보화

1) 세부 비목별(직접비) 구성내역

비 목	내 역	비 고
인 쇄 비	최초, 중간, 최종보고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 및 매뉴얼 유인 비용	
회 의 비	최초, 중간, 최종회의 다과 및 식사비용	
웹호스팅비용	홈페이지 호스팅 임차비용(최대5년)	
도메인 등록비	한글, 영문 등 도메인 등록비용(10년)	
카드결제시스템 구입비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카드결제 시스템 구입비용	
SMS 호스팅비용	회원가입, 예약 등 회원관리 자동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입비용	
정보화기기	PC, 빔 프로젝트 등 전산장비 구입비용	
공유기 설치비	센터 등 PC를 2대 이상 설치할 경우	
인터넷 접속비	홈페이지 활용 등을 위한 인터넷 활용비용	

2) 홈페이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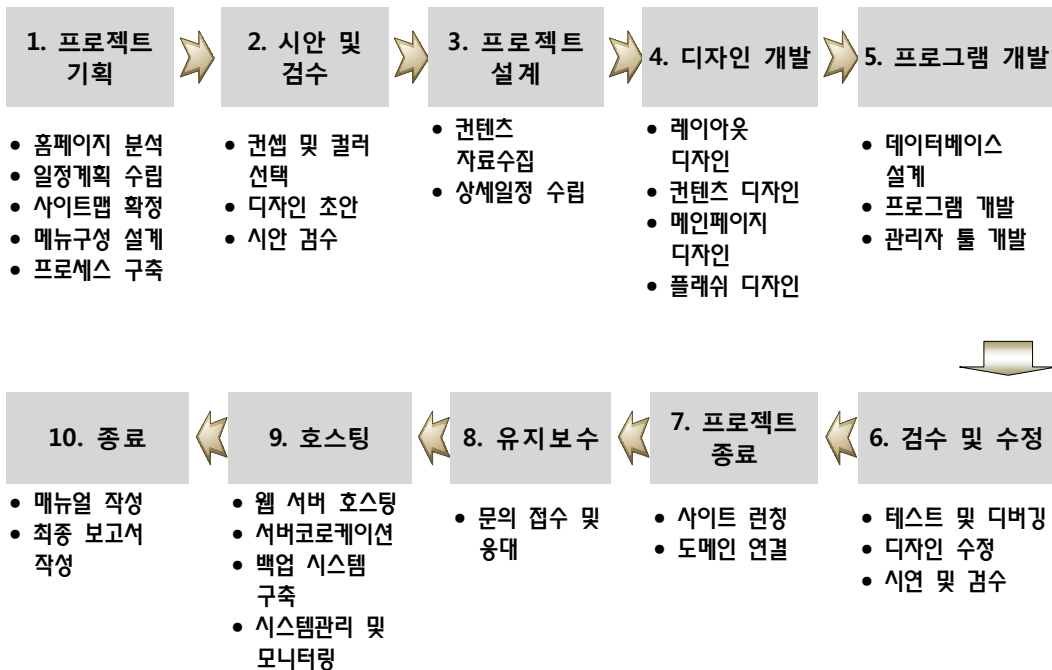
- 홈페이지 개발비용은 2,000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 단, 권역의 특성상 3D, 4D 그래픽 등 기술집약적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별도의 시중 단가를 적용한다.
- 권역(마을)의 규모와 농촌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객관리시스템(CRM) 등의 개발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웹호스팅 종료일 1개월 전부터 홈페이지 화면상단에 팝업창으로 게시하여 호스팅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다.
- 홈페이지 리뉴얼(재구성)은 유지보수 기간(개발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1회 정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홈페이지 리뉴얼 비용은 개발비용의 1/5(400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 홈페이지 개발시 관리자 및 주민의 정보화 교육등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을 3회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1. 홈페이지개발 환경 표준화

구 분		기본구조 및 환경	비 고
OS		Linux	최신버전
Web server		Apache	”
개발언어		PHP	”
DBMS		Mysql	”
사용자 환 경	인터페이스	Web Browser(MS IE 5.0 이상)	평균사양
	PC사양	P-500Mhz(Windows98)이상	
	LAN속도	512KB/384KB 이상	

2. 홈페이지 개발 프로세스



3) 홈페이지 운영비

- 인터넷 접속비, 웹호스트비, 고객관리용 SMS 호스팅비용을 시중단가를 적용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다.
- 홈페이지 구축 완료 후 업데이트 등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해설>

1. 홈페이지 운영비용은 무상 수리 보증기간 이후부터 적용한다.
2. 웹호스팅 비용

상품타입		이코노미 Plus	비즈니스 Plus	실버 Plus	
웹 용량		1.5 G	3 G	6 G	
메일 용량		200M / 10개	300M / 15개	600M / 30개	
DB 용량		150 M	250 M	400 M	
트래픽(일)		2 G	4 G	7 G	
설치비		10,000원 (타사 도메인인 경우 30,000원)			
리눅스	비용	1개월	15,000원	30,000원	50,000원
		12개월	150,000원	300,000원	500,000원
윈도우	비용	1개월	30,000원	60,000원	100,000원
		12개월	3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윈도우 .net	비용	1개월	40,000원	80,000원	120,000원
		12개월	400,000원	800,000원	1,200,000원

※ 출처 : 가비아호스팅(<http://hosting.gabia.com>), VAT별도 (2011.12월 기준)

3. SMS호스팅 비용

타입	사용 건수	1건당 가격	사용 요금	비고
A형	500건	22원	11,000원	
B형	1,000건	20.5원	20,500원	
C형	3,000건	19.2원	57,600원	
D형	5,000건	18.2원	91,000원	
E형	10,000건	17.3원	173,000원	
F형	30,000건	16.5원	495,000원	
G형	50,000건	15.5원	775,000원	

※ 출처 : 가비아호스팅(<http://hosting.gabia.com>), VAT별도 (2011.12월 기준)

4) 정보화 기기의 지원 범위

- 계획수립 시 제작사 및 모델명을 제시하기보다 사양을 제시하여 구입 시기에 적합한 정보화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보화기기는 계획수립시 조달청 공급가액을 적용하나. 실제 구입시기의 여건과 시중가격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 커뮤니티 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및 체험시설 운영 등 마을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기로 제한한다.

<해설>

1. 정보화기기 사양제시(예시)

품 목	내 역
본체, 모니터	PD-1.8G(E2160)/2GB램, 250G HDD 이상, 22" TFT LCD 이상
복합기	칼라잉크젯(복사/스캔/프린트/팩스), 흑백20ppm/칼라13ppm 이상
빔 프로젝트	DLP방식/XGA1024X768, 3500안시/1600:1 이상
스크린	수동 벽걸이 스크린/100", 전체크기210X180cm 이상
음향기기	앰프 출력 80W이상/무선마이크
디지털카메라	1010만화소/2.5"LCD, 5배줌/동영상/SD2GB 이상

2. 정보화기기 지원범위

- PC(본체, 모니터), 노트북, 빔 프로젝트 및 스크린, 디지털카메라
- 복합기(프린터, 스캐너, 팩스, 복사기), 음향기기(유무선 마이크, 스피커)
- 통신장비(전화기, 유무선 공유기 등), 영상장비(캠코더, VCR 등)
- 기타 정보화 기기에 포함 될 수 있는 기기는 사업(위탁)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성과품

- 홈페이지 구축 등 결과 보고서
 - 현황파악, 여건분석, 추진전략 구상, 세부 시행계획, 진행과정이 뚜렷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포함돼야 한다.

<해설>

1. 홈페이지 구축 결과보고서(p100 이상 분량)를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컨설팅 결과보고서 목차 참조)

3-7 마을경영

1) 권역발전협의회 지원

- 정기적(분기 1회이상)인 회의 개최
 - 운영경비는 분기당 회의비 30만원, 전문가 자문료 20만원을 계획에 반영하고 실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1. 권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전담기관 : 시·군
- 회 장 : 민간전문가 및 시장·군수 공동
- 구 성 : 시장·군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2인, 마을대표, 여성 지도자(여성 농업인 포함),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의 기관장 또는 실무책임자 등 10인 내외
- 주요기능 : 권역개발 예비계획서 작성 지원, 사업시행 단계별(기본계획, 세부설계, 사업시행, 사업완료, 유지관리) 협의·지원

2) 추진위원회 회의비 지원

- 추진위원회 및 주민회의 경비
 - 월 50만원을 계획에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에 의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1.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및 주민회의 경비의 승인제한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마사지, 대인서비스 등)
-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등)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기타 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등)

2. 증빙의 범위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권역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

- 법인카드 명세서(권역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
- 추진위원장 또는 사무장 명의의 체크카드명세서 등

3. 지원가능한 범위

- 추진위원회 회의 및 주민회의 개최에 필요한 다과비, 식대(분과별 회의도 포함)
- 회의 개최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공문 발송 우편료
- ※ 식대집행일은 회의개최일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사무장활동비 지원

- 최대 국고보조금 8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할 경우 사무장활동비는 1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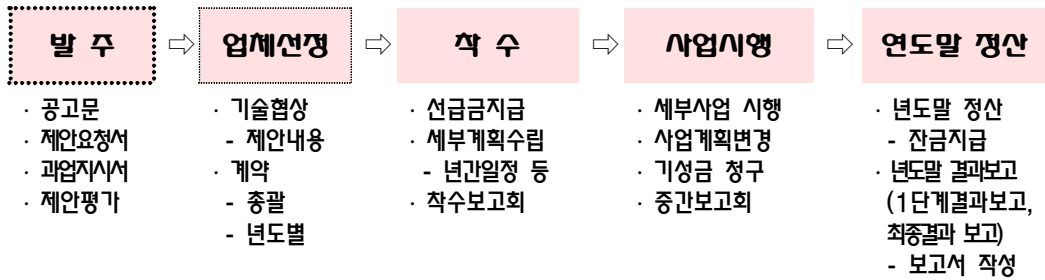
<해설>

1. 활동비는 1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추가비용은 지자체 및 권역에서 부담한다.

제4장

지역역량강화(S/W)사업 정산요령

4-1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 프로세스



4-2 정산서 작성 필수사항

1) 년차별 사업비 계획 대 실적 총괄표

부 문	세부사업	계 획 금 액				변 경				정 산				
		소계	1년차	2년차	3년차	소계	1년차	2년차	3년차	소계	1년차	2년차	3년차	
	총 계													
교 육	리더육성 교육													
	주민교육													
	위탁교육 등													
	선진지 견학	국내												
		국외												
소계														
	계													
홍 보 마케팅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													
	계													
컨설팅	체험프로그램개발													
	권역활성화													
	소득사업 등													
	계													
정보화	홈페이지개발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기기구축													
	계													
마을 경영 지원	마을개발협의회													
	권역사무장 운영													
	계													

2) 분야별 계획 대 실적 집계표

○ 교육, 국내견학

- 리더교육, 주민교육, 위탁교육, 국내견학 으로 구분

구분		계 획	변 경	정 산	잔 액	비 고	
비 목	세부항목						
인건비	급여						
	제수당						
경 비 (인건비성)	여비						
	전산사무용품비						
	교통통신비						
직접비	강사료	강의료					
		교통비					
		원고료					
	체험비						
	교통비 (항공료, 선박료)						
	인쇄비						
	강의실사용료						
	버스임차료						
	숙식비	숙박비					
		식비					
		간식비					
	기타	사무용품					
		여행자보험					
		문화체험비					
		현수막					
예비비							
기 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 국외견학

구 분		계 획	변 경	정 산	잔 액	비 고	
비 목	세부항목						
인건비	급여						
	제수당						
경 비 (인건비성)	여비						
	전산사무용품비						
	교통통신비						
국내 직접 비용	강사료	강의료					
		교통비					
		원고료					
	인쇄비						
	교통비 (항공료, 선박료)						
	차량임차료						
	식비						
	간식비						
국외 직접 비용	항공료						
	현지안내비						
	기관방문비						
	현지교통비						
	숙식비	숙박비					
		식비					
		간식비					
	기타	사무용품					
		여행자보험					
		기관선물비					
		문화체험비					
		현수막					
기 타	일반관리비						
	이 윤						
	부가세						

○ 컨설팅·홍보마케팅·정보화

구 분		계 획	변 경	정 산	잔 액	비 고	
비 목	세부항목						
인건비	급여						
	제수당						
경 비 (인건비성)	여비						
	진산사무용품비						
	교통통신비						
직접비	인쇄비						
	회의비						
	자문비						
	홍보마케팅 및 정보화부분 직접재료비						
기 타	일반관리비						
	이 운						
	부가세						

3) 년도말 결과보고서

○ 보고서의 종류

- 매 년차별 결과보고서
- 단계별 결과보고서

※ 당해년 10월 이후 사업시작일 경우 익년도에 포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필수 수록사항

가) 사업추진개요

- 사업개요, 내용, 기대효과, 사업비변경내역 등

나) 분야별 추진성과

- 교육·견학
 - 목적, 추진방향, 추진개요, 기대효과 등
- 컨설팅
 - 개요, 목적, 추진방향, 추진실적, 실행방안, 기대효과 등 요약
- 홍보마케팅
 - 개요, 목적, 추진실적 등
- 정보화
 - 목적, 추진방향, 개발범위, 추진일정, 구축결과물 등

다) 부록

- 교육교재
- 홈페이지 매뉴얼 등

4) 비용 세부정산 요령

- 직접경비는 사업(위탁)시행자와 협의하여 세부항목 간에 조정할 수 있다.

4-3 증빙첨부

1) 비용집행요령

- 직접비 집행 시 반드시 문서처리
- 자금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한 법인카드 집행

2)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범위

-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명세서 등
- 현금영수증(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 권역내 집행의 경우 계좌입금확인증
 - 추진위원장, 사무장이 발행한 청구서 또는 영수증 첨부
- 농어업인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일자, 품목,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한 영수증
 - ※ 농어업인의 영수증 예시

영 수 증

공급자	공급받는자
성 명 :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주 소 :
<p>품 목 :</p> <p>수 량 :</p> <p>금 액 :</p>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금액을 ○○권역 ○○캠투어 행사에 필요한 재료판매 대금으로 영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판매인 ○○○(인)</p>	

- ※ 소득세법 제 160조 2항(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법인세법 제 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의해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정산서 작성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 후 반드시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필한 후 첨부한다.
-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출력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3)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 교육 및 국내·외 견학

- 강사료 : 강사료 지급명세서 및 입금 확인증
- 인쇄비, 현수막, 버스임차료 : 세금계산서
- 교통비, 재료비, 간식비, 사무용품비 : 법인카드명세서 또는 현금영수증
- 숙박비, 식비, 체험비 : 법인카드명세서 또는 청구서 및 입금확인증
- 보험료 : 견적서 및 입금확인증
- 국외비용 : 견적서 및 입금확인증

○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 인쇄비 : 세금계산서
- 회의비 : 법인카드명세서 및 현금영수증
- 자문비 : 자문료 지급명세서 및 입금확인증
- 정보화 기기 :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명세서
- 홈페이지구축 부대비용 : 법인카드명세서 또는 입금확인증
-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 광고 :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명세서

4) 위의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 불가피하게 위의 증빙서류로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위탁)시행자와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부록1] 비용지급기준

○ 인건비 지급기준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 구 분	금 액(원)	비 고
책 임 연구 원	월 2,803,744원	
연구 원	월 2,149,872원	
연구 보조 원	월 1,437,118원	
보 조 원	월 1,077,876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1년도 기준단가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 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2010년 2.9%)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여비지급 기준

(단위 : 원)

직 급	등 급	교통비	일 비	숙박료 (실 비)	식비
책임연구원	제1호 등급	실 비	20,000	실 비	25,000
연구원	제2호 등급	실 비	20,000	40,000 (실비/상한액)	20,000
연구보조원	제2호 등급	실 비	20,000	"	20,000
보조원	제2호 등급	실 비	20,000	"	20,000

※ 본 여비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지급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이므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록2]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양식(목차)

목 차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II. 컨설팅 추진 대상 및 범위

III. 현황과악

 1.

 2.

IV. 여건분석

 1.

 2.

V. 추진전략구상

VI. 세부시행계획

VII. 결론 및 시사점

<해설>

1. 결과보고서의 목차는 컨설팅 방법이나 사업성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p100 이상 분량, 불필요한 사진을 과도하게 수록하지 말 것.)
2.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컨설팅 최종 결과보고회의를 거친 후 작성하여 사업
(위탁)시행자와 협의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간주 한다.

[부 록]

- I. 포괄보조사업의 개요
- I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침
- III.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IV.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V. 농어촌정비법

부록

I. 포괄보조사업의 개요

1. 지역발전정책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3.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제1장

지역발전정책

1-1. 지역발전정책 개편방향

- 국토를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 등 3차원으로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 세출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포괄보조금제 도입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설계
- 지자체 신청사업에 대한 행안부, 지역발전위의 사전심사 폐지로 예산편성 절차 간소화
- 집행가능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
-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200여개 세부사업을 22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폐합
- 지역·부처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의 수요 및 비교우위를 감안한 차별화된 지원 제공
- 한도배분시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 및 성과 등과 연동된 재원배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강화

1-2. 지역발전정책 개편개요

〈 新 지역발전정책 주요내용 〉

< 기본방향 >

- ①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 ② 지역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 ③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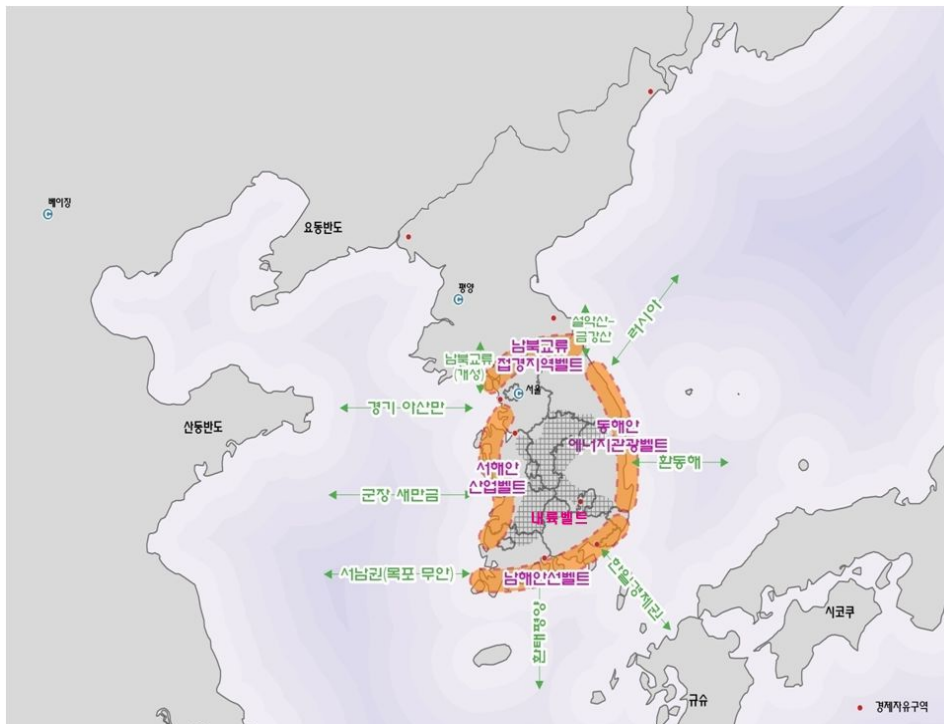
< 추진전략 >

- ① **기초생활권** 개발 : **161개 시·군** 대상,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② **광역경제권** 추진 : 5+2 광역경제권 설정
- ③ **초광역권** 개발 : 대외개방형 국토개발 및 국가경쟁력 제고

1) 초광역권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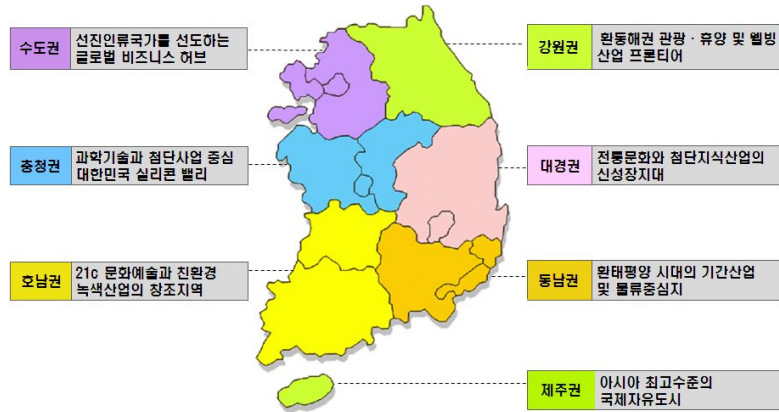
- 서해안 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내륙벨트 등 5개 초광역권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

초광역개발권	발전비전
남해안 선벨트	◎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기간산업·물류·관광여가 중심지육성
서해안 신산업벨트	◎ 환황해권에 대응하는 차세대 IT, 자동차, 물류 등 산업육성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 환동해권의 신재생에너지, 관광레저 거점으로 발전
남북교류·접경벨트	◎ 남북교류거점개발 및 생태·환경자원의 공동보전사업추진
내륙벨트	◎ 해안 - 내륙의 연계를 위한 특성화된 개발거점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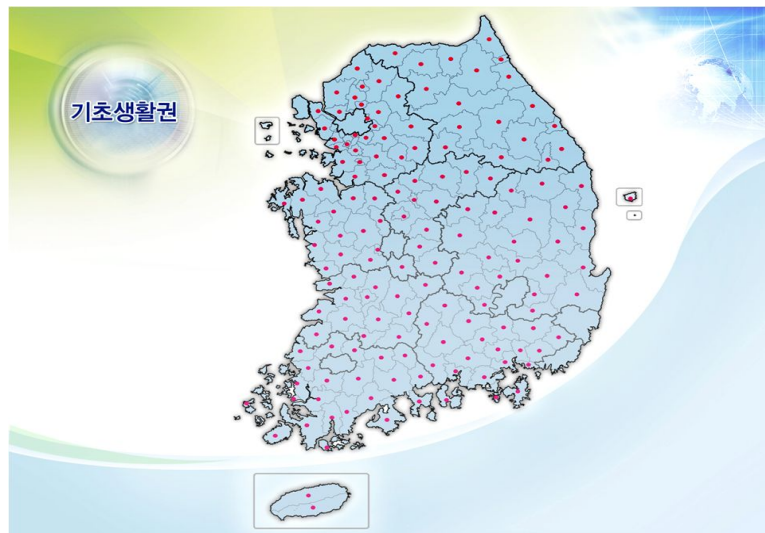
2) 광역경제권 개발

- 16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등 7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



3) 기초생활권 개발

- 대도시를 제외한 161개 시군¹⁾, 기초생활권은 중심도시와 농어촌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우리부 지역개발사업과 밀접한 관련



1) 2009년 4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당초 설정된 163개 기초생활권은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출범에 따라 161개 기초생활권으로 변경

제2장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2-1. 광특회계 운용방향

1) 광특회계 운용목표

- 균특법 개정 취지에 따라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기조로 新지역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
- 광특회계는 지역 중심의 개발과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의 조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개편

2) 광특회계 운용방향

① 광역경제권 추진 뒷받침

- (기존) 행정구역 단위의 분산투자로 지자체간 소모적인 재원확보 경쟁만 유발
- (개편)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시·도간 연계투자 활성화
 - 시도단위 전략산업 →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으로 전환 등
 - ⇒ 지역간 시너지 효과 및 규모의 경제 효과 발생

② 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 (기존) 사업간 유사·중복 및 균특회계 성격·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업 포함에 대한 비판 (국회, 감사원 등)
 - 낙후지역사업의 경우 '09년 기준으로 행안부, 농림부 등 5개 부처가 20여개 개발사업(약 1.6조원)을 분산·추진 중
- (개편) 유사사업 통폐합(200여개 세부사업 → 22개 포괄보조사업) 및 광특회계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계·계정간 사업이관
 - 낙후지역사업은 4대 기초생활권(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으로 통폐합
 - ⇒ 지역·부처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지역의 수요 및 비교우위를 감안한 차별화된 지원 제공

③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 (기존) 예산 편성시 사업별 세부 내역까지 심사받는 등 사업설계에 있어 지자체 자율성 제약
 - 예산신청시 재정부, 행안부, 균형위 등 다단계적 검토 절차로 일반보조사업에 비해 예산편성 절차도 복잡
 - (개선)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을 통해 시·도별 재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부내역을 설계·집행
 - *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포괄보조사업별(지역계정) 정책목표에 따라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
 - 지자체 신청사업에 대한 행안부, 지역발전위의 사전심사 절차 폐지로 예산편성 절차도 간소화
- ⇒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시행

④ 재원 배분의 실효성·합리성 제고

- (기존) 모델을 통해 시·도별 기본한도를 부여하고, 균특회계 이전의 과거 실적치에 좌우되어 재원의 효율적·전략적 운영에 대한 유인은 부족
- (개선) 한도배분시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등과 연동되도록 재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⑤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제고

- (기존) 그동안 상습적인 예산 이월 등에 따른 집행부진 등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미흡에 대한 비판 제기
- (개선) 집행가능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 2회계 연도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
 -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사전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사후적 평가를 강화

2-2. 광특회계의 기본구조

1) 광특회계 사업구분 : 3개 계정 6개 사업군

<광특회계 편성체계 >

편성방식		계정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편성	시·도		①시·도자율편성사업		④시·도자율편성사업 * 기초생활권 기반구축 사업 등 포함
	시·군·구		②시군구자율편성사업	-	⑤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국가직접편성				③국가직접 편성사업	⑥국가직접 편성사업

① 지역개발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② 지역개발계정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성장촉진지역 등 기초생활권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신청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③ 광역발전계정의 국가직접편성사업

- 광역경제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산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적 고려가 우선인 사업으로, 각 부처가 지역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직접 예산을 편성

④, ⑤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자율편성사업

- 제주계정 대상사업 중 국가직접편성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별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⑥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국가직접편성사업

- 예산신청 및 편성절차는 광역계정의 국가직접편성사업과 동일

2) 기본 구조상의 특징

- ① 지역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하고, 광역계정은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구성
- 광특회계 안에서도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계정, 광역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광역계정에 포함
 - 제주계정의 경우, 종전 시도자율편성사업과 기초생활기반구축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

구 분	균특회계	광특회계
· 지역개발계정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③ 국가 직접편성사업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 광역발전계정	④ 시·도자율편성사업 ⑤ 국가직접편성사업	③ 국가직접편성사업
·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⑥ 시·도자율편성사업 ⑦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⑧ 특행기관 이관사무 ⑨ 국가직접편성사업	④ 시·도자율편성사업 (기초생활권 사업 포함)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국가직접편성사업

- ② 汎국가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他 회계로, 광역 연계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은 광특회계로 이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3-1.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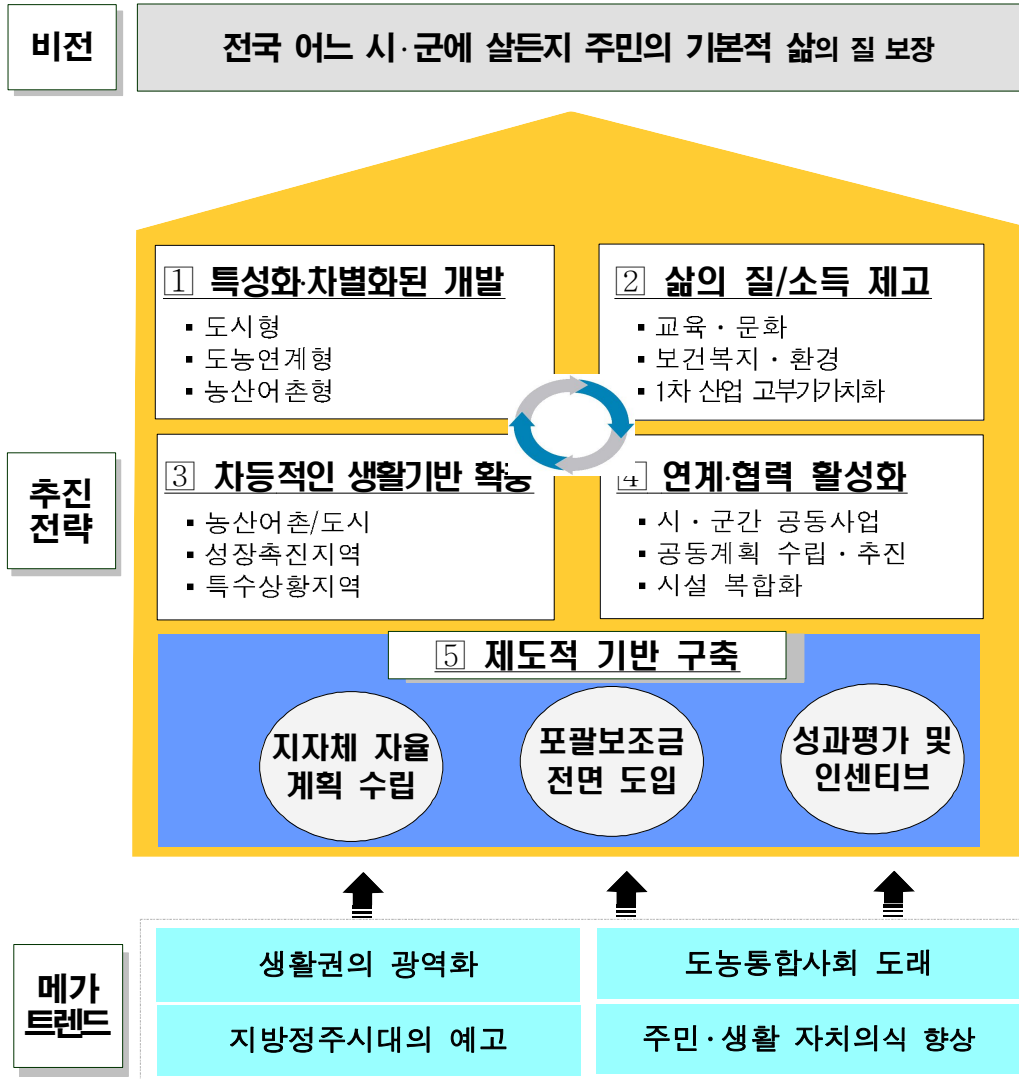
가. 추진 배경

- 그동안 대도시권 중심의 사업 내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으로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로 구성되는 기초생활권들은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
 - 군 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은 시 지역의 약 1/6 수준
 - 종합병원(93.6%), 병상수(89.5%), 의료인력(88%) 등 서비스 도시 집중
 - 상/하수도 보급률('05): 군(54.7%/36.1%), 도시(98.1%/89.9%)
 - 지방 중소도시도 인구·정주여건·경제력·재정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쇠퇴, 특히 수도권 중소도시와 상당한 격차 존재
-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교육·문화·복지 등 총체적 생활공간으로서 기초생활권을 재인식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
 - 2005년 기준, 기초생활권은 국토 면적의 97.1% 차지, 인구의 53.9% 거주
 - 기초생활권의 중층적 구조 위에 형성되는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의 발전은 기초생활권에서의 삶의 질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달성 불가능

◆ 기초생활권의 개념과 유형 ◆

- 기초생활권이란 ?
 -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단위
 - 기초자치단체인 161개 시·군(자치구 제외)을 대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군
- 기초생활권의 유형
 - ① 도시형 : 대도시와 인접해 있거나, 자족적 발전이 가능한 도시지역
 - ② 도농연계형 : 중심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의 연계 발전이 가능한 시·군 지역
 - ③ 농산어촌형 : 도시와 멀리 떨어진 순수한 농산어촌의 郡 지역

나.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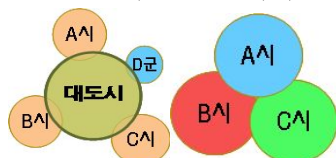



3-2. 추진전략 및 계획수립범위

가. 추진 전략

[전략 1 -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화·차별화된 개발]

- 인구·소득 및 서비스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기초생활권을 유형화
-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특성화·차별화된 개발 추진 가능

구 분	성 격	중점 발전 방향
도시형	<p>대도시와 인접해 있거나, 자족 발전이 가능한 도시지역</p> 	<p>광역 도시권 개발과 구시가지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외도시화에 따른 주거 및 생산 활동의 확산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도시 개발 - 구도심 재생, 지역산업 첨단화, 전통시장 현대화 등 핵심 사업을 발굴하여 도심지역 활력 증진
도농연계형	<p>중심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의 연계 발전이 가능한 시·군 지역</p> 	<p>중소도시와 농촌지역 도농통합적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도시의 지역경제 및 생활서비스의 거점 기능 강화 - 인접 군 지역의 중심도시 서비스(의료 등) 접근성 향상
농산어촌형	<p>도시와 멀리 떨어진 순수한 농산어촌의 군 지역</p> 	<p>인접 군 지역 간 통합적 연계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득 및 고용기회 다각화 - 생활기반시설의 공동개발로 규모의 경제화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연계화 - 중심 읍·면 육성 및 읍·면간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전략 2 - 살고 싶은 정주공간의 형성과 삶의 질 향상]

- H/W 위주 개발 (도로, 건물, 시설)을 탈피, S/W 중심 개발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 지역특화·향토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전략 3 - 낙후 및 소외 지역 등의 차등적 생활기반 확충 강화]

-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 등의 정주·주거 기반을 확충하여 전국 어디든지 최소한의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
- 산간오지, 도서 등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차등적 지원.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동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접경지역 등)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

[전략 4 - 시·군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화]

- 문화관광, 환경 등 사업 분야별로 지역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여 개발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문화관광 분야) 지역 축제 등 지역 문화관광 사업 연계·협력 추진 및 활성화
 - (농산어촌 산업 분야) 농산어촌간 공동 마케팅 등 강화
 - (환경 등 비선호시설 분야) 시·군간 협력을 통해 공동 시설 설치와 함께 시설 공동 이용 등 추진
- 시·군간 협력 촉진을 위해 기초생활권 계획의 공동 수립을 추진하고, 협력형 모범 사례에 대해서는 적합한 인센티브 부여

[전략 5 - 자율성·창의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기초생활권 개발의 계획적·체계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함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종합계획이므로, 지자체 자체 사업이나 포괄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 타 부처 사업 등도 포함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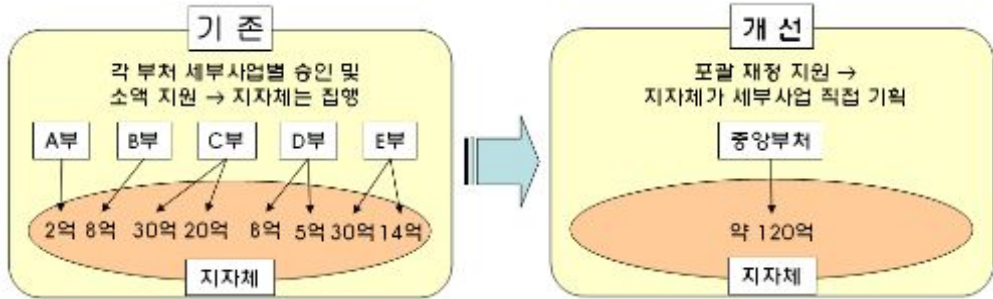
나. 계획수립범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범위]							지자체 자체· 보조 사업 (지방세/교부세/국고· 도비 보조)
포괄보조금 사업 7개 분야							
문화 관광 체육	농림 수산	산업 중소 기업	보건 복지	환경	수자원 교통	기초 생활 기반 구축	교육, 일반행정, 문화· 환경, 사회복지, 경제개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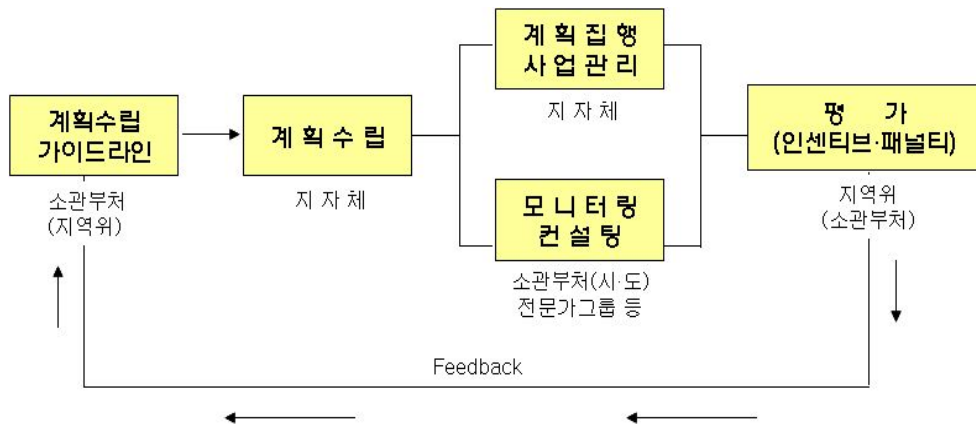
○ 지자체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직접 세부 예산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 지자체 신청사업에 대한 행안부, 지역발전위의 사전 심사 절차 폐지로 예산 편성 절차 간소화

- 기존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200여개 기초생활권 관련 단위사업을 7개 정책 분야 22(18+4)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 단순화
 - 지역별 사업군: 기초생활권 생활 기반 구축(3+1개 지역)
단,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을 선택하려는 지자체는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
 - 기능별 사업군(6개 분야) : 문화관광체육,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보건복지, 환경, 수자원교통 등 18개 포괄보조사업





- “사전자율, 사후책임” 원칙에 따라 지자체는 재원한도 범위 내에서 세부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중앙은 엄정한 사후 평가 실시
 - 중앙정부는 22개 포괄보조사업별 사업유형·선진모델 등을 중심으로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후 추진실적 평가
 - 지자체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재원한도의 일부를 시·도별 인센티브 형태로 조정·반영. 한도 배분시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 및 성과 등과 연동된 재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 2회계 연도로 제한



〈포괄보조금사업 지원 대상〉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사업재편 이전 세부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화부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② 관광자원 개발 ③ 체육진흥시설 지원 ④ 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 박물관, 문예회관 등(15개) · 문화도시, 관광지 개발(11개) · 운동장, 수영장 등(11개) · 문화콘텐츠센터 등(8개)
	문화재청	⑤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 지역문화유산개발 등(5개)
	농림부	⑥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⑦ 농어업기반정비	· 도농교류활성화 등(13개) · 밭기반 정비 등(13개)
	농진청	⑧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5개)
	산림청	⑨ 산림경영자원 육성 ⑩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임산물 수출촉진 등(3개) · 휴양림, 수목원 등(4개)
	지경부	⑪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 섬유패션산업 등(10개)
	중기청	⑫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 기반 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2개)
	복지부	⑬ 청소년시설 확충	· 공부방, 수련시설 등(2개)
	환경부	⑭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⑮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생활용수공급 등(4개) · 자연환경보전 등(2개)
	국토부	⑯ 해양 및 수자원 관리 ⑰ 대중교통 지원 ⑱ 지역거점 조성지원	· 연안정비 등(3개) · 물류단지 지원 등(5개) · 국민임대산단 조성 등(2개)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⑲ 성장촉진지역 개발	· 개축지구 지원 등(3개)
	행안부	⑳ 특수상황지역 개발	· 접경지역 지원 등(15개)
	국토부	㉑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 주거환경 개선 등(16개)
	농림부	㉒ 일반농산어촌 개발	· 전원마을 조성 등(15개)

부록

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윤동진 사무관 김경두 사무관 김운기	02-500-1796 02-500-1799 02-500-1805
시·도/시·군	농촌개발담당부서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과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

2. 사업 추진방향

- 단위(마을, 권역, 읍·면, 인근도시)별로 특성에 맞게 지역개발 추진
- 기존의 계속사업지구(주거환경개선, 개발촉진지구 등)는 기존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관련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

3.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등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3개년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09	'10	'11		
○ 주민만족도(%)	79.5	-	77.9	78.7	'12.1월(매년말기준)	■ 리서치 전문기관활용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 신규인구유입 목표 달성률(%)	100	-	118	100	'12.1월(매년말기준)	■ 시군별 목표 및 실적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안)
합 계	-	1,390,927	1,330,283	1,329,210	1,324,444
보 조	-	973,649	931,198	930,447	927,111
지방비 등	-	417,278	496,214	398,763	397,333

II.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장·군수(별첨3 참조)
-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2. 지원 자격·대상·자금의 용도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에 우선권 부여
 - * 수산분야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미등록자에 대한 불이익 배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2(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참조

3. 지원형태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 지원기준
 - 계속사업('09이전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신규사업(기간 1년 사업 포함)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 지역소득 증대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 소득 기반시설 : 20% 자부담(국비 56%, 지방비 24%, 자부담 2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사업유형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지원금액	100억원 이하	7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실소요 비용
사업기간	4년	3~5년	단계별 설정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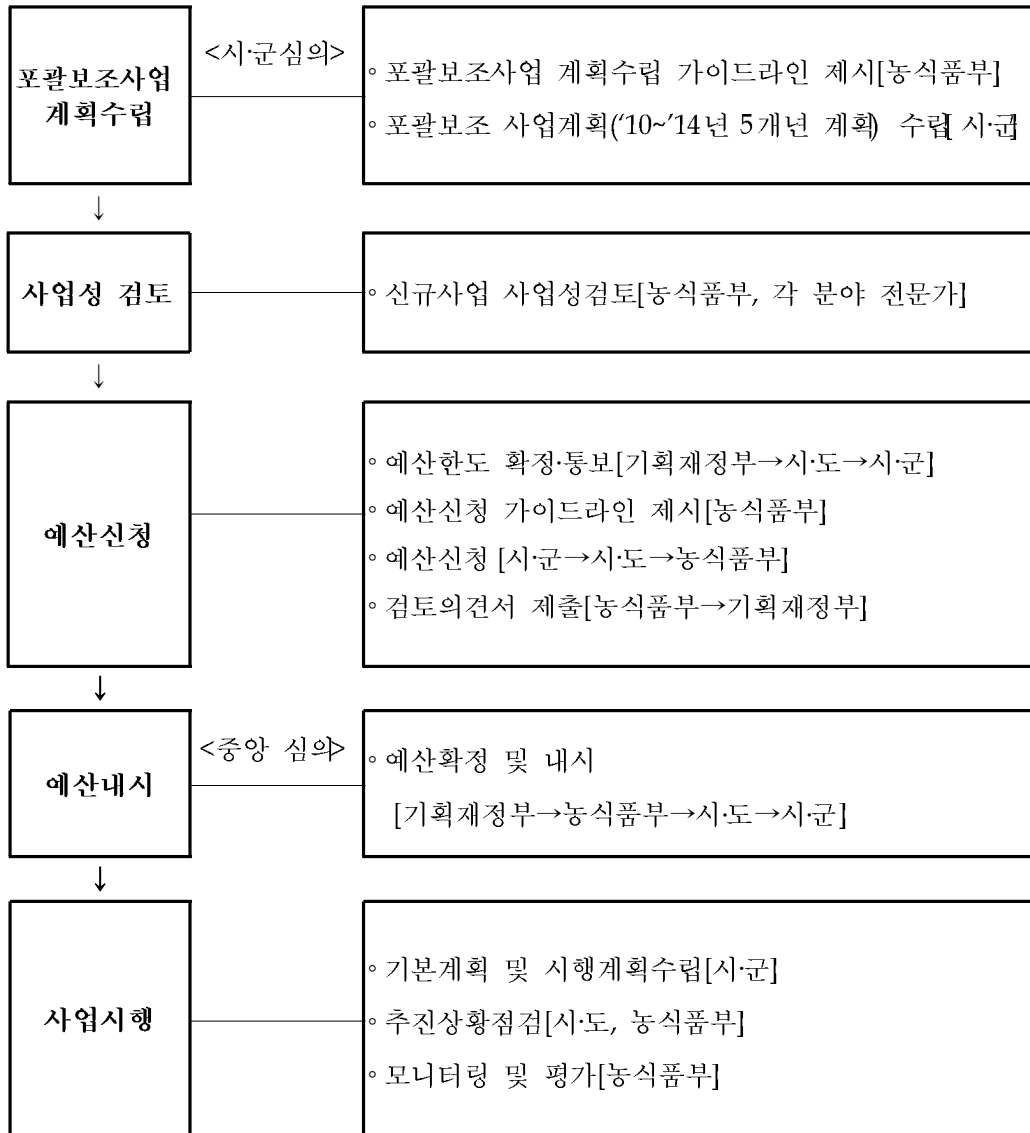
* 세부사항은 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5.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 계속사업의 추진은 사업추진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사업시행 지침을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자

- 시장·군수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시·도(시·군)

- 시·군은 신청한 사업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시·군에 배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시·군)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

3. 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시·군은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시·도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 2012년부터 착수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계속·변경사업일 경우도 해당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12년에 수립할 경우에는 2012년도 지침서 적용)
- 사업계획의 변경
 -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계획변경
 - 단위사업별 세부내역(4개 기능별)의 총액(국고기준)이 20%미만으로 변경(취소)될 경우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변경 조정
 - 20~50%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와 사전협의 후 변경
 - 50%이상인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변경
- * 단위사업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 4개 기능 :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절차
 - 시·군은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 사업시행 전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조치내용 등을 사전 공지
- 사업시행계획 수립(승인, 인가) 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은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시·도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로 자금 배정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도(시·군)의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 필요시 모니터링·컨설팅 등 지원
- 시·도(시·군)는 전자시스템(E호조)과 연계하여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자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상황 수시 관리

《제재》

- 시·도(시·군)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재조치를 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 부정수급자, 용도의 사용자 등은 제재조치(붙임2 참조)

6.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측정계획 추후 별도 통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별도 통보

- 지역발전위원회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통보시에는 별도 통보 생략
- 시·도에서 제출한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방식에 의해 성과 평가를 실시

《환 류》

- 성과평가 결과에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 부여방안 강구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IV.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군에 포괄보조금이 배분되면 즉시 예산신청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신규사업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절차를 거쳐 신청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3월 10일까지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 : 3월 23일까지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문가그룹 등을 활용 사업성 검토 : 4월 30일까지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시장·군수)는 수요조사, 사업안내 등을 미리 실시하여 사업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
- 사업신청시 참고사항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중 읍소재지 : 이미 지원받은 읍(행안부에서 소도읍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은 지원제한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중 면소재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 시·군당 유형별 각 1개 이내에서 지원(다만 해당 도의 신청·선정 수량이 적고 사업계획이 우수할 경우 도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량은 증가될 수 있음)
 - * 시군에서 도에 신청하는 수량은 제한 없음
 - 마을공동 소득창출, 마을공동 문화조성 : 2개 사업 중 시·군당 1개 지원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 유형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재개발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마을공동 소득창출	마을공동 문화조성
	읍소재지	면소재지					
지원한도 (억원)	100	70	50	30	실소요액	5	2
사업기간 (년)	4	4	3~5	단계별 설정	1	2	2

<붙임 1>

201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

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목 적

- 읍·면소재지를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지원기준

- 사업비 : **4년간** 10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신규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에 역점
- 경관개선계획에 따른 사유시설물은 시설비의 20%를 수혜자가 부담
- 역량강화 사업은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시행가능(기본계획비·세부설계비는 10%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 세부내용

기능별사업	세부사업	세부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로교통	도시계획도로, 공용주차장, 주거환경정비 등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레포츠시설, 근린공원조성, 체육공원 조성 등
소득증대	소득기반	재래시장 현대화, 향토시장 정비 등
경관개선	도시경관	경관계획수립,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 경관저해시설 정비 등
역량강화	교육훈련	주민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 지역리더 양성, 선진지 견학 등
	마을홍보	지역축제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문화·복지·시설물관리 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2. 권역단위 종합정비

○ 목 적

-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 지원기준

- 사업비 : 3~5년간 7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기초생활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동 이용 시설은 전액보조(주택, 관공서 청사는 지원제외)
 -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소득기반시설은 행정리(동)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에 한하여 지원, 시설비 총액의 20%는 수익자 부담(참여가구 전체가 공동 부담하여야 하며, 1인이 30%이상 부담 금지)
 - 주민소득을 위한 소득기반시설과 체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가 부담(농어업기반시설은 제외)
- 사업기간

총사업비	30억원 미만	30억원~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사업기간	3년	4년	5년

- 사업비 한도 산출 : 마을 수 또는 가구 수 규모에 따라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권역규모	1	2	3	4	5
사업비(억원)	70억원	55억원	45억원	35억원	25억원
행정리	6개 이상	5개	4개	3개	2개이상
가구수	500가구 이상	400가구	300가구	200가구	100가구 이상

※ 아파트 거주가구는 총사업비 산정시 제외

○ 사업 세부내용

기능별사업	세부사업	세부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 상수도, 마을 하수도 등
	재해대비	세천정비, 사방시설, 옹벽설치, 안전휀스, 안전시설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정비 등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실, 마을(복지)회관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향토자원 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다목적광장, 산책로, 정자 등
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가공시설, 공동판매장, 공동 저온창고 등
	체험관광	마을조형물, 생태학습장, 폐교활용, 농촌체험시설 등
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숲조성, 지붕정비, 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 조성, 생태하천정비, 오폐수처리시설,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 설치, 간판 집단정비, 시장정비 등
역량강화	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장비지원, 마을사무장·해설사·리더 양성, 선진지 경학 등
	마을홍보	마을홍보, 마케팅, 주민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3.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전원마을조성>

- 목 적 :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 도시민 등 농촌유입 촉진
 - 사업내용 : 마을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공원·녹지포함), 마을회관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원부문 : 마을정비구역지정 이후 소요되는 세부설계비, 마을기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 * 부지구입비, 주택건축비, 기본계획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비표조사비는 국고지원 대상 아님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마을규모에 따라 30억원 범위내에서 정액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20~29호 10억원이내, 30~49호 15억원이내, 50~74호 20억원이내, 75~99호 25억원이내, 100호이상 30억원이내

※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참조

<주거환경개선>

- 사업내용 : 노후불량주택지역의 정비 개량
- 지원부문 :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소공원 등
- 지원대상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4.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 목 적 : 일반농산어촌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
- 사업내용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마을기반정비, 농촌 경관개선(빈집철거정비포함),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등 주민편의시설, 환경보전시설 등(기존의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포함)
 - * 마을회관등 설치시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등 연계활용 권장
- 지원부문 : 개발계획·세부설계·공감비 등 용역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설치비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5호이상 19호미만의 기반시설 설치(대상지역, 지원내용 등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준용)

<개발촉진지구>

- 사업내용 : 개촉지구로 지정된 낙후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 지원부문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기계화 영농 촉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쌀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경지정리 지구내 주요농로와 농산물의 생산지, 가공, 유통시설간 농로를 확포장
-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규모 :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 농로 및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간 농로 확포장 지원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 사업내용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
- 지원부문 : 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 지원대상 : (소규모용수개발) 수혜면적 50ha 미만
(지표수보강개발) 가뭄에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

※ 기타 세부사항 및 서식 등은 사업추진 매뉴얼 등 참조

마을정비(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사업후보지 선정요건

- 시장·군수는 사업제안서 및 기본계획(마을정비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자격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후보지를 선정함.
 - 기본계획에는 마을기반설치 및 단지조성계획, 주택건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07년 신규지구부터 적용)
- 지원자격
 -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면(성장촉진지역은 읍 포함)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등 농어촌정비법제56조 해당자
 - 토지 : 20,000제곱미터 이상, 사업부지 100% 확보, 농림지역이 50%이내, 타법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 입주예정자 확보 : 20가구이상, 입주예정자의 80%이상, 도시민 50%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아울러, 입주자 주도형은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주도형은 입주예정자 80%이상과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함
 - 주택건축 등 추진상황 : 사업신청 시·군에 문화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가 있는 경우 추진실적 등을 조사하여 주택건축비율이 계획가수구의 60% 미만이거나 마을기반시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곳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신청 지양
 - * 마을정비조합설립 등 : 농어촌정비법 제57조 참조(붙임5-9)
 - * 사업부지 확보기준 : 토지소유권 취득, 토지매매계약체결(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과 계약금을 명시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신탁 등 사업부지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경우를 말함.
 - * 마을정비조합원 자격 : 마을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
 - * 도시민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함

사업비 지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지원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설계비부터 지원 가능. 지원자격 요건 등에 부적합한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사업취소 등 조치

주의사항

-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지원대상자에게 사전고지),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지 선정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당해지구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지구를 변경한 경우의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최초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마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에 지정해제된 것으로 봄(농어촌정비법 제117조)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설치,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의 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및 공정계획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켜야 할 사항, 제제조치 등을 고지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장·군수는 부지조성 후 나대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며 시장·군수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마을기반시설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장·군수는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착공('08.7.1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지구부터 의무적용)
-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마을기

반공사 착공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09.7.1사업시행승인지구부터 적용)

- 공공기관주도형의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입주예정자가 입주계획가구수의 2/3이상 확보(분양계약 체결)된 이후에 마을조성공사를 착공할 것을 권고함('09.7.1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되는 지구부터 의무적용, 시장·군수 자체 추진사업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중단,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 시 벌칙 등은 농어촌정비법 제70조, 제130조 등에 따름(09.12.10부터 적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비 등 집행기준

1. 적용 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비(보조금, 자부담)를 집행·수령하는 기관·단체
 - 보조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간접보조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위원회, 법인, 단체, 업체, 위원장 등

2.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시 적용 규정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조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목적·규정·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아래 열거한 항목은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으로 간주함

<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

- ①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비(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육묘장, 축사 등)
 - * 다만, 축사는 마을경관 또는 환경개선을 위해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화 시킨 공동 축사의 경우는 지원가능(축사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 ② 마트·슈퍼 등 판매시설의 설치·관리비
 - * 다만, 해당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서 임대하지 않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 판매시설 설치비는 허용
- ③ 숙박시설·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관리비
 - * 다만, 사업계획에 의한 체험·관광객의 숙식제공을 위한 복합시설의 설치비는 허용(체험·관광객이 아닌 외부인을 위한 영업용으로 이용시는 지원 불가)
- ④ 농기계·장비·선박·자동차 등 구입비
 - * 다만, 장비는 시설에 부착된 설비성격의 장비는 허용
- ⑤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자재(농약·비료·종자·부직포·파이프·비닐 등) 구입비
- ⑥ 정미소·미곡종합처리장·산지유통센터·농림수산물 건조시설 설치·관리비
- ⑦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장비 구입비

- ⑧ 보조금으로 지원한 건축물의 관리기간 내 철거 및 리모델링비(신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도 지원 제외)
 - * 다만, 시·군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승인한 경우는 가능
- ⑨ 부지조성비(측량·분할·관련 세금 등) 및 토지구입비
 - * 다만, 도로·주차장·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 용 토지구입비는 지원가능(부지의 과잉 확보 방지를 위해 토지구입비는 해당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회관 등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복합시설의 용지 구입비는 2013년까지만 지원(2014년부터는 지원 제외)
- ⑩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하는 사업비 이외의 비용 및 마을기금 조성비
- ⑪ 마을조성(신규, 재개발, 분산마을정비 등)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 주택건축비, 신규 마을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포함)
- ⑫ 타 부처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예 : 마을기업 등)인 경우 동일 항목의 사업비(홍보비, 교육비, 컨설팅비, 홈페이지 구축비, 경상비, 인건비, 시설비 등) 전체

4. 별도계정의 설정

- 사업비는 집행(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계정(별도 통장, 별도 회계)으로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단체일 경우는 단체대표자 명의로 개설
- 시·군은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가능한 사업비 집행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 카드는 법인명이나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사업비 지급은 카드 사용을 원칙(카드 지급이 어려운 경우는 계좌입금)

5. 사업비의 집행원칙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불가
-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인출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통장·회계장부·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그 지출 증빙자료를 징구·첨부하여야 함

6. 계약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명입찰, 수의계약도 가능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시·군은 계약·구매 등을 위하여 사업자나 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 그 계약 절차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7. 자부담금의 집행

-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자부담 금액의 1/2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업량이 1/2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라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
- 시·군은 자부담금의 집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조금을 집행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된 사업인 경우 투입된 사업자금은 공동(보조금, 자부담)으로 투입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정 품목·사업에 자부담을 선택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자부담금을 초과 투입한 경우도 동일)

8.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계획변경

9. 사업 점검

- 정기 점검
-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는 연 1회 이상, 시·군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대장으로 관리
- 특별 점검
- 시·도 또는 시·군은 민원 발생, 보조금의 부정 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 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

10.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시·군은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시행지침, 지원약정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위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약정 해지, 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1. 사업비 정산

- 사업비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이어야 함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 사업의 직접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일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음(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
 -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는 지출결의서 다음에 A4 용지에 원본을 부착·편철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 시·군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시에는 사업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

12.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토지·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 후 정산
 -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전부 투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
 - 법인(단체)이 사업비를 전부 투입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명의로 등기
 - 시장·군수와 법인(단체)이 공동 투입한 경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기
 - * 다만, 시장·군수와 법인이 합의한 경우는 단일 등기 가능
- 토지 확보가 의무인 사업은 토지가 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 임차를 통한 토지 확보는 토지 미확보로 간주
 - 토지 등기는 시장·군수, 법인(단체) 명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는 지원 제외

13. 재산처분의 제한

-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 시장·군수가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 부동산과 종물, 기계, 장비, 기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재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승용차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14. 검사

- 농림수산물부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15.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검사나 감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16. 벌칙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7. 기타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붙임 3>

일반농산어촌지역(120개 시·군)

구 분	해 당 시·군
경 기	평택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	원주시, 강릉시, 홍천군,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 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 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군, 연기군, 홍성군, 태안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전 북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영암군,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 남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 주	제주시, 서귀포시

* ()는 성장촉진지역임

<붙임 4>

기능별 세부사업 내용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비 고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세천)정비, 옹벽설치, 안전웬스, 기타 안전시설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 재개발·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마을(복지)회관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원두막, 심신단련장 등	
지역소득 증 대	농업기반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농기계창고 등	
	소득기반	특산물 공동가공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 다목적창고 등 *토지구입비 지원대상 아님	*자부담 20%
	체험관광	야생화단지, 마을조형물, 장승설치, 방앗간복원, 간이천문대, 야영장설치, 생태학습장, 폐교 리모델링등을 통한 농어촌체험시설 설치 등 *체험관광 등을 통한 수익창출 목적의 토지구입비, 공공 목적이 아닌 시설의 토지구입비는 지원대상 아님	
지역경관 개 선	마을경관	마을숲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보호수정비, 생울타리조성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오폐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테마가로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가로경관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역역량 강 화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신규마을조성은 세부설계, 재해영향 평가부터 지원	

* 10년 이후 신규 추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준임

부록

Ⅲ.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1.10.26] [법률 제10898호, 2011.7.2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4.2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1. "지역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지역 간의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도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군과 제7조의2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둘 이상의 시·군을 말한다.
3. "광역경제권"이란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산업권과 역사·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초광역개발권"이란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6. "지역선도산업"이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광역경제권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7.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8.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 나.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9. "농산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개정 2009.4.22>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7.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9.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8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5조의2(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수립) ① 정부는 관련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구상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 문화·관광 등 성장동력의 육성과 지역 간의 연계 발전에 관한 사항
2. 초광역개발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계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초광역개발권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의 초광역개발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정부는 초광역개발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초광역개발권 발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6조(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의 수립) 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광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경제권의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광역경제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발전거점 육성, 교통·물류망 확충, 문화·관광 육성 등 광역경제권 발전에 관한 사항
 4. 하천 등 자원과 서비스의 공동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30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광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이하 "광역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광역계획, 전년도 광역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광역 시행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광역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⑥ 광역계획과 광역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발전계획과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7조의2(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둘 이상의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하 "기초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기초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둘 이상의 시장·군수에게 지역발전계획과 시·도 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해당 기초생활권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광역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역발전위원회는 제4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 <개정 2009.4.22>

제10조(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국토의 초광역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2.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과 수도권 및 지방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인력 양성, 교통·물류시설 확충 등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 및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고용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채용장려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산학연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등 과학기술역량의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13조 삭제 <2009.4.22>

제14조(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등 발전 거점 도시의 육성과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

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17조 삭제 <2009.4.22>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 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1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전년도 지역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지역발전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앞으로 추진할 시책
3.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4. 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현황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현황
6. 지역 문화·관광의 육성 현황
7.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 현황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현황
9.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4장 지역발전위원회 등 <개정 2009.4.22>

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광역계획과 광역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9.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및 지방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23조(조직)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8>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2.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⑤ 위촉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에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지역발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6조에 따른 지역발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⑧ 지역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25조(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26조(지역발전기획단) ① 지역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② 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7조(지역발전지원단 등) ① 지역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광역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지역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역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발전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8조(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광역경제권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광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광역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협력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재원의 분담에 관한 사항

- 4. 해당 광역경제권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광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3명 이내의 자
 - 2.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공동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⑤ 광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둔다.
- ⑥ 광역위원회의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및 임직원의 파견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 24조와 제25조를 준용한다.
- ⑦ 광역위원회는 중요 정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별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⑧ 제2항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광역위원회의 위원 간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광역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⑨ 광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9조(시·도 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도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시·군·구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5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정 2009.4.22>

제30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1조(회계의 관리·운영)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3조(소속 재산)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광역발전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운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광역발전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36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3, 2011.5.19>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 (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 (2)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라.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5조(광역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용자금의 원리금
 9.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0.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 ② 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경제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보조 또는 용자
 2. 광역경제권 지역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3. 광역경제권에 속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4. 광역경제권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광역경제권에 속한 관광자원의 육성 촉진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7. 광역경제권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및 광역발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원 등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및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은 지역개발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37조(일시차입금)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발전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34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3. 제34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2]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22]

제42조(예산의 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율을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43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7.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4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46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47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제7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
에 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48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당하는 「주세법」에 따른 주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부칙 <제10898호, 2011.7.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2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1.1.24] [대통령령 제22625호, 2011.1.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5.2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2조(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및 그 인접 지역
2.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및 그 인접 지역
3. 그 밖에 광역경제권 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개발 구상을 수립한 권역으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원회"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지역

[본조신설 2009.5.2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09.5.29>]

제2조의2(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지역발전위원회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속한 시·군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장은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5.29]

[제2조에서 이동 <2009.5.29>]

제3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7.27>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出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6.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09.5.29]

제2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개정 2009.5.29>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이하 "부문별 발전계획안"이라 한다)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지역발전의 목표,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광역계획을 기초로 제1항에 따른 지역 발전계획안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역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광역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6조(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6조의2(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수립절차)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위원회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안을 반영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광역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9]

제7조(광역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역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광역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8조(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이하 "광역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광역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광역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광역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광역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위원회는 해당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9조(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편람의 작성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군 단위의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17>

[전문개정 2009.5.29]

제10조 삭제 <2009.5.29>

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위원회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광역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조정을 끝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12조(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상 사업
2. 제출 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광역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월 말일까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광역위원회는 전년도 광역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13조(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종합평가)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시행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과 광역경제권 및 시·도별 지역발전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⑥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광역위원회 및 시·도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제5항에

다른 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14조(평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기획의 타당성
2. 사업 집행의 효율성
3.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성과
4. 그 밖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9]

제14조의2(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문단은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10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2.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3. 관계 중앙행정기관, 광역위원회 및 시·도의 자체평가 지원
4. 그 밖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⑥ 정부는 매년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9]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 <개정 2009.5.29>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5.2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5.29>]

제16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5.29>]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

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5.29>]

제18조(대학의 지방이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9]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제18조의2 삭제 <2009.5.29>

제18조의3 삭제 <2009.5.29>

제19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역발전위원회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역발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 의견을 기초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도지사과 협약을 체결한다.

- ⑥ 시·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 사업과 그 체결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9]

- 제20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식경제부 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발전계획 또는 주요 시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4장 지역발전위원회 등 <개정 2009.5.29>

제21조(지역발전위원회의 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 2.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9]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지역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한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9]

제24조(전문위원회) ①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25조(자문위원)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2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26조(여론의 수집) 지역발전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9]

제2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이 처리하도록 협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29]

제2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9]

제28조(수당 등) 위원장, 지역발전위원회 등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역발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29]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30조(지역발전기획단) ①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역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무
2. 지역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작성에 관한 사무
3.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지역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각종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② 기획단의 단장은 대통령실의 지역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해당 비서관과 함께 단장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기획단은 연구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31조(지역발전지원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설치하는 지역발전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지원에 관한 업무
2. 광역위원회의 광역계획 수립·운영 등 지원업무

3. 지역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국회와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업무
 4. 지역발전 교육 및 통계 구축,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업무
 5. 지역발전위원회 예산 운영업무
 6. 그 밖에 지역발전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9]

제31조의2 삭제 <2009.5.29>

제32조(광역위원회의 운영) ① 광역위원회 위원장은 광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광역위원회의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합의에 의하여 단독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광역위원회의 회의는 광역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광역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광역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광역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광역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⑥ 광역위원회의 수당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를 준용한다.

⑦ 지역발전위원회는 광역위원회 및 광역위원회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운영준칙을 제정하여 광역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32조의2(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② 사무총장은 광역위원회 위원장이 채용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사무총장은 광역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사무국의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 ⑤ 별표 1에 따른 광역경제권 중 강원권과 제주권에 설치되는 사무국의 조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7항에 따른 운영준칙의 범위에서 광역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광역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무
 2. 광역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광역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광역위원회의 각종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2조제7항에 따른 운영준칙의 범위에서 광역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9]

제32조의3(여론의 수집과 조사·연구의 의뢰) 광역위원회의 여론의 수집과 조사·연구의 의뢰에 대해서는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5.29]

제33조 삭제 <2009.5.29>

제33조의2 삭제 <2009.5.29>

제5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정 2009.5.29>

제3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30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총괄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35조(소속 재산의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그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처분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용도별·지역별 토지 수급(需給)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36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의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37조(지역개발 및 토지관리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전문개정 2009.5.29]

제38조(용자의 조건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용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용자의 신청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용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39조(예산의 신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주체와 대상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회계에서 출연·보조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 내역
 4.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7.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8.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한 광역위원회의 의견
 9. 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시·군·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시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40조(예산의 요구)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 내역, 조정 내역 및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 간 협약의 체결,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해진 사업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5.29]

제41조(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위원회 위원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위원회 위원장 및 시·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중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42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3. 시·군·구의 발전 정도
4. 예산 집행의 실적,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운영의 성과
5. 그 밖에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9]

제42조의2(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규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9]

제43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전위원회 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평가사무를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위원회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와 다른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신청 금액을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포괄보조금 사업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역발전위원회등은 법 제9조에 따라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을 평가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⑥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44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9]

제45조(예산의 전용 범위)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전용요청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요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전용을 하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5.29]

제46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월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4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4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9.21>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탁재산의 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신문공고료·등기수수료 등 위탁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위탁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사용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매각대금 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따로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전문개정 2009.5.29]

제4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

조제2항제7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용자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9.21>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용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용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부칙 <제22625호, 2011.1.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기본계획"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IV.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 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1.26] [법률 제10936호, 2011.7.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개정 2010.7.23>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3]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7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각각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3]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⑧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0조의2(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도 위원회 또는 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개정 2010.7.23>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3]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

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9조의2(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19조의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19조의4(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개정 2010.7.23>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3]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물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개정 2010.7.23>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물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 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10.7.23]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3]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36조(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수시설·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37조(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주민
 2. 관계 공무원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
- 4. 환경 보전 및 조성
-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 보전활동, 농어촌관광,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6장 보칙 <개정 2010.7.23>

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43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2. 제44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지원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47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부칙 <제10936호, 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장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1.26] [대통령령 제23532호, 2012.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7]

제3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위원의 사무 처리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5조(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5>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의2. 통계청장, 소방방재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2. 농어촌의 복지·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17]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방법·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7]

제11조(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12조(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7]

제13조(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란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14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업
3.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11.1.17]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7]

제16조(정책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할 때에는 농어업인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물부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책등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분석·평가의 주체, 방향, 절차, 대상 정책등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할 때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할 때 관계 전문가, 연구기관 및 단체에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조사를 의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5]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2. 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3. 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4. 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중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3. 지방세납세증명서
4.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8.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12. 장애인증명서
13. 한부모가족증명서
1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2.1.25]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무 중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관련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관련 사무 중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관련 사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지원자 적격 여부 조사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5]

부칙 <제23532호, 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V. 농어촌정비법

1. 농어촌정비법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장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2.2.17] [법률 제11319호, 2012.2.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17>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 라.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바. 빈집의 정비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게

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8.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자원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마을 및 연안해면(沿岸海面)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한계농지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協議)하여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세우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대상 지역의 현황
3. 주요 농어촌정비사업 내용
4. 추정사업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보완·발전시키려면 제3조의 자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형성·관리(이하 "농어촌경관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대상 지역의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농어촌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2. 재배 작목(作物)
3.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4.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受惠面積)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의신청일부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주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4.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지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 용도의 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창설환지(創設換地)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①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용수시설, 농어촌도로, 농어촌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배수·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 ②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이나 영농 규모 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 ③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의 면허·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0.4.15>
- ④ 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결정 및 고시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취토장: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한다.

1. 임대
 2. 매각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
-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처분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

올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농어촌용수구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 1. 국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
- 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 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시장·군수·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시행일 : 2012.5.18] 제17조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19조(안전관리 교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착공 또는 준공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2.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
4. 「지하수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①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 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5.18] 제24조

제3절 환지 및 교환·분할·합병 등

제25조(환지계획)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④ 환지계획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3.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4.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 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제곱미터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구거: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재정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성명·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등 단순한 기재 사항의 착오 및 누락
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 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⑧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3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제28조(환지사의 자격)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환지사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여 환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환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환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사 자격을 취소한다. 다만, 환지사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7조제2호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권리 변동의 신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지
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
3.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되, 그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환지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처분한다.
- ⑤ 환지계획 구역에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 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지상권·임차권 및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34조에 따른 환지 지정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자가 동의할 경우의 환지 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더 늘릴 수 있다.

제36조(국·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제34조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26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 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36조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 ⑥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체납처분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면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 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 개시일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전의 토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개시일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 이용지를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토지가격의 평정)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40조(수혜자총회) ①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로 본다.

③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교환·분할·합병의 시행)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할·합병(이하 "교환·분할·합병"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분할·합병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분할·합병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분할·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교환·분할·합병의 결정 방법) ① 제43조에 따라 교환·분할·합병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농지 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면적 및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 및 가격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그 권리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분할·합병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③ 농지 소유권의 교환·분할·합병계획에는 교환·분할·합병으로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환·분할·합병계획의 결정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교환·분할·합병의 효과)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분할·합병계획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권(地役權)은 설정되거나 소멸된다.

제46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할·합병) 농지에 관한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분할·합병을 할 때에는 제44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제47조(교환·분할·합병의 청산금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분할·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분할·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48조(지료 등의 감액·반환 또는 증액 청구)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地料), 지역(地役)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減額)을 청구하거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增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주(借主)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50조(지역권의 효력) ① 환지계획이 정하여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8조에 따른 청구를 하여 지역(地役)의 대가가 감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1조(지료 등의 청구 기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50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반환 또는 증액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청구를 할 수 없고, 지역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과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②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②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4.14>

[시행일 : 2012.4.15] 제53조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성과 목표 및 지표
3. 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7.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8. 교육·문화·복지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개발
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1. 한국농어촌공사
 -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103조에 따

른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16조제1항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

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4.15] 제59조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 기간
7. 사업시행자
8. 사업 효과
9. 세부 설계도서
10.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한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지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7>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제64조(빈집 정비)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5조(빈집 정비 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4조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용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용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5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에 따라 농어촌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70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조성용지의 공급 당시 가액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조성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간선시설(幹線施設)(「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71조(기술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설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72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을 단위로 하는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산업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육성 및 투자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항
4. 제7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5.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할 지역의 민간단체·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3조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등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지원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3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

2.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7조(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제80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7.22] 제80조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①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 대장(臺帳)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이 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8조(지도·감독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입식작목(入殖作物)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시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

의 효과를 승계한다.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중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91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한계농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울 수 있다.

제92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할 수 있다.

1.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93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① 제94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7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92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분할·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2.2.17>

제99조(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①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계농지등과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매도하거나 제 96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매도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 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2.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
5.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7.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10.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3.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15.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6.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17.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 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승인받으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마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 계획의 수립,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의 지정·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수립·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마을정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은 제101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101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정비구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마을정비계획서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마을정비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내용이 타당하여 마을정비계획을 수

립할 때에는 제101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자에게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5조(사업지역·지구의 고시 등)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구역·단지·지구(이하 "지역·지구등"이라 한다)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101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마을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결정·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5.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② 제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 제8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2.2.1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4. 삭제 <2010.4.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10. 「도로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

-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
1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17.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2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24.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

- 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 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 ③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신고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101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마을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결정·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5.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② 제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 제8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2.2.1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4. 삭제 <2010.4.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10. 「도로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
1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17.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2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24.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 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 ③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신고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 : 2012.4.15] 제106조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도로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사업 시행기간 내에 보조 대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도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③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

(잔여지: 남은 자투리땅)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는 농어촌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⑦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중 "협의매수"는 "보상"으로 본다.

제110조의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몰이주민(저수지 축조·개수 또는 보수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산정기준,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14]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① 지역·지구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지구등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國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溉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및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13조(선수금)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114조(준공검사)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5조(측량·설계·공사감리 등의 위탁) 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량·설계·공사감리·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料率) 및 대가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6조(허가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가. 제26조제1항·제43조제2항·제57조제1항에 따른 인가
 - 나. 제1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 다. 제9조제7항·제14조제2항·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제54조제1항·제57조제2항·제59조제2항·제78조제1항·제82조제2항·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
 - 라. 제95조제2항·제101조제4항에 따른 지정
2.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9조제8항·제61조·제82조제2항·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지정 해제) ①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1.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
- 2.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과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 3. 지역·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결정·확정 등이 있으면 해당 마을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해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18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 1. 제30조 본문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 2.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 3.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 4. 제64조에 따른 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
- 5. 제75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
- 6. 제89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 7. 제116조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조치

제119조(보고와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20조(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의 임직원이나 그 위탁을 받은 자
4. 환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통상적으로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면을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또는 시·군·구·읍·면·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⑤ 제4항에 따라 도서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등본·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제121조(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① 환지 처분에 뒤따라 생기는 토지 이동(異動) 등에 관하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뒤따르는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준공 후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며,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11조

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2조(다른 등기의 정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교환·분할·합병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 토지와 연안해면은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登記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登記나 등록을 하지 못한다. 다만,登記나 등록을 한 신청인이 확정일부(確定日附)가 있는 서류로써 환지계획,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고시 전에登記 또는 등록 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그 밖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4조(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마을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25조(농어촌 정비협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 간에 농어촌정비사업이 농어촌지역에서의 교육·의료·교통·문화 및 환경 등 개발업무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 정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정비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6조(수리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2.17>

③ 수리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목적 외의 사용 승인기간이 끝난 후 다시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귀속하며, 그 대금의 사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무단점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29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9조제1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1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

- 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
- ② 제70조를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
 3.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5. 제8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물·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6.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
3.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9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5.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1319호, 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간선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장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2.15] [대통령령 제23621호, 2012.2.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계농지의 기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의 특성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의 산업별 배치에 관한 사항
7. 산지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주택의 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경관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

우는 데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연안해면의 범위는 최저 썰물 때 수심이 10미터(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제4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목표 및 방향
- 2. 농어촌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자연경관, 농어업경관, 생활경관 등 농어촌경관의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정 체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다.

- 1.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적절성
-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 3.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경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4. 재원조달 가능성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상 지역의 위치와 규모
- 2. 토지이용계획
- 3.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 4. 그 밖에 대상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면 이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예정지 조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대상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2. 사업별 필요 투자액
3. 사업 시행의 효과
4.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개요
 2.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3. 사업별 추정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서
 4.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
 5. 사업효율 분석 결과
 6.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7. 그 밖에 제9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중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같은 호 나목의 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개수·보수와 준설(浚渫)의 경우에는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에 포함된다]과 같은 호 라목 및 사목의 사업을 말한다.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개요
2. 세부 설계도서
3. 사업비 수입·지출예산서

4. 사업비 명세서
5.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도
6.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2.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변경

제11조(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은 변경되었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의 사실증명으로 토지소유가 확인된 자를 말한다.

제12조(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取土場)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을 임대, 매각, 직접 사용 또는 일시 사용으로 관리·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 등의 농업경영 규모 확대
2. 농어촌정비사업의 목적 달성
3.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재투자 재원 확보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관리·처분 수익금 추정액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관리·처분계획별 구획 및 면적
2. 관리·처분 대상자 결정방법
3. 관리·처분 일정
4. 관리·처분 수익금 추정액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매립지등이 같은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

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44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출자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6>

1.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지역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농어촌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자를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 절차 및 방법) ①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되, 임차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를 결정하면 임차 대상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④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임대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6>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
2.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으로서 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5. 해당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①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면 매각 대상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조건을 정하여 매립지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제한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3. 매립지등의 위치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다만, 제12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3.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제19조제2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①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매각할 때의 매각예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매각의 특례) 토지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등 중 농지를 제13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
4. 영농시범사업 또는 농업교육훈련사업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저장·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제20조(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지등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 사업
2. 제19조 각 호의 사업

제21조(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마친 후부터 매립지등의 임대 또는 매각 대상자가 결정되거나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 제13조에 따른 임대 대상 자격자 또는 임대를 받아 제19조제5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일시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일시 사용자 선정방법, 일시 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의 상환을 말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국가 및 토지 소유자는 제외한다)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면 매각 대금의 관리 및 사용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 사항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 수립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계획 또는 공공목적상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농어촌용수구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流域)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 ③ 시·군·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조작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25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①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수지
 2. 양수장 또는 배수장
 3. 취입보(取入洑)
 4. 관정(관정: 우물) 또는 집수암거(集水暗渠)
 5. 용수로 또는 배수로
 6. 하구둑 또는 방조제
 7. 농로(農路)
 8. 저수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 ② 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폐지되거나 개수, 손괴(損壞)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우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정보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에 관한 사항
5.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1과 같다.
 - ④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 ⑥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류유역에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일상점검·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⑧ 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난구조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재해나 재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해수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7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을 말한다.

1.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포용조수량이 3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
 3. 그 밖에 저수지 및 방조제 중 붕괴될 경우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②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요와 주변 환경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 지역
 3. 비상 연락 체계
 4.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5. 주민 대피 계획
 6.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증축 등으로 총저수용량이 변동되는 경우
 2.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의 여건 변화 등 피해 예상 규모의 변동으로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오염 현황 및 전망
 2.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주체별·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 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려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2. 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 외의 지역[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조립구조재(組立構造材) 제조업공장과 기포(氣泡)콘크리트제품 제조업공장 및 이들 제품의 제조를 위한 레미콘 제조업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로서 수질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6>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6>

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 당초 승인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

- 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제3절 환지 및 교환·분할·합병 등

제33조(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전의 토지가 미등기 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지(換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환지면적의 산정) ① 법 제25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란 종전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일 전까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환지불능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별 토지면적(이하 "환지대상지"라 한다)에 해당 지구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5조(실경작지의 확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금전 청산 대상인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것을 알려야 한다.

제36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환지심의위원회(이하 "환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치고,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서
2. 해당 토지의 환지계획서 또는 일시 이용지의 지정계획서
3. 해당 토지의 환지 지정 신·구대조도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때에는 환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적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환지사 시험)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20일 전까지 시험 일시·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수수료)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료를 내야 한다.

제39조(자격증의 발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40조(특정 용도의 창설한지)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곡종합처리장
2. 공동집하장
3. 저온저장고
4. 농기계 보관창고
5. 산지(產地) 농산물공판장
6. 그 밖에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
2.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3. 마을회관
4. 어린이놀이터
5. 노인정
6. 읍·면·동사무소 및 리(里)사무소

제41조(청산금의 공탁)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지급하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제42조(손실보상)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3조(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혜자로 구성한다.

②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에는 각각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수혜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대의원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은 각각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의원회는 동별·리별로 수혜자의 수와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44조(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①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수혜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혜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소집한다.

② 수혜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목적

및 장소를 수혜자 또는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시설 부지를 창설환지로 지정받으려면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적고 수혜자총회의 회장 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참석자가 선출한 5명 이상의 수혜자 또는 대의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⑤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토지와 조건이 유사한 인근 지역 토지의 거래시가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1조에 따른 환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기관의 해당 사업 담당 부서의 장(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의 환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관계 공무원
3. 제43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수혜자총회의 회장이 지명한 수혜자 2명(제43조에 따라 대의원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이 지명한 대의원 2명)
4.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환지 대행 법인의 환지 담당 부서장
5. 해당 사업지구의 공사감독자
6. 그 밖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지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환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환지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환지심의위원회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또는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또는 서기는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환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지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2. 법 제38조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
-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회의에 부치려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환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동·리 경계선의 변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 이상의 동 또는 리에 걸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 또는 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교환·분할·합병의 결정방법) ① 법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분할·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할 토지와 상실할 토지의 지목, 면적, 토양의 성질, 수리(水利), 경사, 온도, 그 밖에 자연과 이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할·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취득할 농지에 그 권리의 설정시기, 존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할·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교환·분할·합병으로 농지의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에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 지역권자, 설정시기, 지역권의 목적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으면 그 권리의 소멸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49조(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求償權)의 범위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0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정비,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제51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환경정비계획과 관련된 다른 농어촌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52조(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이하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2.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자와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는 생활환경정비계획 또는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진행 및 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조정
2.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요청
3.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의 자문 요청

4.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5. 그 밖에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 ④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55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의 경우
 - 가. 창립총회 회의록
 - 나. 마을정비조합장의 선출동의서
 - 다. 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 라. 사업계획서
 - 마.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승낙서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정비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 업무 범위(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및 선임·변경·해임의 방법

5. 조합원의 비용 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회계
 6.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8.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및 방법
 9. 조합비의 사용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0.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변경 절차
 11. 그 밖에 마을정비조합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④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준비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3.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서 받기
 4.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5.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초안 작성
 6.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총원 등) ①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총원할 수 없다. 다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 만큼 총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 까지 하여야 한다.

제57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도지사의 승인 대상)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비
4. 주요 사업내용
5. 사업시행자
6. 사업시행기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제목개정 2011.12.6]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60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0조(빈집 철거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일을 명시한 철거통지서를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1조(철거보상비 지급)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상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62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및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2.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에서 농어촌주택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4.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제63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성 용지

(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서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
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 또는 임대 가격
5.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용지 또는 농어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된 소유 토지 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2.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어촌 주택과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사업이 시행된 읍·면·동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⑤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분양가격의 결정)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제65조(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영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영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

- 이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조성용지를 공급받을 사람이 이혼으로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6.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66조(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기획기술지원단(이하 "기획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둔다.

- ② 기획기술지원단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직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연구기관이나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에 그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기획기술지원단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7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농어업인, 지역주민, 향토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3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변경하면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농어촌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3.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연구, 평가, 컨설팅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2.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컨설팅 등의 지원
3. 법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사·연구·자문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법 제76조에 따른 평가 지원
5.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위탁하는 사업 및 부대사업

제69조(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타당성
2. 목표의 달성도 및 성과
3. 집행과정의 효율성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0조(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사항
2.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개요와 보조금·융자금의 사용명세
3. 지정·승인한 농공단지가 있는 시·군·구에 다른 농공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의 입주와 가동 및 고용의 실태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제71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개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면 직접 작성하거나 해당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의 변경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의 시설물 위치 변경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82조제2항 전단과 법 제8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2조제2항 후단과 법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
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 계획의 변경

제73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
3. 사업기간

4. 지정·해제·승인 및 취소의 연월일
5. 사업 개요
6. 사업비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75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하인 지역으로서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지역
2.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제76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명칭
2.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종류
3.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정비기간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내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77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의 종류
3.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기간
5. 토지 이용계획
6. 시설의 규모와 배치계획
7.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현황과 배치계획
8.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대책
9. 그 밖에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78조(마을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101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마을회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 마을공동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2.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9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80조(마을정비구역의 고시) 법 제10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2. 사업 개요
3.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및 시행방식
5. 사업 시행 예정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

제81조(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0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의 변경
2. 마을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 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4.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5.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
6.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반영
7.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

제8장 보칙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3. 사업비 필요금액
4. 사업 예정 기간
5. 사업의 효과
6. 사업시행자
7.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경우: 관보에 게재
-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경우: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공고

사업 시행지역의 시·도청,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제83조(주민의견 청취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

정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열람된 지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열람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0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된 계획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사항
2.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
3. 해당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제84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① 법 제10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요트장업
2. 조정장업
3. 카누장업
4. 빙상장업
5. 승마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7. 수영장업
8. 체육도장업
9. 골프연습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1. 당구장업
12. 썰매장업

② 법 제10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제과점영업

제85조(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조 대상 사업 비용
2. 상환 완료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비용상환계약 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로 하되, 보조 사업대상 비용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간척, 매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실시
2.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사업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3. 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고시 및 변경승인·고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처분 승인.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한다.
5.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실시
2.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조사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나 그 밖에 농어촌정비사업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 능력을 갖춘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86조의2(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주정착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2. 생활안정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예정일 7일 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4]

제87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구역·단지·지구(이하 "지역·지구등"이라 한다)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지역·지구등 안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 ④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지역·지구등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8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토지 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공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 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89조(선수금)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3조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 이상 진행된 경우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임대 시기에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준공검사)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2. 사업비 명세서
 3.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4.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5.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6.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7. 농어촌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등의 명세서
-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해당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법 제1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란 한국농어촌공사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제91조(측량·설계·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7>

1. 한국농어촌공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법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계업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115조제2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제92조(허가 취소 등)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위치와 규모
3. 사업의 종류
4.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사유와 내용
5.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연월일

제93조(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① 수리계는 법 제1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경비의 징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려면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경비 부과 명세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고, 그 취지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수리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가 법 제1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94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무단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받으려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이하 "무단점용자"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무단점용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무단점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무단점용자가 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무단점용료에 연체이자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2회 이내로 다시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납부기한은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

개월 이내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무단점용료에 다음 각 호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이율 15퍼센트

⑦ 제4항에 따라 고지한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이자(정수하지 아니한다.

제95조(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단점용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무단점용자가 무단점용료를 분할납부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무단점용자가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남은 무단점용료 금액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무단점용료의 부과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무단점용료의 납부일과 납부금액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④ 분할납부하여야 할 무단점용료 및 이자의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9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6조(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86조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확인 또는 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환지 처분, 청산금 지급·징수 및 법 제42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일시 이용지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무
 7. 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12조에 따른 국공유지의 양여 등에 관한 사무
- ④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3항·제4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및 말소등기 촉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1조제3항제18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6조에 따른 농어촌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경비 징수에 관한 업무
- ⑤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확인 또는 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징수 및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3.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임대 및 법 제70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84조 및 제98조에 따른 토지 및 시설의 분양·임대에 관한 사무
5. 법 제100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에 관한 사무
- ⑥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용지의 등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⑦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른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9장 벌칙

제9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23621호, 2012.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완료자의 지원금 신청에 대한 특례) 법률 제11072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중 이영 시행 당시 이주를 완료한 자는 제8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2.2.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0호, 2012.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관정: 우물), 취입보(取入淤),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水利施設)의 개수·보수사업
2. 농로(農路)의 포장사업
3. 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보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보수사업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법 제9조제4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수혜면적 합계가 해당 사업의 총수혜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반영 결

과를 알 수 있는 서류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 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등)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取土場)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의 임대기간은 5년(영 제19조제5호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임대료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하려는 매립지등의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이나 영 제19조제5호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제7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 대상이 매립지등 중 농지이고, 매입자가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 대상 자격자인 경우: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그 남은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매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내야 한다.

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이나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① 영 제21조에 따른 일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1. 일시 사용 신청인이 1인인 경우: 매립지등의 조성목적에 고려하여 선정
2. 같은 구획에 대하여 일시 사용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선정.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이고,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영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시 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받으면 해당 매립지등의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해당 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④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매각 대금의 운용)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 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①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2.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의 지적도 등본 1부
 3. 수해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적도 또는 지형도)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토지(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13조(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영 제28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농업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농어촌공사
4. 「먹는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신청서)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제1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환지계획)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 토지원부
 8.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9. 농업생산기반정비 확정도(축척 1천분의 1)
 10. 농업생산기반정비 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1.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 사본과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증서 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 양여와 무상 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무상 양여 조서와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조서)
 1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변경 조서와 도면(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3.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법 제25조제5항 단서와 법 제34조제5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2항 본문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6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환지(增換地) 지정 조서(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의 경우만 해당 한다)
 18.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② 법 제25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8조(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실경작지 확인) ① 영 제35조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을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경작지 확인신청서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장을 거쳐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동지역,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동지역 및 광역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동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토지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환지계획의 공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①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1.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2.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 다만, 관할 등기소에 알릴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환지계획 정정(변경)통지서에 정정 또는 변경 전·후의 상황을 기록한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

3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土)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①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별로 각각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시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 사유서(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환지사자격증(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①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소속 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

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①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권리 변동의 신고) ①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및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1.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부 등본(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의 제한 내용(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 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

2.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3.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농업·수산업·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창설환지 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은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이나 동의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 소유자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증환지를 받으려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 5.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 6. 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의 지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35조(동·리 경계선의 변경) 영 제47조에 따라 동·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동·리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56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조서
- 2. 별지 제57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 3. 행정구역 변경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제36조(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59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서
- 2. 별지 제60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동의서
- 3. 교환·분할·합병계획도면
- 4. 별지 제61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둘 이상의 시·군·구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5. 별지 제62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 토지평정 가격표
- 6. 별지 제63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일람표
- 7. 별지 제64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총계표
- 8.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대상(예정)토지 일람표

제37조(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릴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36조제1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44조제2항에서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제40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명부 및 동의서
2.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제41조(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4.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변경

제4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1조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시 승인권자가 부여한 조건의 이행에 따른 변경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4.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경
5.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변경

-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용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영 제65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제46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① 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외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 가.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 나. 생산품 판매계획

다. 운영자금 조달계획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3.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④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1. 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건축물대장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④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51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법 제92조제4호에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종교집회장
2. 아동 관련 시설
3. 업무시설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고시 등)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2. 한계농지의 이용 상황

②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연월일
2.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

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7조제5호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2.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면적의 증감

제56조(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을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
2. 마을정비사업 대상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관한 서류

제57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영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증감(국비의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① 영 제 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세입자 및 무허가

-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달)의 전기요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기요금납부영수증, 전기요금납입증명서 등을 말한다)
3.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사본이나 관할 읍장·면장·동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말한다)
 4. 주택소유자의 세입자확인용 인감증명서(세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별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2. 세대주의 인감증명서
 3.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본조신설 2012.2.14]

제58조(간이 공작물) 영 제8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84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공유지 무상 양여도 또는 신규대조도(양여지 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4. 지적도 등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④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제4항의 토지 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6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

2. 국공유지 무상 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 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⑥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를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제60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 등의 출입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 표시
2. 출입의 일시
3. 출입의 목적
4. 출입하려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

제6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리계의 조직 기준
 - 가.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 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
 - 가. 운영경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비·관리비 전액
 - 나. 손괴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耐用年數)로 나눈 금액
3. 수리계의 해산 기준
 - 가.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제64조(무단점용료) ① 영 제9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260호, 2012.2.14>

이 규칙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집필자

- Chapter. 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요(김경두, 윤재돈, 정진택)
- Chapter. II 읍면소재지 종합정비(김경두, 윤재돈, 정진택)
- Chapter. III 권역단위 종합정비(김경두, 윤재돈, 정진택)
- Chapter. IV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김운기, 박헌춘, 윤성준)
- Chapter. V-1 농촌마을생활환경정비(전경구, 변민준)
- Chapter. V-2 농업생산기반조성(강창엽, 김억래)
- Chapter. VI 마을공동소득 및 공동문화조성(김경두, 윤재돈)
- Chapter. VII 지역역량강화(s/w)부문(김경두, 윤재돈, 손옥용)

편집위원

- 위원장 : 이득섭(농림수산식품부)
- 위 원 : 전경구, 김경두, 김운기, 윤재돈, 변민준, 강창엽, 박헌춘 (농림수산식품부)
노정호, 정진택, 양원식, 손옥용, 김억래, 노대준, 윤성준(한국농어촌공사)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추진 매뉴얼

2012년 03월 일 인쇄

2012년 03월 일 발행

발행인 농림수산식품부

인쇄처 00인쇄(000-000-0000)

발행인의 동의 없이 이 책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